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목 차

제 1 편

2007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 경제동향	3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3
1. 국내경제 동향	3
가. 경제성장	3
나. 물가와 금리	7
다. 고용과 임금	9
라. 경상수지	10
2. 해외경제 동향	12
가. 경제성장	12
나. 고용 및 물가	12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3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15
1. 농업구조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5
나. 농경지	16
2. 농가경제	19
가. 소득 동향	19
나. 가계지출 동향	24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26
라. 농가자산 동향	26
마. 농가부채 동향	27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28
사. 주·부업별 지표	29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30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30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1
카. 지역별 주요지표	32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3
가. 개 황	33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3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6
4. 농림업 부가가치	38
5. 농업생산성	38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40
제2장 >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42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42
1. 식량작물	42
2. 원예·특용작물	45
가. 채소류	45
나. 과실류	46
다. 화훼류	46
라. 특용작물	48
마. 인삼류	4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9

가. 축산물	49
나. 사료작물	5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5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5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55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57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57
2. 식품 수요현황.....	60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60
나. 식품자급률 수준.....	63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 국제비교.....	64
3. 식품산업 동향.....	67
가. 식품제조업.....	67
나. 외식산업.....	69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73
1. 농식품 수출입동향.....	73
가. 수출동향.....	73
나. 수입동향	75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78
가. 농식품 교역규모.....	78
나. 농식품 교역동향.....	78
제3장 >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81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81
1. 국제곡물 수급동향.....	81
가. 개 요	81

나. 쌀	81
다. 밀	81
라. 옥수수	82
마. 대 두	82
2. 국제곡물 가격동향	84
가. 쌀 값 동향	84
나. 밀 값 동향	85
다. 옥수수 값 동향	86
라. 대두 값 동향	86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87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87
가. 미국	87
나. 중국	93
다. 일본	96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99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105
가. 미국	106
나. 일본	107
다. 중국	108
라. 캐나다	109
마. 유럽연합	110
바. 중남미 국가	112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114
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115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16
1. WTO 활동	116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 (2001~2005)	116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 (2006~2007)	118
2. OECD 활동	120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120
나. OECD 중기농업전망	120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124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128
3. FAO 활동	129
가. 개 요	129
나. 주요활동	129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31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133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37
가. 세계식량계획(WFP)	137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37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38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138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39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40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141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142
8. 국제농업협력사업	144

제1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 기반 강화	14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14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 조정	149
제2절 2007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153
1. 200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153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153
나. 예산규모	154
2. 농어촌발전특별세 운용.....	155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5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155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158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158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159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159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6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160
2. 농정조직의 개편.....	162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추진.....	162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추진.....	163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협의 추진	163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164
가.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165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167
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168
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69
마.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70
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71
사.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173
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73
4. 맞춤형농정 추진	178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179
1. 농업협동조합	179
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179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181
2. 한국농촌공사	182
가.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기업 비전과 경영이념 설정 전략수립실천.....	182
나. 윤리경영실천을 통한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	183
다.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183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184
4. 한국마사회	187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94
1. 농어업특위의 현황.....	194

2. 2007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196
가. 본위원회	196
나. 분과위원회	196
다. 소위원회	197
제2장 > 2007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201
제1절 친환경농업 및 식품산업 적극 추진	201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201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판로확대	202
3. 토양개량사업 추진	203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204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204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204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205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205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207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207
나.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조직 개편	208
다. 식품클러스터 육성 추진	210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214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214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215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215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216

다.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217
라.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217
마. 국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217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218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218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219
4. 가축방역·검역 강화	220
5.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222
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제정	222
나.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223
다. 유기동물 처리현황	223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224
1. 농업구조 체질개선	224
가. 영농규모화사업 촉진	224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225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227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27
나. 발기반정비사업	228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29
라. 배수개선사업	230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1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231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232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233
3. 농업전문인력 육성	234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34

나. 농업법인 육성	236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239
라. 농업인 교육훈련	240
마. 여성농업인 육성	243
바. 농업벤처 육성	249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50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53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253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256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256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258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259
4. 축산물시장 차별화	261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262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262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262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263
다. 한류 및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264
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극대화	265
2. 수입관리 대책	265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265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266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267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267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267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267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68
다. RPC 경영혁신	269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271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272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274
가. 채소류	274
나. 과일류	276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277
4. 가축개량 활성화	278
5. 우유수급 안정대책	281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283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283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283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285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87
라.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289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290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290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293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294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296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296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296
2. 농공단지 조성	299
3. 향토산업육성 추진	300

4. 신활력사업 추진.....	301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302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03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304
1. 농촌 기초생활환경 개선.....	304
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304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305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06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307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310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310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310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311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13
마. 농촌노인 복지지원 강화.....	313
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313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314
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14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315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316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318
1. 농지제도 개선.....	318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319
3.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320
가. 추진배경	320

나. 기본 정책방향.....	321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321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323
1. WTO/DDA 협상 대응	323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323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324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325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326
2. FTA 농업협상 대응	327
가. 한·미 FTA 협상대응	327
나. 한·EU FTA 협상분야	335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337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338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339
3.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341
가. 정부부문	341
나. 민간부문	342
제12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행 국내보완대책 추진	343
1.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343
가. 보완대책 기금규모 및 집행상황.....	343
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상황.....	345
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상황.....	346

제1장 >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351
제1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351
제2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351
1. 농식품 유통혁신	352
2. 핵심인력 양성	352
3. 식품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 발굴	353
4. 규제 완화	353
5.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354
6.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	354
제3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355
1. 200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355
2. 200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356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35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357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57
나. 농림사업 성과평가 추진	360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363
2. 농식품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364
가. 농식품행정 제도개선	364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365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367

제2장 > 2008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369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369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369
가. 공공비축제	370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370
2. 쌀 전업농 육성.....	371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373
가. RPC 경쟁체제 도입	373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373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374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374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375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376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76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377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377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378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378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78
4. 농업벤처 육성	379
5. 농업교육훈련.....	380
가. 추진방향.....	380
나. 주요정책 내용.....	381
6. 여성농업인 육성.....	382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382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384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386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387
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89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390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390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390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391
다.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392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392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393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394
4. 가축방역·검역 강화.....	396
5. 가축개량 추진	399
가. 한우개량	399
나. 젃소개량	399
다. 돼지개량	400
라. 닭개량 등	400
6.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401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405
8. 친환경농업 육성	407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분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408
10.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409
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409
나.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410
다. 동물보호·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411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412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412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414
3. 농식품 수출확대.....	416
4. 친환경농식품 유통활성화.....	418
제5절 식품산업 육성	418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419
2. 한식세계화	420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21
4. 외식산업육성.....	423
5.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425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425
나. 전통주 산업.....	425
다. 식품명인 발굴·육성	426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427
1. 직접지불제 확충.....	427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427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428
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29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430
마. 경관보전직불제	430
2. 재난대비 경영안정제도 강화.....	431
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431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433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434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435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436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436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436
다. 농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437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438
가. 추진현황.....	438
나. 추진계획.....	440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금감면.....	441
가. 추진현황.....	441
나. 추진계획.....	444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445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5개년 기본계획 추진.....	445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446
가. 도입.....	446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447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448
라. 경관보전직불제.....	450
3.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450
가. 사회안전망 확충.....	450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451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452
라. 교육비 부담경감.....	452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452
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453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453
5.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455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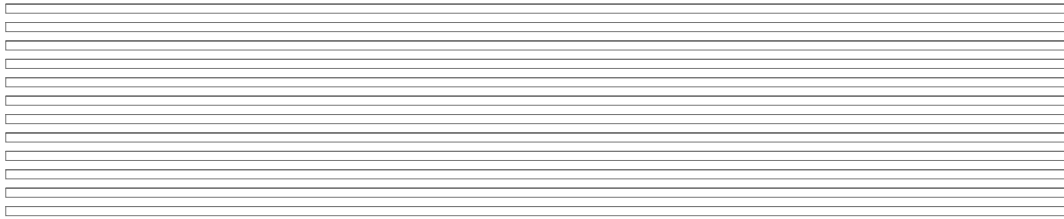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56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457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58
6.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459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459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사업.....	460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461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462
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62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463
다.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463
8. 농업생산기반 확충.....	465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65
나. 받기반정비사업	466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67
라. 수리시설 개·보수	467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468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469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470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471
1. 농지제도 개선.....	471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473
3. 협동조합 개혁	474
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474
나.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474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475
4.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	477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478
6. 맞춤형농정 추진.....	479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480
1. WTO/DDA 협상대응.....	480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480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482
2. FTA 농업협상 대책.....	483
가. 한·미 FTA 협상분야.....	483
나. 한·EU FTA 협상분야.....	485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487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489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489
바. 한·GCC FTA 협상분야.....	490
3. OECD 활동계획.....	491
4. FAO 활동.....	496
가. 개요.....	496
나. 주요활동.....	496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498
5. ASEAN+3 농림장관회의.....	500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503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503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503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504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505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505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506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511

9. 해외농업개발사업.....	511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511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513
다. 추진전략 주요 내용.....	515
제10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518
1.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보완	518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연구·기술개발과 활용촉진	521
1.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요.....	521
2. 2008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522
가. 연구과제 관리현황	522
나.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522
다.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523
3. 2008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	524
가. 사업개요.....	524
나. 2008년 사업추진현황.....	525

부 록

◎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527
--------------------------------------	-----



제1편

2007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 제1장 > 경제동향
- » 제2장 >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 제3장 >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성장

2007년에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광공업, 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0% 성장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재화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G D P	8.5	3.8	7.0	3.1	4.7	4.2	5.1	5.0	
경제활동 동별	건설업	△3.4	5.5	2.8	8.6	1.8	△0.1	0.3	1.8
	농림어업	1.2	1.1	△3.5	△5.3	9.2	0.7	△1.5	1.1
	제조업	17.0	2.2	7.6	5.5	11.1	7.1	8.5	6.5
	서비스업	6.1	4.8	7.8	1.6	1.9	3.4	4.2	4.8
재고증가율	12.6	0.3	△0.7	6.1	9.4	5.1	9.1	5.8	
제조업평균 가동률	78.3	75.0	78.1	78.0	80.0	79.4	80.0	81.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산업별 생산활동

2007년에 농림어업은 1.1%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은 부진하여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나, 어업은 해면어업과 해면양식의 호조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광업은 연탄 및 모래·자갈 생산이 증가하여 1.6% 증가하였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연간	1/4	2/4	3/4	4/4
농 립 어 업	△5.3	9.2	0.7	△1.5	1.1	5.8	1.1	3.5	△0.7
광 업	0.9	2.7	△1.7	1.7	1.6	1.7	3.9	0.8	0.4
제 조 업	5.5	11.1	7.1	8.5	6.5	3.8	6.1	6.3	9.5
전기 가스 수도사업	4.7	6.6	7.8	3.4	4.0	2.3	1.6	5.7	7.0
건 설 업	8.6	1.8	△0.1	0.3	1.8	3.9	2.7	0.1	1.4
서 비 스 업	1.6	1.9	3.4	4.2	4.8	4.1	4.7	5.5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	△0.2	2.0	3.5	3.5	3.7	3.3	3.2	3.8
운수창고 및 통신업	4.8	7.0	4.8	4.6	5.4	5.5	5.1	5.2	5.5
금 용 보 험 업	0.5	△1.4	4.7	5.3	10.3	4.8	10.2	15.3	9.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2	1.9	3.4	3.8	3.6	3.8	3.5	3.6	3.6
국 내 총 생 산	3.1	4.7	4.2	5.1	5.0	4.0	4.9	5.1	5.7
국 민 총 소 득	1.9	3.9	0.7	2.6	3.9	3.6	4.6	5.2	2.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은 작년에 이어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운수장비 제조, 금속품제조, 산업용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년대비 4.0%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가스 및 열공급업, 수도업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토목건설, 주거용 건물건설 등이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에 이어 4.8% 성장하였다.

2) 소비지출

비내구재의 지출이 저조하였으나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회복됨에 따라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정부소비도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표 1-1-3>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0.3	0.4	3.9	4.8	4.7	4.5	4.9	4.7	4.8
민간소비지출	△1.2	△0.3	3.6	4.5	4.5	4.1	4.4	4.8	4.6
정부소비지출	3.8	3.7	5.0	6.2	5.8	6.3	6.9	4.5	5.6

자료 : 한국은행

3) 저축 및 투자

2007년 총저축률은 전년대비 0.7% 포인트 하락한 30.6%를 기록하였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7%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정부총저축률은 전년보다 1% 상승한 11.2%이다.

2007년 총투자율은 29.4%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설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하여 국내 총고정투자의 증가율이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표 1-1-4>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총 저 축 률	32.8	34.9	32.9	31.3	30.6
민 간	21.1	24.6	22.7	21.1	19.4
일 반 정 부	11.6	10.2	10.1	10.2	11.2
국 내 총 투 자 율	30.1	30.4	30.2	29.9	29.4
투 자 재 원 자 립 도	109.0	114.7	108.9	104.6	104.1

자료 : 한국은행

총고정자본 형성은 설비투자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4.0% 성장하는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0.3% 성장하였고, 건물건설은 1.8%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 7.6% 성장하였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4.0	2.1	2.4	3.6	4.0	1.6	0.1	△0.4	1.6
설 비 투 자	△1.2	3.8	5.7	7.8	7.6	4.5	1.6	△1.8	2.1
건 설 투 자	7.9	1.1	△0.2	△0.1	1.2	△0.3	△1.2	0.2	1.2

자료 :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 가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휘발유 및 경유 등의 공업제품과 교육비, 가구 집기·가사용품 등의 가격이 올라 연평균 2.5% 상승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였고 2/4분기 2.4%, 3/4분기 2.3%, 4/4분기에는 고유가와 농산물 작황부진 등으로 3.3%의 물가가 상승하였다. 부류별로는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대비 3.1% 상승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2.4% 상승해 전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에 비해 4.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 1-1-6>

물 가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3.5	3.6	2.8	2.2	2.5	2.1	2.4	2.3	3.3
농 축 수 산 물	5.9	8.9	1.9	△0.1	1.9	1.4	2.0	0.5	3.8
공 업 제 품	2.4	2.6	3.7	2.0	2.0	0.7	1.4	1.5	3.9
서 비 스	3.7	3.1	2.4	2.7	2.9	2.8	3.0	2.8	2.9
생 산 자 물 가	2.2	6.1	2.1	0.9	1.4	0.2	1.4	1.2	3.0
농 립 수 산 품	5.7	12.1	△3.7	△2.5	2.8	1.3	3.0	1.9	4.8
공 산 품	1.8	7.6	6.7	0.2	0.8	△0.6	0.8	0.3	2.7
전 력 · 수 도 · 가 스	2.9	0.9	1.2	7.4	3.5	3.4	3.7	2.1	4.8
서 비 스	2.3	2.9	1.2	2.2	2.3	1.7	2.3	2.7	2.5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수출물가는 전년대비 2.1% 하락하였다. 이는 동, 니켈 등 비철금속소재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금속1차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등의 가격이 올랐으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 관련제품 수출 국가간 경쟁심화 등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크게 내림세를 보인 데 기인한다.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4.5% 상승하였다. 이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가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농산물, 금속 1차제품 등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 데 기인한다.

<표 1-1-7>

수 출 입 물 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연간	1/4	2/4	3/4	4/4
수 출 물 가	△2.2	6.2	△6.7	△8.2	△2.1	△4.4	△2.0	△2.9	0.9
수 입 물 가	1.8	10.2	2.9	0.9	4.5	1.5	2.8	1.5	12.2

자료 : 한국은행

2) 금 리

2007년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및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해 반등하였다. 단기금리인 CD 유통수익률과 콜금리는 전년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표 1-1-8>

시 중 실 세 금 리

(단위 : 연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5.43	4.71	4.69	5.17	5.70
CD유통수익률(3개월)	4.31	3.78	3.65	4.48	5.16
콜 금 리(1일)	3.95	3.61	3.34	4.19	4.76

자료 : 기획재정부

다. 고용과 임금

1) 고용

2007년 경제활동인구는 2,421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증가한 반면, 농림업, 제조업 등은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78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1-1-9>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1.0
경제활동참가율	61.5	62.1	62.0	61.9	61.8	△0.1p
취업자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1.2
농림업	1,877	1,749	1,747	1,721	1,670	△3.0
제조업	4,205	4,290	4,234	4,167	4,119	△1.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5,967	16,427	16,789	17,181	17,569	2.3
건설업	1,816	1,820	1,814	1,835	1,850	0.8
실업자	818	860	887	827	783	△5.3
실업률	3.6	3.7	3.7	3.5	3.2	△0.3p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임금

2007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연중 5.9% 올라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사업의 임금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전년대비 9.8% 증가하여 5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화수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출량이 전년대비 8.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노동투입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명 목 임 금	9.4	6.5	6.4	5.6	5.9
실 질 임 금	5.7	2.8	3.6	3.3	3.2
제 조 업 노 동 생 산 성 ¹⁾	4.8	10.8	7.0	13.2	9.8

주 : 1) 노동생산성 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기준
 자료 : 노동부, 지식경제부.

라. 경상수지

<표 1-1-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경 상 수 지	80	54	119	282	150	54	60
상 품 수 지	135	148	220	376	327	279	294
수 출	1,515	1,634	1,973	2,577	2,890	3,318	3,790
수 입	1,380	1,486	1,753	2,201	2,563	3,039	3,496
서 비 스 수 지	△39	△82	△74	△80	△137	△190	△206
소 득 수 지	△12	4	3	11	△16	5	8
경 상 이 전 수 지	△4	△16	△29	△24	△25	△41	△36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경상수지는 2006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6억달러 늘어난 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06년보다 더욱 확대된 2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 수 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중 재화 수출은 가공용재화와 운수조달재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비화폐용 금 수출은 감소하였다.

2) 수 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대비 15.0% 증가하였다. 재화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의 증가세가 10% 이상을 유지하였다. 서비스 수입은 여행지급, 보험 서비스 지급이 늘어나 적자금액이 전년대비 16억 달러 증가한 206억 달러에 달하였다.

3) 자본수지

2007년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의 악화로 2006년대비 65.3% 감소하였으며, 62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나타냈다.

4) 환 율

2007년도 1/4분기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기말 기준)은 940원에서, 2/4분기 927원, 3/4분기 921원까지 하락하였으나, 4/4분기 938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1/4분기 이후 하락한 환율은 4/4분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중, 전문연구원 송성환)

2. 해외경제 동향

가. 경제성장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세 계	2.3	3.0	2.7	4.1	3.5	5.0	4.9
선 진 국	0.9	1.6	1.9	3.3	2.5	3.0	2.7
미 국	0.5	1.9	2.7	3.9	3.2	2.9	2.2
일 본	0.4	△0.3	1.8	2.7	1.9	2.4	2.1
E U	1.6	0.9	0.8	1.8	1.5	2.8	2.6
개 도 국	4.1	4.8	6.7	7.6	7.5	7.8	7.9
한 국	3.8	7	3.1	4.7	4.2	5.0	5.0
중 국	7.3	8.3	10.0	10.1	10.4	11.1	11.4

자료 : 한국은행, IMF

2007년의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등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소비 등 실물 지표도 악화되면서 2.2% 성장에 그쳤다. 일본과 유로지역은 미국경제 둔화가 수출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회복세가 완만해졌다. 중국경제는 올림픽 준비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나. 고용 및 물가

2007년 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등 금융부문 부실이 소비부문 및 실물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고용지표는 악화되었다. 2007년 미국의 실업률은 1/4분기 4.5% 수준에서 4/4분기 4.8%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실업률은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다. 유로지역도 2006년 8.3%에서 2007년 7.4% 낮아져 고용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

2007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1/4분기에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4/4분기에는 4.8%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3/4분기 이후 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 교역 및 경상수지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미 국	△385	△459	△522	△640	△755	△811	△739
일 본	88	112	136	172	166	171	210
유 로 지 역	△20	55	39	80	23	2	3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6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천4백억달러로 만성적인 적자문제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1.5%, 8.6% 증가해 흑자폭이 증가했으며 유로지역도 수출과 수입이 각각 8.4%, 5.5% 증가하여 흑자폭이 증가하였다.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7년 미국 금리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저금리 정책 기조로 인해 2006년보다 하락하였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2007년 1월까지 0.4%를 유지하였으나, 2월 콜 금리가 0.5%로 인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도 0.75%로 소폭 상승하였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월 3.5%에서 3.75%로, 6월에는 다시 4.0%로 인상하여 금리가 상승하였다.

<표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¹⁾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 국 ²⁾	1.75	1.25	1.00	2.25	4.25	5.25	4.25
일 본 ³⁾	0.10	0.10	0.10	0.10	0.10	0.40	0.75
유 로 지 역 ⁴⁾	3.29	2.75	2.00	2.00	2.25	3.50	4.00

주 : 1) 기말기준

2)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3) 기준대출이율

4) 단기 공개시장조작 금리

자료 : 기획재정부

2007년 미 달러화는 금융불안과 세계적인 달러 약세 전망 및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엔화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엔케리 청산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 달 러 / 유 로	0.890	1.050	1.258	1.363	1.184	1.320	1.459
일 본 엔 / 미 달 러	131.5	118.8	107.0	103.8	117.5	118.8	113.0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중, 전문연구원 송성환)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7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31천가구로 전년의 1,245천가구보다 14천가구(1.1%)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274천명으로 전년의 3,304천명보다 30천명(0.9%)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1.4%인 755천가구로 전년의 785천가구(63.0%)보다 가구수는 30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1.6%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8.6%인 476천가구로 전년의 460천가구(37.0%)보다 16천가구가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3.2%(408천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28.0%(345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61.2%)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 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456천명)중에서 농가인구(3,274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전년 수준이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2.1%로 2006년 30.8%보다 높아져 전국(2006 : 9.5% → 2007 : 9.9%)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90천명(48.6%), 여자가 1,684천명(51.4%)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273	1,245	1,231	△14	△1.1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434 (7.1)	3,304 (6.8)	3,274 (6.8)	△30	△0.9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0	2.65	2.66	0.01	0.4	
연령별 농가 인구	50세 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1,952 (56.8)	1,949 (59.0)	1,967 (60.1)	18	0.9
	50세 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482 (43.2)	1,355 (41.0)	1,307 (39.9)	△48	△3.5
성별 농가 인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677 (48.8)	1,607 (48.6)	1,590 (48.6)	△17	△1.1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1,757 (51.2)	1,697 (51.4)	1,684 (51.4)	△13	△0.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9천ha 줄어든 1,782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1,070천ha로 전년에 비하여 14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12천ha로 5천ha가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10.2천ha), 공공시설(4.1천ha), 기타사유(8.9천ha)로 인하여 총 23.2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3.4천ha), 복구 등(1.0천ha)으로 총 4.3천ha 경지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18.9천ha가 감소하였다.

2007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856천ha로 전년보다 4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 이용률은 전년의 102.0%에서 102.1%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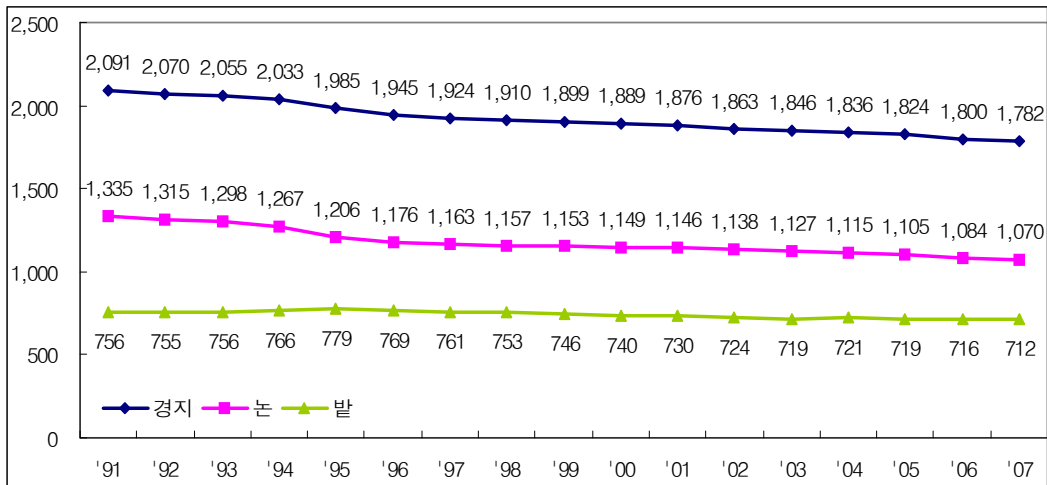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161천ha로 전년보다 17천ha 감소, 채소는 222천ha로 12천ha 감소, 과수는 148천ha로 1천ha 증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37.2천ha로 전년보다 9.2천ha 감소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7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41	1,921	1,860	1,856	△4.0	△0.2
식 량 작 물	1,346	1,318	1,233	1,234	1,178	1,161	△17	△1.4
(미 곡)	(1,056)	(1,072)	(1,001)	(980)	(955)	(950)	(△5)	(△0.5)
(맥 류)	(90)	(68)	(63)	(61)	(58)	(56)	(△2)	(△3.4)
(두 류 등)	(200)	(177)	(169)	(193)	(165)	(155)	(△10)	(△6.1)
경 제 작 물	851	780	710	689	682	694	12	1.8
(채 소)	(322)	(296)	(255)	(240)	(234)	(222)	(△12)	(△5.1)
(과 수)	(172)	(169)	(153)	(150)	(147)	(148)	(1)	(0.7)
(기 타) ¹⁾	(357)	(315)	(302)	(299)	(301)	(324)	(23)	(7.6)
경 지 면 적	1,985	1,889	1,836	1,824	1,800	1,782	18	(△1.0)
경지이용률(%)	108.1	110.5	105.2	104.7	102.0	103.1	1.1	1.1
(논)	(104.1)	(106.3)	(102.7)	(102.9)	(102.5)	(104.7)	2.2	2.1
(밭)	(114.7)	(116.9)	(109.0)	(107.3)	(101.2)	(100.6)	(△0.6)	(△0.6)

주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20>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7.8	44.2	46.4	37.2	△9.2	△19.8
논	33.5	4.3	26.7	24.1	20.3	14.8	△5.5	△27.1
밭	31.1	12.5	21.2	20.1	26.1	22.5	△3.6	△13.8
휴경률(%)	3.2	0.9	2.6	2.4	2.5	2.1	-	-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2. 농가경제

가. 소득 동향

1) 농가소득

2007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1,967천원으로서 전년(32,303천원)에 비해 1.0%(336천원) 감소하였다.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3.9% 감소하고, 농업외소득은 10.6%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은 각각 1.5%, 4.1% 씩 소폭 증가하였다.

<표 1-1-21>

농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¹⁾	21,803	26,878	29,001	30,503	32,303	31,967	△336	△1.0
□ 경 상 소 득	21,803	22,000	24,600	25,778	27,015	26,462	△553	△2.0
○ 농 업 소 득	10,469	10,572	12,050	11,815	12,092	10,406	△1,686	△13.9
○ 농 외 소 득	6,931	9,397	9,544	9,884	10,037	11,097	1,060	10.6
○ 이 전 소 득	4,403	2,031	3,006	4,078	4,886	4,959	73	1.5
□ 비 경 상 소 득 ²⁾	-	4,878	4,401	4,725	5,289	5,506	217	4.1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은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이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7.4%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1.3%p 감소하였다.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 상 소 득	100.0	81.9	84.8	84.5	83.6	82.8
○ 농 업 소 득	46.1	39.3	41.6	38.7	37.4	32.6
○ 농 외 소 득	33.2	35.0	32.9	32.4	31.1	34.7
○ 이 전 소 득	20.7	7.6	10.4	13.4	15.1	15.5
□ 비 경 상 소 득	-	18.1	15.2	15.5	16.4	17.2
< 일 본 >						
○ 농 업 소 득	13.0	구)14.3 신)25.4	24.8	24.6	24.6	-

주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2)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은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10,406천원으로 전년(12,092천원)에 비해 13.9%(1,686천원) 감소하였다.

<표 1-1-23>

농 업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0,572 (44.8)	12,050 (45.3)	11,815 (44.6)	12,092 (44.3)	10,406 (39.9)	△1,686 -	△13.9 -
○ 농업총수입	16,012	23,611	26,623	26,496	27,322	26,102	△1,220	△4.5
○ 농업경영비	5,543	13,039	14,572	14,681	15,231	15,696	465	3.1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26,102천원으로 전년(27,322천원)에 비해 4.5%(1,220천원) 감소하였다. 과수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는 전년수준, 미곡과 축산은 감소하였다.

<표 1-1-24>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3,611	26,623	26,496	27,322	26,102	△1,220	△4.5
○미곡수입	5,450	8,049	8,653	7,264	7,578	7,296	△282	△3.7
○축산수입	3,981	5,055	5,021	6,386	6,403	5,145	△1,258	△19.6
○채소수입	3,386	5,721	6,538	6,388	6,758	6,817	59	0.9
○과수수입	1,542	2,298	2,964	2,945	2,915	3,192	277	9.5
○기타수입 ¹⁾	1,653	2,488	3,447	3,513	3,668	3,652	△16	△0.4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미곡수입(28.0%), 채소(26.1%), 축산(19.7%), 과수(12.2%) 및 기타수입(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5>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구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수입	34.0	34.1	32.5	27.4	27.7	28.0
○축산수입	24.9	21.4	18.9	24.1	23.4	19.7
○채소수입	21.1	24.2	24.6	24.1	24.7	26.1
○과수수입	9.6	9.7	11.1	11.1	10.7	12.2
○기타수입	10.4	10.6	12.9	13.3	13.4	14.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경영비는 15,696천원으로 전년(15,231천원)에 비해 3.1%(465천원) 증가하였다. 양축비는 감소(193천원)하였으나 비료·농약비(156천원), 노무비(57천원) 등이 증가하였다.

<표 1-1-26>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3,039	14,572	14,681	15,231	15,696	465	3.1
○수선및농구비	807	305	335	318	333	326	△7	△2.1
○노무비	441	808	952	913	901	958	57	6.3
○양축비	1,261	2,350	2,607	2,747	2,633	2,440	△193	△7.3
○비료·농약비	695	1,452	1,587	1,624	1,666	1,822	156	9.4
○임차료	1,070	1,515	1,318	1,096	1,187	1,133	△54	△4.5
○기타비용 ¹⁾	1,269	6,609	7,773	7,983	8,511	9,017	506	5.9

주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및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및수수료, 기타판매및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 농업외소득

농업외소득은 11,097천원으로 전년(10,037천원)에 비해 10.6%(1,060천원) 증가하였다.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이 각각 10%내외 증가하였다.

- *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27>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외 소 득	6,931	9,397	9,544	9,884	10,037	11,097	1,060	10.6
○ 겸 업 소 득	1,527 (22.0)	2,266 (24.1)	2,342 (24.5)	2,531 (25.6)	2,690 (26.8)	2,959 (26.7)	269	10.0
○ 사 업 외 소 득	5,404 (78.0)	7,131 (75.9)	7,201 (75.5)	7,353 (74.4)	7,347 (73.2)	8,138 (73.3)	791	10.8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4)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1.5%, 비경상소득은 4.1% 증가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290천원 (2.9%) 증가한 10,46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6,909	7,407	8,803	10,175	10,465	290	2.9
○ 이 전 소 득	-	2,031	3,006	4,078	4,886	4,959	73	1.5
○ 비 경 상 소 득	-	4,878	4,401	4,725	5,289	5,506	217	4.1

주 :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가계지출 동향

2007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8,046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0,510천원으로 전년(19,891천원)에 비해 3.1%(619천원), 비소비지출은 7,538천원으로 전년(8,571천원)에 비해 12.1%(1,033천원) 감소하였다.

<표 1-1-29>

가 계 비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4,782	24,063	24,691	26,649	28,461	28,048	△413	△1.5
○ 소비 지 출	14,782	18,162	18,386	19,378	19,891	20,510	619	3.1
○ 비 소비 지 출 ¹⁾	-	5,901	6,305	7,271	8,571	7,538	△1,033	△12.1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3.9	48.8	44.3	42.5	37.1	-	-
평균 소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68.3	86.6	81.0	83.4	83.8	83.8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소비지출은 20,510천원으로 전년(19,891천원)에 비해 3.1%(619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보건의료비(8.7%), 광열수도비(3.0%), 교통통신비(2.1%), 등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표 1-1-30>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소 비 지 출 ¹⁾	14,782	18,162	18,386	19,378	19,891	20,510	619	3.1
○ 식 료 품 비	3,118	4,575	4,823	4,998	4,967	5,152	185	3.7
○ 주 거 비	509	452	403	475	490	495	5	1.0
○ 광 열 수 도 비	484	974	994	1,067	1,088	1,121	33	3.0
○ 가 구 가 사 용 품 비	678	511	510	505	508	498	△10	△2.0
○ 피 복 신 발 비	627	581	553	585	582	584	2	0.3
○ 보 건 의 료 비	1,001	1,356	1,476	1,613	1,578	1,716	138	8.7
○ 교 육 비	1,553	874	749	756	740	759	19	2.6
○ 교 양 오 락 비	150	461	574	602	668	683	15	2.2
○ 교 통 통 신 비	793	2,035	2,056	2,176	2,238	2,285	47	2.1
○ 기 타 지 출 ²⁾	5,869	6,342	6,249	6,601	7,032	7,217	185	2.6

주 : 1) 2002년도 까지는 가계비 항목, 2003년부터 소비지출 항목

2) 기타지출은 감가상각비, 기타소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비소비지출은 7,53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3천원(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비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비 소 비 지 출 ¹⁾	174	5,901	6,305	7,271	8,571	7,538	△1,033	△12.1
○ 조 세 및 부 담 금	174	294	299	396	431	471	40	9.3
○ 공 적 연 금 납 부 금	-	319	339	345	370	368	△2	△0.5
○ 사 회 보 험 납 부 금	-	375	358	326	308	349	41	13.3
○ 기 타	-	4,913	5,309	6,204	7,461	6,351	△1,110	△14.9

주 : 1) 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분리·신설된 것으로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 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07년 24,429천원 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3,919천원 으로 전년(3,842천원)에 비해 2.0%(77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이 696천원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은 619천원이 증가 하여 처분가능소득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다.

<표 1-1-32>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0,976	22,696	23,232	23,733	24,429	696	2.9
○ 소비지출 (분가지출)	14,782 (548)	18,162 -	18,386 -	19,378 -	19,891 -	20,510 -	619	3.1
○ 잉여금 ²⁾	6,299	2,815	4,309	3,854	3,842	3,919	77	2.0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 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라. 농가자산 동향

2007년말 현재 농가 가구당 평균자산은 395,981천원으로 전년(356,963천원)에 비해 10.9%(39,01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8% 증가하였고, 유동자산도 11.3% 증가하였다.

<표 1-1-33>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204,527	243,665	298,178	356,963	395,981	39,018	10.9
고 정 자 산 ¹⁾	134,334 (84.9)	165,855 (81.1)	194,401 (79.8)	238,399 (80.0)	284,696 (79.8)	315,569 (79.7)	30,873 -	10.8 -
유 동 자 산 ²⁾	23,837 (15.1)	38,672 (18.9)	49,264 (20.2)	59,779 (20.0)	72,267 (20.2)	80,412 (20.3)	8,145 -	11.3 -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마.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07년말 현재 가구당 29,946천원으로 전년(28,161천원)에 비해 6.3%(1,785천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용부채는 소폭 증가(2.8%)하였으나 농업용 이외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11.1%)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40.1%으로 전년(42.2%)에 비해 2.1%p 개선되었다.

<표 1-1-34>

농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26,619	26,892	27,210	28,161	29,946	1,785	6.3
○농업용부채 (구 성 비)	6,351 (69.3)	17,455 (65.6)	16,961 (63.1)	16,315 (60.0)	16,042 (57.0)	16,486 (55.1)	444 -	2.8 -
○농업용이외부채 ¹⁾ (구 성 비)	2,812 (30.7)	9,164 (34.4)	9,931 (36.9)	10,895 (40.0)	12,118 (43.0)	13,460 (44.9)	1,342 -	11.1 -
당 좌 자 산 (B)	19,739	33,942	43,995	54,354	66,806	74,634	7,828	11.7
단기상환능력 ²⁾ [(A/B)×100]	46.4	78.4	61.1	50.1	42.2	40.1	-	△2.1%p

주 :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40,99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3.2% 수준이었다.

<표 1-1-35>

2007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가구성비 ¹⁾	100.0	61.4	11.7	27.0	-	-	-
농가소득	31,967	25,886	37,422	40,991	81.0	117.1	128.2
가계지출	28,048	22,856	31,083	36,447	81.5	110.8	129.9
자 산	395,981	383,565	421,038	408,434	96.9	106.3	103.1
부 채	29,946	28,254	41,548	28,132	94.3	138.7	93.9
(부채 / 자산)	()	()	()	()	-	-	-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평균 농가자산은 395,981천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421,038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 또한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41,548천원으로 나타났다.

사.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9,458천원으로 자급농가(27,261천원)의 1.4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80,96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256,367천원) 전문농가의 53.3%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3ha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11.0%로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36>

2007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가구성비 ¹⁾	100.0	19.0	43.3	19.2	18.5
농가소득	31,967	39,458	18,576	40,503	27,261
가계지출	28,048	30,780	18,542	36,576	26,217
자 산	395,981	480,963	302,695	447,157	256,367
부 채	29,946	52,752	11,914	29,287	16,178
(부채 / 자산)	(7.6)	(11.0)	(3.9)	(6.5)	(6.3)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화훼농가가 52,921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축산 농가가 43,056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4,143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1,967천원)의 75.5%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화훼농가의 자산이 632,62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 농가(586,620천원), 과수농가(428,371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화훼농가가 16.1%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논벼 농가는 5.5%로 가장 낮았다.

<표 1-1-37>

2007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농 가 구 성 비 ¹⁾	100.0	49.6	11.7	21.5	3.0	0.9	6.3	6.5
농 가 소 득	31,967	24,143	32,983	26,490	31,359	52,921	24,800	43,056
가 계 지 출	28,048	22,379	28,829	24,177	27,651	29,869	20,675	29,137
자 산	395,981	404,438	428,371	303,857	311,687	632,621	230,517	586,620
부 채 (부채 / 자산)	29,946 (7.6)	22,133 (5.5)	32,643 (7.6)	35,989 (11.8)	32,953 (10.6)	101,866 (16.1)	18,968 (8.2)	52,709 (9.0)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5.0~7.0ha, 1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5천만원 이상인 반면, 2.0ha미만은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2007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41.1	25.4	12.7	7.3	6.5	4.5	1.3	0.7	0.5
농 가 소 득	31,967	27,416	29,079	27,580	29,561	32,228	39,470	51,330	44,196	58,653
가 계 지 출	28,048	24,648	27,153	25,315	26,359	27,743	32,417	37,181	38,179	47,936
자 산	395,981	259,847	339,802	374,459	454,743	445,000	465,017	482,265	656,942	868,730
부 채 (부채 / 자산)	29,946 (7.6)	18,037 (6.9)	24,426 (7.2)	22,018 (5.9)	23,634 (5.2)	31,759 (7.1)	45,023 (9.7)	45,412 (9.4)	93,478 (14.2)	95,324 (11.0)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39세 이하 연령층의 소득이 54,887천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0,80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연령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39세 이하는 6억원대, 40~60대는 4억원대, 70세 이상은 3억원대 순서이다.

농가부채는 40~49세가 64,264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59세는 54,025천원, 39세 이하는 46,947천원이나 70세 이상은 10,321천원으로 경영주 연령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39>

2007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2.5	12.6	23.7	33.2	28.0
농가소득	31,967	54,887	42,254	44,002	33,126	20,806
가계지출	28,048	73,779	37,452	35,566	29,010	19,635
자산	395,981	619,694	437,745	451,184	411,974	334,727
부채 (부채 / 자산)	29,946 (7.6)	46,947 (7.6)	64,264 (14.7)	54,025 (12.0)	25,950 (6.3)	10,321 (3.1)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카. 지역별 주요지표

경기와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4천2백만원 내외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전남과 경북지역이 2천7백만원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9억5천만원으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제주(51,633천원), 경기(44,293천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40>

2007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¹⁾	100.0	11.1	6.3	6.9	13.1	9.3	15.4	16.7	12.0	2.0
농가소득	31,967	43,127	30,323	31,537	35,377	29,511	27,545	27,269	29,093	41,189
가계지출	28,048	42,472	25,170	26,418	32,276	23,346	23,233	24,391	24,513	32,752
자산	395,981	949,199	355,649	325,151	433,500	247,558	224,000	290,197	291,818	453,913
부채 (부채 / 자산)	29,946 (7.6)	44,293 (4.7)	34,594 (9.7)	24,496 (7.5)	24,990 (5.8)	20,881 (8.4)	29,345 (13.1)	23,517 (8.1)	35,574 (12.2)	51,633 (11.4)

주 : 1) 2007년 농업기본통계 지역별 구성비임(특·광역시 6.1% 제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가. 개 황

2007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0으로 전년에 비해 2.1%p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5로 전년대비 1.9%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6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하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7.3	104.2	100.0	100.9	103.0
농가구입가격지수(②)	91.8	96.3	100.0	102.6	104.5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16.9	108.2	100.0	98.3	98.6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7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0으로 곡물(2.2↑), 청과물(2.7↑), 기타농산물(4.0↑)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축산물(△2.1)이 내렸고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2.2%p 상승하였다.

1) 곡 물

2007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5로 맥류(△3.5), 잡곡(△8.9)이 내렸으나 미곡(2.9↑), 두류(6.3↑)등이 올라 전년에 비해 2.2%p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겉보리(△1.9), 쌀보리(△4.0), 맥주맥(△4.0), 조(△2.5)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 청과물

2007년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8.5로 개편후에 가중치가 7.1포인트 낮아졌지만 비중이 큰 과실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7%p 상승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배(9.4↑), 감(3.3↑), 매실(22.5↑)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4.6%p 상승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3.1%p 하락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배추(42.5↑), 양배추(43.1↑), 상추(4.3↑) 등 엽채류가 전년보다 11.8%p 상승하고 무(114.8↑) 등 근채류도 48.6%p 상승하였다. 고추(△10.1), 마늘(△1.9), 양파(△40.6), 파(△15.3), 생강(△12.1)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7.3%p 내렸고 호박(△25.0), 가지(△26.6), 풋고추(△17.2) 등 과채류는 7.5%p 하락하였다.

3) 축산물

2007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5로 한우암소(△6.1), 한우송아지 암컷(△17.2), 수컷(△5.3), 유우송아지(△5.7), 돼지(△10.7), 새끼돼지(△8.9)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1%p 하락하였다.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7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1로서 전년대비 4.0%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12.5↑), 인삼(5.0↑), 송이버섯(10.3↑)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3.5%p 올랐고 국화(39.1↑), 장미(6.5↑) 등 화훼류는 6.2%p 상승하였다.

<표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 지 수	1,000	100.0	100.9	103.0	△4.0	0.9	2.1
곡 물	338.3	100.0	91.5	93.5	△11.0	△8.5	2.2
미 곡	277.3	100.0	95.5	98.3	△9.7	△4.5	2.9
맥 류	9.1	100.0	102.0	98.4	△1.2	2.0	-3.5
잡 곡	6.2	100.0	152.2	138.7	△1.0	52.2	-8.9
두 류	19.5	100.0	74.4	79.1	△15.0	△25.6	6.3
서 류	26.2	100.0	114.3	144.6	△32.9	14.3	26.5
청 과 물	339.9	100.0	95.9	98.5	△7.0	△4.1	2.7
채 소	226.0	100.0	114.21	110.6	△7.3	14.2	△3.2
(엽 채 류)	45.1	100.0	126.6	141.6	△14.6	26.6	
(근 채 류)	12.1	100.0	90.6	134.6	△15.3	△9.4	
(조 미 채)	83.5	100.0	103.4	95.8	△15.3	3.4	
(과 채 류)	85.3	100.0	119.0	110.1	△6.4	19.0	
과 실	113.9	100.0	86.3	90.3	△6.4	△13.7	4.6
축 산 물	249.5	100.0	97.5	95.5	7.1	△2.5	△2.1
가 축	168.1	100.0	97.6	95.5	7.1	△2.4	△2.2
유 란	81.4	100.0	93.4	91.5	5.9	△6.6	△2.0
기타농산물	72.3	100.0	97.2	101.1	0.3	△2.8	4.0
특 용 작 물	48.5	100.0	96.8	100.1	2.7	△3.2	3.4
화 혜	20.6	100.0	130.3	138.4	△9.7	30.3	6.2
부 산 물	3.2	100.0	119.5	121.6	9.6	19.5	1.8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7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5로 가계용품(2.5↑), 농촌임료금(2.3↑)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9%p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7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7로 식료품(2.9↑), 피복 및 신발(2.4↑), 주택자재(2.1↑), 광열수도(3.1↑), 보건의료(1.9↑), 교육(5.9↑)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5%p 상승하였다.

2) 농업용품

2007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5로 가축(△6.0)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0.1%p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하락하였으나 품목별로는 배합사료(9.1↑), 종자(0.4↑), 비료(5.7↑), 농기구(1.0↑), 영농광열(2.2↑) 등이 상승하였다.

3) 농촌임료금

2007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03.5로 전년보다 2.3%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2.0↑)과 여자노임(1.8↑)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1.9%p 올랐으며 쌀도정료는 2.2%p 상승하였다. 농기임차료는 트랙터(3.4↑), 이앙기(2.6↑), 콤바인(3.6↑) 등이 올라 전년보다 3.0%p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 지 수	1,000	100.0	102.6	104.5	3.8	2.6	1.9
가 계 용 품	660.4	100.0	102.1	104.7	4.2	2.1	2.5
농 업 용 품	255.9	100.0	104.6	104.5	3.7	4.6	△0.1
종 차	18.0	100.0	98.9	99.4	0.3	△1.1	0.5
비 료	23.5	100.0	110.4	116.7	14.3	10.4	5.7
농 약	22.0	100.0	98.9	99.1	△5.5	△1.1	0.2
농 기 구	49.1	100.0	107.3	108.4	4.7	7.3	1.0
영 농 광 열	16.8	100.0	108.2	110.6	16.6	8.2	2.2
가 축	34.6	100.0	92.4	86.8	5.7	△7.6	△6.1
사 료	66.3	100.0	98.3	107.3	△6.5	△1.7	9.2
영 농 자 채	25.4	100.0	95.4	98.3	7.8	△4.6	3.0
농 촌 입 료 금	83.7	100.0	101.2	103.5	2.4	1.2	2.3
농 업 노동 임 금	44.5	100.0	101.0	102.9	3.4	1.0	1.9
도 정 료	3.6	100.0	98.5	100.7	2.8	△1.5	2.2
농 기 계 임 차 료	35.6	100.0	101.6	104.6	1.1	1.6	3.0

(농업경제연구소 유통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태성)

4. 농림업 부가가치

2007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0년 가격 기준으로 25조 3,390억원 수준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이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3%, 어업부문은 9.6% 증가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반면, 축산업은 3.9% 증가하였다. 이는 벼, 콩, 과채류, 과실류 등 대부분의 작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축산업은 낙농, 양돈 등의 실질생산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해면어업과 해면양식 확대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다.

<표 1-1-44>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단위 : 10억원, %, 2000년 기준가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농 립 어 업 농	농 립 어 업	25,309	24,422	23,138	25,259	25,447	25,067	25,339
	농	21,953	21,250	20,036	22,181	22,329	21,781	21,848
실 질 증 감 률	농 립 어 업	1.1	△3.5	△5.3	9.2	0.7	△1.5	1.1
	농	1.3	△3.2	△5.7	10.7	0.7	△2.5	0.3
	재 배 업	1.8	△5.8	△6.2	10.8	0.3	△2.8	△0.2
	축 산 업	△4.0	15.6	△4.1	10.3	1.9	△1.0	3.9
	임	△0.8	△1.8	△6.5	2.6	3.2	4.8	0.5
	어 업	0.4	△7.6	0.3	△2.6	0.2	5.7	9.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중, 전문연구원 송성환)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7년 호당 노동시간은 1,368시간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1,418천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5ha로 전년수준 이었다.

<표 1-1-45>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530	1,487	1,409	1,368	△41	△2.9
농 업 자 본 액	21,323	31,425	48,118	49,721	51,184	51,418	234	0.5
호 당 경 지 면 적	1.32	1.37	1.48	1.43	1.45	1.45	0.00	0.0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07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2,839원으로 전년 13,384원보다 4.1% 감소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4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4시간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하였으나,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187천원으로 전년 수준 이었다.

<표 1-1-46>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210	12,297	13,384	12,839	△545	△4.1
토지생산성 ²⁾	천원/10a	954	1,051	1,138	1,141	1,161	1,077	△84	△7.2
자본생산성 ³⁾	원/원	0.61	0.47	0.38	0.36	0.36	0.34	△0.02	△5.6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102	89	93	93	87	84	△3	△3.4
자본집약도 ⁵⁾	천원/10a	1,575	2,237	2,963	3,138	3,186	3,187	1	0.0

주 :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07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607천원으로 전년 600천원보다 1.2%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1,535천원으로 전년 1,475천원보다 4.1% 증가하고 양파는 1,186천원으로 전년 1,103천원보다 7.5% 증가한 반면 고추는 1,581천원으로 전년 1,617천원보다 2.2% 감소하였다.

2007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904천원으로 가장 많고 고추가 752천원, 양파 732천원, 논벼가 364천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고추가 1,793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마늘 1,443천원, 양파 994천원, 논벼 49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생산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추가 40.3%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파 28.8%, 마늘 25.2%, 논벼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7>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 천원)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6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1,030	879	892	854	△38	△4.3
	생산비(B)	412	538	588	588	600	607	7	1.2
	경영비(C)	198	280	315	334	350	364	14	4.0
	순수익(A-B)	325	503	443	292	292	247	△45	△15.4
	소득(A-C)	539	761	716	546	542	490	△52	△9.6
마늘	조수입(A)	2,001	1,427	2,237	2,007	1,794	2,347	553	30.8
	생산비(B)	1,067	1,226	1,384	1,423	1,475	1,535	60	4.1
	경영비(C)	582	683	720	798	853	904	51	6.0
	순수익(A-B)	934	201	852	584	319	812	493	154.5
	소득(A-C)	1,420	744	1,516	1,209	941	1,443	502	53.3
양파	조수입(A)	1,178	1,519	1,771	1,908	1,849	1,725	△124	△6.7
	생산비(B)	733	921	1,023	1,048	1,103	1,186	83	7.5
	경영비(C)	414	485	615	610	666	732	66	9.9
	순수익(A-B)	445	598	748	860	746	539	△207	△27.7
	소득(A-C)	764	1,034	1,156	1,298	1,183	994	△189	△16.0
고추	조수입(A)	1,613	1,837	2,385	2,209	2,484	2,544	60	2.4
	생산비(B)	937	1,127	1,379	1,497	1,617	1,581	△36	△2.2
	경영비(C)	347	428	543	638	693	752	59	8.5
	순수익(A-B)	676	711	1,006	712	867	963	96	11.1
	소득(A-C)	1,266	1,410	1,842	1,572	1,791	1,793	2	0.1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정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2007년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6년도의 1,178천ha보다 17천ha가 줄어든 1,161천ha 수준이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955천ha보다 5천ha가 줄어든 950천ha이었다. 이는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3.3%에서 62.6%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벼와 맥류, 두류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맥류의 경우는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2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양곡년도에는 총 5,315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433천톤에 비해 118천톤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6년도의 19,771천톤보다 54천톤이 줄어든 19,717천톤이며, 이는 가공용 밀과 보리쌀, 서류의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6년보다 71천톤 수준 감소한 반면, 주정용 물량은 2006년도 보다 31천톤이 늘어난 202천톤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쌀 재고감축 노력으로 2007양곡년도말 국가전체 쌀 재고량은 695천톤 수준이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2005	1,921	1,232	64.1	980	61	191	240	12.5	150	7.8	300	15.6
2006	1,860	1,178	63.3	955	58	165	234	12.6	147	7.9	301	16.2
2007	1,855	1,161	62.6	950	56	155	222	12.0	148	8.0	324	17.5

주 :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041	5,720	5,433	5,315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385	13,860	14,099	14,190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8,880	19,779	19,771	19,717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148	10,892	10,479	10,477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732	8,887	9,292	9,240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706	2,507	2,189	1,977
자 급 률 (%)	56.0	48.4	43.1	29.1	29.7	26.8	29.4	27.7	27.2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5.6)	(50.2)	(54.0)	(52.7)	(51.6)
1 인 당 연 간 소 비 량 (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8.5	137.5	134.4	13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2007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7.2%로 2006년보다 0.5% 감소되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2.7%보다 1.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6년의 134.4kg에서 132.5kg으로 1.9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78.8kg에서 1.9kg이 줄어든 76.9kg으로 나타났다으며, 보리쌀은 1.1kg으로 전년도보다 0.1kg 감소하였고, 그 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5	82.0	1.1	34.1	5.6	8.5	3.1	4.1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3.8	78.8	1.2	32.4	4.6	9.1	3.9	3.8
2007	132.5	76.9	1.1	33.7	4.6	8.9	3.3	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사무관 박선우)

2. 원예 · 특용작물

가. 채소류

2007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1% 감소한 277.5천ha이었고, 작황이 좋았던 2006년보다 6.0% 감소한 9,394천톤이었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31.9천ha로 전년에 비해 18.0%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18.2% 감소한 1,474천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8.9천ha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여 생산량도 339천톤으로 4.0%가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2006년 대비 19.9% 감소한 19.3천ha이었고, 생산량도 23.5%나 감소한 1,598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54.9천ha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다. 작황도 양호하여 생산량은 2006년 117천톤보다 37.2% 증가한 160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7.0천ha로 전년보다 5.6%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좋아 4.9% 증가한 348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6년 대비 재배면적이 15.9% 증가한 17.8천ha가 재배되어, 생산량은 36.4% 증가한 1,213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224
	내 수	8,677	10,611	11,461	10,484	10,915	10,104	10,155
	수 출	20	59	41	36	56	89	72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224
	생 산	8,677	10,586	11,282	10,068	10,468	9,605	9,394
	수 입	20	84	220	452	503	588	830
1인당 소비량(kg)	132.6	160.6	165.9	152.6	156.8	145.5	154.0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나. 과실류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7년은 154.1천ha로 전년에 비해 1.9천ha가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사과와 감, 기타 품목이 전년에 비해 각각 1.1천ha, 0.4ha, 1.8천ha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배, 포도, 복숭아는 각각 0.8천ha, 0.4천ha, 0.2천ha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실 생산량은 2,749.8천톤으로 전년보다 245.7천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과, 배, 감, 감귤 등 주요 과종의 개화기 및 생육기 기상조건이 좋아 단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과실가격은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과실 공급량의 증가, 과실 비대기에 잦은 비로 인한 품질(당도 등) 저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2,676.4	2,829.6	3,028.5	3,030.1	3,294.5
	수출	13.0	10.9	20.2	31.4	28.2	36.1	24.8	30.3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275.3	2,411.3	2,593.0	2,504.1	2,749.8
	수입	37.2	183.5	338.2	432.5	446.5	471.6	550.8	575.1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5.8	58.8	62.7	62.2	67.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 농업사무관 안형덕)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7년도 재배면적은 7,509ha, 재배농가수는 12,021호로 2006년 대비 각각 2.3%와 3.4% 감소되었으며, 이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고유가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액은 2006년도 대비 1.9%가 감소한 9,237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19천원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무역수지면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나 유가 상승, 환율하락, 수출국내의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2006년도에는 수출이 감소되었고, 2007년도에는 백합과 난류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액은 58,089천\$로 전년보다 44%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14% 증가된 40,974천\$를 기록하면서 2007년도 무역수지 흑자금액은 17,115천\$로 나타났다.

주 수출품목은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과 난류, 선인장으로, 특히 중국으로 수출되는 난류는 중국의 춘절 수요물량이 2007년 초에 집중되면서 2007년도 수출액은 2006년 대비 약 120%정도 증가하였으며, 유가상승, 수출국 내의 경쟁심화 등으로 장미, 국화, 선인장 수출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였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 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2,994	13,080	13,466	13,575	13,596	13,159	12,859	12,440	12,021
재배면적 (ha)	3,503	5,156	5,824	5,891	6,305	6,321	6,860	7,522	7,952	7,688	7,509
생산액 (억원)	2,393	5,090	5,965	6,649	6,966	7,893	8,092	9,218	10,105	9,411	9,237
수출액 (천\$)	1,443	6,363	19,751	28,888	31,849	32,121	45,276	48,527	52,142	40,414	58,089
수입액 (천\$)	5,907	26,738	17,255	19,472	20,689	22,862	22,358	23,366	28,845	35,819	40,9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 기술서기관 김대경)

라.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산 생산량은 2006년생산 대비 12% 증가한 17.5천톤, 2007년 자급률은 18%수준이다.

* 생산량 : (1997) 33천톤 → (2000) 32 → (2005) 23.5 → (2007) 17.5

참깨 수입은 연간 약 60~7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시장 접근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산 생산량은 2006년산 대비 8% 증가한 6.9천톤이며, 2007년 자급률은 17%수준이다.

* 생산량 : (1998) 14천톤 → (2000) 9 → (2005) 6.6 → (2007) 6.9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개						땅 콩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수 요	계	57.8	88.9	101.6	112.2	100.6	90.6	44.2	29.7	42.9	44.3	40.8	37.5
	당년소비	56.8	86.3	94.6	104.6	90.7	84.1	40.1	25.1	41.0	43.8	39.9	36.6
	수 출	0.4	-	-	-	-	-	-	2.3	0.4	-	-	-
	차년이월	0.6	2.6	7.0	7.6	9.9	6.5	4.1	2.3	1.5	0.5	0.9	0.9
공 급	계	57.8	88.9	101.6	112.2	100.6	90.6	44.2	29.7	42.9	44.3	40.8	37.5
	전년이월	4.7	19.0	7.5	7.2	13.1	9.6	8.1	3.3	2.7	0.0	1.1	0.9
	생 산	38.1	27.9	24.1	23.8	20.9	15.5	28.7	16.8	12.4	11.2	8.3	6.4
	수 입	15.0	42.0	70.0	81.2	66.6	65.5	7.4	9.6	27.8	33.1	31.4	30.2
자급률(%)		67	32	30	23	23	18	72	67	30	26	21	17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유통정책단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종광)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2007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은 2006년에 비해 8.7% 증가한 17,831ha 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7년 19,850호로 전체농가의 1.4%에 불과하나, 2007년도 인삼수출액은 9,208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6%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1-2-8>

인삼 생산동향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면 적(ha)	12,184	9,375	12,445	12,016	13,081	14,153	16,405	17,831
생산량(톤)	13,889	11,971	13,664	15,172	14,668	14,561	19,850	21,818
농가수(호)	36,404	23,172	23,011	18,106	13,797	15,793	15,856	19,85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하중수)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7년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1.6% 증가한 369천톤이었다.

2007년도 소비량 중 수입산은 198천톤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하였고, 국내산 또한 171천톤으로 8.2%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7.6kg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하였다.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총 소 비 량	402	384	403	390	328	317	330	369
－ 국 내 산	212	164	147	142	145	152	158	171
－ 수 입 산	190	220	255	248	183	164	172	198
○ 1인당 소비량(kg)	8.5	8.1	8.5	8.1	6.8	6.7	6.8	7.6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 까지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4년 6월 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10월에는 536만원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협상개시 발표에 따른 여파로 2006년 5월에는 394만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실제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12월 455만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07년도 산지평균가격도 475만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1,480천두, 2004년에는 1,666천두, 2005년에는 1,819천두, 2006년에는 2,020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도 사육두수는 2,201천두로 전년보다 9.0%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5년 12월 192천호, 2006년 12월 190천호에서 2007년 12월 184천호로 3.2%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5년 12월 9.5두, 2006년 12월 10.6두에서 2007년 12월 11.9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 암소수 증가, 정액공급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7년 총 소비량은 2006년 87만톤보다 6.9% 증가한 93만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06년 18.1kg에서 2007년 19.2kg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PMWS 등 소모성질환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2003년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고돈가 형성 지속으로 2006년 12월 9,382천두에서 2007년 12월에는 9,606천두로 2.4% 증가하였고, 2007년 12월 모돈수는 1,004천두로 2006년 12월 1,012천두보다 0.8% 감소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6년 12월 11.3천가구에서 2007년 12월 9.8천 가구로 13.3% 감소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6년 12월 830두에서 2007년 12월 977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및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6년 연간 평균가격이 248천원/100kg이었으나 2007년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221천원/100kg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3) 닭고기

2007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43.4만톤으로 2006년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8.9kg으로 전년도 8.6kg보다 3.5%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여 연평균 1,118원/kg이었으며, 2007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56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7년 12월에 1.6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42,738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6년보다 4.7% 증가한 952호였다.

4) 계란

계란의 2007년 총 소비량은 547천톤으로 2006년보다 1.2%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0.8% 증가한 11.3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2.7% 하락한 785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5) 우유

2007년 원유 총 생산량은 2,188천톤으로 2006년 2,176천톤 대비 0.5%(12천톤) 증가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포함)은 3,101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6년 3,122천톤 보다 0.7% 감소한 반면, 시유 소비량은 2006년 1,684천톤 보다 0.8% 증가한 1,697천톤이었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3.0kg으로 2006년 63.6kg보다 0.9% 감소한 반면, 음용유 소비량은 35.0kg으로 2006년 34.9kg보다 0.3% 증가되었다. 이는 2004년 9월 이후 원유 기본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에서 시유 덤주기 등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유소비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2007년도 국산원유(2,188천톤)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량은 1,875천톤(백색시유 1,382, 가공시유 200, 기타 유제품 293)으로서 전년도 투입량(1,909천톤)에 비해 1.8% 감소하였으며,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268천톤)에 비해 17% 증가한 313천톤 수준이었다. 이는 연초 국내 분유재고(4.4천톤)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 분유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유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유가공업체가 국산 분유 생산을 늘림으로써, 시유를 제외한 유제품의 원유투입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연말 분유 재고량은 8.8천톤으로 2006년도에 비해 121% 증가하였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이 증가한 반면 국내 소비가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0.7%P 증가한 71.6%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479원/kg)보다 3.2% 높아진 494원/kg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7년 12월 454천두로 지난해 464천두 보다 2.3%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는 2006년 12월 8.3천호에서 2007년 12월 7.7천호로 7.3%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7년 12월 59두로 2006년 12월 56두 보다 5.4% 증가하였다.

(축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이성주)

나. 사료작물

2007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2,797천톤으로 전년(21,271천톤) 보다 7.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8,180천톤, 조사료가 4,617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363천톤으로 전년(15,693천톤)보다 4.3% 증가하였다.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A)	2007 (B)	증감률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20,283	21,271	22,797	7.2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6,152	17,049	18,180	6.6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5,278	15,693	16,363	4.3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874	1,356	1,817	34.0
조 사 료	6,003	7,763	3,392	4,131	4,222	4,617	9.4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298	1,326	1,490	12.4
- 산야초, 볏짚 등	3,171	5,265	2,400	2,833	2,896	3,127	8.0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8.6%, 양돈용 4.5%, 양계용 3.2%씩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5.8%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

하여 쪼소의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4.3% 증가되었다. 특히, 말·오리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7.4% 증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6년말 이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폭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은 2007년 이후 약 5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5	2006 (A)	2007 (B)	증감률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5,278	15,693	16,363	4.3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4,203	4,267	4,403	3.2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170	5,175	5,409	4.5
쪼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587	1,539	1,449	△5.8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293	3,574	3,880	8.6
기 타	247	589	792	1,179	881	1,138	1,222	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청예 및 동계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7년에 신규로 25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1995	1999	2000	2003	2005	2006 (A)	2007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413	430	253	58	23	32	25	△21.9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46,546	43,581	42,114	41,432	△1.6
목 초 생 산 량	462	371	364	343	308	294	290	△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2007년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41천ha으로 290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보다 1.6%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 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안규정,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전익성)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7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9.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6.3%), 과실류(7.1%), 빵 및 과자류(7.1%), 차·음료주류(6.7%)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0.7%), 조미식품(2.6%)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1982년 5.9%에서 2006년 47.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7.4%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7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7.9%, 어패류 6.0%, 채소·해조류 7.6%, 과일류 6.3%이다.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5	1,265.9	367.1 (100)	46.7 (12.7)	42.2 (11.5)	17.1 (4.7)	33.3 (9.1)	35.6 (9.7)	28.5 (7.8)	15.7 (4.3)	13.5 (3.7)	13.7 (3.7)	5.0 (1.4)	115.7 (31.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2003	1,922.9	509.6 (100)	44.5 (8.7)	40.9 (8.0)	19.9 (3.9)	31.8 (6.2)	40.1 (7.9)	28.2 (5.5)	14.2 (2.8)	22.3 (4.4)	21.3 (4.2)	13.4 (2.6)	233.2 (45.8)
2004	2,018.2	544.8 (100)	48.3 (8.9)	39.7 (7.3)	21.1 (3.9)	32.7 (6.0)	40.7 (7.5)	32.9 (6.0)	18.2 (3.3)	23.2 (4.3)	23.0 (4.2)	11.2 (2.0)	253.9 (46.6)
2005	2,091.9	551.6 (100)	45.8 (8.3)	42.4 (7.7)	22.7 (4.1)	32.5 (5.9)	40.5 (7.3)	34.1 (6.2)	17.7 (3.2)	23.1 (4.2)	22.5 (4.1)	14.3 (2.6)	255.9 (46.4)
2006	2173.9	558.3 (100)	42.9 (7.7)	43.8 (7.8)	22.0 (3.9)	33.7 (6.0)	41.9 (7.5)	35.7 (6.4)	17.5 (3.1)	22.5 (4.0)	23.1 (4.1)	16.9 (3.0)	258.3 (46.3)
2007	2269.6	570.4 (100)	42.1 (7.4)	44.9 (7.9)	21.7 (3.8)	34.4 (6.0)	43.3 (7.6)	36.2 (6.3)	15.9 (2.8)	23.5 (4.1)	23.2 (4.1)	17.3 (3.0)	267.9 (47.0)
82-07	9.2	7.1	0.7	5.6	6.5	6.0	5.2	7.1	2.6	7.1	6.7	17.5	16.3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및 전국가구 조사결과 평균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2007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과일류, 육류, 어개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채소·해조류, 조미식품 등이다.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7년도 도시가구 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312	(61.3)	2,141	(100)	3,399	(158.8)
식 료 품	371	(64.8)	572	(100)	768	(134.3)
곡 류 및 식 빵	37	(87.1)	43	(100)	47	(109.4)
육 류	33	(75.3)	44	(100)	58	(130.5)
낙 농 품	15	(67.2)	22	(100)	28	(124.0)
어 개 류	28	(84.6)	33	(100)	42	(125.6)
채 소 · 해 조 류	38	(89.0)	43	(100)	50	(116.9)
과 실 류	25	(73.3)	34	(100)	50	(143.9)
조 미 식 품	15	(97.6)	15	(100)	17	(113.4)
빵 및 과 자 류	15	(62.8)	24	(100)	31	(125.7)
차 · 음료 및 주 류	16	(68.3)	24	(100)	30	(126.3)
외 식	136	(49.8)	273	(100)	393	(144.1)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16kcal, 단백질 75.8g, 지방 46.0g, 철분 13.6mg, 비타민C 98.2mg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0	2,052	67.2	21.8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5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한국영양학회, 2005)을 이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6.3%로 매우 낮았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 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69.0%), 티아민(122.3%), 나이아신(121.5%)은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8.4%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2-16>.

<표 1-2-16>

영양소별 권장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에너지	92.4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단백질	100.9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칼슘	76.6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철	114.5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비타민 A	95.9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티아민	202.3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리보플라빈	102.5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나이아신	137.7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비타민 C	137.4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당질 64.3%, 단백질 15.4%, 지방 20.3%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도에는 1969년 최초로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너지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다.

2. 식품 수요현황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6년에는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조건 악화로 곡류와 과실류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채소류는 전년도(2005년)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재배면적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육류는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에 따라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서류는 전년도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고, 해조류는 적정기후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32천톤 감소하고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1인당 식용공급량이 83.24kg에서 82.99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173천톤 증가하였으나, 사료용 소비가 281천톤 증가하여 식용은 25천톤 감소하였다. 밀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1.64kg에서 31.14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감자는 2005년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7% 감소하고 호우피해의 영향으로 인한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137.9천톤 감소하였다. 고구마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데 비해 단수가 크게 감소하여(전년대비 24.8%) 생산이 전년 대비 62.7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 대비 24.2% 감소하였다.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5(확정)	2006(잠정)	증가율(%)
곡 류	150.53	146.44	-2.72
쌀	83.24	82.99	-0.30
보 리	1.18	1.20	1.69
밀	31.64	31.14	-1.58
옥 수 수	31.62	27.58	-12.78
기 타	2.85	3.54	24.21
서 류	17.00	13.96	-17.88
감 자	12.45	10.50	-15.66
고 구 마	4.55	3.45	-24.18
설 탕 류	21.22	21.18	-0.19
두 류	11.44	11.04	-3.50
콩	9.16	9.07	-0.98
팥	0.69	0.50	-27.54
기 타	1.59	1.48	-6.92
견 과 류	1.26	1.46	15.87
중 실 류	0.71	0.83	16.90
참 깨	0.37	0.51	37.84
기 타	0.34	0.32	-5.88
채 소 류	145.53	153.98	5.81
과 실 류	44.74	44.56	-0.40
육 류	36.61	37.91	3.55
쇠 고 기	6.37	6.62	3.92
돼 지 고 기	16.89	17.57	4.03
닭 고 기	5.79	6.28	8.46
부 산 물	7.56	7.44	-1.59
계 란 류	9.07	9.43	3.97
우 유 류	53.97	53.90	-0.13
우 유	52.90	52.81	-0.17
어 패 류	39.92	41.20	3.18
어 류	26.98	25.58	-5.19
패 류	12.94	15.62	20.71
해 조 류	9.58	13.00	35.70
유 지 류	18.73	17.96	-4.11
식 물 성	18.31	17.56	-4.10
동 물 성	0.42	0.40	-4.76
주 류	69.93	69.85	-0.1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채소류는 배추(218천톤), 무(425천톤), 양배추(33천톤) 등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395.6천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5.53kg에서 153.98kg으로 5.8% 증가하였다.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6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수입김치 공급증가와 더불어 국내 배추 생산량 증가는 식용공급량을 증가시켰다.

과실의 생산량은 사과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89천톤 감소하였다. 배는 일부 지역의 기상피해로 인해 성목단수가 전년대비 5%감소하여 성목면적이 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12천톤 감소하였다. 단감은 기상악화와 병해의 영향으로 성목단수가 전년대비 15%감소하여 생산량이 29천톤 감소하였다. 귤은 성목면적이 전년대비 1% 증가하였으나 개화기 기온악화로 성목단수가 3% 감소하여 생산량이 18천톤 감소하였다. 이밖에도 포도, 복숭아도 재배면적의 감소로 각각 51천톤, 30천톤이 감소하였다.

쇠고기의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쇠고기 1인당 식용공급량이 6.37kg에서 6.62kg으로 3.9% 증가하였다. 돼지는 2005년 고돈가 지속으로 모돈수가 증가하여 2006년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돼지 질병(4P)으로 인한 폐사두수 증가로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지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년대비 37천톤이 증가하여 총공급량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16.89kg에서 17.57kg으로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육계 사육수수, 닭고기 수입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총공급량이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5.79kg에서 6.28kg으로 8.5% 증가하였다.

어류는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입과 수출의 감소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패류는 양식생산의 증가와 수입 증가로 인해 1인당 식용공급량이 12.9kg에서 15.6kg으로 20.9%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적정수온 및 작황호조로 김, 다시마 미역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5.7%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0.1천톤 증가하였으나, 우지, 어유, 기타동

물유의 수입이 2.3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0.42kg에서 0.40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나.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90~2006년간 43.8%에서 27.8%, 채소류는 98.9%에서 92.2%, 과실류는 102.5%에서 82.7%, 육류는 92.9%에서 78.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72.4%, 어패류는 121.7%에서 64.0%, 유지류는 8.0%에서 1.9%로 하락하였다.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영양 자급률	칼로리	62.6	50.6	50.6	49.2	49.6	45.6	46.6	45.4	45.6
	단백질	67.8	57.2	52.8	51.9	50.4	47.4	46.9	47.0	47.5
	지 방	30.3	26.8	21.4	20.3	20.4	19.2	18.6	18.1	17.8
물량 기준 자급률	곡 류	43.8	30.0	30.8	32.2	31.0	28.1	27.6	29.4	27.8
	쌀	108.3	91.1	102.9	102.7	99.2	90.3	94.3	96.0	95.3
	두 류	24.5	11.7	8.2	9.2	8.8	8.2	8.0	10.7	14.2
	채소류	98.9	99.2	97.7	98.3	97.7	94.7	95.0	94.5	92.2
	과실류	102.5	93.2	88.7	88.9	89.1	85.0	85.2	85.6	82.7
	육 류	92.9	89.2	83.9	81.0	82.0	81.2	83.5	81.6	78.4
	쇠고기	53.6	50.8	53.2	42.3	36.6	36.3	44.2	48.1	47.8
	돼지고기	100.3	96.6	91.6	90.8	96.9	93.8	87.4	83.7	77.4
	닭고기	100.0	98.1	79.9	76.1	76.0	76.7	90.2	84.3	82.6
	계란류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99.4
	우유류	92.8	93.3	81.2	78.9	81.0	81.0	74.2	72.8	72.4
	어패류	121.7	100.4	87.7	77.9	63.8	61.7	55.7	60.0	64.0
유지류	8.0	4.8	3.2	2.4	3.5	2.4	2.2	2.8	1.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칼로리 자급률¹⁾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06년 45.6%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6년 47.5%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6년 17.8% 수준에 불과하다.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5.7kg), 채소류(173.9kg), 어패류(82.2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9kg), 과일류(56.3kg), 육류(40.4kg), 우유류(53.9kg) 등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5.7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73.4kg)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91.1kg)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9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적은 수준이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기준으로 2006년에 173.9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0.4kg으로 일본, 파키스탄(15.0kg)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0kg), 우유류(53.9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82.2kg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타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6	2005	2005	2005	2005	2005
곡 류	155.7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3.2	38.4	21.4	57.4	74.1	13.8
설탕류	14.5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9	73.7	26.1	86.9	63.5	54.4
채소류	173.9	130.7	113.2	125.5	133.6	29.6
과실류	56.3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0.4	34.8	78.2	93.7	77.3	15.0
계란류	11.0	18.7	18.0	14.8	11.8	2.1
어패류	82.2	64.8	31.0	23.4	14.3	1.8
우유류	53.9	75.5	21.5	256.5	308.0	151.4
유지류	0.4	0.5	24.0	1.4	2.6	0.9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6년도에는 2,927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 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표 1-2-20>.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06년 현재 에너지원의 54.9%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15.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6	2005	2005	2005	2005	2005
에너지(kcal)	2,927	2,837	2,955	3,690	3,584	2,422
전 분 질(%)	54.9	65.4	41.2	57.1	48.6	64.8
설 탕(%)	7.6	7.6	9.0	8.0	10.9	13.0
동 물 성(%)	15.6	20.5	21.4	27.7	32.0	17.8
유 지 류(%)	15.0	0.4	19.6	0.9	1.8	0.9
기 타(%)	6.7	6.0	8.9	6.4	6.7	3.5
1인당GNI(\$)	15,840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황윤재)

3. 식품산업 동향

가. 식품제조업

2006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는 8,495개로 1997년(6,166개)보다 37.8%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997년 이후 18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06년 48.9조원으로 1997년 31.2조원 대비 56.5% 증가하였다.

2006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57.6억원으로 1997년 50.7억원보다는 13.6%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증가 경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억원으로 1997년(0.67억원) 대비 52.2%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매년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1>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사업체수(A)	6,166	6,421	7,940	8,051	8,389	8,495
○종사자수(B)	186	178	188	186	186	185
○출하액(C)	31,282.7	37,199.8	43,641.7	47,766.6	48,264.3	48,946.1
※업체당 출하액(C/A)	5,073.4	5,793.5	5,496.4	5,933.0	5,753.3	5,761.8
※1인당 부가가치	67.4	88.6	89.2	103.5	102.6	102.6
※부가가치율	40.1	42.3	38.4	40.4	39.5	38.9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출하액 × 100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육가공업(도축, 고기 저장처리업) 출하액이 6.3조원으로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 수산물 가공업은 사업체수가 1,834개로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448개(5.3%), 출하액 7.0조원(14.3%) 수준을 보였다.

2006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김 제조업(620개), 빵(453개), 쌀(416개), 김치(381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쌀(도정한 것) 제조업(3.3조원), 시유(1.8조원), 맥주(1.5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0.7%가 경기지역(1,762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남(1,051개, 12.4%)지역에 사업체수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1조원), 충남(5.7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인천 122.7억원, 전남: 22.4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2>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6)

(단위 : 개, 명, 백만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 식료품 제조업	8,047	170,898	41,945,519
- 도축, 고기 가공·저장처리업	831	26,296	6,282,097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1,834	29,676	3,184,718
- 과일·채소 가공·저장처리업	751	14,904	1,573,047
-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10	2,692	1,526,311
- 낙농제품, 아이스크림 제조업	119	10,568	5,626,535
- 곡물 가공품 제조업	686	8,306	4,861,106
- 전분, 당류 제조업	78	1,509	837,742
- 빵류, 과자, 코코아제품 제조업	1,291	23,215	3,702,374
-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	7,195	1,618,302
- 조미료, 식품첨가물, 설탕 제조업	512	11,275	3,966,618
- 기타식료품, 사료 제조업	1,681	35,262	8,766,669
○ 음료 제조업	448	14,521	7,000,586
- 알콜성음료 제조업	197	7,143	3,909,994
- 비알콜성음료, 얼음 제조업	251	7,378	3,090,592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06년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91.6%이고 1999년 이후 90%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 : 56개소 → 2006년 : 41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91.6%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51.7%, 출하액 비중은 34.0%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55.8%로 1999년 63.4%에 비해 7.6%p 감소하였다.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43.2%,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0%에 그쳤다.

<표 1-2-23>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1999	2000	2003	2004	2005	2006
□ 업체수	6,364	6,421	7,940	8,051	8,389	8,495
○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89.0	89.1	90.5	90.9	91.6	91.6
- 50~300인	10.1	10.1	8.8	8.4	7.9	7.9
- 300인 이상	0.9	0.9	0.7	0.7	0.5	0.5
○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63.4	61.1	59.7	58.8	57.8	55.8
- 10~100억원	28.1	29.9	31.8	32.0	33.2	35.1
- 100~1,000억원	7.4	7.9	7.5	7.9	7.8	8.1
- 1,000억원 이상	1.1	1.1	1.0	1.2	1.2	1.0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나. 외식산업

2006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546.5천개로 지난 10년간 55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450천명으로 1997년 1,279천명보다는 13.4% 증가

하였으나 2002년 이후 증가세는 꺾인 추세를 보이며, 2006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50.9조원으로 1997년 30.2조원에 비해 68.5%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06년 93.1백만원으로 1997년 54.9백만원에 비해 69.6%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06년 35.1백만원으로 동기대비 48.7% 증가하였다. 2006년 외식산업 건물 연면적(m²)당 매출액(매출액/건물연면적)은 954.5천원으로 1997년 636.8천원에 비해 49.9% 증가하였다.

<표 1-2-24>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m²)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 사업체수(A)	550.5	570.6	605.6	600.2	531.9	546.5
○ 종사자수(B)	1,279	1,430	1,595	1,556	1,445	1,450
○ 매출액(C)	30,229.9	35,472.2	44,263.5	48,369.6	46,252.5	50,892.3
※ 업체당 매출액(C/A)	54.9	62.2	73.1	80.6	87.0	93.1
※ 1인당 매출액(C/B)	23.6	24.8	27.8	31.1	32.0	35.1
※ 건물 연면적(m ²)당 매출액	636.8	780.3	869.0	915.9	936.1	954.5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61.4천개, 매출액은 24.6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4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일식, 서양식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구분을 보면 서울(103.7천개)과 경기(101.4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7.5%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3억원), 인천(1.2억원), 경기(1.0억원)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7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5>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6)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 일반 음식점업	302,406	32,457.0	107.3
- 한 식	261,395	24,613.3	94.2
- 중 식	21,902	2,119.8	96.8
- 일 식	5,092	1,196.8	235.0
- 서양식	9,782	2,141.5	218.9
- 기관구내식당업	3,499	2,141.8	612.1
- 기 타	736	243.8	331.3
○ 기타 음식점업	90,576	7,260.7	80.2
-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32,572	3,302.2	101.4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2,907	2,998.8	56.7
- 그외 기타 음식점업	5,097	959.7	188.3
○ 주점업	122,071	8,628.3	70.7
○ 다과점	31,451	2,546.4	81.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2006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90.4%이고, 지난 10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체의 90.4%에 달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69.6%, 매출액 비중은 61.9% 수준인 반면, 사업체 중 1.8%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대규모 음식점업체는 매출액 비중이 18.3%로 나타났다.

200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75.0%로 1997년 90.2%에 비해 15.2%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24.3%이고 1997년 9.7%에 비해 14.6% 증가하였다. 한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외식업체수는 2001년 44개에서 2006년 55개로 증가하였다.

<표 1-2-26>

규모별 추이

(단위 : 천개, %)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 업체수	550.5	570.6	605.6	600.2	531.9	546.5
○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92.0	95.3	90.7	91.1	89.6	90.4
- 5~10인	7.0	3.9	7.6	7.3	8.5	7.9
- 10인 이상	1.0	0.8	1.7	1.6	2.0	1.8
○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원 이상	90.2	86.2	85.1	81.9	79.1	75.0
- 100~1,000백만원	9.7	13.7	14.6	17.7	20.4	24.3
- 1,000백만원 이상	0.1	0.1	0.3	0.5	0.5	0.7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식품산업정책팀 농업사무관 전한영)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가. 수출동향

2007년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FTA체결 및 유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2,53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신선농식품은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한 597백만불을 달성하고, 가공농식품은 9.4% 증가한 1,935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121.8백만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9.4% 감소하였고, 김치는 가을 배추의 원활한 공급과 계약수출 및 겨울철 수요증가, 적극적인 관측활동에 힘입어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인삼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홍콩·대만지역에 대한 홍삼 및 홍삼정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화훼류는 장미, 국화가 국내 가격상승 및 일본내 생산량 증가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류의 중국 수요 증가와 백합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대일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43.8% 증가하였다.

과실류는 배와 사과 국내생산호조에 따른 수출증가와 단감의 동남아시아 개척활동에 따른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47.3% 증가하였다.

돼지고기는 주 수출시장인 대러시아 12월 수출급증(환율상승에 따른 재고량 소진)으로 7.1% 증가한 25.6백만불, 닭고기는 AI재발생(11.24)에 따른 일본 수출이 급감(한국산 가금육 수입정지조치)하였으나 베트남 노계 수출호조로 36.2% 증가하였다.

가공식품은 소주의 일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서의 연초류 수출호조와 라면, 장류,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9.4% 증가함으로써 전체 농식품 수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표 1-2-27>

2007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6년(A)		2007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식품 합계	1,433.5	2,304.3	1,514.0	2,531.8	5.6	9.9
○ 신선농식품	184.0	535.5	198.4	597.1	7.8	11.5
- 채 소 류	46.3	133.6	42.7	121.1	△7.8	△9.4
- 김 치 류	25.6	70.3	26.5	75.3	3.5	7.1
- 인 삼 류	1.9	88.6	1.9	92.1	-	4.0
- 화 훼 류	8.1	40.4	10.0	58.1	23.5	43.8
- 과 실 류	65.6	98.4	79.0	144.9	20.4	47.3
- 돼지고기	12.2	23.9	12.6	25.6	3.3	7.1
- 가금육(닭,오리)	3.2	8.5	5.7	9.0	78.1	5.9
- 산림부산물	21.1	71.8	20.0	71.0	△5.2	△1.1
○ 가공농식품	1,249.5	1,768.8	1,315.6	1,934.7	5.3	9.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일본수출은 소주를 비롯한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부진과 안전성장화 영향에 따른 채소류 수출 소폭감소로 전년대비 0.8%(646백만불) 감소하였고, 미국은 인삼류, 소스류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의 고른 증가로 전년대비 6.9%(302백만불) 증가하였다.

중국은 밤과 인삼류가 감소하였으나 난초, 과실류, 가공식품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3.5%(295백만불) 증가하였고, 러시아는 연초류가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와 커피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5.4%(240백만불) 증가하였다.

대만은 유자차,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배, 인삼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고른 증가로 전년대비 12.4%(103백만불) 증가하였고, 아세안은 커피류와 당류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 품목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16.0%(214백만불) 증가하였으며, EU는 연초류와 화훼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채소류 등 나머지 품목의 고른 증가로 전년대비 9.4%(55백만불) 증가하였다.

<표 1-2-28>

2007년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6년(A)		2007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433.5	2,304.3	1,514.0	2,531.8	5.6	9.9
일 본	440.6	651.1	425.4	646.2	△3.4	△0.8
미 국	109.0	282.4	116.0	302.0	6.4	6.9
중국(홍콩포함)	376.5	405.7	416.1	437.0	10.6	7.7
· 중 국	201.3	259.5	231.9	294.6	15.2	13.5
· 홍 콩	175.2	146.2	184.2	142.4	5.1	△2.6
러시아	97.9	207.5	108.1	239.5	10.4	15.4
대 만	44.5	91.9	46.1	103.3	3.6	12.4
아세안	209.8	184.1	218.0	213.6	3.9	16.0
E U	18.7	50.2	22.1	54.9	18.2	9.4
기 타	136.6	431.5	162.1	535.3	18.7	24.1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7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식품산업진흥팀 농업사무관 변상문)

나. 수입동향

2007년도 농식품 수입은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과일류, 채소류도 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4% 증가한 16,183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저울관세의 저렴한 중국산 냉동고추, 당근의 수입증가 및 웰빙 식품인 호박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5.5% 증가한 577백만불, 김치는 배추, 무 등 국내 김장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26.0% 증가한 110.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과실류는 국내산 포도의 품질저하로 인한 신선포도의 수입증가 및 국내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과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9.5% 증가한 851.7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곡물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 및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에 따른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한 2,928.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17.7% 증가한 3,23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표 1-2-29>

2007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6년(A)		2007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식품 합계	35,479	13,327	36,620	16,183	3.2	21.4
농산물	25,142	8,117	25,974	10,089	3.3	24.3
- 채소류	739.8	499.7	830.4	577.0	12.9	15.5
- 김 치	178.0	88.0	220.3	110.8	23.8	26.0
- 화훼류	5.6	35.8	6.0	41.0	7.6	14.4
- 과실류	761.6	712.7	808.5	851.7	6.2	19.5
- 곡 류	12,687.8	2,116.1	12,353.4	2,928.8	△2.6	38.4
- 박 류	3,760.9	632.1	4,491.6	895.3	19.4	41.6
축산물	1,065	2,749	1,092	3,235	2.5	17.7
- 소고기	236.3	879.0	244.6	1,037.1	3.5	18.0
- 돼지고기	333.0	777.9	356.2	903.8	7.0	16.2
- 닭고기	75.6	118.3	60.0	119.6	△20.6	1.1
임산물	9,272	2,462	9,554	2,858	3.0	16.1
- 원 목	5,443	756	5,680	910	4.3	20.4
- 합 판	820	500	886	595	8.0	1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은 밀, 옥수수 등 곡물류를 비롯하여 대두, 고추 등 각 품목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41.0%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옥수수, 밀, 대두의 수입 증가 및 소고기 수입 재개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고, 칠레는 포도와 포도주, 돼지고기 등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42.7% 증가하였다.

<표 1-2-30>

2007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6년(A)		2007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5,479.5	13,327.3	36,619.9	16,182.5	3.2	21.4
중 국	5,656.6	2,199.1	8,179.7	3,100.8	44.6	41.0
미 국	9,558.4	2,826.0	8,911.6	3,554.2	△6.8	25.8
호 주	3,534.0	1,656.9	3,232.6	1,692.6	△8.5	2.2
뉴질랜드	2,988.4	600.9	2,230.6	823.9	3.6	37.1
브라질	2,152.5	600.9	2,230.6	823.9	3.6	37.1
칠 레	202.4	173.0	203.1	246.8	0.3	42.7
인 도	972.5	234.1	1,225.4	296.1	26.0	26.5
ASEAN	4,663.8	1,567.8	4,831.5	1,856.1	3.6	18.4
E U	672.3	1,587.9	838.3	1,889.1	24.7	19.0
기타국가	5,078.6	1,880.7	4,736.5	1,899.0	△6.8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KATI

(식품산업진흥팀 사무관 변상문)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가. 농식품 교역규모

2007년도의 남북한 교역실적은 1,797.9백만달러로 전년도 1,349.7백만달러에 비해 33.2% 증가하였다. 이중 농식품 교역실적은 408.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5.1%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797.5백만달러의 22.7%를 차지하였다.

<표 1-2-31>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 도 별 교 역 실 적		
	2006	2007	증감률(%)
전 체	1,349.7	1797.9	33.2
농 식 품	480.4	408.6	-15.1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농식품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7년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224.4백만달러로서 전년도 342.5백만달러보다 34.5% 감소하였고, 반입은 184.2백만달러로서 전년도 137.9백만달러 보다 33.6% 증가하였다.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품목수는 163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쌀, 밀가루, 분유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수목류, 산채류 등이며, 수산물은 건조수산물

및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167천톤(75백만달러), 비료 306천톤(87백만달러)이 농식품 전체 반출금액의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2-32>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6년(A)		2007년(A)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77,219	342,539	524,167	224,446	9.8%	-34.5%
비 료	359,002	128,646	305,657	87,064	-14.9%	-32.3%
쌀	100,301	187,636	167,179	75,054	66.7%	-60.0%
채 소 류	1,327	2,523	12,580	17,447	848.0%	591.5%
기 타 농 산 가 공 품	1,623	4,511	2,213	5,190	36.4%	15.1%
밀 가 루	6,431	2,966	2,976	2,105	-53.7%	-29.0%
기 타 목 재	1,101	1,737	675	1,518	-38.7%	-12.6%
대 두 유	1,510	1,299	986	1,173	-34.7%	-9.7%
수 산 물	626	995	557	1,364	-11.0%	37.1%
기 타	5,298	12,226	31,344	33,531	491.6%	174.3%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품목수는 103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마늘, 한약재 등이고,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등이며, 수산물은 기타조개 및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이다. 반입실적은 농식품이 184.2백만달러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고, 그중 국내산 마늘을 반출하여 위탁임가공하여 반입한 마늘의 증가율이 높았다.

<표 1-2-33>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6년(B)		2007년(A)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1,298	137,855	79,815	184,189	11.9%	33.6%
기 타 조 개	32,618	35,136	33,863	39,455	3.9%	12.3%
기타수산가공품	4,405	15,133	5,661	19,939	28.5%	31.8%
건 조 수 산 물	1,986	16,901	2,281	19,496	14.9%	15.4%
새 우	702	4,462	1,725	13,677	145.7%	206.5%
마 늘	734	1,327	6,485	13,564	783.5%	922.2%
기 타 연 체 동 물	9,388	12,445	8,969	11,924	-4.5%	-4.2%
송 이 버 섯	12	1,029	302	10,466	2,416.7%	917.1%
고 사 리	1,415	7,797	1,463	9,671	3.4%	24.0%
기 타	20,038	43,625	19,066	45,997	-4.9%	5.4%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다자협상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가. 개 요

2008~20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1억 95,496만톤, 소비량은 3.0% 증가한 21억 7,411만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6.0% 늘어난 3억 6,727만톤, 기말재고율은 16.9%로 전망 되었다.

나. 쌀

2008~2009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4억 3,198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4억 2,888만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719만톤보다 약 170만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8,036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보다 약 0.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 밀

2008~2009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6억 7,62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6억 5,48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1억 3,989만톤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1%에서 21.4%로 2.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라. 옥수수

2008~2009년도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9% 줄어든 7억 8,296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7억 9,647만톤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350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0% 감소한 1억 99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1,350만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2.1% 포인트 줄어들어 13.8%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마. 대두

2008~20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799만톤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도 2억 3,008만톤보다 668만톤 늘어난 2억 3,67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4.0%, 5.9%,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말재고량은 전년의 5,013만톤보다 2.2% 증가한 5,123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낮은 21.6%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06/2007(A)	2007/2008(B) (추정)	2008/2009(C)	증 ▲ 감 C/B
				2008년 9월 전망	
전체곡물	생 산	2,005.00	2,116.70	2,194.96	3.7
	소 비	2,053.28	2,110.61	2,174.11	3.0
	교 역	260.10	268.64	264.10	▲ 1.7
	재 고	340.33	346.42	367.27	6.0
	(재고율%)	(16.6)	(16.4)	(16.9)	
쌀	생 산	419.85	429.47	431.98	0.6
	소 비	420.55	417.19	428.88	0.4
	교 역	31.30	30.34	28.25	▲ 6.9
	재 고	74.98	77.26	80.36	4.0
	(재고율%)	(17.8)	(18.1)	(18.7)	
밀	생 산	596.30	610.87	676.28	10.7
	소 비	616.87	619.51	654.88	5.7
	교 역	111.19	113.59	122.88	8.2
	재 고	127.13	118.49	139.89	18.1
	(재고율%)	(20.6)	(19.1)	(21.4)	
옥수수	생 산	712.23	790.24	782.96	▲ 0.9
	소 비	728.31	775.32	796.47	2.7
	교 역	93.90	96.83	86.07	▲ 11.1
	재 고	108.54	123.46	109.94	▲ 11.0
	(재고율%)	(14.9)	(15.9)	(13.8)	
대 두	생 산	236.56	218.22	237.99	9.1
	소 비	224.76	230.08	236.76	2.9
	교 역	71.45	78.97	77.60	▲ 1.7
	재 고	62.65	50.13	51.23	2.2
	(재고율%)	(27.9)	(21.8)	(21.6)	
잡 곡	생 산	989.07	1077.05	1,086.70	0.9
	소 비	1,016.05	1,065.41	1,090.34	2.3
	교 역	117.44	123.31	112.98	▲ 8.4
	재 고	138.42	150.05	147.02	▲ 2.0
	(재고율%)	(13.6)	(14.1)	(13.5)	

자료 : USDA,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식량정책팀 농업사무관 김민욱)

2. 국제곡물 가격동향

가. 쌀 값 동향

미 농무부(USDA)가 2008년 9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91.3%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9.9% 상승한 톤당 697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중립종 쌀 가격은 2008년 4월 758달러, 5월 926, 8월에는 1,061달러까지 상승하였다. 9월 가격도 현재 전년 동월대비 91.3% 상승한 톤당 1,10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 321달러였으나 11월에는 320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에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9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9.9% 상승, 전월대비 1.7% 하락한 톤당 697달러수준이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쌀 수요 증가와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 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밀 값 동향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6년 10월에 193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였다. 이후 하락하여 9월 15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4%, 전월대비 10.2% 하락하였다. 2008/20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밀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밀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밀 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옥수수 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20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20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여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9월 15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2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6.7%, 전월대비 2.3% 상승하였다. 2008/2009년도 옥수수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08/20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라. 대두 값 동향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9월 15일 현재 톤당 49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4.1% 상승, 전월대비 6.4% 하락한 것이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9월에는 94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달러/톤, FOB)

품 목	2006/2007	2007/2008	2007.9	2008.8	2008.9	증 감 륜(%)		
						전년	전년 동월	전월
쌀(중립종)	538	694	576	1,061	1,102	58.8	91.3	3.9
(장립종)	320	551	332	709	697	26.5	109.9	▲1.7
밀	181	315	310	313	281	▲10.8	▲9.4	▲10.2
옥수수	140	203	141	216	221	8.9	56.7	2.3
대두	267	462	350	470	433	▲6.3	23.7	▲7.9

자료 : USDA

(식량정책팀 농업사무관 김민욱)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가. 미 국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1억 8천만헥타로 전체 토지면적(9억 24백만헥타)의 약 20% 수준으로 세계1위를 차지한다. 2005년 농업생산액은 12조4천억불에 이르며, 2006년도 농산물 수출도 686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국내총생산(2007)은 137,800억달러로 이 중 농업분야가 약 1,654억달러로 1.2%를 차지한다. 반면 농업인구는 5백6천만명(2005)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전체 실제고용노동력(2007) 중 농림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2만호로 총가구의 2%에 이른다. 반면 소규모 가족농수는 91%에 달하지만 생산액은 27% 수준이고 대규모가족농과 기업농은 각각 7.1%와 1.7%를 차지하고 생산액 비중은 각각 59.1%와 13.7%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농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9%인 686억달러로 2005년 625억달러보다 9.7%의 성장을 보였으며, 농산물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약 5%인 640억달러로 2005년 577억달러에 비해 10.9% 증가하였다.

2006년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7,766억달러에 달하지만 농산물에서는 46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주요 곡물생산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밀은 6.5%, 옥수수는 13.5% 증가하였지만 쌀은 1.5% 감소하였다.

<표 1-3-3>

한미 주요 농업지표 비교

	한 국 (2006)		미 국 (통계년도)	
		단 위		단 위
○ GDP	8,874	억\$	124,558	억\$(2005)
- 농림어업	241	억\$	1,370	억\$(2005)
- 농림어업 구성비	3.2	%	1.1	%
○ 총인구	48,297	천명	299.8	백만(2005)
- 농가인구(명)	3,304	천명	5.7	백만(2005)
- 농가인구 비중	6.8	%	1.9	%
○ 총가구(A)	16,158	천호	105	백만호(2000)
○ 농가수(B)	1,245	천호	2,121	천호(2003)
○ 소사육가구(C)	198	천호	8105	천호(2003)
- 농가수 비중(B/A)	7.7	%	2.0	%
- 소사육가구 비중(C/B)	15.9	%	38.2	%
○ 총수출액	325,681	백만\$	10,240억	억\$(2007)
- 농림축산물수출액	2,304	백만\$	687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0.7	%	6.7	%
○ 총수입액	309,309	백만\$	18,690억	억\$(2007)
- 농림축산물	13,327	백만\$	640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4.3	%	3.4	%

자료 : USDA(www.ers.usda.gov) 및 농림통계 변형, 국회 답변자료

<표 1-3-4>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세 계 전 체		미 국		B/A(%)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밀	592.98	107.09	49.32	24.77	8.3	23.1
옥수수	701.03	85.78	267.60	53.34	38.1	62.1
콩	236.07	70.45	86.77	29.67	36.7	42.1
쌀	416.37	29.31	6.24	3.00	1.5	10.2

* 미농업부 경제연구소(ERS)자료, 김재수 전 주미농무관 자료 재인용

2)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7년 정책사업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 근거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Farm Bill)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예산 배분은 10년(2002~2011) 계획을 반영하여, 10년간 총 1,900억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농업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 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2002년 11월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농업과 식품 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 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의 안전성 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COOL)의 경우 2002년 의회에서 1946년 제정된 농산물거래법에 추가하여 “2002 Farm Bill”에 포함하여 2004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강제적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Wetland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과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상 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 것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였다. 동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시행정부는 강력한 FTA 등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3) 개정 농업법 주요내용

현재 2002년 농업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개정 농업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자연자원 보호, 건강식품 및 지역식품 네트워크 활성화, 상품과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 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가보조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인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인 형태로 전환된 1996년 농업법과 달리 시장보다는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나타낸 2002년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정 농업법으로 인해 향후 6년간 예상되는 정부지출액은 3,92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2년 농업법에 비해 1,2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농가보조의 경우 총지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전에 대한 지출 비중이 20%에서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에 따라 작물 프로그램의 비용은 2002년 농업법하에서보다 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5>

개정 농업법 주요 내용

구 분	개 요
작 물 (Commod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 제도 도입 • 자격기준 변경: 농외소득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이하로 변경, 농가소득 75만달러 이하 • 일부 품목의 가격보전직접지불 목표가격의 인상 • 설탕 및 낙농 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작물 추가
환경보전 (Con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79억달러)
영 양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 푸드 스탬프, 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104억달러) • 식품은행(food bank) 지원(13억달러)
에너지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 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10억달러) •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세금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셀룰로오즈 에탄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용자보증프로그램 도입
원예 및 유기농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과 채소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명시 • 지역푸드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축 산 (Livest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나. 중 국

1)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6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6.1%인 739,420천명이고, 경지면적은 국토의 13.5%인 122백만ha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6ha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농산물 수출입은 수출이 302.12억달러이고 수입이 236.29억달러로 65.8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3-6>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6	구 분	단 위	2006
○ 농촌 인구 - 총 인구대비	천명 %	739,420 56.1	○ 벼 생산량 ○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	182 145
○ 농가 호수 - 총 가구대비	만호 %	200,16	○ 식량작물 재배면적 ○ 채소·과수 재배면적	천ha 천ha	105,489 28,340
○ 1차산업 총생산액 - GDP 대비	억 위엔 %	24,737 11.7	○ 농산물 수출 - 전년 대비 증가	억달러 %	302.12 14.1
○ 경지면적 - 농가호당경지면적	백만ha ha	122 0.6	○ 농산물 수입 - 전년 대비 증가	억달러 %	236.29 6.7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8), FAO 통계연보(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중국의 농업과 농촌정책

중국의 2007년 GDP는 약 3조2천4백억불로서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규모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실업 및 삼농 문제(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 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등 사회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007년도 식량생산은 기상재해가 빈번했고 병충해 발병률이 높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50,150만톤을 생산하여 전년 보다 350만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증산과 함께 농업생산구조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2007년도에는 식량작물 생

산이 증가하면, 경제작물 생산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경제작물 생산이 증가하면 식량작물 생산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벗어났다.

2007년도 중국의 농기계 총 동력은 7.6억 킬로와트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농업기계화 수준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2007년 말 중국의 화학비료 출하가격은 2006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공업화·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출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4,140위안으로 9.5%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1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7년 농민소득은 농산물 판매소득의 증가, 임금소득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도농간 소득비율의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지속적인 농업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를 총칭하는 삼농문제는 1980년대 식품의 공급문제에서 최근 농민소득, 농촌소비, 농촌의 노동력 이전문제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식량생산을 늘리고,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삼증(三增)”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의 물질적 토대인 삼농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6년 3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정책이 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중시되는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제도 확충, 농촌 소득 향상, 화합사회 건설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공업과 도시가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 하자는 “신농촌 건설” 정책이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운동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그간 추진해온 경험을 차용하여 중국 현실에 맞게 작성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이다. 신농촌 건설의 목적은 농업생산력 발전, 농민 생활수준 제고, 농촌 기초시설 개선, 농촌사회사업 발전, 농촌기초단계 민주화로서, 이를 통한 도농간 격차를 축소하여 “조화로운 사회”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국무원 1호 문건(1號 文件; 최우선 역점 과제)은 신농촌 건설 촉진을 위한 8대 부문 32개 사업 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농업현대화, 농민소득 증대, 농촌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촌 사회산업의 발전, 농촌개혁의 심화, 농촌 기증조직의 민주화, 중국 공산당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지도 강화 등이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2004년부터 연속해서 식량증산을 달성하고 농민소득도 3년 연속 6%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중국 농업이 기초시설이 낙후된 전통농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통농업의 현대농업으로의 전환 목표를 제시하였다. 농업현대화는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이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은 농업재정 투자 확대, 농업기초시설 확충과 시설장비율 제고,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산업체계 확립, 농촌 시장체계 확립, 농민의 소질 향상, 농촌개혁 심화, 등이다.

2007년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투자액은 4,318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921억 위엔 증가하였으며 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인프라 구축, 농업생산능력 제고, 농촌건설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농촌개혁 등의 사업 분야에 사용되었다. 대규모 농업재정 투자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기초가 취약한 것은 중국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벽이다. 여기서 농업의 기초에는 수리시설, 경지, 수자원 등 유형적인 것 이외에도 농업기술, 농민들의 자질, 동식물 방역체계, 농업생태환경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기술 및 문화 수준도 낮아 중국 농업이 단기간 내에 기술진보를 통해 농업성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여름에 발생한 대홍수, 가축 전염병 등으로 축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7년에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수매가격으로 사들인 식량과 수입 밀 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경매를 통해 정부비축용 식용유와

옥수수를 판매하였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돼지고기를 방출하고 돼지고기 비축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대두와 식용 식물유 비축제도를 안정화시켰다. 아울러 2007년 한 해 동안 향(郷) 조직 개혁, 농촌 의무교육제도 실시, 농촌지역 재정관리체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촌종합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였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최봉순)

다. 일 본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7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6%인 7,640천명이며, 2007년 경지면적은 국토의 약 12.3%인 4,650천ha이다. 2005년 호당 경지면적은 1.7ha로 한국의 1.4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2007년 농산물 수입액은 55,304억엔으로 수출액 2,678억엔보다 약 20.7배 가량 많다.

<표 1-3-7>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 인구(2007) - 총 인구 대비	천명 %	7,640 6.0	○ 쌀 생산량(2006)	백만톤 (현미 기준)	9.62
○ 농가 호수(2005) - 총 가구 대비	천호 %	2,848 5.8	○ 맥류* 재배면적	천ha	268
			○ 과실류*재배면적	"	240
○ GDP(2006)	억달러	43,664	○ 농산물 수출(2007)	억엔	2,678
○ 경지면적(2007) - 호당 (2005)	천ha ha	4,650 1.7	○ 농산물 수입(2007)	억엔	55,304

자료 : 1. 농림업 주요통계(2008)

2. 일본 농림수산통계(2006), *맥류 4종, 과실 17종

3. 농산물수출입액은 농림수산성(www.maff.go.jp) 자료

2)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인의 고령화, 농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활력 저하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하였던 구「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1999년 7월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은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농촌 진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에 따른 모든 시책 실시의 평가 및 보증을 위하여 2000년 3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3월 1차 수정을 거쳤다. 동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10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정을 제시하고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식량자급률 목표, 식료·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등을 담고 있다.

이하 2005년 책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 일본 정부가 “21세기 신농정 2007”로 추진하였던 농정개혁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농정 2007’은 식(食)과 농(農)의 새로운 국가 전략 확립, 국내농업의 체질 강화,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자원·환경대책, 농산어촌 활성화 등 5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식(食)과 농(農)의 새로운 국가 전략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국민식료회의(가칭)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식료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 수출액 1조엔을 목표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검역교섭 가속화, 수출 환경 정비, 품목별 수출지원, 일식 및 식재료 정보의 해외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TO나 EPA의 교섭에서는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국내 농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방침 하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2005년 12월 공표한 ‘개발 이니셔티브’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국내 농업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전업농으로 한정된 품목별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여 ‘인정농업자’ 및 ‘마을영농조직’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경영 방침의 제시 등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생산·경영의 기본자원인 농지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의 면적집적(面的集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일정조직이 농지를 전부 모은 후, 그것을 면적으로 집적하여 전업농에게 재분배한다. 그 결과로 2015년에는 농지면적의 7할 정도를 면적으로 집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식료공급비용 감축 액션플랜’에 따라 농업기계·시설에 대한 보조제도의 재검토, 경영비용 삭감을 위한 유통개혁 실시, ‘농업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등에 근거한 농협 등에 대한 지도 강화 등 식료공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술체계 개발, 신식품·신소재 개발, 개농과학의 응용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개발 등 농업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전개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농림어업 체험활동을 통한 식품 및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해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고 농업생산이나 가공 단계에서 GAP(농업생산공정관리수법)나 GMP(적정제조규범) 등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야채·과일·미맥 등 산지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거의 모든 주요 산지(약 2천 곳)에서 GAP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기업별 행동규범 수립 등 식품안전 규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지구온난화 대응 등 자원·환경 대책으로는 바이오매스 이용의 가속화, 식품 리사이클 추진, 지구환경 보전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7년 2월 바이오매

스·일본종합전략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산바이오 원료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국산 바이오 연료 5만kl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작물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 2030년경에는 600만kl의 국산 바이오 연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 분야의 환경 보전에 대한 공헌을 위해 온난화가 농림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어촌 전략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농산어촌 및 농림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창의적 활동이나 연구 확산을 위해 우량사례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이미지)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7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GDP 115,844억유로(2006), 인구 492,975천명(2006), 면적 432,263천ha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82,103천ha(2006), 농가구수는 14,479천호(2005), 농업분야 취업자수는 12,564천명(2006)이며, 농업총생산액은 3,267억유로(2006) 정도이다. 2006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10.1%, 곡물류 9.9%, 쇠고기 9.5%, 신선채소 8.6%, 신선과일 6.8% 포도 및 포도액 4.9%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이 비중(2006)을 보면 프랑스(18.6%), 이탈리아(13.2), 독일(12.3%), 스페인(11.4%), 네덜란드(6.8%), 영국(6.6%), 폴란드(4.9%), 루마니아(4.4%), 그리스(3.2%), 덴마크(2.5%), 벨기에(2.1%), 포르투갈(2.1%), 헝가리(1.8%), 아일랜드(1.7%), 오스트리아(1.7%), 스웨덴(1.3%), 핀란드(1.1%), 체코(1.1%),

불가리아(1.1%), 슬로바키아(0.5%), 리투아니아(0.5%),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6)은 기존의 EU_25국(4.7%) 체제보다 높아져 5.9%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4%), 말타(1.7%), 룩셈부르크(1.8%), 벨기에(2.0%), 스웨덴(2.2%)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30.6%), 폴란드(15.8%), 리투아니아(12.4%), 그리스(12.0%), 라트비아(11.2%)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6)은 룩셈부르크(0.3%), 스웨덴(0.4%), 영국(0.4%), 핀란드(0.5%), 독일(0.6%)이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7.2%), 불가리아(6.2%), 헝가리(2.5%), 폴란드(2.4%), 스페인(2.3%)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1%이며 수입은 5.0%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20.2%, 14,624백만불), 러시아(9.2%, 6,641백만불), 스위스(6.5%, 4,683백만불), 일본(5.7%, 4,083백만불) 등이며, 2004대비 12.9% 정도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6,366백만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5,031백만유로), 곡물,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4,055백만유로), 육류(3,994백만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3.5%, 9,129백만유로), 미국(9.6%, 6,496백만유로), 아르헨티나(7.1%, 4,830백만유로) 등이며, 주로 과일 및 너트류(11,532백만유로), 커피, 차 및 향신료(5,258백만유로), 동물 또는 채소 지방 및 기름(5,073백만유로), 유지종자류(4,913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2006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흑자는 46억 유로이다.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2005~2006)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가구 (천호)	가구당 경 지 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 업 생 산 액 (백만 유로)	농 업 부 가 가 치 (백만 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 역 지 수 (백만 유로)	
	2006	2005	2005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E U _ 2 7	182,103	14,479	11.9	12,567	5.9	326,725	183,280	1.2	5.0	6.1	3010	16.0
벨 기 에	1,382	52	26.9	83	2.0	6,827	4,492	0.7	6.3	5.0	-1,574	17.1
불 가 리 아	5,190	535	5.1	252	8.1	3,471	1,923	6.2	7.3	10.6	53	-
체 코	3,566	42	84.2	182	3.8	3,567	2,700	0.8	2.0	3.0	30	23.5
덴 마 크	2,699	48	53.6	87	3.1	8,133	5,721	1.1	6.5	17.4	2,480	15.7
독 일	16,951	390	43.7	844	2.3	40,070	27,224	0.6	4.1	2.5	-2,949	14.3
에스토니아	762	28	29.9	32	5.0	542	322	1.7	2.4	4.8	61	26.3
아일랜드	4,307	133	31.8	117	5.7	5,498	3,899	0.9	4.0	13.6	3,600	13.4
그 리 스	3,254	834	4.8	533	12.0	10,470	3,966	3.1	4.7	18.9	109	-
스 페 인	25,359	1,079	23.0	944	4.8	37,327	15,167	2.3	5.4	8.5	-1,203	16.9
프 랑 스	29,538	567	48.6	977	3.9	60,645	35,025	1.4	4.3	10.5	8,601	16.5
이탈리아	14,710	1,729	7.4	982	4.3	43,076	18,090	1.7	4.8	5.4	-254	17.1
사이프러스	169	45	3.4	15	4.3	618	286	2.3	7.0	14.7	-75	20.2
라트비아	1,856	129	13.2	122	11.2	851	543	1.9	5.5	11.3	34	28.6
리투아니아	2,791	253	11.0	187	12.4	1,612	1,057	2.3	4.1	13.1	299	35.1
룩셈부르크	129	2	52.7	4	1.8	244	151	0.3	1.0	0.5	-51	19.0
헝 가 리	5,809	715	6.0	188	4.8	6,001	3,739	2.5	1.4	7.5	684	23.5
말 타	10	11	0.9	3	1.7	127	67	1.2	4.5	4.6	1	19.4
네덜란드	1,899	82	23.9	259	3.3	22,110	13,061	1.7	7.2	12.6	-2,257	13.4
오스트리아	3,240	171	19.1	217	5.5	5,699	3,243	1.0	5.0	6.0	710	13.4
폴 란 드	15,957	2,477	6.0	2,304	15.8	16,173	9,653	2.4	4.8	10.0	534	25.2
포르투갈	3,767	324	11.4	604	11.7	6,767	4,041	1.8	8.3	9.5	-337	-
루마니아	14,117	4,256	3.3	2,843	30.6	14,365	7,356	7.2	7.1	4.0	-747	-
슬로바니아	491	77	6.3	92	9.6	1,064	609	1.5	9.4	4.7	-131	18.8
슬로바키아	1,939	69	27.4	101	4.4	1,770	1,261	1.1	1.4	2.6	-10	23.5
핀 란 드	2,301	71	32.1	114	4.7	3,756	2,962	0.5	2.1	2.9	334	17.8
스 웨 덴	3,150	76	42.1	98	2.2	4,382	3,198	0.4	3.9	2.7	96	15.8
영 국	16,761	287	55.4	382	1.4	21,558	13,557	0.4	5.3	4.3	-5,028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al Statistics

(<http://ec.europa.eu/agriculture/agrista/2007>)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및 2003년 7월(MTR),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기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타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 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2007~2008/20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톤에서 3만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의무준수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준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

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부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2005년은 2003년 중간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설탕 분야의 개혁 방안이 타결되었다. 2004년 6월에 집행위에서 설탕분야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협상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지가격을 4년간 36% 인하하고 보조금 지급은 생산과 단절하되 소득손실의 64.2%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수매 등 시장개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06.12월 EU집행위는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는 바, 기존의 복잡한 농업부문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2007~2013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의 농산물 상품광고, 도축장 폐기물 관련 국가 보조금 지급가이드라인 및 농업부문 단기정책 용자지원지침은 폐지되고, 용수 관련 지원, 에너지작물 및 전력 관련 소비세 면제 지원 내용이 국가 보조금 지급 범주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한편, 농산물 가공, 판매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규정은 폐지되고, 일반 산업부문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정 수준(농가당 3년간 3,000유로) 이상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율대상 국가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De Minimis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유럽연합은 7년간 중기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2007~2013년간 중기예산을 확정하였다. 총예산 8,624억유로 중 농업예산은 3,629억유로이며 이중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에 2,931억유로, 농촌개발에 698억유로가 배정되었다.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분야별로 예산 배정 하한을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10%, 농촌경제 다각화에 10%,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25%, LEADER 방식에 5%를 최소로 배정해야 한다. 유럽농업지도보 증기금(EAGGF) 등 여러 회계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

데 이를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재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2007년 11월 20일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농업정책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Health Check)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의 주요내용은 ① 단일농가직불금 지급기준의 생산 비연계(Dcoupling) 강화 및 효율화 ② 수매, 쿼터 등 농산물 시장관리 수단 대폭 폐지 ③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한 농촌개발정책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구상은 중기 재정계획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 방안은 2008~2009년 실시 예정인 재정 중간평가(Budget Review) 기간에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의 이행 및 2001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DDA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양자 통상 및 협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

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 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가. 미 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대만에 이어 제6위 수출국이다. 2007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37억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약 2.5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나,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과 생명공학 문제를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년 4월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개념적용,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강화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캘리포니아산 석류의 수입허용 절차 진행 지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도에 감귤의 알래스카주 수출이 허용되었으며, 여타 주로의 확대수출 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 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1,220백만 달러로 총 수출액 중 32.4%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7월 제6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농업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3년 3월 21일 동경에서 제4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 합의 및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시적으로도 각종 채널을 통해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0차 회의를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이미지)

다. 중 국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6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3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06년 양국간 농산물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259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2,199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 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

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7차 회의시 한·중 농수산물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 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2차 회의는 2007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축산물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최봉순)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7년 약 5.3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7년 약 0.3억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측은 2003년 5월 광우병(BSE) 발생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수입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도 우리나라산 농림수산물의 대EU 수출은 약1억불로 전체 수출국가 중 9위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수입은 약20억불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EU와는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EU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동식물 검역문제가 양측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7.5.31~6.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6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은 한국산 분재 수출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매 2년마다 연장하는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U측은 동 수출기간을 연장하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가 6월 또는 7월에 완료될 것임을 시사하였고, 수출허용기간 추가 연장에 대하여는 차기 회원국 협의 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한국산 인삼차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해 이탈리아 측이 식물병 증명서(Phytopathologic Certificate)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동 증명서 사본을 전달하면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법적근거와 사유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EU측은 EU의 규정(Directive 2000/2009/EC, Annex 5)에 의해 인삼제품에 대하여는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브뤼셀 주재 이탈리아 대표가 각 항구에 인삼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대상이 아님을 기통보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식물병증명서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U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EU측은 광우병(BSE) 관련, 세계동물기구(OIE) 규정에 의거 EU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산에 부과하는 조건을 EU산에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OIE 기준상의 국가 위험등급과 관계없이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쇠고기는 미국산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도록 절차를 개시하고, 소정액의 경우에도 OIE규정상 BSE 위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을 허용하며, 사슴뿔(독일 관심)의 경우에도 BSE와 관련이 없다는 많은 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수입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여러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BSE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EU 지역에서 BSE 발생이 사라진 이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은 OIE규정을 존중하지만 자체적인 평가를 거쳐야 함을 설명하였는 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소정액은 BSE 관련 규제물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슴뿔은 한국에서 식용(한약재 원료)으로 이용되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슴이 BSE와 무관하다는 EU측의 조사결과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가금육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EU측은 영국과 헝가리에서는 AI가 각각 1건씩만 발생한 점을 감안, 지역주의²⁾를 인정

2) 특정 질병/병해충이 한 국가나 여러 국가의 일부지역에만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방제 및 통제조치가 취해 질 경우, 동 질병/병해충이 발생하는 지역산만 규제하고, 발생하지 않는 여타 지역산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하는 등 질병/병해충의 지역적인 발생상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해 주고, 특히 열처리된 가금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측은 AI 발생 원인이 야생조류일 경우 통제조치가 어려워 지역화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OIE기준에 적합하게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고 요청하면 평가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열처리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입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U측은 한국이 이탈리아산 키위 수입허용을 지연하는 등 한국의 식물위생규정이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이탈리아산 키위에 대해 정보 제공 요청이 계속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을 적용, 조속히 검토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측은 국제기준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PRA)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절차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여는 신속한 정보 제공 등 수출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2006년 12월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회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육류 작업장 사전 승인(Pre-Listing) 문제와 관련, EU측은 기존 작업장 승인 국가에 대하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사전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측은 작업장 사전승인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EU 회원국별로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단위로 검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기존 작업장 승인 국가도 사전승인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바.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의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만다린·망고·가금육 및 쇠고기, 멕시코의 포도·오렌지·자몽·탄저린 및 가금육, 에콰도르의 망고, 콜롬비아의 열대과일류,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에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브라질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칠레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고, 남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FTA의 첫 상대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한-칠레 FTA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2003년 2월 15일 Lagos 칠레 대통령 방한시 양국 외무장관간에 정식 서명으로 타결되었으며, 2004년 2월 26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1일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최종 타결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신선사과 및 배는 FTA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포도는 11월~4월간에 적용되는 관세를 향후 10년간 균등철폐하고 5월~10월간에는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관세가 높거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기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맨더린, 자두 등의 품목은 소량의 TRQ를 제공하고 관세인하 문제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기로 하였다.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한 품목중 국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7년~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협정문과 관련해서 우선 양국은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

프가드 (SG : safeguard)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동 제도는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에 제한이 없어 부패성 있는 농산물에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제3국산이 칠레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식물 검역분야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이미지)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1. WTO 활동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5)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을 정하였다.

이후 이렇게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

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04년 7월말까지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기본골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농업협상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선언문을 채택되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 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7)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들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입장차가 매우 컸으며, 홍콩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Lamy WTO 사무총장은 각국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면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신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8개국 정상들은 현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향후 1개월 내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상들의 촉구에 힘입어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장관들은 7월 17일 제네바에서 향후 협상 진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7월말에 회동하여 3대 핵심쟁점인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EU, 일본, 인도 등이 농산물 관세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EU, 인도, 브라질, 일본은 미국이 국내 보조를 더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주요국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협상 중단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 차원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약 4개월간의 휴지기간을 가진 후 11월 16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 협상 전반 재개를 선언”하였다. 협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주요국, 주요그룹 상호간 탐색전, 주요 그룹내 기술적 협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모여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 DDA협상은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집중 협상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협상분야에 있어서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이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4월 및 5월에 의장문서를 2차례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 원인은 농업분야 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2007년 7월 17일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7월에 배포된 초안은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결 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상당부분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세부원칙이 배포된 이후 하반기 DDA협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 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개수 등 정치적으로 결정될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적으로 TRQ 증량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그동안 논의가 미흡하였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 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김민아)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OECD는 WTO농업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OECD의 연구가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감축문제 및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세계농업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나.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3번째로 “2007~2016 중기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이다. FAO의 품목

적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검토항목>

- 2007~2016 농업전망의 기준예측 : 거시경제변수(인구, 물가, 환율, GDP)에 대한 일정가정 하에 향후 10년간 주요 농산품들의 생산, 소비, 무역량의 추이
- 최근 농산물 시장의 변화 : 세계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화현상을 개관하고, 전통적 가격결정요인의 변화 여부를 검토
- 농산물 무역흐름의 역사적 패턴 : 1985~2004년 기간 동안 세계농산물 교역흐름을 개관하여 농업전망에 포함
- 바이오에너지와 농업시장 정보 : 바이오연료와 농산물 시장을 검토

<2007~2016 전망의 개요>

먼저 동 보고서의 주요가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지속적인 세계경제성장세의 중기적인 후퇴
- ② 인구성장세의 둔화
- ③ 지속적인 낮은 인플레이션
- ④ 바이오연료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정책적 도전

이러한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가) 전반적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전망

최근 세계 주요 농산물 가격의 강세원인은 대체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공급부족, 재고부족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사료곡물 수요증가, 각국의 농업정책개혁으로 인한 잉여생산 감소 등 농업구조적인 변화는 향후 10년간 농산물가격이 역사적인 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농산물 가격상승의 영향(식량과 연료 논쟁)

높은 농산물 가격 전망은 특히 순수 식량수입개도국이나 도시의 빈민층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와 최근 일고 있는 식량과 연료 논쟁(Food Versus Fuel)으로 가열되었다.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은 일면 생산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동 사료곡물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상승 및 소득 감소효과로 작용한다.

(다) 고농산물가격과 향후 농업정책 전망

높은 농산물 가격 전망은 향후 농업정책의 근간이 가격지지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농정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역을 제한하는 국경조치들에 대한 정책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관세감축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바이오연료산업의 곡물수요 증대효과

금번 농업전망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단연 급속히 증가하는 바이오연료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곡물, 사탕수수, 유지 및 유채작물의 활용 증대이다. 분석기간 중 미국의 옥수수, EU의 밀과 유채, 브라질의 사탕수수 등 상당한 물량이 에타놀이나 바이오 디젤생산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는 사료곡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전체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축산물 제품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온대 기후국가의 경우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생산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농업생산 기술개발, 바이오연료정책이 필요하고, 예견치 못한 원유가격 및 사료곡물 가격 변화가 농산물 시장의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급속히 부상하는 개도국의 곡물수요 증대효과

많은 개도국들과 급속한 경제부상국들의 곡물수요 증대는 이들 국가의

농산물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식량생산능력 개발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 결과 지역협력체로서 OECD 회원국들은 많은 품목에 있어 비회원국들에게 농산물 생산과 수출기회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농산물 교역구조는 점차 소수국가들이나 FTA와 같은 지역협상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바)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 수입측면

먼저 수입 측면을 보면, 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은 OECD 회원국들보다 수입이 더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이나 잡곡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의 수출이 성장하는 개도국시장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계농산물 시장은 남-남교역(개도국대 개도국)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며, OECD 회원국내에서도 농산물 수출국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 농산물 교역의 수출 측면을 보면, 그동안 농산물 수출 성장세를 유지해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수출 성장세는 주로 설탕, 유채 및 육류가 주도해 왔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출 성장세는 곡물류, 낙농품이 주도하였다. 기타 수출성장세를 주도해온 개발도상국 및 구공산권국가로는 잡곡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쌀은 베트남과 태국, 유채유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가금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및 중국이었다. 많은 국가의 수입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은 유채종자나 유채부산물 교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2016년까지 중국은 세계 제1의 유채박 수입국이 될 전망이며, 오일과 오일종자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동적인 위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오일종자의 경우는 전세계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2007~2016 전망의 한국 관련 사항>

OECD 및 BRICs 국가들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경우 OECD 평균대비 낮은

인구증가율(이로 인한 소비위축), 강한 경제성장, 완만한 물가상승, 원화강세(이로 인한 수입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OECD회원국 중 EU의 수입세 감축, 한국의 MMA수입물량 증가가 쌀 교역량 확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 쌀생산 및 교역은 확대될 전망이며, 최근 상승하고 있는 쌀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후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필리핀과 함께 한국도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로 인한 육류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 등 국경조치에 대한 기술은 농업무역협동작업반에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제시되어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은 종가세상당치로 농산물 관세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2007년 OECD 지역 생산자 지지는, PSE로 측정된 바와 같이, 미화 2,580억달러 또는 1,870억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2006년의 26% 2005년의 28%에서 하락한 OECD 농업 생산의 총 수입의 23%에 해당한다. 2007년 지지액 수준 하락은 주로 세계 시장 상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OECD 국가의 국내 가격지지 정책으로 낮은 이전(Transfer)수준을 유발하여 이는 생산자 지지의 전반적 감소로 이어졌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현재 생산자 지지의 관찰 수준은, 추정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986~1988의 총 농장 수입의 37%에서 2005~2007년까지의 26%까지 하락하였다.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국내 가격이 국경가격을 초과한 평균수준이 50%에서 20%로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지지수준의 하락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현재 생산으로부터의 비연계성으로, 농민에게 생산의 선택권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OECD 국가의 개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지가 상품 생산에 연계 되는 정도가 낮고, 면적, 가축 수,

소득 등 점차 다른 변수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수의 고정 수준(Non-Current Level)과 관련하여; 수혜자가 생산 활동을 의무화 하지 않는 지급액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단일 상품에 연계된 지지의 비율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액과 그 사용에 부가된 제약사항이 없는 변동 투입재에 기초한 지지액 비율은 PSE의 60%에 못 미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단일 품목에 제공되는 이전금은 여전히 PSE의 중요 요소이며, 2005~2007 PSE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지지 수준의 최근 감소는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정책 환경의 결과라기 보다는 국제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극도로 높은 현재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국경 보호 가격 관련 국내 지지조치가 다시 한번 강화되어 지지 상승, 생산 증가 무역 왜곡, 이전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정책 개혁노력이 농업 부문의 시장 성향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지수준 감소추세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농업 시장가격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농업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왜곡적 정책을 정책 입안가가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왜곡적 조치들은 농가 소득 문제의 해결 효과가 낮았고, 농가 지지액 분배의 형평성 부족 문제, 농업 부문 환경 성과 문제를 더욱 발생시켰다. 개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 조치의 생명주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나올 것이다.

명목가격으로 여러 차례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실질 가격은 1970년대보다 훨씬 낮았지만), 주요 정책입안자들이 농업 품목의 국제 가격 급상승의 배경 속에서 2007년 농업정책을 운영하였다. 신흥 경제국의 식량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장기적 시장 동향이 주요 시장에서의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 위축과 시기가 맞아 떨어져, 최근의 식품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이다. 투기 활동 증가와 바이오 연료 생산용으로 주요 작물을 사용하는 등의 최근의 변화를 부추기는 정책 등이 상품 가격 상승의 다른

요인이다. 세계 농산물 가격 강세는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이는 2007년의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이는 2008년 까지 이어졌다.

OECD국가들의 식품 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일부 OECD 비회원국은 특히 식량수입국들은 주식 작물 가격 상승이나 부족과 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정책 가격측면에서, 일부 국가들은 이전에 동의했던 주요 개혁을 이행 하였다. 유럽연합은 계속 비연계 정책을 추진했으며, 설탕 개혁을 실행하고 와인, 과채 부문의 개혁에 동의하며, 최근 CAP 개혁의 Health Check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신규 집적 지불제를 시행하였으며, 한국도 품목 생산에서 지지를 비 연계시키는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미래 정책 방향의 윤곽을 결정짓는 과정을 밟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 정책을 조정하여 2011년까지 연장시켰다. 2007년의 열띤 논의 끝에, 2008년 미국에서는 신규 농업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농업은 NAMA(비농업부문 시장 접근), 서비스와 더불어 WTO 도하개발의제협상의 난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부 발전은 농업부문의 추가적 노력을 위해 세부원칙 마련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다자주의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많은 OECD 국가들은 양자, 지역 무역협상에 참가하였다.

2007년 OECD국가의 생산자 지지 수준은 23%로서, 이는 OECD 국가의 농민 총 수입의 1/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지지 정책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SE 비율은 2005년 28%, 2006년 26%에서 3년 연속 하락했다. 장기적으로는, PSE 비율이 1986~1988년 37%에서 2006~2007년 26%로 하락하였다. 이는 OECD가 1986년 정책 지지 추산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전반적 가격지지 감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농업 지지 부분이 줄어들다는 것을 의미한다.(생산지에서 측정된) 소비 지출의 비율로서의 CSE(% CSE)가 OECD의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식품가격 상승으로 여러 국가 소비자들이 무거운 가계부담을 떠안게 된 이때에, 높은 국제 가격은 국내와 국제 가격 간 격차를 좁혀 CSE를 줄이게 된다. 낮은 CSE 수치는,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식품 가격의 비율이 떨어지게 됨을 의미하지, 소비자 지출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보조금뿐만 아니라 PSE, 연구, 인프라, 검역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농업 부문에 대한 총 지지는 1986~1988의 2.49%로부터 감소한 2005~2007의 OECD GDP의 0.97%에 해당한다. 경제 전반에 대한 농업 지지의 부담 완화는 비록 농업 정책 개혁이 기여한 바는 있지만 모든 OECD 국가들의 특징이며, 이는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생산량에 연계되어 잠재적으로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시키는 형태의 지지 비율과 제약없는 변동 투입재의 사용은 OECD 국가에서 감소했다(이는 1986~1988, 2005~2007과 비교한 것이다. 생산량에 기초한 지지액(시장 가격지지 포함)의 감소는 국내 생산자 가격과 국경 가격(NPC 생산자 명목 보호 계수에 의해 추정)과의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 가장 왜곡적 형태의 지지의 감소는 면적, 가축 수, 소득에 근거한 지급액 증가를 수반하며, 이때 고정 자격 변수(즉, 역사적 자격 변수라고도 함)에 근거한 지급액의 중요성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어떠한 생산도 요구하지 않는 지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민에게 제공되는 지지액 지급에 대해 다양한 준수 조건, 특히 환경적인 준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수년간, 지지는 특정 품목 생산에의 연계성이 낮은 예산 지급으로 진화해왔다. 이는 한 그룹의 품목(또는 모든 품목)을 지불금 자격을 허용하거나, 지급액을 받기위한 생산요건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부문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유, 계란의 SCT(단일 품목 이전)은 생산자 수입의 절반 이상, 곡물과 곡물유지의 경우는 더욱 감소한 한편, 예를 들면 쌀과 설탕처럼 전통적으로 보호받는 부문은 감소 수준이 낮았다. ; 이 품목들은 SCT와 NPC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지 수준과 가장 왜곡적 형태의 지지 비율은 감소했지만, 가장 생산/무역 왜곡적인 지지가 계속해서 우세를 띠는

형국이다. 또한 개혁은 국가간에도 불균형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더욱 비연계적 지지를 이행함에 있어 진전된 모습을 보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 과정이 시작 단계이다. 또한 구체적 목표 달성과,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정책을 미세 조정,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위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물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WTO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이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작업분야는 2007/2008 사업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위주로 분석·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작업은 크게 농업위원회 차원의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쟁점, 농업의 환경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개발 작업으로 대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경제적 평가”, “농식품 부문에서의 가치창출”, “농업에서 계약의 역할과 활용”, “PSE 지표 및 분류체계 개선”, “농업환경지표 및 성과” 등을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07년 11월 제58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회의에서는 비관세조치(NTM),

사회적 관심사항(Societal Concerns)에 대한 정책, 구제역 발생 및 방역조치 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1985~2004 기간 농식품 교역 패턴변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논의되었다.

(국제협력총괄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3. FAO 활동

가. 개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영양·식량·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및 국제활동의 촉진과 권고를 목적으로 1946년 12월 14일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기구 소재지는 이태리 로마로 2008년 현재 19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 홀수년도에 각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 등 산하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08년도 현재 3,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회원국 분담금 규모는 자국의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UN이 결정한 UN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07년도의 예산규모는 7억7천만달러 수준이며 2008년의 경우 약 930백만달러에 이른다.

나. 주요활동

FAO의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시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하여 회원국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며, 적절한 기술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FAO 사업은 FAO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사업(Regular Programmes)과 UNDP, WFP, UNICEF, FFHC, 신탁기금

등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기타사업(Other Programmes)이 있다.

FAO는 창설 이래 농업,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서 유일한 국제정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가지 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 및 교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연감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여 세계 식량의 수급현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영양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식량 및 농업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

FAO는 농업, 수산 및 임업용 기자재 목록의 간행과 심지어는 동식물 질병의 통보 등 식량,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유익한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분으로부터 생사에 이르는 각종 상품에 대한 경제적 관측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FAO는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에 만족치 않고 세계식량농업개발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방대한 장기계획 지침서로서 “세계식량농업개발계획지표(Indicative World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였고 그 외에도 “2015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15)”, “2030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30)” 등 각종 중장기 농업예측전망자료를 발간하며, 또한 매10년마다 실시되는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를 주도하여 각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방대한 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왔다.

최근 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이 2005년 11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에 소 지역사무소를 추가(아프리카 2, 중앙아시아 1, 걸프 1, 중미 1개) 및 유럽에 서비스 공유센터(SSC)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하여 동 기구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도출 후 2007년 11월 제34차 총회에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핵심적 결론과,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즉각 행동계획의 세부일정을 2008년도 특별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동기구의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규모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1966년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하였고, 9회에 걸쳐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FAO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회원 분담금 규모는 약 88억원 수준이고 191개 회원국 중 11위이다.

2007년 11월 17일~24일 기간 중에 190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4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농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10년 개최예정인 제30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의 우리나라유치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동 총회에서는 2004년도 제127차 이사회에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추진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독립외부평가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이며 이를 위해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안되었

으며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독립외부평가의 권고를 반영한 사무국의 2008~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77, EU 등의 지지로 제로명목성장(ZRG, 2006~2007년도 대비 21.4%증액)안이 채택되었으며, 동 예산규모의 상승과 우리나라의 분담비율 증가(2008~2009 : 2.18%, 2006~2007 : 1.82%)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담액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금번 총회에서 안도라 공화국 및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총 19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러시아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함께 FAO는 6개 공식어를 사용하기로 결정 되었다.

아울러 각 위원회, 총회 활동에 있어서는 눈에 띄이는 것은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한 이슈로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동 이슈는 향후 수년간 FAO의 중요관심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년 6월 3일부터 5일 기간 중에 개최된 식량안보고위급회의에 우리부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절대 빈곤, 기아인구 감소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적 인도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2000년 8월 앙가라 필리핀 농업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 농업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3국이 수용하여 2001년부터 매년 하반기 「ASEAN+3 농림장관회의(AMAF+3)」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 및 통합에 기여하고 아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SEAN과 한·중·일 3국의 농업협력은 6개 분야 - ①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② R&D ③ 인적자원개발 ④ 국제적·지역적 이슈 ⑤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⑥ 무역촉진 - 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에 대한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협력 차원에서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EAERR :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가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격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협력 차원에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FSIS는 식량정보(작황, 시장가격, 수출입, 재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함으로써 역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W/SW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기(2003~2007년) 사업이 완료되면 제2기(2008~2012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및 이행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인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협력의 중점을 두어 왔다. 200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허상만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

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체,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등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는 박해상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우리 측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를 2006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과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업은 2007년에 실시되었는데, 아세안회원국의 뜨거운 관심이 높은 참여율로 반영되었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협력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향상, 농촌개발

과 기술협력,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식량안보 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등 5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등을 배경으로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긴밀해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설문조사를 통한 호응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2009년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표 1-3-9>

우리부 역대 수석대표 현황

회차	일시 및 장소	수석대표	고위급회의
1차	2001. 10. 인도네시아 메단	김동근 차관	이명수 국제국장
2차	2002. 10. 라오스 비엔티안	김동태 장관	이명수 국제국장
3차	2003. 8. 말런 쿠알라룸푸르	허상만 장관	이명수 국제국장
4차	2004. 10. 미얀마 양곤	박해상 차관보	김경규 국협과장
5차	2005. 9. 필리핀 따가이파이	이명수 차관	배종하 국제국장
6차	2006. 11. 싱가포르	박해상 차관	김창현 국협과장
7차	2007. 11. 태국 방콕	박해상 차관	김창현 국협과장
8차	2008. 10. 베트남 하노이	박덕배 차관	김남수 국협과장

<표 1-3-10>

우리나라 제안사업 내역

사업명	년도	시행기관	재원
미곡증산기술연수과정	2003	농진청	KOICA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연수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샵		농협	농협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연수과정	2004	농촌공사	KOICA
AFSIS 훈련과정	2005	정보화담당관실	농림부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촌공사	KOICA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2006	농림부/ 수과원	농림부
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국제농기계박람회 및 학술대회 초청		농림부	농림부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농림부 /KOICA
2차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림부	KOICA
중소기업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향상	2007	농림부/한식연	한·아 협력기금
농촌개발과 기술보급 훈련		농진청	KOICA
제2차 아세안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농림부/수과원	농림부
제3차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제4차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KOICA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가.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개도국 기아해방을 위한 잉여농산물 원조목적으로 창설되어 FAO 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WFP 재정지원 규모는 1981년 연6만불로 개시되었으며 1997년 54만불 규모로 증액시켜오다가 IMF 사태 이후 지원규모를 줄여 2002년부터는 10만불을 지원해오고 있다.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8년 2월 13일~14일 기간 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이태리공사를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IFAD에 대한 지원규모 향상, 과거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국제협력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금번 총회의 원탁토론 주제인 “기후변화·바이오연료 확산 등에 따른 기아와 가난극복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29차 총회시 IFAD의 제7차(2007~2009) 기금조성에 3백만불의 납부서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연간 1백만불의 분담금을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12일 기간 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7년 8월 20일~22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56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집행위원국이 참가하여 사무총장 임기 연장안, 동기구 직원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 건전재정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12월 6일 대만에서 동기구 사무총장,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 대표들을 소집하여 제2차 지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7월 26일~8월 10일 기간 중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동기구 12개국 17명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형성을 지원하였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농

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환경·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OECD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 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 분석, 농업생산·무역자유화·환경과의 관계, 회원국 농업환경정책 목록 작성,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농업의 환경영향 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OECD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은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PPP)과 농업보호 축소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환경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입국 그룹들과 공조하여, 농업의 환경 긍정적 외부효과(다원적 기능 등) 부각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별로 다양한 관계로 이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관련, OECD에서는 그간의 농업환경지표 논의결과를 종합한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을 발간하였다.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수질, 용수사용, 양분, 농약사용, 토양, 생물다양성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01년~2006년까지의 작업반 논의결과와 회원국 설문결과 및 지표관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요약 부분과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변화(제1장), 농업환경지표 개발 진행 상황(제2장),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상태 추세(제3장), 정책분석도구로서

의 농업환경지표의 활용(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발간되었으며, 농업환경정책 목록(Inventory), 생산자지지 추정치(PSE) 등과 함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 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은 ECC의 개념, 특성, 다른 농업정책과의 일관성 등에 대하여 분석과 아울러 EU,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직불 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9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서,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비농산물협상(NAMA)과 연계하여 상세 협상원칙(Mdality)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

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 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 다자간 국제 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을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

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 가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용 LMOs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2007년 10월 3일자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LMO법 및 관련 고시 등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협정)”은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SPS조치(식품 위생조치,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 조치)가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WTO/SPS위원회가 설치되어 매년 3~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네 차례의 회의(2007. 2-38차 회의, 2007. 6-39차 회의, 2007. 10-40차 회의) 개최되었다.

2007년도 SPS 위원회에서는 WTO/SPS협정 제6조에서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지역화 인정; Regionalization)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남미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2003년 이후부터 논의가 되어온 지역개념 도입 이행지침 문제가 집중적

으로 거론 되었다.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이 지역화 인정규정의 이행을 강제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WTO차원의 지침을 개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대만 등 수입의존국들과 미국·호주 등 선진그룹들의 유보 입장표명으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동물질병 지역화에 관한 지침을 기 운용 중에 있고 IPPC도 2007년 3월에 관련 지침을 채택할 계획인 것과 관련하여, 지침개발에 유보적인 그룹들은 검토시한 설정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초기단계에서의 논의 시점은 용인할 수 있으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역화 인정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상 부여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지역화 인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남미지역 국가들이 연대하여 지역화 논의를 주도하는 점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소그룹회의를 개최하여 공조하여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SPS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의의제기 및 답변 등 현안해결의 장을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생 및 검역관련 규정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문제 등 논의시 SPS협정 대상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SPS조치와 관련된 캐나다(쇠고기)와 브라질(지역개념인정-쇠고기 및 돼지고기)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EU(육류 수출작업장 승인방법, 쇠고기 수입허용, 치즈내 프로피온산 함유량 등), 호주(치즈내 세균 검출기준) 등의 요청으로 수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자

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조치를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07년에도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8. 국제농업협력사업

상호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DDA/FT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최근 동남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농촌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전수 받고자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계 식량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해외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관련 기술, 물자 지원 등을 통하여 빈곤문제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가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특히 크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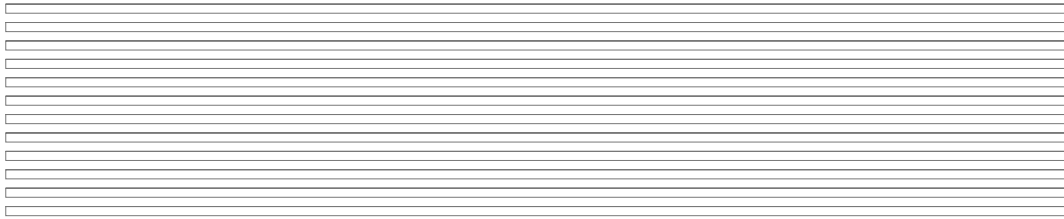
농식품부에서는 2006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8억원, 2007년 13억원, 2008년에 18억원을 확보하여 개도국 농업관련 종사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주로 인적자원 개발분야 중심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로는 첫째,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들의 기여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 FTA 협상 측면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에 두고 있다.

2008년도에는 ASEAN 회원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워크숍 개최, ASEAN 회원국간 축산물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베트남 가공용 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아제르바이잔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전수, 몽골 육가공 종사자 초청 연수 및 컨설팅, 네팔 농촌 생태관광 시범 마을 조성 지원 등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 효과가 큰 저소득 농업자원부국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여 국제사회 기여 측면을 고려하면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제2편

2007년도에 시행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 제1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 제2장 > 2007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시책 추진

제1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정부는 10년간(2004~2013)의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완하고 투융자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3년 단위로 평가·조정하기로 대책 발표 당시(2004년 2월)에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지난 3년간(2004~2006)의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결과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조정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관계부처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점검·조정과 워크숍, 농림기관 혁신 토의,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투융자평가 연구용역, 관계부처,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투융자평가협의회(5회) 및 시도 농정과장 회의와 정책공모, 여론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조정방안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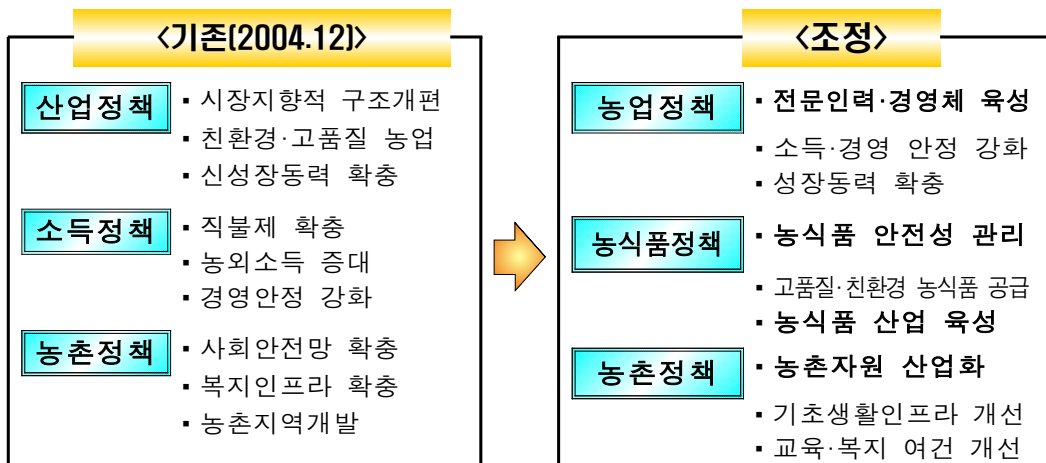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한미 FTA 보완대책에 반영할 신규과제를 위주로 농업인단체 워크숍(2007년 3월 6일~7일)과 농업계 원로교수 간담회를 통해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등 직접지불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도입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로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미 FTA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어 종합대책 점검 및 보완작

업을 이루고 한미 FTA 보완대책 및 재정지원계획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종합대책 보완은 그 동안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에 대비하고, 그동안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점 등이 고려되어 당초(2004년 5월)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내용을 유지하면서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 보완하여 기본틀을 당초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농식품정책, 농촌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기본틀 조정>



한미 FTA 등 개방확대에 대비, 농업구조조정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대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육성 등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정책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본격 추진하여 주업농은 ‘규모확대+경영안정+직불확충’으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고령농은 경영이양직불, 일자리 창출 및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

정하려는 것으로 쌀 소득보전직불 등 각종 소득안정직불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2010년 신규로 도입하고,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촌사회안정 차원에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농산품,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R&D사업 비중을 2006년 21%에서 2012년 49% 수준까지 확대하는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농식품 안전, 식품산업 등 농식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GAP·이력추적제·HACCP 추진기반 확충 및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며, 광역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 시설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를 설정,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농식품정책을 별도의 정책축으로 설정

마지막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활력지원, 지역특화 등 농촌자원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통합,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주택개량 및 먼단위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농림부사업으로 통합,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융자는 그동안의 투융자실적을 기초로 향후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당초 119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 증액하였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는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축사시설 등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분야를 확대하여 4.0조원 증액된 40.7조원으로 조정하였고, 당초 과다 책정된 쌀소득·조건불리직불 등을 축소하여 소득·경영안정분야는 4.4조원 감소한 19.5조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한 농식품안전·유통혁신분야는 2.2조원 증액된

8.3조원으로, 복지·지역개발분야는 당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완하였다.

이같은 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하여 2007년 10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6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대외에 발표하였고, 12월 29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4~2007			2008~2013			2004~20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395,934	415,112	19,178	796,969	816,980	20,011	1,192,903	1,232,092	39,189
1. 농업경쟁력 강화	203,479	225,231	21,752	367,207	407,140	39,933	570,686	632,371	61,685
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390	273	△117	0	440	440	390	713	323
2) 고품농 경영이양촉진	2,500	715	△1,785	8,767	9,794	1,027	11,267	10,509	△758
3) 농업인 교육훈련	1,473	1,485	12	2,121	3,807	1,686	3,594	5,292	1,698
4) 영농규모화 사업	16,044	16,798	754	36,632	26,365	△10,267	52,676	43,163	△9,513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67,354	78,711	11,357	141,118	162,133	21,015	208,472	240,844	32,372
6) 생산기반정비	71,362	79,206	7,844	87,295	102,757	15,462	158,657	181,963	23,306
7) 수출확대 지원	2,225	1,679	△546	4,941	6,377	1,436	7,166	8,056	890
8) 성장동력확충	17,759	16,750	△1,009	41,103	37,893	△3,210	58,862	54,643	△4,219
9) 산림자원 육성	24,372	29,614	5,242	45,230	57,574	12,344	69,602	87,188	17,586
2. 경영 및 소득안정 부문	100,110	103,727	3,617	239,333	195,474	△43,859	339,443	299,201	△40,242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37,554	46,508	8,954	128,953	103,685	△25,268	166,507	150,193	△16,314
2) 수급 및 가격안정	15,779	10,547	△5,232	22,974	16,389	△6,585	38,753	26,936	△11,817
3) 경영안정강화	40,550	43,309	2,759	73,053	58,286	△14,767	113,603	101,595	△12,008
4) 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	3,605	1,291	△2,314	13,324	5,914	△7,410	16,929	7,205	△9,724
5) 수입피해보전(폐업포함)	2,622	2,072	-550	1,029	11,200	10,171	3,651	13,272	9,621
3. 농식품안전 및 유통혁신	41,752	36,518	△5,234	61,450	82,977	21,527	103,202	119,495	16,293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3,249	5,553	2,304	5,502	13,529	8,027	8,751	19,082	10,331
2)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7,130	5,498	△1,632	14,669	15,704	1,035	21,799	21,202	△597
3) 농식품 유통혁신	29,742	24,884	△4,858	37,198	50,552	13,354	66,940	75,436	8,496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317	125	△192	771	1,885	1,114	1,088	2,010	922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314	458	△856	3,310	1,307	△2,003	4,624	1,765	△2,859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50,593	49,636	△957	128,979	131,389	2,410	179,572	181,025	1,453
1) 복지여건 개선	13,849	11,966	△1,883	32,983	28,811	△4,172	46,832	40,777	△6,055
2) 교육여건 개선	5,665	2,724	△2,941	21,758	4,871	△16,887	27,453	7,595	△19,858
3) 농촌 기초생활환경	10,661	18,987	8,326	11,026	26,582	15,556	21,687	45,569	23,882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14,960	9,212	△5,748	46,960	41,669	△5,291	61,920	50,881	△11,039
5) 농촌자원 산업화	5,428	6,747	1,319	16,252	29,456	13,204	21,680	36,203	14,523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영호, 주무관 강동민)

제2절 2007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1. 200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2007년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소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였다.

타부처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예산을 농림부소관으로 이관하였고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가 폐지되어 농림부소관 회계는 6개에서 4개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하고, 균특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을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16개)도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면적을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 확대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농가경영위험 관리 및 농업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뒷받침 하였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농촌유치 프로그램 및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 전문인력 및 지식·기술농업 확충에도 중점 지원하였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해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산지유통개선 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은 재해예방 및 준공위주로 지원하되, 수리시설개 보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시행지구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나. 예산규모

2007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14조 816억원으로 2006년 보다 5.4%(7,161 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1>

2007년 부문별 예산규모(2개 외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6 (A)	2007 (B)	증△감	
			(B-A)	%
◇ 농림부문 총지출	133,655	140,816	7,161	5.4
《농림부》	118,740	123,452	4,712	4.0
* 예산 일반지출	73,203	77,241	4,038	5.5
* 기금 일반지출	45,537	46,211	674	1.5
○ 농가소득·경영안정	35,603	36,882	1,279	3.6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11,921	6,161	107.0
○ 농업체질강화	23,218	19,469	△3,749	△16.1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34,362	34,860	498	1.4
○ 농업생산기반조성	19,797	20,320	523	2.6
《산림청》	10,159	12,235	2,076	20.4
《농진청》	4,756	5,129	373	7.8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조영선)

2. 농어촌발전특별세 운용

2007년도 농특세 세입실적은 3조 8,009억원으로 세입예산액 3조 2,922억원보다 5,087억원(15.5%) 증수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실적 2조 9,597억원보다 8,412억원(28.4%) 증수되었다. 증수요인은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15%)와 종합부동산세(6억 이상 종합부동산세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0%) 수납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도 집행실적은 농어업경쟁력강화로 5,377억원, 농어촌생활여건개선 1,808억원, 농어민복지증진에 1조 3,740억원 등이 사용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9,605억원이 전출되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박종신)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 농업·농촌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2007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4년차로서 2007년 투융자규모를 11조 9,420억원으로 계획하여, 계획대비 실적은 91.2%로 10조 8,860억원이 집행되었다.

<표 2-1-2>

지원 대상별 세부 집행실적(2004~2007)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04~'07)	
	집행	비율	집행	%	집행	%	집행	%
합 계	85,067	100.0	108,035	100.0	108,860	100.0	375,089	100.0
[1] 농어업인 등 지원	45,853	53.9	57,133	52.9	53,329	49.0	194,025	51.7
1. 농업인 지원	34,293	40.3	46,490	43.0	40,361	37.1	150,116	40.0
2. 생산자단체 등	11,560	13.6	10,643	9.9	12,968	11.9	43,909	11.7
○ 생산자 단체	7,265	8.5	6,342	5.9	8,130	7.5	27,016	7.2
○ 지자체 + 농업인	622	0.7	1,071	1.0	1,366	1.3	3,465	0.9
○ 단체 + 농업인	2,465	2.9	2,465	2.3	2,345	2.2	9,696	2.6
○ 업체지원	1,208	1.4	765	0.7	1,127	1.0	3,732	1.0
[2] SOC 사업	21,434	25.2	24,389	22.6	26,766	24.6	92,250	24.6
1. 생산·유통기반	18,250	21.5	17,027	15.8	17,248	15.8	70,943	18.9
2. 생활공간	3,184	3.7	7,362	6.8	9,518	8.7	21,307	5.7
[3] 정부사업	17,780	20.9	26,513	24.5	28,765	26.4	88,814	23.7

지난 4년간(2004~2007)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규모는 전체 집행실적의 51.7%인 19조 4,025억원으로 SOC 사업(24.6%), 정부직접 수행사업(23.7%) 등에 집행하였다.

지원 대상별 비중은 앞으로도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투융자 금액이 50% 전후하여 SOC 사업 및 정부직접 사업의 합계와 균형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2004~2007) 119조 투융자 계획 분야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3>

지원 분야별 세부 집행실적(2004~2007)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도			누계(2004~2007)		
	계획	집행	%	계획	집행	%
합 계	119,420	108,860	91.2	415,112	375,089	90.4
[1] 농업경쟁력 강화	62,934	61,568	97.8	225,231	223,930	99.4
1. 맞춤형 농정원칙 및 추천시스템 구축				273	0	0.0
2.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113	113	100.0	715	616	86.2
3.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강화	514	506	98.4	1,485	1,458	98.2
4. 영농규모화 사업	3,753	3,753	100.0	16,798	16,790	100.0
5.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24,436	22,985	94.1	78,711	77,892	99.0
6. 생산기반정비 사업규모 현실화	19,939	19,566	98.1	79,206	78,801	99.5
7. 수출확대 지원	426	426	100.0	1,679	1,538	91.6
8. 성장동력 확충	4,542	4,510	99.3	16,750	15,911	95.0
9. 산림자원 육성	9,211	9,709	105.4	29,614	30,924	104.4
[2]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	28,883	21,866	75.7	103,727	78,879	76.0
1. 주업농 소득안정 강화	16,847	11,665	69.2	46,508	39,166	84.2
2. 수급 및 가격안정	2,209	1,887	85.4	10,547	6,651	63.1
3. 경영안정강화	8,681	7,408	85.3	43,309	29,977	69.2
4.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직불 확충	533	341	64.0	1,291	1,075	83.3
5. 수입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613	565	92.2	2,072	2,010	97.0
[3]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1,224	10,447	93.1	36,518	34,620	94.8
1.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223	2,050	92.2	5,553	5,929	106.8
2.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	1,720	1,657	96.3	5,498	5,269	95.8
3. 농식품 유통혁신	7,102	6,568	92.5	24,884	23,022	92.5
4.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50	50	100.0	125	92	73.6
5.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29	122	94.6	458	308	67.2
[4]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6,379	14,979	91.5	49,636	37,660	75.9
1. 복지여건 개선	3,556	2,861	80.5	11,966	9,391	78.5
2. 교육여건 개선	1,001	995	99.4	2,724	2,174	79.8
3. 농촌 기초생활환경	5,226	4,924	94.2	18,987	10,845	57.1
4. 면·마을단위 종합개발	3,094	2,712	87.7	9,212	8,580	93.1
5. 농촌자원 산업화	3,502	3,487	99.6	6,747	6,670	98.9

(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방문진)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2004년 4월)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2004년 12월) 내용에 따라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 115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07년도에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통합·폐지 등으로 구분·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조치하며,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2007년도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① 과원폐업지원사업,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40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② 농작물재해보험, 농업관측, 영농규모화사업 등 59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③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양봉산업, 농지기반조성(대구획경지정리) 등 9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④ 수매지원사업,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농축산경영자금융자 3개 사업은 감액, ⑤ 오염농경지 특별관리,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4개 사업은 감액 또는 통합·폐지·사업종료를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팀 시설사무관 강경만)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인사, 조직, 정보화, 정보공개, 변화관리, 재정운용)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24명과 내부위원 3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07년도에는 분기별로 해당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07년도 연두업무보고 과제인 6개 정책목표, 27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계획수립단계부터 집행, 목표달성, 평가결과의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방문진)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평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관리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정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정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를 평가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시상금) 지급과 더불어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한 ① 투융자사업관리부문(농림사업 추진상황, 재해대책 시설물관리실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등), ② 중점농정시책부문(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 가축방역 및 조사료생

산·농산물 수출촉진·농산물 유통대책·농업정보화·친환경농업 육성·농촌관광 및 지역개발·농촌교육 및 복지개선 등), ③ 농업부문예산투입노력 부문(임의지방비 투입규모·투입비율·증가율·균특회계 예산확보율 등), ④ 지방농정추진노력부문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평가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상호교차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80백만원의 시상금 지급과 정부포상을 하였다.

특히, 2007년도 농정업무 평가는 지방농정의 여건변화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합순위 결정방식을 종합순위 및 분야별(투용자사업관리 등 4개) 순위 결정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평가항목간 배점조정·평가지표 및 기준 등의 보완, 평가위원 구성비 조정(내·외부위원 동수)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제고하였다. 투용자사업관리 부문의 농림사업추진상황에 동절기 수급안정사업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표를 보완하는 등 농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119조 투용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를 매년 평가해 나가는 한편, 평가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변화하는 농정 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이득섭)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1998년 4월 18일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신설 강화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규제사항 남발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4년 8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기획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행정규제의 내용을 전면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규제수를 대폭 감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농림분야 행정규제는 2007년 말 현재 272개로서, 분야별로는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상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과 보건에 관한 규제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기타 농약생산·안전관리, 유해식물의 국내유입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및 식량농자재 분야,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분야 등의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7년도에는 농림규제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령안 제·개정 시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 17명 중 15명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총 11회에 걸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전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규제정비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및 법인과 그밖에 민간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편규제를 수집·점검하였다.

2007년도 규제정비는 경쟁촉진이 저해되거나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화하며,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데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에 축사건축 및 액비저장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법령을 개정하였고, 가축개량기관·축산등록기관·가축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을 위한 환지업무대행요건을 법률로 정하였고, 비료생산업 등록·등록변경 및 폐업신고·등록수수료 징수업무와 비료수입업 신고·폐업신고·신고수수료 징수업무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는 등 총 76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비하였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호재)

2. 농정조직의 개편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추진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추진을 위한 인력, 신속한 대민서비스 강화와 농축산물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60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정주지원과, 축산자원순환과·소득지원팀 신설 및 실무인력 15명 (4급2, 4·5급1, 5급7, 6급5, 직급상향 5급1, 6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맞춤형농정팀 신설 및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5개 출장소와 실무인력 6명(4급1, 5급6, 9급△1, 직급상향 5급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약품관리과 신설, 용인출장소의 중부지원으로 격상 및 실무인력 14명(4급2, 4·5급△1, 5급3, 6급4, 7급2, 별정7급2, 연구사2, 직급상향 5급3)
- 국립식물검역원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CIQ인력 등 18명(5급1, 6급7, 7급6, 8급4, 직급상향 5급3)
- 국립종자원 : LMO 종자수출입 승인·유통관리 인력 7명(6급2, 7급3)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876호, 2007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년 11월 30일),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48호, 2007년 2월 9일, 농림부령 제1574호, 2007년 11월 30일)>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추진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FTA 후속대책 등 담당 기능을 수행할 과 단위기구 신설, 유사기능과 상호 연계추진 필요성이 큰 업무의 통합 및 국·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도시민의 정주지원 공간 조성대책, FTA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가축분뇨 처리,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 정주지원과, 소득지원과, 축산자원순환과, 식품진흥과

둘째, 농정변화에 대응한 현행 조직의 명칭 변경

- 기관 명칭변경 : 국립식물검역소 →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 국립종자원
- 국 명칭변경 : 투융자평가통계관 → 정책평가통계관, 농업구조정책국 → 농업정책국, 농산물유통국 →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축산국 → 축산정책국
- 과(팀) 명칭변경 : 재정평가팀 → 정책평가팀, 구조정책과 → 농업정책과, 맞춤형농정팀 → 정책조정과, 소득정책과 → 소득총괄팀, 소득관리과 → 식량유통과, 농촌사회과 → 농촌산업과

셋째, FTA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식량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편제 조정 등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협의 추진

FTA대책 후속조치 인력보강 및 시대에 맞는 기관명칭 변경 등을 위한 2007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수시직제(소득지원팀·경영안정지원팀·농자재산업과·식품진흥과 및 인력보강), 법령 제개정 분야(새만금사업관리단, 기획팀 등 신설, 친환경축산정책, 바이오산업 실무인력 등), 지시, 대책 등 분야(국제 농업국 조직 확대, 한우 강화대책 등 기구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법령 제개정 분야(맞춤형농정팀, 농업경영체 등록제,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업무 인증업무관리, 유전자 변형생물체 관리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주요정책 분야(품질안전부, 원산지정보팀 등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인천공항CIQ, 무안국제공항, 탐지견 인력), 법령 제개정 분야(실험동물과, 축산물위해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 인력 증원 등), 주요정책 분야(중부지원 신설, 조류인플루엔자과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 **국립식물검역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우편식물검역과 신설 및 실무인력, 도라산·부산신항·무안국제공항출장소 신설, 인천공항CIQ 검역인력 등), 법령 제개정 분야(LMO 국경검역 인력증원, 대 대만 수출검역 지원 인력증원) 등
- **국립종자관리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강원지소 신설에 따른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제도운영 인력 등)

(창의혁신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철순)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 도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가축 전염병의 신고의무 부과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 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등 2007년 중 의원발의 법률을 포함하여 모두 37건의 농림법률을 제·개정하여 공포하였다. (2007년도 공포 법률 현황 참조)

가.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재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하였다.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하였다.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와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1일, 시행 2008년 6월 22일).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만을 중요시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진흥 측면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며, 유기가공식품(有機加工食品)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식품산업 진흥과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미흡하여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식품산업발전의 기초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식품 수출의 다각화·다변화가 부족하며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식품의 원

활한 수급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식품통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제조업은 종업원 10인 이하인 업체가 96퍼센트에 달하고, 외식업은 종사자수 4인 이하인 업체가 9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등 식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기술측면에서도 취약한 구조이며, 시장개방 확대나 입맛의 서구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소비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농림부장관은 식품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확대토록 하였다. 그리고 식품공전 등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각종 기준들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고품질 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한 기준이 미흡하여 웰빙·건강열풍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며,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인정받지 못한 식품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광고·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7일, 시행 2008년 6월 28일).

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

(도축 포함)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1일, 시행 2008년 12월 22일).

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제도 등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 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중등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농교류자매결연, 농어촌마을에 대한 기부 및 농어촌체험·봉사활

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마을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 등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해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의 도입하였으며,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등의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마을에서의 농어촌체험지도 및 농어촌마을해설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지원기구를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1일, 시행 2008년 6월 22일).

마.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생명산업의 육성소재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자산으로서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으로서의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존·관리의 대상이 되는 농업유전자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농업유전자원의 정의를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 정하여 국가자산으로서의 농업유전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식물·동물 및 미생물 등의 농업유전자원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시설·관리비용의 중복 등으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의 촉진이 곤란하여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분양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무단으로 분양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재래종의 농업유전자원이 외국으로 밀반출 되는 것을 적발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 식물·동물 및 미생물 등 농업유전자원을 분야별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보존·관리함에 따라 시설·관리비용의 중복 등으로 관리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보공유체계의 미흡에 따른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유전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공포 2007년 8월 3일, 시행 2008년 8월 4일).

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림부에서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온 새만금지역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지·산업

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맞게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새만금지역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별 위치, 면적규모 및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 용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은 해당 지역의 용도별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

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첨단산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및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7일, 시행 2008년 12월 28일).

사.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집유업(集乳業)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공포 2007년 12월 21일, 시행 2008년 6월 22일).

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

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정의규정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으로 통일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사결과 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수의사는 의뢰자와 상의하여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 등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가축에게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음성적으로 실시해오던 면역요법을 추가하였다.

(공포 2007년 8월 3일, 시행 2007년 2월 4일).

< 2007년도 공포 법률 현황(37건) >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농지법(개정)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2007.4.11공포
축산법(개정)	상동	“
농어촌정비법(개정)	상동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상동	“
인삼산업법(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2007.7.13공포
농업협동조합법(개정)	- 조합의 사업범위에 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농산어촌여성지위향상에 모성보호를 추가	“
농촌진흥법(개정)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법률로 상향조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개정)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 광해방지 시설 설치 허용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근거마련 -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및 평가 -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의 승인제도 도입	2007.8.3공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 법정 가축전염병의 종류 조정(1·2종→1·2·3종) - 면역요법의 제도화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 확대(수의사에게 진단·검안의뢰한 가축소유자 등)	“
종자산업법(개정)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당해 국·공립학교가 승계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의 범위 축소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농어촌정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위원회 이양 확정사무 정비(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권한 등 이양) - 환지업무대행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요건 구체화 등 	2007.8.3공포
비료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도지사 추가) -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범위 확대 	“
양곡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를 “관수용·가공용·공공용·민수용·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조정 -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 구체화 	“
농업협동조합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고의 요건 정비(“해산의결”에서 “해산의 인가”로 개정) - 부실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부실 사전예방 제도 도입 	“
축산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종류중 “산양·면양”을 “양(염소등 산양을 포함한다)”로 개정 	“
사방사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사업 실시전 사업사업의 타당성 평가 의무화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제도 도입 	“
산림조합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을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조합 등의 기준·지정절차 마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마련,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시 임원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원시책 강구 	2007.12.21공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 등 도농교류활동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가능 하도록 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설치기한을 2008.1.1부터 2009.12. 31까지 2년간 연장 	“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농약관리법(개정)	-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사유 추가 및 구체화, 농약취급 제한기준 준수 의무자에 방제업자 추가	2007.12.21 공포
농업협동조합법(개정)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요건을 완화	“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개정)	- 진도개등록업무를 진도군수로 일원화 - 진도개 반입제한사항 현실화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 농지구입지원 규모를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한국4에이치활동육성및 지원에관한법률(제정)	- 4H활동이 청소년운동임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녹색자금 사용대상사업 확대 - 공동연구를 통한 산림과학기술의 활성화 제도 마련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개정)	-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개정)	- 반출금지구역 지정기준이 되는 거리의 한계를 규정	“
산지관리법(개정)	-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지전용행위 완화	“
식품산업진흥법(제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정책대상을 전통식품, 산지가공식품위주에서 식품제도, 외식, 식재료업 등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	2007.12.27 공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개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수경, 주무관 조형동)

4. 맞춤형농정 추진

2007년 정부는 FTA, DDA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2013년까지 맞춤형농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맞춤형농정이란 농가를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정책프로그램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농가는 스스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소득 비중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전업농 등에 대해서는 경쟁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규모화로 높아진 경영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위험관리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농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은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은퇴후에도 안심하고 농촌에 살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농외 취업이 어렵고 대외개방 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농업이외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맞춤형 농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제 도입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7년 8월부터 전국의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제는 직접직불제 등 농가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경영주의 인적사항, 작물재배면적, 축산 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면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농가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 사업대상확대(논 → 밭), 매매지원 조건의 자부담 10%폐지 등 영농규모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원대상과 단가 등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적 대책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어민 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여건도 개선하여 농어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이용직)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1. 농업협동조합

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고,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농업인의 불만과 경제사업의 적자구조가 신용사업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1999년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결과와 2003년 농협 내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2004년에 농협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서를 2006년 6월말에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6월 농협안 제출 전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현황 분석 등 농협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2007년 1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실시한 11차례 회의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건의안에 대해 농업인, 지역농협,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3.29일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축이 되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은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국산 농축산물 판매체

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 유통량의 60%를 일선조합이 취급하고 소비지 농산물 유통량의 15%를 중앙회 및 도시조합이 처리하는 등 산지 및 소비지 유통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3조원(산지 7조원, 소비지 6조원)을 투입하여 농협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기반을 만들겠다는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2)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을 위한 □□판매중심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38개의 세부추진과제는 ‘경제사업 부문’의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 추진, 산지 농산물의 농협 취급량 확대로 점유비 제고, 도·소매 유통사업 강화로 소비지 시장점유율 제고, 사업·조직간 전략적 제휴 추진, 경제사업 안정화 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고, 그 외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교육·지원사업 부문 시스템 개선이 포함되어 7개의 중점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 과제(38개)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결과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정부, 농민단체(3), 학계(3), 농협중앙회(5), 일선조합(3)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2007년 7월에 농협 내에 설치하여 매년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제사업 추진현황, 과제별 주요 쟁점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후에 정부(1), 농민단체(3), 농협(1)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집중 검토된 의견은 위원회에 보고·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2015년까지 투입할 계획인 산지 조합지원 자금 7조원, 소비지 중앙회 투자액 6조원 중 2007년에 지원된 경제사업 활성화 투·융자 금액은 조합지원자금(융자) 34,470억원, 중앙회 투자액 1,551억원이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의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을 중앙회 내에 구축·운영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등의 수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9개 조합을 부실 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6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도 42개 조합에 총 880억원(출연 780억원, 대출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7개의 조합에 출연 11억원과 100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32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5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87억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도 4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2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30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1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12,3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38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14개 조합이 줄어든 9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30조 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43조 4,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101조 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성장하였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2.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가.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기업 비전과 경영이념 설정, 전략수립실천

공사는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수행을 위해 설립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비전 및 고객중심의 경영이념을 재정립하고, CEO의 경영철학을 마련하였다. 비전, 경영이념, 경영철학 등을 중장기 목표 및 전략에 반영하여 5대 전략, 13개 전략과제, 36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설명회, 의견수렴,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전략과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전사전략체계도를 고객, 성과, 활동, 미래 등 BSC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전략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과제도출 방법을 전략과제(Top-Down)와 실행과제(Middle-up-Down)로 이원화하여 수립하는 등 수립된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전략 중심의 유기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전사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 조직구조의 정비와 중장기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차질 없는 전략의 실행을 위해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간부회의, 사업현장 방문, 워크숍, 업무보고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중장기 전략 중심의 공사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윤리경영실천을 통한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실행 목표와 이에 따른 윤리경영 활동 및 중점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조직을 정립하여 추진조직간 네트워킹화를 강화했다. 또한 Plan, Do, Check, Action의 단계로 실천과 성과중심으로 윤리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CEO의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UN Global Compact 가입, 윤리경영 나침반 제작 등 다양한 윤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반부패교육, 사이버 교육, 우편통신, 특별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관리, 예산회계, 영농규모화 등 부패취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사회공헌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 농촌사랑, 이웃사랑, 환경사랑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 기반구축, 사회공헌활동 추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였으며, 도농균형 발전 역할 수행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공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윤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

중장기 전략경영계획과 연계한 고객만족계획 수립, 고객만족 실천문화

정착, 고객후견인제도 실시, 고객점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CS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분야별 핵심고객을 6개로 유형화하고 고객유형별 핵심Needs를 파악 그 관리방향을 차별화하였고, 중장기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과제를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만족역량 강화, 고객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내·외부고객만족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CS경영 실천에 대한 직원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정립을 통한 고객만족 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베스트 친절사원상’의 포상등급을 확대하였으며, 고객접점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임대차료 납부 및 지급방법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함으로써 임차고객 및 위탁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공사의 특화된 고객서비스인 ‘고객후견인’제도를 통해 농촌소외계층에 대한 산발적 지원을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1대1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우양호)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정집행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수행사업의 성과제고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07년에 전담 T/F팀 운영 등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는 농업의 외연(外延)이 농식품산업으로 확대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공사가 1967년 설립 이후 매일유업, 한국냉장 등 24개 식품회사와 식품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하며 축적한 식품가공업에 대한 노하우와 농식품 수출 및 유통에서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사는 식품산업 육성과 더불어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및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 등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통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수출축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수출자금 지원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본, 중국 등 14개국 판촉활동(42회)과 박람회에 참가(26회)하여 301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여 생산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컨설팅을 169회 실시하였고,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183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표브랜드(Whimori)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농산물 GAP인증기관으로 지정(2006년 3월)되어 2007년 431농가 인증 등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공사의 이러한 수출지원 활동은 고유가, 안전성 강화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07년도에 농식품 수출 25억 3천 2백만불을 달성하여 5년 연속 농식품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파프리카, 버섯 등 수출핵심육성품목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 수출업체간 저가경쟁, 품질저하 등 수출질서 문란 행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체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시장개척 초기단계의 손실과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 주도로 품목개발에서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신시장개척사업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정부비축사업 담당기관으로서 농산물 수급관리와 적기방출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고, MMA쌀 도입·판매 전담기관으로서 시판용 수입쌀의 도입과 판매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기여하였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27개 품목)의 민간도입가능가격, 품목위장·규격위반과 같은 불법수입사례 등을 조사하여 농림수산물부, 관세청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저가수입 등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업무를 담당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마케팅과정과 APC 경영혁신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공사는 직무희망제 시행, 직위공모제 확대 등을 통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부서별 업적의 실시간 측정, 평가 인센티브 차등 폭 확대 등 경영관리체제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공기업 최초로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On-line 감사체제 확보를 위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청렴 추진을 통해 국가청렴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정부투자기관 중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와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신속·정확한 대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농수산물 정책자금 융자제도 개선, 수출자금 지원서류 간소화, 비축물자 방출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을 한 결과 2007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4개 준정부기관 중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공사가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기능과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식품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화 등 신규 정책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팀 사무관 장명철)

4.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 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증대된 관심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경마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해 한국경마의 환경, 경주마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시행제도의 문제점과 같은 한국경마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한 경마발전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경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심화되고 있어서 경마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해서 지속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마혁신대책」을 수립하였다. 마필산업 육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국제 경마대회 우승”과 “최고의 농촌 복지사업 시행”의 두 가지 비전(Vision 2016)을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과 농촌발전 기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마”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1) 종합경영 부문

윤리경영수준 진단조사와 해피콜 제도를 이용한 청렴도에 대한 평가 실시,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부정비리신고센터, 행동강령상담센터, 해피콜 제도를 통합한 청렴 신호등의 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윤리 문화를 형성하였다. 윤리경영 추진 결과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지수가 9.25점, 금품수수 0건 달성으로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총 17회의 이사회 개최 횟수와 99%의 높은 비상임이사의 참석률로 볼 때 이사회와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제고되었고, 견제성과 평가척도인 수정의결 이상의 비율이 21%로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 비상임이사의 참여도와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높았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system)을 통한 연차 경영실적에 대한 공시를 80일 안에 시행하여 높은 점수를 얻었고, 이외의 경영공시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평균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획득하여 경영공시제도의 내실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신규 비전전략 체계도와 연계하여 ‘4대 혁신주제 및 실천전략’과 ‘혁신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논리적으로 구축하였다. 전년도 혁신평가지 혁신주제별 우선순위와 중요도 반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해소에 노력하였다. 혁신과제 선정시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혁신과제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ERP 기반의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혁신과제의 모니터링과 혁신결과에 대한 보상과 환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관장이 기관의 혁신수준에 따라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혁신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혁신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등 혁신추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년도의 혁신평가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직원과의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고, 각 본부별 자율혁신문화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혁신커뮤니케이션, 혁신협력프로그램, 감성경영 등으로 사내 혁신피로도 해소에 노력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고객만족도로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3.8점이며, 고객만족 향상도를 포함한 평점 90.280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VOC 채널을 통한 고객의 의견수렴 및 업무 개선, 고객중심의 편리한 공간조성, 공원화 사업 추진,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CS경영체제 구축 운영 및 정착을 위해 KRA 고객만족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고객참여를 활성화하였다.

핵심주력기능 위주의 사업관리를 위해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핵심사업 위주의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예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자체와 연

계하여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였고, BSC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였다. 경마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익을 증대하고 국위선양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다각화 차원의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사업진출을 모색하였다. 참여 방법은 경마장 설계 및 시공, 시설물 설치, 기수 등 전문 인력양성, 경주마 수급 및 조교 등 시행준비 등에 대한 자문활동과 개장 후 위탁경영 등의 전문 컨설팅 분야이며, 캄보디아와 몽골의 현지조사를 거쳐 경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광판, 감시카메라 등의 수출을 통해 국내사업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부문

농림부, 과천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과감한 업무 협조로 주요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생활승마 활성화와 마필산업 육성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등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마필산업 등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행정력을 지원받고, 공사가 국제규모의 승마장, 재활승마시설 및 공원, 문화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경마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경마시행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산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주운영시스템과 경마관람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악천후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서울 경마가 취소된 경우 방문 고객에 대한 경마시행 약속과 고객 만족 차원에서 부산경남 또는 제주경마를 대체 중계하여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객의 설문조사 결과 56% 이상이 찬성을 하였으며, 직원의 62% 이상이 대체 중계가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긴급 상황시 교차투표 시스템 구축은 공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경마시행과 함께 고객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산마 생산·육성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씨수말 확보 및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고, 민간 육성 시스템을 정착한 동

시에 말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였으며, 경주마 자원관리를 위해 종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경마혁신대책에 부응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산마의 배출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씨수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우수 씨암말의 점유비율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과 정자 운동성 검사로 우수 씨수말의 평균교배두수를 대폭 증가시킨 것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질병으로 경주가 중단되면 막대한 매출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 전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7년 최초로 국가가축방역사업 실시 대상 축종에 “말”이 포함되어 대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경마의 국제화를 위한 선결조건인 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일본과 호주에서는 말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사전 예방에 성공하여 청정지역을 달성하였으며, 마필보건·위생 등에서 경주마 자원관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개설하여 체육시간과 접목시킴으로써 청소년에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한 동시에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말의 특성상 겁이 많고 잘 놀라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체험말을 가장 순한 말로 배치하고, 안전요원을 승용마 1마리당 3명씩 배치하는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체험학생들에게 안전모, 안전조끼 등 보호 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농어촌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어업인 자녀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하였고, 특별적립금 지원 사업을 통합하였다. 농어촌 노인복지차량 지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업인 기여 장학금이 확대되었으며, 농촌 관련 3개 장학사업 재단이 통합 관리되어 효율성이 증진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차량 복지시설 기부 사업은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기부금 사업으로 85대, 재단 특별적립금 사업으로 128대 총 213대, 41.9억원 규모의 승합차를 농어촌 복지시설에 기증하여 이 사업이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적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기부금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아동 시설차량에 집중하고, 재단 특별적립금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차량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다. 2007년에 전년도보다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67.4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9,140명에게 전달하였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수혜자 확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은 우수 4-H 장학금, 푸르미 장학금, 농촌희망장학금 등으로 분산 운영되었으나, 관계기관과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2007년부터 재단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을 통해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였고, 임직원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고자 재난구호봉사단을 조직하였다.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이 10억원(675억원에서 685억원) 확대되었고, 농촌 및 KRA 사업장 지역사회 지원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32개 지점과 지방사업장 등 전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사회 불우이웃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을 지급하고,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전년대비 23% 확대 지원하였다. 대한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지점 및 지방사업장 소재 29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2,000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불우장애인 및 노인 이동목욕봉사 차량을 기증하였다.

2004년부터 KRA Angels 봉사단이 발족되었으나, 재난 발생시 적시 구호가 어렵고,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도 미흡하여 2007년 11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160명으로 구성된 「KRA Angels 재난구호봉사단」을 발족하여, 국가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재난구호봉사단은 발족과 함께 기본구호교육을 이수하고,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2차례 110명이 방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3) 경영관리 부문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7년에는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부편제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6본부-20실·처-55팀-7부속기관'을 '6본부-19실·처-52팀-8부속기관'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부와 경마장 조직 및 본부와 집행기능을 분리하

고자 하였고, 사업관리 중심에서 전략중심형으로 조직의 편제를 개편하였다. 2007년 2월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결재권을 하부로 위임하였다. 그 결과 회장의 결재비율은 전년도 32.8%에서 2007년 21.0%로 11.8%p가 축소된 반면, 팀장의 결재비율은 14.4%에서 18.2%로 3.8%p가 증가하였다. 2008년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권한의 하부위임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반한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도별 수급계획에서 신규증원수요는 기존업무 효율화로 흡수한다는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정원을 동결하고 결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였다. 신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도모하였다. 2급 이상의 경우 전년도에 근무평정 45점, 경력평정 20점, 교육훈련 10점 (총 80점 만점)이었으나, 2007년도에 근무평정 45%, 경력평정 10%, 교육훈련 10%, 다면평가 20%, 부서평가 10%, 추천 5%(총 100점 만점)로 개선하였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활승마사업, 복합리조트사업, 해외사업 등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이들 사업의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진출 타당성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위원회, 상임임원회의 등을 거쳐 심층적으로 심의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재무계획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되어 달성될 수 있도록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장기경영목표와 재무계획을 매년 연동화(Rolling)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비즈니스와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외적인 정보화수준평가에서도 정보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정보화 모범기업으로 타 기관에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전략수립(IT진단 컨설팅)을 통해 11개 과제를 도출 2007년도 중점추진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통해 과제별

이행 추적성을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였다. 고객가치 중심의 정보시스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VOC 개선 및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신청과 동시에 내부 직원 포털(Potal: K-hub)과 연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적기 답변지원은 물론 이를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시스템화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비즈니스 중 핵심인 발매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외부업체(SDS)로부터 자체 요원으로 기술인수를 받아 자체기술력을 높였다.

2007년도에 Vision 2012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목표로 국제경매대회 참가, 경매인구 300만/승매인구 20만, 산업유발효과 10조 달성 등 계량중심의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 고객, 프로세스, 역량 및 인프라 등의 4대 관점으로 BSC 기반의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2008년도에 시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BSC 도입을 위해 종전의 실, 처 단위의 평가체제를 발전시켜 팀 단위 성과와 관련된 지표 422개를 신규로 개발하여 팀 단위(60여개)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계량지표로 구성하여 측정가능성을 높이고, BSC 개발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사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서별 개별지표 평가에 사용되는 비계량지표의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 세부내용별로 중요도를 설정하고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부서의견과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를 개선하였다.

(축산정책팀 사무관 김휴현)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 농어업특위의 현황

2001년 11월 14일 WTO(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채택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협상이 시작되는 등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농어민, 소비자,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제정 2002. 1. 26 법률 제6336호)하고 있다.

그 동안 농어업특위(제1대 위원장 : 전 농림부장관 한갑수, 제2대 위원장 : 단국대 교수 장원석, 제3대 위원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민영)는 국민적 합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1기 농어업특위는 당초 2002년 1월 26일~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범국민적·범정부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의 제시, 농어업정책의 신뢰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수립,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종합대책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DDA·쌀협상 등 갈등국면과 FTA협상 등 산적한 국내외 농어업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4호)하여 제2기 농어업특위가 출발하게 되었다.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농정 비전을 두고, 선진 농어업의 육성과 농어가의 소득안정, 미래형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점검·평가, 농어업분야의 사회적 통합의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실현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기 농어업특위 주요 실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농업 인력의 정예화, 직접지불제 확충, 농지제도의 개선, 쌀 산업 대책, 농촌사회의 인프라확충 등 5대 농어업과제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안) 마련, 식량자급률 설정방안, WTO/DDA 및 FTA협상의 동향과 대응방안, 119조 투융자 계획의 조정, 농어민 교육체계의 개선,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가칭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가칭 “수산기본법” 제정, 농산물 관세체계의 중장기개편 방향, 협동조합의 혁신, 남북농업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002년 1월 26일에 설치된 농어업특위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외 농어업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48호)하여 제3기 농어업특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향후 농어업특위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육성 정책의 정책적·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구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2. 2007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가. 본위원회

2007년도 본위원회는 11월 15일에 서울 조선히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안건은 2007년도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거쳐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을 상정하였으며, 의결안건은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 활성화 방안,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 2건이었으며,

보고안건은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비전과 개혁과제, 가칭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가칭 「수산기본법」 제정 등 3건을 논의하여 의결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은 안건과 함께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의결안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의 활성화 부진 요인은 공급보다는 수요이므로 건전한 소비촉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 광고,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생산물의 가공판매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와 음식문화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으로는 인삼 생산지의 지역 및 친환경적인 기준을 정하여 우리나라 인삼의 대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산양삼은 10년 이상 장기간 재배를 해야 하므로 산양삼 자체를 담보물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보고안건 중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는 농림부에서 2007년 5월에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농협개혁과제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협동조합 교육의 추진 주체를 농업인단체 등 외부에 맡겨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나. 분과위원회

본위원회 하부조직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분과위

원회는 농업 및 임업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 직접 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과 친환경농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시책분야를, 제2분과위원회는 농어촌지역개발, 농외소득원 확충,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분야를, 제3분과위원회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1분과는 분야별(쌀, 원예, 축산, 임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33명의 위원이 2007년 10월 24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협협동조합 개혁 지원,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현황,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 농산물 관세체제 중장기개편 방안,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 및 합리화 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제2분과는 분야별(지역개발, 복지, 여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23명의 위원이 2007년 10월 29일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론화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서면으로 제출된 주요 의견은 국민영양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고, 입법주체는 농림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3분과는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학계, 관련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2007년 3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대책안과 2007년도 수산부문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으며, 2007년 10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수산기본법” 방안과 WTO 체제하의 수산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007년 12월 5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가칭 “수산기본법 제정”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에 송부하여 제정을 권고하고, WTO 체제하의 수산조세제도 개선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 부처에 송부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권고하였다.

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분과는 5개 정책협의회(농정추진체계혁신, 관세체계개편, 인삼활성화, 농협활성화,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를 구성·운영하였다.

농정추진혁신 협의회는 6차례 회의와 1차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새로운 농정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 및 합리화 방안, 한국농업 농촌의 장기전망과 농정과제, 식료·식품정책과 농정기구의 역할,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과 거버넌스 등을 논의하였다

관세체계개편 협의회는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 관세체계 개편방향과 TRQ물량, FTA관세문제, DDA이후 변수 등 연구용역 보완사항, 연구용역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인삼산업활성화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타결에 따른 인삼분야 대응방안,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가락시장 경매활성화, 인삼연구기관 단일화, 인삼산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협활성화 협의회는 4차례 회의, 지역토론회 1회, 공청회 1회를 개최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비전과 개혁방향 및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3차례 회의와 1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류제조용 원료사용 및 제조방법의 다양화, 원료공급 시스템 구축과 국산원료 사용 촉진, 주세감면 및 유통규제 완화, 홍보 및 판매촉진·연구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2개 소위원회(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농어촌여성정책)를 구성·운영하였다.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소위원회는 12차례 회의와 1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 및 식생활교육 추진 기본계획,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농어촌여성정책 협의회는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농업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과 2007년 여성농업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제3분과는 3개 소위원회(수산기본법 제정, WTO체제하의 수산세계개선,

유통제도개선)를 구성·운영하였다.

수산기본법 제정 소위원회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및 수산관련 법률의 정합성 검토, 수산기본법 제정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수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WTO체제하의 수산세계개선 소위원회는 5차례 회의와 1차례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양 및 연근해 어선의 비과세 선용품 범위확대, 수리용 장비류에 대한 관세면제 품목 법제화, 어업용 면세유류공급 대상에 빠지선 추가, 어업소득세 잠정 중단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유통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표 2-1-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007년말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 원 장	황 민 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6명)	권 오 규	재정경제부 장관
"	장 병 완	기획예산처 장관
"	박 홍 수	농림부 장관
"	김 성 진	해양수산부 장관
"	임 상 규	국무조정 실장
"	김 현 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위촉직 위원(23명)	김 덕 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	김 연 순	한국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김 주 숙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	남 호 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문 경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민 승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박 규 석	한국수산물회 회장
"	박 의 규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	송 보 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	엄 성 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	우 정 규	한국여성농업인증양연합회 회장
"	이 광 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	이 병 철	전국귀농본부 이사장
"	이 봉 수	대통령농업특별보좌관
"	이 상 만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	이 종 구	수협중앙회 회장
"	이 주 희	부경대 대학원장(부총장)
"	이 학 영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	장 일 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정 대 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정 운 천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	조 희 숙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제2장 2007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1998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24,000톤이 소비되었다. 전체 사용량은 수도용 농약 사용량 감소에 힘입어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원예용 농약 사용량은 소득작목 재배 증가 등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1,104천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678천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사전구매 등 영향으로 2004년도에 747천톤, 2005년도에는 722천톤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478천톤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631천톤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7년도에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가 폐지되어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5년도에는 70만톤(24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20만톤(42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35만톤(4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보조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량 대비 2013년까지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690개소, 예찰포 151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교육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단가는 논·밭의 경우 ha당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농업사무관 조정래, 농업사무관 이상집)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농가에 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중소농,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실천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1995년~2007년까지 총사업비 2,405억원을 투입하여 879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6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4년말 기준 2.5%수준이었으나 2013년까지 10%(저농약제외)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매년 5% 수준씩 2013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를 읍·면 1지구조성으로 총 1,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지구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59개 지구 20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단지당 100억원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3개소도 추진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16억원을 조성하여 홍보, 판촉행사 및 학교급식확대를 추진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25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유통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농업사무관 김수일)

3. 토양개량사업 추진

토양개량사업은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547천톤(규산 294, 석회 253)을 지원하였다.

또한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 300천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337천톤으로 확대·공급하였고, 이중 규산질은 2006년도 240천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236천톤을 공급하였으며, 석회질은 2006년도 60천톤에 이어 2007년도에는 101천톤을 입상으로 공급하였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조정래)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국내 부존자원 활용 및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대, 벧짚처리비 등에 1,4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엔 271억원을 지원하였다.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의 저장·운송이 보다 편리해 졌으며, 작업능률 향상과 재배의 규모화가 촉진됨에 따라 국내 조사료 생산·유통이 활성화되어 전체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2006년 103천ha에서 2007년 123천ha로 19.4% 늘어났으며, 청보리 등 동계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06년 9.2천ha에서 2007년 12.7천ha로 38% 증가하였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0천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개발·보급 및 대규모 조사료 생산·유통조직 육성 등 지원 강화를 통한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전익성)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유희농경지에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 녹비 효과가 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호밀은 사료용으로 사용하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을 파종면적 기준으로 2006년도 136천ha의 재배에 이어 2007년도에는 134천ha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향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통한 녹비작물의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김수일)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 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액비유통센터(63개소, 2007년)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2007, 716개소 → 2008계획, 800개소) 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전담 조직으로 축산자원순환과를 정규 직제화 하였으며, 제도개선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친환경인증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신설(2007년 3월)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2007년 9월) 하는 등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하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2007년 6월) 수립·추진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 등을 설정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2007년 11월)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가로 농축산업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 부각, 농축산물 구매패턴의 안전성과 품질 중심으로의 변화, 동물복지 요구 등 축산환경의 급변에 따라,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축사시설 등 친환경축산모델의 개발·제공으로 친환경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농지법의 개정(2007년 7월 4일 시행)으로 농지 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반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여건이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요구하고 있고, 동물복지 등 사육환경의 변화, 가축분뇨의 자원화 진전 등에 따라 기존에 제작·보급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대체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보급된 표준설계도 중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수정·개편 및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반영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친환경적인 축사 설치 및 자원화 처리가능토록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한우사(육성, 번식), 유우사, 돈사(비육, 번식), 계사(육계, 산란) 등 7종과 퇴비사,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직선형, 순환형), 퇴비단여과시설(SCB), 호기액비화시설, 톱밥갈짚우사의 퇴비사 등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7종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전문가의 평가 또는 검증절차 없이 퇴·액비 생산용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공함에 따라 가동중단, 불량퇴비 생산 등 다수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을 전문가가 평가·검증토록 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평가를 통해 시설설치업체의 시스템 시공 후 농가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 여건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원순환팀 수의사무관 이성도)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의 위생과 안전만을 중요시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되면서 산업진흥 측면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련법은 미흡하였다.

식품과 관련된 법률이 34개에 달하였으나, 대부분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 중심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 중심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대체하여 식품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정부내 업무소관, 식품관련 업무의 이원화, 이중적 규제 문제 등이 제기되어 법률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8월)에서 식품산업육성업무를 농림부에서 담당토록 결정되어 입법 예고(9.4~27)를 진행하게 되었다.

비록 정부내에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농림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동 법의 제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법 제정에 대한 큰 방향은 합의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동 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국회는 시작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이런 과정 중에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로 식품산업진흥법(안)이 의원발의 되었다¹⁾. 이후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는 쟁점들도 상호 협의를

1) '식품산업진흥법'이 권오을의원 대표발의로 2007년 11월 6일 발의됨.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11월 22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행정부로 이송되어 12월 27일 공포(2008년 6월 28일 시행)되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총 6장 38조로 되어 있는 법률이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조사,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식품과 식문화를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한 식생활 표준 개발·보급 및 세계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시책 및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규격기준과 식품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규제행정의 영역에 있던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산업육성 정책을 농림부가 담당한다는 측면에서의 의의도 크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식품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여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식품산업정책팀 농업사무관 전한영)

나.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조직 개편

농업 생산액이 42조원인데 반해 식품제조업과 외식업만 해도 매출액이 100조원으로 농업의 약 2.4배에 이른다²⁾. 이러한 거대 시장인 식품산업의 육성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였다.

2)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7)에 따르면 2006년의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48.9조원에 달하며,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2007)에 의하면 2006년 외식업 매출액은 50.9조원에 달함.

농림부내의 식품산업 육성 관련 조직은 사실상 식품산업과 1개과가 전부였다. 일부 축산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축산국이 수행하고, 쌀 가공은 식량정책국이, 식품안전은 축산국과 농산물유통국의 소비안전과가 수행하는 등 식품관련 일부 업무는 여러 국·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순수하게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1개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관련 법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기존 식품산업과를 2개과로 확대하고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유통국의 명칭도 바꾸려는 시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농식품유통국으로 명칭을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여기서도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정확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유통이라는 명칭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수차례 협의 끝에 결국 기존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변경기로 하고, 식품산업과 외에 식품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제 명실상부한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국이 탄생하고, 관련된 과도 2개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³⁾

조직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식품산업 육성업무와 농식품 수출 지원업무에 대한 비중 증가를 반영하여 관련 조직을 확충하였다. 기존 식품산업 육성업무와 농식품 수출 지원업무를 1개과에서 수행하던 것을 2개과로 나누어 각각 담당토록 하였다. 기존 전통식품산업과 식품의 KS 등 품질관련 제도를 수출업무와 묶어 신설된 식품진흥과가 함께 담당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업무⁴⁾들은 기존 식품산업과에서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인력도 증원되어, 기존 1개과 14명에서 2개과 1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식품산업정책팀 농업사무관 전한영)

3) 이러한 조직개편은 2007년 11월 30일 시행됨.

4) 새로이 추가된 업무들로는 식품산업 통계조사, 전문인력 양성, 식품관련 기술개발 확대, 한식 세계화,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임.

다. 식품클러스터 육성 추진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담당하면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클러스터⁵⁾ 조성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생활 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등 식품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⁶⁾. 또한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향후 농업 성장은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소수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체로 자체적인 R&D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마케팅 능력도 미흡하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8.5천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이 92%를 차지하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40~60% 수준(국과위)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식품클러스터’란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결합하는 집합체를 의미함.

6) 농업 및 식품산업 시장 규모(생산액 기준)

- 농림어업 : (2000) 37조원 → (2004) 41 → (2006) 42

- 식품산업

· 식품제조업 : (2000) 37조원 → (2002) 43 → (2005) 48 → (2006) 49

· 외 식 업 : (2000) 36조원 → (2002) 40 → (2005) 46 → (2006) 51

<표 2-2-1>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현황

클러스터	주요 내용
<p>Food Valley (네덜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게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결합된 대표적 식품 수출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클러스터 로드맵 발표 이후 단기간에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 ○ 유럽 물류중심지인 입지를 활용하여 수입 원료를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여개 식품기업, 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가 입주하여 연 460억불 매출 ※ Nestle, Unilever, Danone, Monsanto, Heinz 등 세계적 기업 참여
<p>Öresund Cluster (덴마크-스웨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Öresund 대학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간 혁신적 R&D 체계 구축 ○ 14개 대학으로 구성된 Öresund 대학과 식품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간 혁신적 R&D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80억불 매출, 61,000명 직접 고용 ※ Nestle, ARLA, TetraPak, Danish Crown Beauvais 등 세계적 기업 참여 ○ Proviva 브랜드(건강기능식품)는 기업과 농업인이 상생(win-win)하여 상업화한 사례(연 600억원 매출)
<p>Napa Valley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 주산지에 R&D를 결합하여 프리미엄 와인 생산 및 관광객 유치(연간 1,900만명) ○ 연 520억불 매출, 고용인원 309,000명, 글로벌 브랜드(Mondavi 등) 개발
<p>Emilia-R. cluster (이태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기업 조합 중심으로 햄·치즈·파스타 등 전통적 특산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학 중심의 대규모 지방 연구기관 설립 ○ 연 540억불 매출, 고용인원 100,000명, labelling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

그 동안 농림부는 지역 특산품 중심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업의 복합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왔다. 시·군 지역 단위로 농업 생산에 가공, 마케팅, 관광 등을 접목하여 특화된 지역 농식품 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켜 관련 산업주체들의 소득 증대를 오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 단위 중소기업 클러스터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직접지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식품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통해 자국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 Food Valley, 덴마크와 스웨덴에 걸쳐 있는 Öresund Cluster, 미국 Napa Valley, 이탈리아 Emilia-Romagna Cluster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식품클러스터의 조성 형태는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특별히 강조된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여건과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식품산업도 혁신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클러스터 정책 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 계획을 확정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과 중소 식품클러스터를 이원적(two-track)으로 구축하여 광역과 중소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 식품클러스터는 R&D 허브로 신규 조성하여 세계 일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 중소 식품클러스터는 지역 특산품 기지로 확대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식품클러스터를 세계 5대 식품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기능성, 발효, 친환경·안전, 포장·기자재, BT·NT 등 식품분야 미래 성장형 핵심 5대 기술의 세계 일류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식품클러스터는 국가클러스터로 조성하되,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R&D 중심지로 조성하고 중소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킹(Networking)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주변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수출 지향형으로 조성하되, 초기 단계에는 핵심지원사업으로서 대학·연구기관 등 공공연구소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 역량 있는 기업 및 기업연구소 유치 활동, 공공·기업 연구소간 공동연구 등 연구협력체제 구축, 클러스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해외홍보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클러스터 기반조성 분야에 집중하고, 기반조성사업이 가시화된 후 클러스터의 생산단지(부지·시설 등)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를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08년도 사업비로 국고 20억원을 확보하였다.

현행 추진 중인 중소 식품클러스터는 지역농업클러스터, 향토산업육성, 신활력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 자원·역량의 최적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전역량 강화 등 내실화도 역점을 두되, 클러스터 지정 후 매 3년마다 정부지원(국고 50%)을 통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촉진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클러스터와 국가 클러스터 간의 공동 연구·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 공동개발, 연구인력 교류, 애로기술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중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첨단 고부가가치 식품기술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식품산업정책팀 행정사무관 문태섭)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로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05년 8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 1월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생물·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관리지침을 96개 품목에 대해 제정하고, 관련제도 운용을 위해 세부기준 및 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2007년도에는 GAP 인증품의 표시사항을 간소화(8개 항목→5)하고, GAP 대상품목을 96개서 100개로 추가하여 고시하였다.

GAP 인증업무를 민간주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31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시설에 대한 지원(21개소, 28억원)을 하고, 수확 후 처리시설 316개소를 지정하였다.

인삼 및 수출농산물 GAP 인증관리와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산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GAP확대를 위하여 GAP 민간인증기관 전담요원 교육(360명)을 실시하고, GAP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20천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관측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GAP참여농가수 : (2003) 9농가 → (2004) 357 → (2005)965 → (2006)3,659
→(2007)16,796

(소비안전과 전산사무관 문광규)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Farm)부터 최종 소비단계(Table)에 이르는 축산물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육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는 한편, 도축업·집유업(集乳業)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식육중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된 농가에 대해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출하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근육 위주의 검사에서 잔류량이 높은 신장 등 내부장기의 검사로 개선하기 위해 검사대상, 방법, 결과조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기 위해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식육중미생물검사는 그간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대한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미생물검사 확대를 위해 도축장이외에 유통단계인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 대하여도 권장기준을 설정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을 개정하였다.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도축장 HACCP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 제도를 의무 적용하도록 추진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 돼지, 닭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허가관청인 시·도에서 그 적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HACCP 지정신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돼지 도축장 97개소, 닭 도축장 41개소와 오리 도축장 8개소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유가공장 39개소, 식육가공장 124개소, 식육포장처리장 424, 알가공업 10, 식육판매업 18, 집유업 2, 사료업체 69개소, 돼지농장 67, 소농장 8개소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HACCP 지정 업체는 총 907개소이며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CCP 제도가 사육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적용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6년 돼지, 2007년 소 사육단계에 대한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추후 2008년에는 닭에도 적용할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표 2-2-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2007년 12월 31일 기준)

도 축 장				축산물가공장						기 타			
계	소·돼지	닭	오리	계	식육	유(乳)	식육 포장처리	알	집유	판매업	사료	돼지	소
146	97	41	8	599	124	39	424	10	2	18	69	67	8

자료 : 농식품부 축산정책단

다.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에서 일차적인 축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앙위생감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여 2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은 도축업 273, 집유업 49, 축산물가공업 1,856, 식육포장처리업 3,258, 축산물보관업 78, 축산물운반업 386, 축산물판매업 40,456개소 등 총 46,6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위반된 도축업 23, 축산물가공업 251, 식육포장처리업 304, 축산물보관업 4, 축산물운반업 30, 축산물판매업 1,948개소 등 총 2,62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

라.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목표달성 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품목을 중점으로 지역별·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수거검사 목표는 7,500건을 계획하였으며, 실적은 목표량보다 증가한 12,258건을 검사하였다. 수거대상 품목은 식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이 주 대상이었으며, 수거검사결과 총 6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마.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였다.

잔류물질검사는 크게 잔류조사(Monitoring), 규제검사(Surveillance), 탐색조사(Exploratory)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 총 125,342건을 검사하여 이중 0.23%에 해당하는 283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우선 선택하도록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확대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위생팀 수의사무관 강대진)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이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186품목 69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이중 1,477건이 잔류농약기준 초과 등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또한,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해 156건을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폐광산지역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6,959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납·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139건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21천명의 생산자와 23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소비자 참여확대를 위해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으며 농소정협의회 회원과 합동실태조사를 300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조사를 1,033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농림부, 농진청, 산하기관, 농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

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산물 안전성 대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안전과 시설사무관 최영기)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6월부터 식용으로 수입·생산이 승인된 모든 품목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하였다.

GMO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2007년 500명의 상주단속반을 편성하여 51천여개소를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4건을 적발하였다. GMO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2007년 교육 1,299천명, 홍보 2,933회)하는 등 GMO 표시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과학적 기반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성·정량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등 GMO 표시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과 수입산의 경우 각각 160개 품목과 국내가공품 211개 등 총 53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2007년 97.3%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단속기법 및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부정유통 신고망(www.naqs.go.kr)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6천명을 명

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팀 사무관 김종실)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2회(수출국·국내도착) 소독 및 검사(132건)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36개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215개소 405개)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20두)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87명) 등을 통해 29천건(74천톤)을 검색하였고 이중 탐지견 검색건수는 7.4천건(13톤)으로 총 검색실적의 25.3%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21개국 36개 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100천부)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21대)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2,598명)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104천두)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연 52회)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272천호)에 대해 소독(연 20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791개소 1,789명)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56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0두 이상 농장(연2회)과 수집상·중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2회 400천부),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를 색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은 2003년 72건 발생 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2-3>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돼지열병	406 (13)	5,866 (72)	779 (9)	811 (5)	1,074 (2)	58 (2)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률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방역팀 수의사무관 조옥현)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제정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농림부, 검역원, 축산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하여 2007년도 말 까지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의원별 입법안의 기본취지와 의원별 지적사항 등을 기초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과정 및 법안발의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종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8년 1월 3일 공포하였다.

《시행령 주요내용》

- 기타 동물의 정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민간단체 정의
-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 확보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 임무, 위촉 및 직무범위 등

《시행규칙 주요내용》

- 동물의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등
-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 동반시 조치사항
- 동물학대 행위 중 수의학적 처치 등 정당한 사유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나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복지계를 신설 2명 인력을 확보하였고, 동물보호홍보·교육을 위하여 8억원을 확보하였다.

다. 유기동물 처리현황

□ 2007년도 유기동물 포획 및 처리현황

- 2007년도 유기동물은 77천두로 2006년(69천두)보다 12% 증가하였다.
- 증가사유 : 들고양이 유기 증가

구 분	포획두수	처 리 방 법						
		계	인 도	입 양	안락사	기 증	폐 사	기 타
개	53,827	53,827	7,647	9,892	22,963	4,357	7,567	1,401
고양이	23,256	23,256	1,740	1,705	7,672	407	3,674	8,058
계	77,083	77,083	9,387	11,597	30,635	4,764	11,241	9,459

※ 기타 동물 256마리를 포함하여 77,339마리 포획

□ 유기동물 전년대비 처리비용

- 2007유기동물 마리당 처리비용(96천원)은 2006(85천원)에 비하여 11천원 증가하였다.

	2006			2007			2008(P)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관리두수(천두)	69	51	18	77	54	23	74	52	22
소요예산(백만원)	5,865			7,399			7,862		
두당 평균비용(천원)	85			96			106		

(동물방역팀 서기관 김문갑)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가. 영농규모화사업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2%,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 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5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7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855ha 3,400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770ha 2,100억원, 농지임대차가 5,058ha 1,273억원, 농지교환·분합이 27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7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875천호 중 8.0%(70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들이 전국 벼 재배면적(950천ha)의 34%(326천ha)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ha이상 규모 쌀 농가가 48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40천호(83%)를 차지하였다.

<표 2-2-4>

2007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7 실적(B)		집행률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8,392	340,000	7,855	340,000	100
농지매매	2,890	210,000	2,770	210,000	100
임대차	5,452	127,300	5,058	127,300	100
교환분합	50	2,700	27	2,700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 이상 72세 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매도 및 임대 이양 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논에서 밭과 과수원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07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2,345ha 11,263백만원으로 이 중 매대이양이 246ha 4,150백만원, 임대이양이 2,099ha 6,178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75.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476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95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52.1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51.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하였다.

<표 2-2-5>

2007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7 실적(B)		집행률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사업비	2,000	11,263	2,345	11,263	100
직불금	2,000	10,328	2,345	10,328	100
운영비	-	935	-	935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홍만의)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과거 경지정리된 지역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지역을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정리된 우량한 농지를 주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거나, 용수로와 배수로를 신설 및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농로는 폭 3~7m로 확장·정비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7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2조 904억원, 지방비 6,504억원 등 2조 7,408억원을 투자하여 101천ha를 완료하였다.

<표 2-2-6>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실적	2008이후
사 업 량	151	100.7	3.7	46.6

주 : 봄마무리 기준. 목표면적 조정(2008년 2월) : 164천ha → 151천ha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2003년에 설정된 목표면적 164천ha를 151천ha로 조정하였다.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 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밭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또한,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발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712	110	77.4	4.0	28.6
사 업 비		25,794	17,997	1,016	6,7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우리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우리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실적	2008이후
사 업 량	35	17.5	1.3	16.2
사 업 비	37,071	17,931	1,406	17,734

자료 : 농림수산식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라.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2007년에는 2,103억원을 투입하여 약 3.5천ha를 준공함으로써 2007년까지 총 대상면적 188천ha의 73.1%인 137.5천ha를 완료하였다. 최근 기상변화로 강수량이 증가되어 침수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은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188	137.5	3.1	47.4
지하배수	47	3	-	44
사 업 비	43,252	29,038	2,085	12,12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이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7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흠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4,535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3,800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34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395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2-10>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7까지		2008계획		2008이후		
		%	%	%	%			
공사관리수리시설	8,769	100	5,728	65.3	80	0.9	2,961	33.8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28	62.1	12	5.8	66	32.1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198	36.5	81	2.5	2,005	6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

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규모 용수개발의 사업준공(경북 성주, 전북 동화 7,380ha)에 이어, 2007년도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89개 지구에 2,370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지구 4,490ha를 준공하는 등(지표수보강 1,707ha, 소규모용수개발 389ha 준공)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1>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6까지	2007실적	2008이후
대 · 중규모	118.8	60.5	4.5	53.8
소규모	11.0	0.5	0.4	10.1
지표수 보강	31.8	22.5	1.7	7.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를 창출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2지구 28만 3천ha를 추진하여 그중 금강, 평택, 계화도 등 15지구 16만 2천ha를 완공하고 현재 7지구 12만 2천ha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시행중인 7지구에 국고(농특회계)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261억원 등 총 3,361억원을 투입하였다.

<표 2-2-1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6까지	2007실적	2008이후	
계	22지구	283,227	72,782	50,448	3,550	18,784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59,015	36,681	3,550	18,784	
시행중	금 강Ⅱ	43,000	7,277	4,259	520	2,498	1989~2010
	미호천Ⅱ	4,430	2,975	2,370	120	485	1989~2010
	홍 보	8,100	4,136	2,785	250	1,101	1991~2010
	영산강Ⅲ-1	13,160	4,706	3,289	251	1,166	1985~2010
	영산강Ⅲ-2	7,840	3,794	1,772	300	1,722	1989~2010
	영산강Ⅳ	16,730	7,520	820	210	6,490	2001~2010
	새 만 금 (외곽시설)	28,300	28,607	21,386	1,899	5,322	1991~2009 (외곽시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주무관 김성률)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 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2007년도에는 10개 지구에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1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표 2-2-13>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		%		%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93	100	13	14.0	1 (9)	1.1	79	84.9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3. 농업전문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도전과 열정으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창업농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5세 미만의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인턴으로 선도농가에 실무연수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시
문제해결을 돕는 창업농 멘토제(후견인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2007년도 추진상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과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구분되는데, 2007년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434명을 선정하
여 총 1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1,034명을 선정하
고 1인당 평균 약 5,500만원을 지원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천만원~2억원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창업농
자금은 연리 3%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규후계농
업인 육성대상자는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평가결
과에 따라 2~5천만원 범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때 지원조건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과 동일하다.

농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인턴)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사업으로 인턴은 선도농가에 현장실무연수를 통하여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 60
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07년에는
111명을 지원하였다.

창업농 멘토제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후견을 통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2007년에는 121명을 선정
지원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지 5년 이상 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2007년 1,722명을 선정, 1인당 8,000만원 한도로 1,200억원을 지원하였다.

3) 평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약 2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6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경영인력과 기술서기관 조강제)

나. 농업법인 육성

1) 농업법인제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표 2-2-14>

농업법인제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발 기 인	· 농업인 5인 이상	· 합자(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2인 이상), 유한(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1인 이상)
의 결 권	· 1인 1표제(인적 구성)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 출자지분(물적 구성)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 자	· 농지, 현금, 현물	· 농지, 현금, 현물
출자한도	· 제한 없음	· 총출자액의 3/4까지 비농업인 출자가 가능
농지소유	· 제한 없음	·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 1/2이상 비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

1994년 농업법인에 농업생산, 가공·유통 기능까지 포함한 생산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면서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 육성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법인 현황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208개소에서 2007년 5,520개소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농업법인의 연간 총 매출규모는 2000년 1조 7,003억원에서 2006년 4조 6,652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당 자산은 2000년 11억 8백만원에서 2007년 15억 1천만원으로 36% 증가하였으며,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86%에서 2007년 188.5%로 평균98%p가 감소하여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2007년 법인당 출자금은 2억7천만원이며, 평균 출자자수는 20명선이고, 농업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0년 5억5백만원에서 2007년 17억3천만원으로 243%가 증가하였다.

특히, 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2000년 5백만원에서 2006년 3천만원으로 6배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8.6명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농업법인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농업법인의 지원우대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시행예정)에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200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4)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증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주요 추진실적>

◇ 법인 성장유도방향으로 세제보완

- 농업법인 창업 후 2년내 취득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농지구입 정책자금 이자를 농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 농업법인의 농지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업용 창고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간(2005~2009)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 친환경 농업용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 외부자본과 전문인력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

-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 완화(추진중)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과 농지소유제한 완화(1/2 → 1/4)

◇ 기 타

- 농업법인협의체 구성 → 한국농업CEO연합회 설립(2006.3)
- 창업보육센터 권역별 확충 및 농업벤처펀드 신규조성 등 농업벤처 육성
-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지원제도 개선
-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농업회계처리지침 마련,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중장기 검토(추진 중)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업 및 기업 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로,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 및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의 시대이다. 이러한 지식농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농업경쟁력 제고함은 물론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도 23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는 등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41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였다.

지금까지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하여 신지식농업인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인에게 확산·보급시키기 위한 기술교육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문농업인인 농과계 학생에 대한 지식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일반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신지식농업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발굴은 물론 정부시책을 수행하고 전달해 주는 농업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1999~2007년까지 작목별 신지식농업인 선정 현황>

계	경 종	과 수	채 소	특 작	화 훼	축 산	가공 및 기타
241명	20	34	32	33	32	47	43

*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생산기술이나 농산물 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경영인력과 기술서기관 조강제)

라. 농업인 교육훈련

1) 도입배경 및 의의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이며 평균수준의 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교육인프라 구축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신지식·기술·경영능력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및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현상 및 농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교육훈련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농업인력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우리나라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2) 2007년도 추진상황

맞춤형 농정과 연계하여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 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돈 되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 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지자체의 교육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참여 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하였다.

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확충 및 교육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3) 주요 정책 내용

자조금이 조성된 23개 품목단체 및 비자조금 6개 단체에 대해 각 품목별 고품질 생산기술, 안전성관리, 가공 및 생산 마케팅, 농가조직화 등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특성 수요를 반영, 93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품목교육 추진 방식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자조금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농업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이 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35개 과정의 경영·리더쉽 교육을 운영한다. 농업인단체의 교육운영상 자율성·신속성을 확대하되, 투명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기준을 개선하였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 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을 확립해 나갔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6년 6개도 4개 시·군에서 2007년에는 전국 9개도, 3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다. 교육기관별 유사 중복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별·분야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2006년 전문연수기관을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역할 부여를 하였으나, 연수전문기관이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하여, 선진농업기술 및 농촌개발 등 「테마별 기획 연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문연수기관도 2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지원도 확대 된다. 2006년 현장체험교육 참여 농고 10개교를 2007년에도 계속 지원하였고,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으며 또한, 농고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농고 운영체계 개선 및 농고-농대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하였다.

졸업 후 농업을 희망하는 농과대 2학년생을 대상으로 3년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6년 3개 대학에서 2007년 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농대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였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중 또는 수료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 지원을 제공하였다.

농업교육기관의 모든 정보와 농업인의 교육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확대하였다.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정보를 2007년에는 농진청, 농협 등 모든 농업교육기관의 정보를 통합·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였다. 2007년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그룹

및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 농업교육분류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현장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팅도 병행하여 지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2006년 122억원에서 2007년 13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4) 평 가

농업인단체 등의 교육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 추진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문제해결형 기술습득, 농업금융 활용방법,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교육내용 및 모델이 시도되었고, 현장 교육수요가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교육기관의 노하우와 교육기법을 접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관광성격이 짙었던 해외연수를 전문연수기관이 계획 수립·사전교육·현지진행까지 일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구성되고, 지역단위 교육목표의 공동설정 및 기획기능 수행으로 중복교육이 감소하고,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육수요조사·기획부터 자체평가까지 교육운영 업무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마. 여성농업인 육성

1) 개 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7년에는 총인구의 약 6.8%인 3,274천명으로 줄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7년에는 1,684천명(농가인구의 51.4%)으로 감소하였다.

<표 2-2-15>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14,422	10,827	6,661	4,032	3,530	3,415	3,434	3,304	3,274
남성 (%)	7,164 (49.7)	5,415 (50.0)	3,279 (49.2)	1,972 (48.9)	1,715 (48.6)	1,654 (48.4)	1,677 (48.8)	1,607 (48.6)	1,590 (48.6)
여성 (%)	7,258 (50.3)	5,412 (50.0)	3,383 (50.8)	2,060 (51.1)	1,815 (51.4)	1,761 (51.6)	1,757 (51.2)	1,697 (51.3)	1,684 (51.4)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2005), 농업조사(2007)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하였고, 2001~2002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완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 증진 그리고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농가경영협약 보급을 위한 교육 지원

농가경영협약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영농계획의 수립, 노동에 대한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협약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농가경영협약’을 교육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139쌍을 교육했으며 144농가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각종 위원회 및 협동조합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2005년 30.5%, 2006년 33.1%, 2007년 23.4%이며, 지자체 농정위원회 여성위촉비율은 2006년 22%, 2007년 3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1년 19.6%, 2006년 26%, 2007년 28%, 여성대의원수는 2001년 1,924명 2006년 8,530명, 2007년 10,165명, 여성임원수는 2001년 94명 2006년 348명, 2007년 349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성임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여성농업인 단체주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2007년 주요 지원내역을 보면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농림수산식품부 321백만원, 농협 25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1%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다.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29,302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하기 위한 경영혁신 및 리더십교육 1,560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50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을 양성하고자 농림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24명, 2003년 22명, 2004년 19명, 2005년 23명, 2006년 25명, 2007년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강사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여성농정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05년 30명, 2006년 40명, 2007년 23명의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마)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해외연수 실시

젊고 유능한 여성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1992년부터 후계여성농업인을 선발하였으며, 2007년까지 총 7,579명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였다.

2004년부터는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의 경우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신청자 우대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68명의 여성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선정되었다.

한편,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선진농업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체험하게 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7년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6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유럽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2-2-16>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411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147	158	144	168

* 2004년 이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환금성이 높은 원예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농가에서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원예작물 재배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 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노동의존도가 높은 밭농사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고추·토마토 합접식 접목 로봇 등 6종의 여성친화적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2001년부터 총 43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31종에 대하여 현장접목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2-17>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단위 : 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접목 시험	농기계 개발
31	41	5	8	7	12	4	5	5	3	4	2	4	7	2	4

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인 농어가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이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월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만 5세 100%) 수준이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4년은 사업 첫 해로 월평균 27천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29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30천명에 대하여 3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3천명에 대해 440억원, 2007년에는 35천명에 대해 557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으로 인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이들에 대한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며 다른 조건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동일하다. 월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만 5세 50%) 수준이다.

2006년은 사업도입 첫해로 23천명에 대하여 19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22천명에 대하여 3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8>

연도별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천명/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7	29,204	30	38,308	33	43,998	35	55,65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	-	-	23	19,226	22	30,288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김일상)

바.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 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 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2007년도 추진상황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6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6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학교),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2-2-19>

제6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김지현	10백만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우 수 (2)	안창성	5	숙훈증 발효 흑마늘
	최주경	5	토종 흰민들레 및 가공품
장 려 (3)	곽영준	3	버섯 재배 원목용 종균 자동주입 장치
	김경호	3	진동형 땅속 작물 수확기
	김종건	3	복합생균제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제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사업은 우리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2-20>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1) 2007년도 제도개선 내용

2006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사업과의 중복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이하 농가 3농가 이상이 모여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농가경영컨설팅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컨설팅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대상자 우선순위에 자원순환 농업을 하는 경영체를 포함하여 선정에 우선권을 주었다.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자원순환 농업을 하는 경영체 포함

또한, 법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단가를 시·군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컨설팅의 질이 서로 다른 사례가 있어 지원단가를 세분화하면서 정액으로 설정하여 컨설팅 서비스가 표준화

되도록 제도화하였다.

- * 지원단가 : (2006) 법인 30백만원 이내 → (2007) 법인 10백만원,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는 30백만원 이내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우처 쿠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였다.

- *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쿠폰을 지급하고, 농가는 컨설팅 서비스 희망업체를 선택한 후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
- * 업체는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군에 컨설팅 서비스 대가를 요구

아울러, 사전 교육을 통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농업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는 우리부에서 선정하였으며, 일반 경영체는 현행대로 시·도(시·군)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능력있는 농업경영컨설팅업체를 유입하기 위하여 2006년 인증 42개 업체 외에 추가로 6개 업체를 인증하여 46개 업체가 1,080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 * 컨설팅업체 인증 : 우리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컨설팅업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의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 * 애그리에듀넷에 컨설팅 업체 Pool을 게시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및 컨설팅 실시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농업관측사업의 출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2007년 1월 3일 공포).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액이 많고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생산·출하와 재고 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및 기타 기상여건에 따른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생산과 가격 추세를 전망하는 예측정보를 마련,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의사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체 및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농산물거래나 출하조절과 소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모두 28개 품목에 대해 관측을 실시하였고, 쌀은 2006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7년부터 정식 관측대상품목에 포함하였으며, 콩은 2008년에 추가하여 8월에 첫 관측정보를 제공하였다. 2008년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7년에는 13회 실시하였고, 쌀 POS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정보를 관측보로 제공하였으며,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다변화를 모색하여 중국 외에 미국, 칠레,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총 7개국에 44명의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주재국의 유통·가격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5년 9월부터 북경 및 산둥성의 농업경제연구소와 활발한 정보교류사업을 정착시켜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가격정보를 비롯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 ‘농업부 정보센터’간의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여 한·중간 정보교환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곡물류 및 중국통계자료까지 교환품목을 확대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생산국의 생산·유통 및 수출체계와 정책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보교류체계를 활성화하고,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토록 하는 등 해외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2007년에는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연도별 수급관측모형(KREI-COMO)을 개발하여 예측 능력도 향상시켜 오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⁷⁾,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는 매일 수집, 분석·가공한 관측정보를 품목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해당 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관측보(월보·분기보)에 담아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모니터요원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배포함과 아울러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는 주산지 속보 15회를 포함하여 총 58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고, 3만5천명에 이르는 이메일(E-mail) 회원에 대하여 매일 e-농업관측 정보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제공 해 오고 있다. 매년 연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특히

7)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2006), 수출입정보(2007), 저장정보(20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개최한 『농업전망 2008』에는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 등 35개의 다양한 소주제를 발표하고 전망하였다.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의 약 75%가 관측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농업관련기관 종사자의 92%가 농업관측정보가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최근 일반 소비자들의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 생산자 위주의 관측정보에서 소비자를 위한 소비관측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9년에는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기 수준에 따라 대응책을 미리 구축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시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품목별 전문가 양성 및 위성정보를 이용한 농업관측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관측위성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등 관측기법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21>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 표 시 기	
채소류 (9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과일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5 ~ 12월	10일
과채류 (7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3 ~ 11월	"
축산류 (5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2, 5, 8, 11월	25일
	육계	2 ~ 12월	"
곡물류 (2개)	쌀, 콩(2008)	1, 5, 8, 11월 쌀 속보 9, 10월	15일

(정책통계담당관실 통계사무관 권영욱)

8) 농업관측사업 수요자 조사(2007년 11월)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7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260개를 선정하였고 산지유통시설 APC 254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0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표 2-2-22>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4)	사업연합형(9)	전문마케팅법인형(6)
20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지역조합주도) ▪ 나주·합천(시군연합) ▪ 햇사레(도간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젤영농조합법인 ▪ (주)논산수출물류센터 ▪ (주)농산무역
20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연합) ▪ 부여·여주(시군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통통 ▪ 풀빛 영농조합법인
2007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진주(시군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 2006년도에 6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8개)에 대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심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2007년도 선정된 4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 1%의 유통정책자금(62,750백만원),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19개 조직 80,578백만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16개 조직 350백만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4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105명 13,500백만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팀 서기관 김상근)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자 등이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출하율이 향상되고 농산물 상품성도 향상되었다.

< 농산물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 출하율 >

	1998	2004	2005	2007
포장화율(%)	17.1	50.4	54.5	73.6
표준규격출하율(%)	75.1	85.4	87.8	92.9

2002년부터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 및 균일화된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출하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공동선별 물량이 2002년 158천톤에서 2007년에는 391천톤으로 늘어났다.

< 공동선별물량 및 지원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동선별물량(천톤)	158	227	273	306	353	391
공동선별비 지원(억원)	24	34	50	70	83	98

2007년도에는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공영도매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농가,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선별·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공동계산한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선별비를 지원하였으며,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하였다.

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규모는 452억원으로 122여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말 현재 73.6% 수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2013년까지 80%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비안전팀 행정사무관 강경란)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농산물 유통비용은 2005년말 현재 26조 3,379억원 수준으로 소비자 구입액 58조 5,287억원 대비 45.0%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성이 낮고 포장화율이 낮은 엽근채류(68%), 화훼류(69.7%), 양념류(64.8)의 유통비용 비중이 높은 반면, 식량작물류(27.4%), 축산부류(42.7)는 유통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생산자 조직,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지게차,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기계화하여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생산자 조직 등이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을 풀회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기기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마늘 포장유통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공영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배추·무가 산물형태로 출하되어 불투명한 수량계산, 속박이 발생 등의 거래 불신 초래 및 물류효율화를 저해하고, 도매시장내에서 재다듬기·재선별로 유통비용 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을 급증시켜 오수·악취로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배추의 상품성 제고, 물류효율화, 투명한 거래,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포장유통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 포장유통 시범사업(2006년 9월~10월)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기간에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가 전량 포장되어 반입되었으며, 시범사업 평가회(2006년 12월) 개최 결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2006년 12월 13일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하여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제로 선정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2005년 4월~8월)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2006년 12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증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도매시장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국무회의 및 2006년 12월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3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동법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법인간,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안전성기준 위반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 출하신고

제를 2009년부터 의무화하였으며, 시장내의 농수산물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하자와 유통주체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출하자를 보호하는 한편 도매시장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김병준,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4. 축산물시장 차별화

축산구조를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2007년은 축산물브랜드발전 1단계 대책이 마무리 된 해로서 브랜드 사육 비중이 2004년에 한우가 24.8%, 돼지가 45.0%이던 것이 2007년에는 각각 32.6%, 51.7%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시행 원년으로서 ① 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소 유전자(DNA)감별법을 활용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2004년 8월 4일)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음식점 영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는 축산물판매업, 식육가공업 등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주도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소비자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2004년 1월 29일)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축산물의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유통기한 경과나 무허가, 미신고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여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범경찰관을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다.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송광현,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김대균)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기본적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 건강 등 삶의 질과 연결되면서 김치,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한류 영향으로 우리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농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사업,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사업 시행에 의한 시설재배면적 증가 및 기술발달,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성, 수출업체의 영세성, 수출품목의 다양성 미흡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국가간 식습관 차이라는 전통적 요인 외에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등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어려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극복을 위해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 수요기반 확충, 수출증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농식품 수출은 고유가, 안전성규제강화 등 수출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9% 증가한 2,532백만불을 달성하였는데, 신선농산물은 597백만불, 가공농식품은 1,935백만불이었다.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대량생산하여 국제농산물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에 149개 이던 단지수가 2007년에는 183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중점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에 대비하기 위해 166회에 걸쳐 수출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농가·영농조합·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채소류 안전성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개방화 시대에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수출이 유망한 30품목을 발굴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개발수출을 지원하였다.

다. 한류 및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동아시아에서 한류 드라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장금’의 양미경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외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여시켜 한국 농식품 및 식문화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153개 재외공관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부와 수출협력 MOU를 체결(2007년 4월)하고 7개국 11회 행사를 통해 수출확대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우리나라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Whimori Week’를 지정하여 캠페인 요리교실, 판촉전 등 종합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 화훼가 일본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다.

권역별 유망박람회 위주의 참가 박람회 선정 및 한국관 내 요리시연, 시음·시식,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참가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개별참가박람회 지원 확대를 통해 틈새시장 및 신규시장 개발에도 매진한 결과, 2007년에는 총 141개 박람회에 참가하여 301백만불의 수출계약고를 달성하였다.

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극대화

정부는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DDA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 또는 철폐에 대비하여 고품질·브랜드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농수산무역 정보망(www.kati.net)을 활용 수출가격, 해외바이어 등 691천회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틈새시장 한국 농식품 진출여건 조사, 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해설, 주요국 수입제도 조사 등 13건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식품산업진흥팀 농업사무관 변상문)

2.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17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연유, 분유 등 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표 2-2-23>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 도 별	개방품목수	주 요 품 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221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1.7%
1995. 1. 1	194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7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4.9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8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4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7
2008. 1. 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49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민어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녹두, 메밀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녹두, 팥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8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자협상과 기술서기관 정종용)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400억원을 투자하여, 검역시설 및 장비 확충, 최신 검역기술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이후에도 동물검역 분야는 종전의 기능강화 계획을 연장하여 2008년까지 400억을 투자하는 제5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물검역 분야도 2016년까지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식물검역발전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체계를 확립함으로써 DDA협상,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쌀협상과 WTO/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년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5년 7월 1일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편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양정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은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하던 비축기능은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가격지지에 따른 소득보전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수확기 출하

물량의 조절은 RPC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국 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팀 사무관 박선우)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 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종전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수확기에 일정한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용 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연도말 재고를 86.4만톤 수준으로 연중 43.2만톤을 매입·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되, 제도의 정착률을 위해 연차별로 감축(2005년 57.6만톤, 2006년 50.4, 2007년 43.2만톤)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57.6만톤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수확기 가격폭락으로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14.4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2005년산 미곡은 총 72만톤을 매입하였다.

2005년의 경우 제도시행의 첫해로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큰 폭의 쌀값 하락 등 혼란이 야기된 바 있어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정착률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2006년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도 공공비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획량 50.4만톤을 매입하였다.

2007년도 공공비축 매입 계획량은 43.2만톤이나 실제 매입량은 1.5만톤이 부족한 41.7만톤을 매입하였다.

매입이 저조한 사유로는 2007년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단경기 쌀값 상승기대 심리로 일부 대농(전업농)등이 출하를 기피함에 따라 2005년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계획량 미달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물벼 산물(산물벼)매입을 축소하는 대신 건조벼 산물(톤백)매입을 시범실시하였다. 건조벼 산물(톤백벼)매입은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07년도에 시범실시(약 4천톤)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한성권)

다. RPC 경영혁신

RPC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규모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RP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경영우수 RPC와 통합RPC에 집중하는 “RPC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결과, 잦은 평가지표의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의견과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전년도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구분	수익성 지수			규모화 지수			공익성 지수				계
	총자산 회전율	영업 이익율	유통 부가 가치율	매출액	건조 능력	저장 능력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계약 재배 비율	친환경 쌀 판매량	
농협	15	15	10	15	5	5	10	10	10	5	100
민간	15	10	10	15	5	5	15	10	10	5	100

평가결과 288개 RPC(농협 117, 민간 111)에 대해 벼 매입자금 4,538억원을 등급별로 차등지원(A등급 27.5억원~E등급 7.5억원, 등급간 2.5억원 차등, F등급 지원 제외, 금리 0~2%)하였다.

<표 2-2-24>

RPC 경영평가 등급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분	A	B+	B	C+	C	D+	D	E+	E	F
지원액	27.5	25	22.5	20	17.5	15	12.5	10	7.5	지원제외
(금리)	0%	1%	1%	1%	1%	2%	2%	2%	2%	-
(비율)	(5%)	(5%)	(15%)	(10%)	(15%)	(10%)	(15%)	(5%)	(15%)	(5%)

한편, RPC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경영부진 RPC의 통합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7년말까지 11개 시·군(충남 연기·부여·예산, 전북 정읍·고창·김제, 전남 보성·함평·장흥, 충북 진천, 경기 안성) 36개 농협RPC가 통합(200개소 → 177, △24)하였으며, 통합된 RPC는 각각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경영과의 분리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합 RPC에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지원,

등을 통해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시에도 우대하여 쌀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 쌀 산업의 선도적인 경영체가 되도록 육성하고 있다.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대수)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를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논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증대시켜 토양을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120만톤에서 2007년에는 135만톤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는 시용 편의 및 토양 개량효과 제고를 위하여 입상(알갱이 모양)공급(80%)을 추진하였다.

둘째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질 좋은 쌀 품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 육성방향은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목표로 5개 품종을 개발하

였다. 일반적 고품질 품종 이외에도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을 개발(25개 품종)하여 특성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2007년 벼 종자 갱신율은 42%이며, 종자 갱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선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가지로 대표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농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였다.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전국 벼 재배면적의 38%로 확대 추진하였다. RPC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균일한 원료 곡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 및 재배법을 표준화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여섯째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2007년에는 24건(171톤)을 적발하였고,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명의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및 브랜드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쌀을 기호에 맞추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영국)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WTO체제 출범이후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는 수출국의 국내 보조금 삭감과 관세인하, 시장개방 압력의 증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국내 보조금 감축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소수식량수출국에 많은 수입국이

의존함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시에 식량이 부족할 경우 수출국의 식량무기화로 필요한 식량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표 2-2-25>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

(단위 : %)

품 목		2003	2004	2015
쌀	(A)	97.4	96.5	90.0
맥 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콩)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 칼로리 자급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세계 식량사정의 불확실성하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을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수입과 비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식량생산의 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우리의 생산기반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식품의 50%이상, 주요곡물의 70% 수준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식량자급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식량소비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반영과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코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서를 기준으로 부내검토와 중앙농정심의회 심의(2006년 12월 18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2006년 12월 29일)하였으며 이를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2007년 12월 29일)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칼로리자급률,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DDA/FTA협상 등에 따른 국내외 수급여건을 반영코자 5년마다 10년 뒤의 목표치를 수정·보완키로 하였다.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선우)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가. 채소류

정부에서는 시장개방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하고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의 한 방법으로 생산액이 많고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업관측사업(1999년부터 본격실시)을 실시하여 기상정보, 재배의향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미래정보를 신속하게 예측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품목선택, 영농규모 결정 등 영농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기간 중 수급조절의 방법으로 민간수매지원(1968년), 정부비축사업(1978년), 채소수급안정사업(1995년)을 통해 채소류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출하를 유도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수매비축, 저급품 출하 자제, 소비확대 홍보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표 2-2-26>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8.9	60,994	586.6	390,786	775.5	776,807	911.3	828,349	1,041.7	833,717	1,178.1	829,822	817.3	762,965
정부수매 비축	8.9	17,914	57.5	24,909	14.6	18,534	0.7	1,093	-	-	296	635	325	697	-	-
고추	3.5	15,204	-	-	-	-	-	-	-	-	-	-	-	-	-	-
마늘	1.1	1,602	14.5	16,759	14.6	18,534	0.7	1,093	-	-	296	635	325	697	-	-
양파	4.3	1,108	43.0	8,150	-	-	-	-	-	-	-	-	-	-	-	-
민간수매	42.3	8,805	76.6	18,566	45.6	20,848	37.8	23,564	33.3	21,538	44.7	23,786	47.1	23,493	53.3	26,810
마늘	20.2	8,093	14.1	11,566	14.9	14,079	17.7	18,010	12.8	16,386	14.5	15,982	14.5	15,048	15.1	18,514
양파	22.1	712	62.5	7,000	30.7	6,769	20.1	5,554	20.5	5,191	30.2	7,804	32.6	8,445	38.2	8,296
고추	-	-	-	-	-	-	-	-	-	-	-	-	-	-	-	-
정부출하 조정	22.8	1,753	3.8	217	28.4	1,404	-	-	89	4,572	44	7,096	61	3,432	14	2,655
계약채매	-	-	81	17,302	498	350,000	737	752,100	789	802,200	657	802,200	745	802,200	750	733,5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과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협약·명령제(2000년)와 자조금제도(2000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 만큼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2000년) 2개 품목에 64백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2007년 23품목에 7,828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나. 과일류

정부에서는 과일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과실계약출하(수급안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7년은 사과, 배, 단감, 감귤을 대상으로 총 3,38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규모는 전년과 비교할 때 사업물량은 26천톤(17.3%), 참여농가는 1,346호(12.2%) 증가하였다. 2007년산 과일이 전반적으로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약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재배 물량의 단경기중 분산 출하로 과실가격안정 및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감귤 및 배 가격 폭락으로 계약출하사업 적립금에서 각각 7,017백만원, 1,335백만원의 농가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사업 참여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또한 2001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유통협약·명령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06년까지 5개 품목 11회에 걸쳐 1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은 사과 우박피해로 인한 품질저하 및 겨울배추, 대파의 과잉생산으로 각각 유통협약이 체결되어 시장격리에 따른 손실보전금 3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감귤은 전년대비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하여 수급상황이 불안해져 5년 연속 유통명령을 공포하여 비상품 과일의 시장출하 제한을 강제하는 등 생산자(단체)의 고품질 과실 출하의식 제고와 동 기간중 감귤가격 안정을 도모하였다.

(과수화훼팀 농업사무관 안형덕)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돼지고기는 1997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산지가격이 낮을 때는 수매비축 하였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2004년 4월 1일부터 도축장에서 등급관정을 받는 돼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양돈자조금(두당 400원, 2008년부터는 600원)의 100%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등·안심, 후지 등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해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실시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는 러시아, 대만, 몽골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하였다.

<표 2-2-27>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쇠 고 기	7,414	8,284	9,418	8,645	10,806	11,300	12,075
돼지고기	2,474	2,586	2,378	3,420	3,635	3,481	3,247
닭 고 기	2,356	2,528	1,854	2,481	2,469	2,162	2,030
계 란	774	981	865	1,179	1,204	991	995
우 유	609	610	625	646	696	699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실제수취가격임.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계 D/B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조금 및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가금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비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존의 TV광고 위주의 소비홍보를 지양하고, TV자막광고, PPL광고, 생활정보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광고효율을 제고시켰다. 또한 기존의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사업, 가축계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축산경영팀 사무관 이연섭, 사무관 김영만)

4. 가축개량 활성화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2007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표 2-2-28>에서 보듯이 개량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우개량은 개량농가의 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한 결과, 2007년에 실시한 한우개량추세조사에서 한우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67kg으로 나타나 1997년 500.5kg 대비 13.3% 증가하였다. 또한,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1997년 18.4%에서 2007년 50.9%로 277%나 늘어났다.

<표 2-2-28>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한 우											
- 18개월 체중 (kg, ↑)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71	567	
- 1등급출현율(%)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50.9	
○ 젖 소											
산유량 (kg/305일)	일반농가	5,972	6,135	6,539	6,749	7,017	7,117	7,286	7,417	7,584	7,711
	검정농가 (초산우)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9,556 (8,554)
○ 돼 지(요크셔, ↑)											
- 일당증체량(g)	608	649	664	647	654	648	642	637	645	649	
○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318	
- 육용계 체중 (6주, g)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2007년에 추진한 한우개량 시책을 보면,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정착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 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 12개소(농가 10, 도센터 2), 2006년 12개소(농가 11, 도센터 1), 2007년 10개소(농가 10)로 총 34개 육종 농가를 선정 추진하였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7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3,139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4,845두와 이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69,669두에 대하여 4,4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밖에 2007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4두와 보증씨수소 20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55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990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811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00,264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200,264두에 대한 검정비(총 2,123백만원)를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2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9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69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7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845kg 증가하여 두당 23.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국내 젖소 두당 평균산유능력 추이(305일 기준)

- 검정농가 : (2005) 9,014 → (2006) 9,271 → (2007) 9,556

- 일반농가 : (2005) 7,417 → (2006) 7,584 → (2007) 7,711

+ 1,597 + 1,687 + 1,845(22.2%)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 증체량은 1998년 929g에서 2007년 960g으로 3.3%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1998년 2.34에서 2006년 2.33로 0.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1997년 284(개/년) 대비 2007년 318(개/년)로 11.9% 향상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1997년 2,416g 대비 2007년 2,643g 으로 9.3% 늘어났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와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55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을 양계농가에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정책팀 농업사무관 서재호)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원유 생산량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정체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07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188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875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82, 가공시유 200, 유제품 293)하였고 나머지 313천톤을 분유로 가공하였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578천톤을 집유하여 484천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였으며, 잉여량은 전년도(97천톤)에 비해 3.2% 감소한 94천톤 수준이며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용도별로 공급한 후 이에 따른 손실액인 263억원의 원유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잉여량이 줄어든 것은 폐업보상 및 원유생산감축대책 시행(2003년 7월)에 따른 원유생산 감축과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낙농진흥회의 정상가격 판매물량이 꾸준히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29>

우유 수급상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생산 :	234만톤	254	237	226	223	218	219
- 수요 :	305	309	304	311	308	312	310
· 시 유 :	157	150	163	161	154	156	158
(백색시유)	(140)	(131)	(139)	(135)	(132)	(136)	(138)
· 유제품 :	148	159	141	150	154	156	152

* 유제품 수요량은 수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포함된 수치임.

* 진흥회 잉여량 : (2001) 20만톤 → (2002) 31 → (2003) 20 → (2004) 12 → (2005) 11 → (2006) 9.7 → (2007) 9.4

한편, 고품질의 목장원유(1A 등급) 상태를 유가공장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유 유통단계의 수유·검사방식을 개선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시까지 고품질 원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위생성적 및 유질향상 측면에서도 체세포수 1등급 비율은 58.0%로 2006년도에 비해 7.7% 증가하였고, 세균수 1등급 비율이 97.7%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역시 4.01%로 전년에 비해 0.03% 증가하였다.

현재의 우유 수급구조는 만성적인 원유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조절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르고 있고, 원유거래 및 유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낙농가·유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낙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 확립을 통해 원유 유통을 합리화 시키며, '시장의 확대'에 낙농과 유업체가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낙농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

장기대책인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2005년 7월)하였다. 동 대책(인)을 두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15인)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폭을 줄여 생산자·유업체·정부 3자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 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풍 등의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식생활에서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세계 우유의 날(World Milk Day)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학교우유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유제품 개발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국산 유제품 개발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는 등 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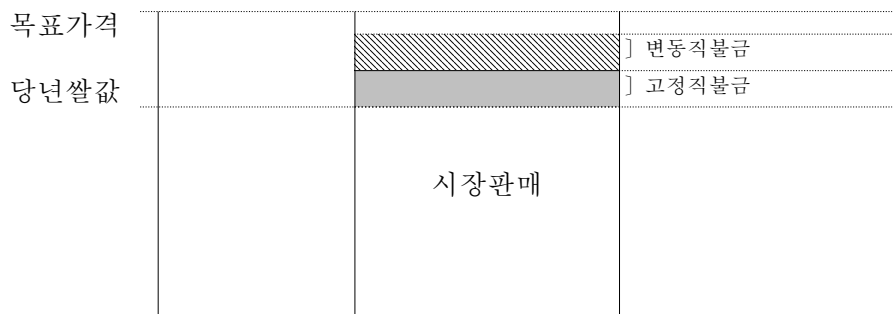
종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 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종전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개편하여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3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한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을 벼 재배여부 및 타작목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예컨대 2005년산 80kg 한 가마당 수확기 평균 쌀값은 140,028원으로 전년 쌀값 대비 13.4% 하락하였지만, 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농가수취율이 목표가격대비 97.4% 였고, 2007년산의 경우는 80kg 한가마당 평균쌀값이 150,810원으로 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농가수취율이 목표가격 대비 98.3%에 달하였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계획영농을 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접지불 금액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보전수준(85%) 〉



※ 목표가격 : 170천원/80kg, 3년단위 변경(2008년부터는 5년단위로 변경)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금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2006년산	1,050	1,024	7,168	1,000	951	4,371	11,539
2005년산	1,033	1,007	6,038	984	940	9,007	15,045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박성기)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 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m² 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영농이행단계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을 ha당 524천원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m²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불금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이다.

이로인해 발단가는 저농약인증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이고, 논은 논농업직불금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인증은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200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논·밭 모두 2003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2003년 30억원에서 2004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지원단가가 2004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2004년 55억원에서 2005년 69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8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논·밭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논 단가를 저농약인증 217천원/ha(신규지급), 무농약 307천원, 유기 392천원으로 인상하여 예산은 114억 원이 확대 되었으나, 집행액은 1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7년에는 지원단가가 2006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175억원으로 확대 되었다.

<표 2-2-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원 액	17,121	2,757	2,988	4,507	8,180	14,106	17,546
사업면적	31,208	5,274	10,459	12,827	20,780	35,030	45,434
농 가 수	54,939	6,589	12,195	14,520	22,119	45,567	60,090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이상집)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농업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우려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인 발전계기 마련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여 2004년~2005년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공부상 지목에 상관 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이하 같음)를 농지소재지 읍·면과 농지소재지 법정리와 연결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등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등직불금을 지급받은 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농지, 휴경지 등은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도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의 읍·면지역에 대해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읍·면의 법정리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아울러, 부적격자 또는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직불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는 바,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와 임산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임야는 형질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신청절차는 마을의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신청서(마을발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주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대상마을과 마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보조금 비율은 70% 국고, 30% 지방비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Green-Box)인 “지역원조계획하의 직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3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연도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천ha)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천ha)		31	118	109	
사업비	계	14,058	46,844	43,995	
	보조금	소 계	12,214	45,930	43,079
		국 고	8,550	32,151	30,155
		지방비	3,664	13,779	12,924
	행정비(국고)		1,844	914	916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홍만의)

라.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최근 도시민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관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작물의 범위를 지난해까지는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6개 품목에서 연, 자운영을 추가하여 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을 선택하도록 개선하였다.

신청절차는 마을주민들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의 경관보전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선정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ha당 170만원이다

2007년도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2,294ha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지역 중 800ha를 선정하고, 총 14억원(국고 10억, 지방비 4억)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시행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등 하절기 작물 214ha, 유채, 자운영 등 동절기 작물이 586ha였다.

2005~2007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해 마을경관개선, 방문객 증가, 공동체의식 향상 등 경관가꾸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경관작물을 활용한 지역축제나 마을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작게는 1/4배에서 많게는 1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도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단순히 작물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개념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농가의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규모 확대와 경관작물 재배외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개선 활동 등 협약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농촌산업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1) 2007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2007년에 추진된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은 2001년 이후 추진된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따라 장기 저리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채대책 이차보전사업과 200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 2001 상호금융 대체

자금 상환연장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한다) 제정 이후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7.8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였고,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은 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1·2004·2006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2007말 대출 잔액 9조 7,417억원 중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된 8조 7,503억원에 대하여 3,281억원을 이차보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267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24.2%)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200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1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하였다. 동 자금의 지원조건은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원금 10% 이상을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리 5%로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 대책에 의한 신청기간은 2006년 상환기간 도래분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2007년 상환기간 도래분은 2007.1.1~2007.6.30일까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2007년중에는 주로 2007년중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06~2007까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1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서 2005말 대출 잔액 5조 6,338억원 중 3조 7,463억원(66.5%)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3조 5,412억원(신청액 대비 94.5%)을 지원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 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소득분배 왜곡 등의 문제가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과 금리를 우대하

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금 중 85%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였다. 이는 성실히 상환한 농가를 선별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채 상환의욕을 고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조속한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금리 3%)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 1,10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167억원이 집행되는 등 2003~2007까지 총 4,751농가에게 3,518억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농신보 보증심사를 강화하였고, 대출신청 및 취급절차가 복잡하여 일선조합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부채보유 농가의 농지매입 지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농지은행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수요가 이동하였고, 최근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6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대출금 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 경영위기로 보아 지원토록 하는 등 경영위기 농업인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일선조합의 경영평가 위원회 폐지 등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그 밖에 평가기준 단순화 및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3) 2007말 농가부채실태 분석·평가

2007년 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29,94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하였으나, 주로 비농업용 부채의 증가(11.1%)에 기인하고 있으며, 농가의 절반 이상(50.3%)은 부채 규모가 1,000만원 미만으로 안정적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가 2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 증가에 상응하게 자산도 증가하여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농가의 부채/자산 비율은 7.6%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전가구 중 근로자가구(15.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대책 및 소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이낙휘)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3만 9천여 농가에 2,0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07년 현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 등 10개 품목에 대해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중호우특약 보상기준을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고, 감귤의 낙엽률 피해 인정기간을 “수확전까지”에서 “수확기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태풍 피해시 사과·배·복숭아의 낙과감수량 보상기준을 “낙과수량의 105%”로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6년 대비 1.63%P 감소한 6.58%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29,17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6년 21,466ha에서 23,661ha로 늘어 가입률 26.5%를 달성하였다.

<표 2-2-32>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상품목 ¹⁾		6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6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16,481	23,926	26,335	27,419	29,174
	가입면적(ha)	11,001	17,546	20,301	21,466	23,661
	가입률(%)	15.2	18.2	23.4	24.5	26.5
지원 규모	순보험료(%)	50	50	61.2	58.4	55.6
	운영비(%)	80	9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16,224	37,803	49,371	50,783	49,280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10,134	3,177	5,877	5,171	7,274
	보험금	50,018	13,599	23,871	21,112	61,464
	손해율(%)	290.8	42.3	43.5	36.6	110.4

주 : 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 사무관 서준한)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공제 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공제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07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등 11개 축종에 대해 사업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축산농가의 실질적 공제혜택 강화를 위해 가금류의 대상재해에 “설해”피해를 추가하였고, 소의 공제금 지급액 한도액을 확대하였으며, 축사보상 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로 지원(지원율 30%)을 시작하였다.

특히, 공제사업자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 및 가축공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민영보험사(LIG 컨소시엄)의 가축보험사업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소 부루세라병의 살처분 보상금 축소(80% → 60)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2007년 4월부터 소 부루세라 공제상품을 개발 판매하였다.

그러나, 소 부루세라 공제상품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축소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 높은 공제료, 사업준비 소홀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판매실적이 계획대비 0.7%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전반적인 가축의 공제가입률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43.9%로 증가하였음에도 전체예산 346억원 중에 234억원만 지출하고 112억원은 불용되었다

<표 2-2-33>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	7.0	7.2	7.3	7.1	8.3
돼 지	43.4	49.9	57.6	66.7	63.3
말	2.1	1.9	4.9	6.7	8.6
닭	17.4	22.3	32.8	39.3	43.1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 사무관 서준한)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와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인상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해 2006년도에는 농작물 대파대 19개 품목, 가축입식 11개 품목, 채소류 농약대 1개 품목 등 44개 품목의 복구지원단가를 3.2~400% 인상하고, 인삼농약대 1개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농경지 유실·매몰, 농작물 농약대 등 11개 품목을 1.9~100% 인상하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8개 품목을 신설하였다.

(농산경영팀 공업사무관 이범섭)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도시민의 여가 및 다양한 문화체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7년까지 274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274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7년도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 농촌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전원생활체험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집체·순회교육 등 6개 과정 21개 학습분야에 7,61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 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하여 2007년도까지 150개 마을을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도에 50개 마을(2006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7~8월 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와 매출액이 전년대비 12%, 33%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시상,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참여를 도모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농교류 수요확대와 활성화, 홍보·교육, 농촌투자유치 등 도농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2004년 4월)·운영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07년도에는 8,114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553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회복의 전기가 되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농교류과 행정사무관 김왕근, 행정사무관 김홍철, 사무관 전영미)

2.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초 사업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1998년 이후 IMF영향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입주업체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 확충 등 입지여건 개선, 수도권내 입지부족,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강화 등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년 농공단지 지정이 늘고 있는 추세다.

* 연도별 지구지정 현황 : (1999) 1개소 → (2001) 5 → (2003) 10 → (2005) 11 → (2007) 14

현재,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10개소를 포함, 28개소에 국고 314억원을 지원하여 2007년까지 324개소를 조성(완공)하였으며, 2007년말 현재 농공단지에 5,23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4,81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중에 있는 등 지표상 타 산업단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지금까지 고용인원 116천여명(업체당 26명), 매출 29조원(업체당 64억원), 수출 67억\$(평균 149만\$)로 지역 및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표 2-2-34>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구 분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 양 률 (%)	96.8	97.9	95.5
가 동 률 (%)	93.7	87.2	86.2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년 12월)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허훈)

3. 향토산업육성 추진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지역전략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도 시범사업 대상 19개 향토자원에 43억원(국고)을 투자하고, 2008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지자체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소요액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임을 감안 “향토자원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2007년 2월)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중앙·지자체간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협의회,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사업대상 향토자원 선정을 위한 제3차 향토자원발굴조사를 2007년 7월~9월 기간 중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발굴된 자원에 대해서는 향토자원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 자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농촌산업분야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는 목표지향적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증가, 소득제고, 일자리창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재원, 인력 등 관련 자원들을 동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는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제도를 2008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자체(시·도, 시·군) 향토산업·특화품목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매년 30개 자원을 발굴하여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며,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최호중)

4. 신활력사업 추진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29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업무조정 관련 관계부처회의결과, 신활력사업의 농림부 이관이 결정되었다.

신활력사업의 이관에 따라 2007년 사업계획의 심사, 지도점검 등을 균형위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 7월 1기 신활력 시·군 중 실적이 부진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을 공모하여 13개 시·군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제2기 신활력 시·군을 선정·고시하였고, 2007년 9월 13일 충남 청양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여 신활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였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은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7월 경북 성주에서 시·도 및 시·군 공무원 등 44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8월에는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추진지침을 통보,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신활력사업계획, 향토자원육성기본계획, 특화품목육성계획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007년도는 신활력사업 추진 3년째이고, 1기 신활력 사업이 종료되는 해이며, 업무를 행자부로 부터 이관 받아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작한 해로서 1기 신활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2기 사업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3년간(2005~2007) 8,320억원(국비 5,782억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등을 통해 신활력 시·군 전체 매출액이 2004년(1조2천억원) 대비 1조3천억원이 증가하였고, 17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고용 창출 53천명, 지

리적표시제 등록, 특허 출원 등 149건, 9개 시·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선도 지역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김연백)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가족단위 체험·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유익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84개소를 신규조성 하여 전국에 274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주민들의 사업추진·운영능력 배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50개 마을)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65개 마을)하였으며, 맞춤형 농촌관광 홍보책자(내인생의 코페르니쿠스혁명)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제6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

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7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에 158만명이 방문하고, 233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례, 행정과 주민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사례, 마을주민·출향인·귀농예술인이 협력하여 농촌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성장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도농교류과 행정사무관 김홍철)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새로운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 육성한 마을이다. 2002년 9개소로 시작해 2008년 39개소 신규지정으로 전국에 총 170개 마을이 조성되었고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마을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파트너십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특성별 테마 발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체험·학습프로그램 시설, 마을환경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의 하드웨어와 고유테마 및 마을별 자원 발굴, 주민 및 리더 교육 등 소프트웨어에 지원(마을당 2억원, 2년간)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홈페이지 27개소를 신규 제작하여 140개를 조성하였고 포털사이트(<http://www.go2vil.org>)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을 지정 후 3차년도 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6개소)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과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리더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수 지도자 활동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월별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웹진을 발행하여 65백명의 가입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농교류페스티벌 등 각종 박람회·지역축제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지원 21개 마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은 825%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통하여 도시민이 마을을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 참여, 농가민박,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간의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농업과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성과 외에도 지금까지 마을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테마를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고유의 농촌전통생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연구관 김석철)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5개 면지역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781개면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30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2,400억원(국고 1,921, 지방비 479)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내·마을간 도로 729km, 상하수도 119개소, 주차장 등 교통시설 9개소, 교량 68개소, 마을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 문화·복지시설 114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6년도까지 총 49지구를 착수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288억원의 예산을 투입(국고 231억원, 지방비 57억원)하여 신규로 착수한 13지구를 포함하여 62지구를 포함하여 62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

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비농업인 4%) 융자지원도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가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시 기반조성에서 주택건축까지 책임지고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면단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말 현재 35.2% 수준으로 도시지역 98.2%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35>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전 국		49,268	44,671	90.7	
도시	특광역시	23,079	22,832	98.9	98.3
	시지역	17,061	16,641	97.5	
농촌	읍지역	3,909	3,231	82.6	56.9
	면지역	5,219	1,967	37.7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6)

이에 따라,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27억원(국고 341, 지방비 86)을 지원하여 252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7년까지 5,616개소를 완공, 1,140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 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잠재력이 있는 수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 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2,310억원(국고 1,887, 지방비 423)을 투입하여 9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40개 권역은 2008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3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 억원)

구 분		합 계	2005까지	2006	2007
사업비계		2,310	836	576	898
기본계획수립	사업량	136	76	20	40
	사업비	196	101	33	62
사업시행	사업량	96	36	56	96
	사업비	2,114	735	543	836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7년도는 2005년도에 착수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36개 권역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결과 상향식 사업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인 마을리더 등장과 쇠퇴하였던 지역공동체가 부활하고, 새로운 스타권역 등장과 소규모 상향식 사업 추진 경험을 인근 마을로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방문객 및 인구증가로 권역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참여주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역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정부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의 사회보장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도에는 2004년 이후 추진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경감 확대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는 2003년까지 농어업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납입보험료의 22%를 경감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우리부에서 추가 경감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를 추가 경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28%를 추가 경감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총 50%를 경감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7년에는 표준소득월액 14등급(52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4등급 소득 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최고 280,800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보상수준을 2006년 2,500만원에서 2007년에는 3,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UR 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 한해동안 농어촌출신 대학생 26,333명을 대상으로 76,942백만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277,573명에 대해 473,803백만원을 융자하였다

정부는 융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7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44,097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총 269,568백만원을 출연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용자지원하였다.

특히,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농가소득증가율보다 높아 농어업인 교육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03~2007) 인상률》

대학 등록금	소비자물가	농가소득
7.3% (국·공립 8.4, 사립 6.1)	2.8%	4.4%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장동욱)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 편모농업인에 이어 2002년도에는 편부농업인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2003년도에는 인문계를 포함하여 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다.

1990년에는 사업시행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전농어가로 확대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총 1,897천명, 9,4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37>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계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2	편부·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3	인문계 포함 전 고교생까지	상 동
2004	상 동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	상 동
2005	전 농어가로 확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교부세로 지원)

자료 :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표 2-2-38>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2004		2005~2006		2007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05	689,103	198	169,158	94	84,320	1,897	942,581

* 2005년부터 지방이양

자료 :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은정)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 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지원실적은 총 38천명, 222억원이다.

<표 2-2-39>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7		1998~2005		2006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9,446	4,135 (827)	6,235	3,050 (610)	19,508	13,128 (2,281)	2,474	1,844	37,663	22,157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20% 부담), 2005년 부터 지방이양
 자료 :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은정)

마. 농촌노인 복지지원 강화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2007년까지 350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도 2007년까지 86개소를 설치하였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2006년에 전국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한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였고,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연령도 지난해 65세 이하에서 69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사고·질병발생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의 고령취약가구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된 가사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로 3,860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2,053백만원보다 53.2%나 증액되었다.

2007사업실적을 보면, 영농도우미는 2,180농가에 가사도우미는 12,038농가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시행주체인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으로 영농도우미 사업비의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국고(70%)와 이용농가 자부담액(30%)을 합쳐 농촌평균노임단가인 52,000원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으나, 가사도우미 지원단가는 국고(70%)와 농협부담액(30%)을 합쳐 10,000원으로 농촌의 교통여건이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크게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단가 현실화가 요구되었다.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장동욱)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30여개의 농림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원예·농촌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11개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 투자대비 5배의 수익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ROI=528%)

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농촌공사 등에서 운영중인 DB를 연계하여 농림사업간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영농규모화 : 경영이양직불제, 과원규모화 : 과원폐원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과 공무원의 AgriX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중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화지원팀 전산사무관 최재웅)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농림수산식품부는 1999년부터 도·농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정보망(아피스넷, www.affis.net)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48개 농림 유관기관,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가격정보 및 유통 전문가들의 시황·전망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등 도·농간 정보격차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26명의 주부 명예기자단을 통해 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의 농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12,500여건의 유통관련 정보, 33,000여건의 언론기사 정보도 수집·제공하였다.

아피스넷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이며,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68쪽)에도 농업정보 제공 웹사이트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농업·농촌 정보제공의 대표 웹사이트이다.

아피스넷은 2007년말 현재, 238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자수는 18천명에 이른다. 또한, 357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회원간, 동호회간 상호 정보교류도 하는 등 농업정보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아피스넷의 최덕풍 회원(부여사랑 동호회)

은 농업·농촌 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피스넷과 더불어 농림유관기관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농림지식검색 시스템(그린넷, green.daum.net)은 44개 농림 유관기관 154개 사이트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농업인의 정보 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화지원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영농 정보화 인력양성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7년도에 정보화에 무관심한 농업인에 대한 교육참여 유도 및 기초 수준의 정보화교육 등을 위해 전국 312명의 정보화선도자와 22개 농업계대학 119서비스 요원이 농가를 직접 찾아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동버스 교육과 기초·중급·전문 수준의 집합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 반복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교육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은 영농생활 등 바쁜 일정으로 집합 교육장소에 나가기 어렵거나 교육 이수 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농업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농가를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Digital Book)을 제작·제공하여 우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재택학습과 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70개 교육과정(기초과정 30개, 중급과정 11개, 고급과정 29개)을 운영하였다.

2007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40>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7)

(단위 : 명)

분 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13,074	39,131	33,161	75,738	80,257	71,734	77,352	67,381	63,724	66,252
기초교육	7,759	7,331	8,157	38,437	35,912	20,126	20,445	7,144	7,047	5,289
중급교육	-	-	-	14,351	14,161	12,843	13,182	6,607	4,008	4,019
중기교육	-	-	-	-	-	-	-	1,766	2,139	2,591
공모과정	-	-	-	-	-	-	-	-	-	312
전문교육	3,544	3,931	1,479	1,093	1,646	2,379	2,039	1,056	359	292
119서비스	600	2,188	10,109	15,077	15,126	13,098	13,190	12,074	10,044	10,044
정보화선도자	-	-	-	-	1,374	9,897	16,292	23,944	29,858	32,608
공공근로사업	-	23,640	9,120	-	-	-	-	-	-	-
이동버스교육	-	-	998	2,102	2,288	2,090	1,230	570	512	542
자체교육	1,171	2,041	3,298	4,678	9,750	10,838	6,821	8,069	2,915	2,741
온라인교육	-	-	-	-	-	463	4,153	6,151	6,842	7,814

(정보화지원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2007년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농지 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농지위에 설치하는 축사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관리되도록 하여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농업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농업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었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동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울러,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단 1제곱미터의 농지가 포함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시·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은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5년 12월 29일 개정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이 있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지유통화정보제공 :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2007년말 : 회원 수 153천명, 접속 2,320천건(2,541회/일)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 농지임대수탁 실적 : 2005년-111ha, 2006년-3,373ha, 2007년-4,274ha

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농지 매도 및 매입을 돕고 있다.

* 농지매도수탁 실적 : 2006년-0.9ha, 2007년-1.8ha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환매권도 보장하고,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파산직전에 있던 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사업호응도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566억원외에 38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95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단위 : 명, ha, 억원)

연 도	신 청 실 적			지 원 실 적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2006	378	554	942	183	311	422
2007	671	915	1,714	444	629	953
계	1,049	1,469	2,656	627	940	1,3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수급 불안에 사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3.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

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12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기본 정책방향

1)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2)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3)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였고,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의 정책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2008년에 22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사업추진방안 수립

가) 2004년 2월 23일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과 지역농업발전전략을 포함하고, 2004년 3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나) 2004년 5월 25일~10월 31일 「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다) 2005년 1월 4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월 18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일 시	내 용	비 고
2007년 1월 26일~4월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 설명회 개최(2007년 1월 26일) / 농업연수원 * 공동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도 같이 진행 - 현지 실사(2007년 3월 12일~3월 16일) - 전문가 평가(2007년 3월 28일) / aT center - 종합평가결과 발표(2007년 4월 16일) 	
200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클러스터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2007년 7월 11일~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본사업 정책방향 이해를 위한 Workshop 개최 	
2007년 10월~200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단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지원 업무용역 추진 	
2007년 8월~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단 선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2007년 8월) - 사업과·주관부서 검토(2009년 1월~10월 15일), 서면평가(10월 16일~10월 23일), 현장평가(10월 25~11월 2일), 공개발표 평가(11월 6일~11월 7일) -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12월 27일) 	
2007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단 선정 	

(식품산업정책팀 사무관 류승규)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1. WTO/DDA 협상 대응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2007년 초 협상이 본격 재개된 이후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4월 및 5월에 의장문서를 2차례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주요 4개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 원인은 농업분야 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2007년 7월 17일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7월에 배포된 초안은 그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타결 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상당부분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에 세부원칙이 배포된 이후 하반기 DDA협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개수 등 정치적으로 결정될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적으로 TRQ 증량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그동안 논의가 미흡하였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 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김민아)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은 2004년 4월 들어 재개하였으며, 2004년 7월에 DDA 협상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은 기본골격(Framework)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관세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는 실패하고 2006년 4월 세부원칙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에만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진영간의 의견의 차이가 지속되어 2006년 7월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WTO 비공식 무역협상그룹(TN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07년 1월말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협상전면 재개를 공식선언하였다. 그 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2007년 7월에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되는 등 논의의 급속한 진전을 이루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on Agriculture Market Access; NAMA) 협상은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수산물(Fish and Fish products), 임산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비농산물의 관세 감축의 방법과 감축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을 함께 다루는 농업협상과 달리 관세인하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감축문제는 규범협상에서 다루고 있다.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에 따르면 관세인하는 비선형(Non-linear) 방식으로 하되, 이중계수 구조의 스위스 공식에 따르게 된다. 스위스 공식에 따르면 현재 관세가 높을수록 더 큰 감축률이 적용되며 감축후의 관세는 계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 상한을 설정한다. 이러한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선진국 계수는 8~9, 개도국 계수는 19~23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스위스 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의

무를 면제받거나 50% 수준의 감축의무만 부담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 준다. 또한 개도국 신축성을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 계수를 상향([3~5]) 조정하여 주는 방안을 멕시코등 일부 국가가 제안하여 논의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일정 분야의 참여국간의 교역에 무세(혹은 아주 낮은 관세-5% 이하 수준)를 적용하는 분야별 자유화(Sectoral)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총 11개 분야(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보석, 의약품·의료기기, 임산물, 수산물, 자전거, 스포츠용품, 공구, 기초재료)에서 주요 관심국 주도하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중국, EU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전기·전자 분야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규제하여 상품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수입허가제,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을 규율하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에 기반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는 회원국간 분쟁 발생시 일정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여 보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정식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신속해결매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최정미)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원칙안 논의에 있어 주요국 고위급협의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수입국그룹인 G10의 일원으로서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도입을 저지하고 관세감축률을 최소화하면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으로서는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7월 세부원칙에는 미국 및 G20(수출개도국

그룹)들이 강하게 주장하였던 관세상한에 있어 명시적 도입이 배제되었으며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에 있어서는 중간적 수준의 입장이 제시되는 등 G20이나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을 완화시킨 성과가 있었으며 수입국 및 개도국의 입장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장기간의 협상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이해관계국 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각계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주요 협상단계마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알리며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협상동향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 및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DDA 연구포럼 및 통상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김민아)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우리나라는 DDA 협상으로 인한 국내충격을 최소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 계수를 낮추도록 주장하여 전체적인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는 한편, 수산물 등 민감한 일부 품목은 개도국 신축성을 활용하여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나 협상 기여를 위해 선진국 계수를 사용할 것이지만 수산물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 신축성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 등 수출우위품목의 분야별 자

유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Anti-Concentration 등 개도국 신축성 관련 조항이 수산물의 개도국 신축성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NTBs)과 관련하여 신속해결매커니즘이 농업, SPS 조치 등에도 적용가능한 현재의 문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제안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최정미)

2. FTA 농업협상 대책

가. 한·미 FTA 협상분야

1) 개요

2006년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4월 2일 정부간 협상을 종료되었고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4월 2일까지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이 있었으며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협상이 개최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농업협상 주요 목표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확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협상에서의 성과를 최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협상 마지막까지 “예외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협상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농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은 이전에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

프가드, 수입쿼타(TRQ) 등 다양한 양허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방안을 마련하였다.

2) 2007년 협상

제6차 협상(서울, 2007년 1월 15일~19일) 및 제7차 협상(미국 워싱턴, 2007년 2월 11일~14일)에서는 농산물 양허에 있어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이 예외없는 관세철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컸으나,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향후 민감품목에 협상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오렌지, 사과, 포도 등 약 300여개 세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 입장차가 큰 상태임을 확인하였을 뿐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SPS 분과는 의제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6차 협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7차 협상에서 협의채널에 대해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8차 협상(서울, 2007년 3월 8일~12일)도 6, 7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는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수입쿼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등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관세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8차 협상 전후로 2차례의 농업분과 고위급 협의(2007년 3월 5일, 3월 19일~22일)를 개최하였다. 제1차 고위급 협의는 기존 실무급 협의와 비슷한 기조 하에서 큰 진전이 없었으나, 최종단계 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미측이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외 없는 관세철폐” 입장에서 다소 신축성을 내비침에 따라 일부 과일류 및 곡물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핵심품목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로 협의를 종료한 채, 최종 협상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최종 협상(서울, 2007년 3월 26일~4월 2일)은 우리측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고위급을 포함한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농업분야는 8차까지의 공식협상 및 두차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품목의 양허방향 및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SPS 분야도 협의채널, 투명성 규정 삭제 등 핵심이슈에 대해 절충점을 찾음으로써 협정문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중요한 협상 쟁점은 모두 최종 협상에서 타결된 것인데, 이는 그 전까지 양측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폭넓게 탐색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계의 깊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주요 협상 전략의 보안 유지와 협상 진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매 협상 직전 광범위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워크숍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협상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우리 협상전략의 대외 보안유지가 가능하였다.

3) 주요 협상 결과

<농산물 양허>

농산물 양허수준은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높으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수입쿼타(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 및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 다만,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고,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식용 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대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등 국내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사과, 배 등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세번을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주요 민감품목에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예측치 못한 수입증가로 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42>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	주요 품목
양허 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분삼·미삼·잡삼)
15+TRQ	10	0.6%	93,50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 보리, 옥수수전분
12+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11(1)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분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98(2)	6.5%	353,25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사과주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등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주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주스(냉장), 토마토주스, 크랜베리 주스, 자두주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게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78(9)	37.9%	1,665,517	55.8%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수입액은 2003~2005년 평균 기준

우리측과는 달리 미측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라면, 배, 음료, 주류, 장류,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2-2-43>

한미 FTA 미국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	수입액 (백만불)	비중 (%)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 (300MT)
15	65	3.6%	0.03	0.0%	맵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 수입액은 2003~2005년 평균 기준

<농업 협정문>

농업분야 협정문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적용 대상 및 범위, 수입쿼타(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정의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핵심은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등 세가지라고 볼 수 있다.

수입쿼타 관리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 신설된 수입쿼타 품목을 대상

으로 상세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당초 미측은 선착순 방식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선착순, 수입권 공매, 수입허가(실수요자 배정) 방식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쿼타 수입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해 WTO 협정의 수입쿼타 관리규범과 유사한 형태의 규범을 도입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총 3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75 세번)에 대해 수입물량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협정문의 부속서에 각 품목의 연도별 발동기준물량 및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추가관세율을 명시하였다. 발동기준물량은 과거 최대 수입물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였고, 추가관세율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동일 품목에 대해 여타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상외의 특별긴급관세는 양국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시까지이나,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번갈아가며 매년 1회 개최하고,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농업 이외의 분과>

SPS(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 양국간 관련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되, 동 기구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⁹⁾을 마련하였다. SPS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규제 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9) 양국간 검역문제는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다루고, 동 위험평가는 양국의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높이고 SPS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검역 조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협상은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이다.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를 해소하였다.¹⁰⁾ 가공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라면, 소주, 청주 등 대미 수출이 많거나 우리나라산 선호가 높은 품목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서비스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만 유보하고,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하였다. 유보안은 현재유보(부속서 I)와 미래유보(부속서 II)로 구분 작성되었다. 현재유보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러한 차별·제한을 한·미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농업분야에서는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및 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등이 포함되었다. 미래유보는 현재는

10)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함.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미리 밝히는 것인데, 농업분야는 농지, 쌀·인삼·홍삼 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보리 도정업, RPC 포함)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무역협정팀 사무관 박정훈)

나. 한·EU FTA 협상분야

한-EU FTA는 협상출범 이후(2007.5.6) 2007년 말 기준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1, 2차 협상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EU측은 우리 양허수준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여 품목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농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우리 민감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으나 EU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4차 협상(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를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국내 농업에서 생산 비중이 크고 민감성이 큰 채소, 과일, 곡물에 대해서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등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을 주장하였으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일부 축산물은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민감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EU측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11.19~23, 브뤼셀)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품 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였다.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즉,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되, EU측도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EU측에게 요구한 내용은 우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일 분야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다소 장기화하거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같은 보호 장치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대신 EU측에 상업적 이익이 크고 제3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허안을 개선하였다.

EU측은 자국에게 상업적인 이익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개선이 있어야 우리측이 요구하는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먼저 우리측이 상업적인 이익이 있는 품목은 양허안을 좀더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모든 품목의 양허안을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먼저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측은 협상타결 자체보다 협상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EU측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 구체적인 양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여 EU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는 EU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은 EU측이 상업적인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타도 세부적으로 논의할 기술적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민감품

목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모양새가 잡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양측이 통합협정문 총 12개 조문 중 문구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있던 9개 조문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진전이 있었다. 남은 쟁점은 지역화 인정 절차와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수입국이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EU측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문안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리적표시(GI) 분야에서는 양측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서로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원칙(완전생산기준)에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 다만, 가공농산물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팀 사무관 박정훈)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ASEAN을 단기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아세안은 우리의 5위 수출시장이며 한·아세안 FTA 진행은 한-칠레 FTA 이후 처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이다.

본협상 단계로서 2005년 2월~2006년 11월간 총 1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상품협정 본문 및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으로서 현행관세 유지, 관세의 일부 감축 등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 200개(HS 6단위)를 확보하였다. 양측은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에 타결

하였으며, 2006년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시 상품협정에 서명하였다.

양허협상 결과 농산물은 현행관세 유지 71개, 향후 10년간 현행관세 유지 377개 등 448개의 민감 품목을 설정하였다. 원산지 규정은 우회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의 경우 역내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물이나 재배 후 수확된 식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중국, 인도,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 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상품협정 서명 이후 서비스·투자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분야의 목록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으며 투자 분야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농림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개방영역과 비개방영역을 구분하여 목록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는 이미 상품 협정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속 작업으로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각 아세안 회원국들의 TRQ 증량 요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아세안 TRQ 관리 및 2007 HS 코드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등 순조로운 발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상품협정문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과의 양자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역무역협정팀 행정사무관 피계림)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한·캐나다 FTA협상은 협상자체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면서도 1년이 나 늦게 시작한 한·미 FTA협상도 타결됨에 따라 협상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상품분야에 한정하여 실무협상을 두차례 개최하는 등 2007년 들어 총 6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한·미FTA 타결이후 캐나다측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특히 상품 양허안 분야에서 한·미안보다 덜 주고 더 받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최종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측은 우

리측 최대관심품목인 승용차 관세가 6.2%로 단기 관세철폐시 승용차 관세가 2.5%인 미국과 대비하여 한국이 향유할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최소 한·미안과 동일한 수준의 양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타결이후 악화된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한·미 FTA협상결과와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간 교역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양허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품분야 양허협상의 진행은 비농산물 양허안은 상품분과, 농산물 양허안은 농업소분과에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양허협상의 경우 양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등 민감품목은 나중에 미루고 입장 차이가 적거나 합의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 협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농산물 중 미합의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대두, 천연꿀, 감자 등으로서 캐나다측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 한·미안과 유사한 양허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대부분의 낙농품 및 가금육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유지를 확보하였다.

(지역무역협정팀 기술서기관 전종민)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한·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 양국 정상외 CEP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양국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개최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2007년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추진되었다.

2007년도에는 총 7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문 협상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신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문

에서 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위생·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양허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7년 1월에 개최된 제5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는 93%, 인도측은 85%의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하기로 하는 상품양허 세부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도측이 상품양허에 있어 농산물을 비롯하여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한 양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상품양허안은 2007년 7월에 개최된 7차협상 계기에야 교환되었다. 양국 모두 농산물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며, 특정 구체품목에 관한 논의보다는 양허안 전반에 대한 논의만이 진행되었다.

특히 인도측은 우리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 2007년 8월 쌀, 육류,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민감품목을 포함하여 약 700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을 희망하는 1차 양허개선요구안을 우리측에 보내왔다.

우리측은 9월에 개최된 회기간 협상 및 10월에 개최된 제8차 협상 등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인도측의 양허개선 요구가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농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개선이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양허개선 요구안을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12월에 개최된 제9차 협상에서 인도측은 양허개선 우선 요구대상 품목을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참깨·캐슈넛·망고·홍차 등 77개 농산물로 줄였으나, 우리측은 대부분의 인도측 양허개선 요구 품목이 민감품목으로서 양허개선이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양국 모두 2007년말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에 불구하고, 상품양허 수준을 높이고, 여타 잔여 쟁점의 해소를 위해 2008년도에도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지역무역협정팀 기술서기관 전종민)

3.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 국내경제동향

-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 정부부문

-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2007년 현재 총 13억 488만달러로 전체 대북 지원액의 67.7%를 차지한다. 1995년 쌀 15만톤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2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쌀 10만톤을 무상지원하였다. 1999년

부터 비료 11.5만톤을 당국차원의 지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20~30만톤씩 2007년까지 총 255.5만톤(8,144억원)을 무상지원 하였다. 북한의 2007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448만톤에 비해 10.4% 감소한 401만톤이며,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식량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 민간부문

- 1995년부터 시작된 민간의 대북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347억원으로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이 1,718억원(27%)이며 나머지 4,629억원(73%)은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수는 1999년 9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70개 단체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측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내용도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전문화되고 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지하)

제12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행 국내보완대책 추진

1.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가. 보완대책 기금규모 및 집행상황

1) 기금설치 배경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14일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2월 14일 공식 체결되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0년에 FTA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사과, 포도농가 중심의 1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2001년부터는 전국 규모의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시위로 확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협상 체결 후 2003년 6월 12일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6월 21일부터 칠레산 농산물 수입개방시 피해를 예상한 과수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이 비준 반대를 위한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7월에 대통령께서 조속한 비준처리 요청 서한을 국회에 발송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및 피해구제를 위해 'FTA특별법' 제정 및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업 및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4월 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FTA특별법이 시행되고, 동법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여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지원원칙 및 추진방식

과수산업이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향후 DDA 개방체제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하고, 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율 계획사업과 전국단위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 추진 하되, 지역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방향 및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고품질 과실의 생산·유통 종합 사업계획을 자율 수립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3) 기금규모 및 집행상황

FTA특별법 제11조에서 정부는 한·칠레 FTA를 이행함에 있어 7년간 (2004~2010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기금 집행액은 총 6,422억원으로 2010년까지 1.2조원 지원계획의 53.5%를 지원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가 확대된 새로운 FTA보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표 2-2-44>

FTA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 목	2004~2006년	2007년	계
경쟁력제고	보 조	159,483	69,376	228,859
	용 자	151,275	47,066	198,341
경영안정	소득보전직불	-	-	-
	폐업지원	144,495	56,486	200,981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등	9,929	4,099	14,028
합	계	465,182	177,027	642,209

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상황

1) 추진방향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조직 및 농가에 집중 지원한다. 개별 농가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조합 및 영농법인 등 품목별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생산자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여타 지역에 확산 되도록 육성한다.

2) 추진상황

지역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율계획사업에 2004년~2007년까지 3,059억원을 지원하고, 중앙추진사업에 1,213억원을 지원하여 총 4,27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지원,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지원 등의 사업은 2006년까지 지원 후 사업내용이 유사한 농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요자의 편의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신규로 개발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표 2-2-45>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 목	2004~2006년	2007년	계
지방자율 계획사업 (생산유통 지원사업)	생산시설현대화	142,932	36,688	179,620
	생산단지기반조성	24,389	8,299	32,688
	과수전용농기계임대	5,431	-	5,431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53,546	30,340	83,886
	과실브랜드육성	-	2,227	2,227
	과실가공품품질향상	2,030	-	2,030
중앙추진 사업	과수우량묘목생산	6,330	6,524	12,854
	과원규모화	76,100	32,364	108,464
합 계		310,758	116,442	427,200

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상황

1) 피해보전직불

피해보전직불사업은 한·칠레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시설포도와 키위이고, 지원대상자는 품목고시일(20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이며,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이나 노지포도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① 지원 대상품목의 국내 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입량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② 지원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여야 한다.

연차별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검토결과 지원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매년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2008년 현재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실적은 없다.

<표 2-2-46>

기준가격 산출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기준가격	▪ 품목고시일직전 5개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80%
적용기간	▪ 시설포도 : 3~6월 ▪ 키위 : 전년 11월~당년 5월
가격의 종류	▪ 가락동 도매시장가격(거래단가) : 총거래금액 / 총거래물량

<표 2-2-47>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국내산 가격검토

품 목	기준가격 (원/kg)	당해연도 평균가격(원/kg)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설포도 (비율, %)	4,560	6,708 (147.1)	7,315 (160.4)	7,531 (165.2)	7,297 (160.0)	7,944 (174.2)
키 위 (비율, %)	1,700	2,751 (161.8)	3,262 (191.9)	2,752 (161.9)	3,372 (198.4)	2,632 (154.8)

2) 폐업지원

폐업지원사업은 한·칠레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 재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키위 및 복숭아이고, 지원대상자는 품목고시 일(20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며, 10a당 지원단가는 3년간의 순수입액으로서 품목별로 10a당 시설포도 10,444천원, 키위 4,159천원, 복숭아 3,316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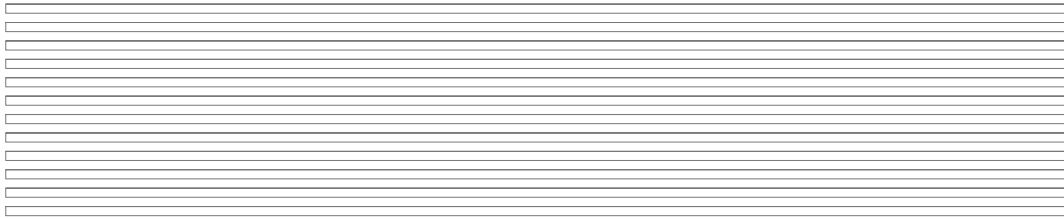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048ha를 폐원하여 14,983농가에 2,01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시설포도는 419ha에 438억원, 키위는 98ha에 46억원, 복숭아는 4,531ha에 1,5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1,118ha에 44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총 6,166ha에 2,45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한·칠레 FTA보완대책 폐업지원사업 지원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표 2-2-48>

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연 도 별	품 목	농가수(호)	지원면적(ha)	지원액(백만원)
2004~2006년까지 실 적	소 계	11,364	3,608	144,495
	시설포도	1,102	320	33,126
	키 위	305	80	3,746
	복 승 아	9,957	3,208	107,623
2007년 실적	소 계	3,619	1,440	56,486
	시설포도	277	99	10,647
	키 위	54	18	823
	복 승 아	3,288	1,323	45,016
2008년 계획	소 계	2,311	1,118	44,603
	시설포도	274	103	10,768
	키 위	66	20	911
	복 승 아	1,971	995	32,924
합	계	17,294	6,166	245,584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종길, 주무관 김희정)



제3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 제1장 >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 제2장 > 2008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제1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우리나라 농업과 농어촌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 이후, DDA 협상, 캐나다, 인도,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국제곡물, 유류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농수산식품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농간 소득,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격차축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에서 산업, 정주, 휴양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8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을 비전으로, '돈 버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해나고 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송남근)

제2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2008년도에는 농정비전과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다음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첫째, 농식품 유통혁신
- 둘째, 핵심인력 양성
- 셋째, 식품산업 육성
- 넷째, 규제 완화

1. 농식품 유통혁신

정부는 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의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합작으로 투자하고, 전문CEO를 영입하여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여 유통혁신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대표조직이 주인이 되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표조직을 생산액 3,000억원 이상의 품목 중심으로 육성한다. 우선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넝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한편,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Complex 형태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우선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간척지에 간척지 장기 임대,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 핵심인력 양성

정부는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 토지,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 산업분야 임원출신을 선발하여 시·군 유통회사, 품목별 대표조직

등의 전문 CEO로 영입하게 된다. 이들의 축적된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농수산업 현황, 농어가와의 갈등관리, 국내외 선진 농어업 현장 방문 등 농어업 CEO MBA 교육의 기회도 지원하게 된다.

3. 식품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정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의 활성화, 외식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및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전통·발효식품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고, 식품안전시설 확충 및 식품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식품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전문단지인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의 계약생산 및 산지 직접배송 확대를 통해 식재료의 원가 절감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추진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국가별, 지역별 대표 상차림과 메뉴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를 하여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대한 정보 및 금융 지원을 해 나간다.

4. 규제 완화

정부는 특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농지의 소유와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과 농업보호구역을 정하게 되고, 준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허가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송남근)

5.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정부는 2004년 2월에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대해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농업정책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농식품 정책과 농촌 정책을 대폭 강화하게 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에 따라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집행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대폭 조정하게 된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을 뒷받침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농가 피해 보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투·융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발굴하여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는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위해 농림부·농업인·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농정 리모델링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소득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성기)

6.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

정부는 2010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밭농업·과수·축산을 포괄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해 고령농 은퇴 촉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되며, 조기은퇴 직불제는 고령농 은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기존 직불제는 대상지역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는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하고 경사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경관보전 직불제는 연(蓮), 자운영 등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소득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성기)

제3절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1. 200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2008년도 농림예산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FTA 보완대책(2007년 11월 6일) 소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식품산업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확산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농림분야 예산편성 내역의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우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쌀값 안정으로 크게 감액(9,501억원 → 5,330, 감 4,171)편성되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대상면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300억원이 반영(113억원 → 300, 증 187) 되었고, 재난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원규모가 확대(558억원 → 596, 증 38) 되었다.

둘째,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촌 정주기반 조성 차원의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은 확대되었다. 먼저 농어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2,033억원 → 2,240)하고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268억원 → 411, 증 143) 지원도 증가하였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역시 사업 권역(96개소 → 136)을 대폭 확대하였다.

셋째,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보전직불금(10억원 → 1,000, 증 990) 및 폐업지원(603억원 → 1,000, 증 397)은 확대 반영하였고, 과수·축산·원예 및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도 증액 지원하였다.

넷째,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리고(473억원 → 724, 증 251),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자금을 증액지원(165억원 → 210, 증 45)하였다.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사업(219억원 → 269, 증 50)도 확대 편성하였다.

다섯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식·기술농업 확산을 위해 전문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130억원 → 215억원)하고, 농림기술개발은 산업화·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448억원 → 759억원)하였다.

여섯째, 유통분야는 산지의 규모화·표준화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활성화자금을 집중지원(5,500억원 → 5,950, 증 450)하고, 소비지 유통개선사업(1,478억원)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일곱째,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완공소요와 재해대비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조영선)

2. 200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2008년도 농림식품 분야 예산은 총 14조 3,934억원으로 2007년 보다 2.2%(3,118억원) 증가했다. 부문별 재정배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08년 농림재정 부문별 규모(2개 외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7 (A)	2008 (B)	증△감	
			(B-A)	%
◇ 농림부문 총지출	140,816	143,934	3,118	2.2
《농림부》	123,452	125,103	1,651	1.3
▶ 예산 일반지출	77,241	79,269	2,028	2.6
▶ 기금 일반지출	46,211	45,834	△377	△0.8
○ 농가소득·경영안정	36,882	32,167	△4,715	△12.8
○ 농촌개발복지증진	11,921	13,351	1,430	12.0
○ 농업체질강화	19,469	23,991	4,522	23.2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34,860	36,103	1,243	3.6
○ 농업생산기반조성	20,320	19,491	△829	△4.1
* 식품산업(별도통계)	(3,757)	(4,813)	(1,056)	(28.1)
《산림청》	12,235	13,322	1,087	8.9
《농진청》	5,129	5,509	380	7.4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조영선)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용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2006년 3월, 기존 정부업무평가를 체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시행·평가·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제5조 및 6조에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국회상임위에 보고를 명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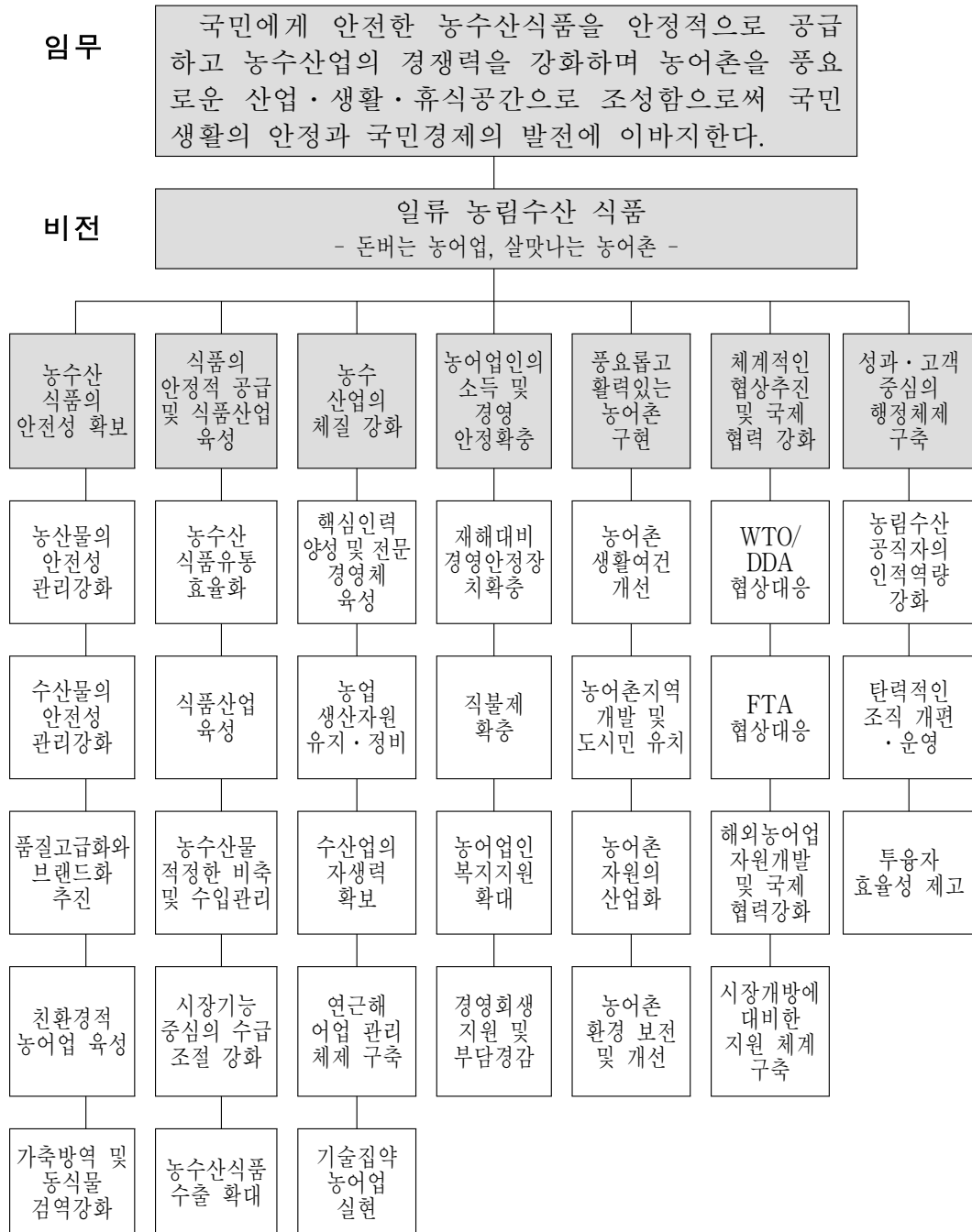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5년) 계획으로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 및 재정 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 3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동 시행계획에는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어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와 “일류 농림수산 식품, 돈버는 농업·살맛나는 농어촌”으로 각각 정하고 동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7개와 성과목표 30개로 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6월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그림 3-1-1>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도(2008~2012)



2)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략목표 7개와 성과목표 30개로 구성하였다.

성과목표내 관리과제는 264개로 주요정책과제 96, 재정성과 133, R&D 7, 정보화 19, 인사 6, 조직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관리과제를 기준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의 ‘성과계획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같음하기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매년 상반기로 변경하여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은 2008년 7월 11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2008년 7~8월)를 거쳐 9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결 예산을 반영한 시행계획 최종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평가팀 시설사무관 강경만)

나. 농림사업 성과평가 추진

1) 2007년 성과평가 결과

2006년 주요 115개 재정사업 평가에 이어 2007년에도 53개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2007년도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0%일 줄이기”의 일환으로 평가대상 사업을 2008년에 재정성과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축소하여 평가하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2005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투융자관리계획서의 작성과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통일성 및 사업담당부서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 시켰다는 것이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2007년도 농림사업성과평가는 예산편성방향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감액, 통합·폐지·사업종료 등으로 구분 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

<표 3-1-2>

2007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개)

예산편성 평가의견	2006년 사업	2007년 사업	2007-2006 (%포인트)
계	115(100%)	53(100%)	0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40(34%)	22(41%)	7
현수준 유지	59(51%)	4(8%)	△43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9(8%)	18(34%)	22
감 액	3(3%)	5(9%)	6
통합·폐지·사업종료	4(4%)	4(8%)	4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 농업종합자금,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 시·도 가축방역 등 22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ii)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배수개선, 바이오디젤유채생산시범사업, 유통협약명령제 4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iii) 농업전문투자조합출자, 토양개

량제보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살처분보상금 등 18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iv)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대단위농업개발, 중규모용수개발 등 5개 사업은 감액, v) 농소정협력사업, 오지종합개발, 신활력지역지원 등 4개 사업은 감액 또는 통합·폐지·사업종료를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수산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2008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8년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도 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과정을 이행 중에 있다.

2007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53개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의 경우 투입 또는 산출지표를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8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가) 2008년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는 i) 정상적인 행정경비, 행사성사업비, 정부내지출, ii) 2008년 종료사업, 2009부터 통합되는 사업, iii) 정착에 다년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 등을 제외한 평가의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 80여개(관서사업 포함)를 선정하였다.

나) 평가방법 및 절차

각 사업부서는 소관사업의 평가지표·목표치·사업추진 프로세스 관리계획을 담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수산분야는 별도의 투융자관리계획서 작성)를 작성한 다음 사업종료 후 사업담당부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전담부서에 제출(2009년 2월~3월)한다.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집중평가 자료 등을 기초로 i) 예산편성방향 ii) 제도개선사항 iii) 개인 성과등급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9년 5월)한다.

다) 평가방법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지원조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산편성방향은 i)증액 ii)현수준유지 iii)감액 iv)통합 v)중단의 다섯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혼합유형을 제시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편성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평가팀 시설사무관 강경만)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2008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는 평가 기준의 예측·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표변경 최소화 원칙하에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지자체추진 우수시책을 확산·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개선·보완된 주요내용은 지자체의 「농림사업추진상황」에 동절기 수급안정사업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보완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로는 지방농정 추진노력 분야의 평가에 외부평가위원의 비중을 늘려 내부평가위원과 동수로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세 번째는 타 사업과 중복 또는 농정여건 변화로 효용성이 줄어든 지표는 조정 또는 삭제하고, 차별성이 부족한 지표는 보완하여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평가를 받는 지자체가 평가결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정평가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지자체 업무평가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표 개발 및 보완에 노력을 경주하는 등 지방농정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이득섭)

2. 농식품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가. 농식품행정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 행정업무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없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성과창출, 현장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적 행정문화 정착, 미래를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부문의 통합에 따른 농업·수산 직원을 1/3수준 교차 배치 및 톱다운(헤드헌팅, 드래프트) 인사제도 시행 등 신속한 조직융합을 추진하였고, 업무효율화 및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역량 확보를 위하여 「30% 일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폐지·이관·축소 등 1,032건을 개선하였다. 긴급사안 발생시 「선조치, 후보고」체제를 정착하였고, 42개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하고, 위임전결을 확대하여 책임행정, 신속한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어업·식품단체의 정책 개발제를 도입하여 총 71개 단체 514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고 총 386개를 채택하여 올해 중 117개 제안을 반영하였으며, 장관의 주말 현장 방문, 시장·군수와의 농정 워크숍 및 Hot-line 구축, 농업과 수산이 함께하는 농수산현장체험, 부내 동아리 모임을 농촌 현장과 연계하는 등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섬기는 정부, 섬기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민원 사전예고제」 및 「One-call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 종합상황실」을 확대·개편하였다.

주요 현안별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 투자활성화, 농가경영안정, 농식품분야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농축수산물안전성관리 등 당면 현안별 TF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을 계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식품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였고,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농식품업 예산 구조도 생산 기반투자 중심에서 강한 농어업 실천과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296개 농림분야 사업을 대폭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복지·교육 등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업의 1·2·3차 복합산업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 및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여 정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부내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부 서비스를 향상하는 등 행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수산식품 정책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창의혁신담당관실 해양수산사무관 지정훈)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2008년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규제는 416개이다. 2008년도 규제정비방향은 농어업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장애가 되는 타부처 규제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규제정비 과제발굴을 위하여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 및 수산분야 등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97건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과제의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인 지정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및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는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구역 정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간척지 등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의 농어촌정비법 관련법령을 개정하며, 축산물운반업체의 영업기준 완화 및 식육판매영업자의 식육용도 미표시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축산물가공장의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비료 생산업 등록, 수입업 신고, 농약제조업·판매업 등록시 서류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령을 제정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생산시설규모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료관리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곡판매·가공업자에 가공방법, 시설개선 등의 명령을 폐지하고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령을 개정하며,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축산법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품종별 양식어업 면허제도를 통합 면허제도로 전환하며,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운영 허용, 어업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및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집어 등 최대전력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수산 및 어업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과제는 정비대상과제를 정부입법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사전에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추진과정에서 자체규제정비심의위원회에 정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도를 강화하고, 입법지연 등으로 정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 등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 최고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농어업인·소비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알기 쉽도록 규제개혁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개혁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규제업무 관련 법령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관련 전문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상시 업무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호재)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금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직제 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농업통계 생산기능의 통계청 이관

둘째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기능 및 정원 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이관

셋째 보건복지부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식품산업본부 설치

직제 제정 후 식품산업진흥정책의 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인 식품산업본부내에 식품산업정책단을 6월에 신설하였다.

앞으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를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인재관리, 농업과 수산의 융합 및 일하는 방식 등 조직문화 개선, 구성원의 자긍심 고양과 신나는 일터 만들기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강한 부처, 강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혁신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철순)

제2장 2008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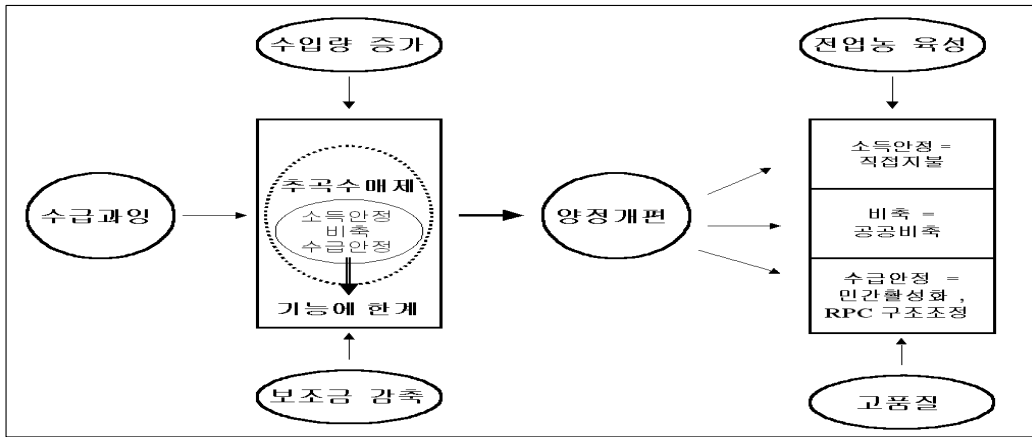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1995년 WTO체제출범 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축소되었다.

향후 DDA협상 이후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매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하였으며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선우)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가. 공공비축제

공공비축제 도입당시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매입물량을 3년뒤에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 7월에 2008년 이후 공공비축 규모를 결정하였다.

식량소비량을 기준으로 재검토 한 결과 비축규모는 72만톤, 연간매입량은 36만톤으로 하되 연차별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연차별 매입규모는 2008년에 40만톤, 2009년에 37만톤, 2010년에 34만톤이다.

2008년 매입계획량은 40만톤으로 그 중에 포대벼는 35만톤(톤백벼 6만톤 포함), 산물벼는 5만톤을 매입하고 우선지급금은 1등급(40kg)을 기준으로 49,020원을 지급하였다.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한 톤백벼 매입은 대농가로부터 호응이 좋아 2008년에는 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한성권)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면서(2005년)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법령개정(의원입법)으로 기존의 목표가격을 2012년산까지 연장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법률개정시 직불금 대상농지를 1998~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던 것을 “동 기간 동안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직불금 신청기한도 “2월말”에서 “장관이 정하는 날”로 변경되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80kg 가마당 11,475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그간 고정직불금(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 고정직불금은 부당수령자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관내경작자는 예정대로 10월에 지급하고, 관외 경작자는 조사완료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감사원 감사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008년에는 이를 반영한 법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2008.10.7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성기)

2.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 1995년에는 14천호의 쌀 전업농이 선정되었고 2007년말 현재 79.8천호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농지구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 집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한국농촌공

사가 비농업인, 고령농가,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논·밭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는 2006년부터 연리 2.0%를 적용하여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등의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상환하고, 임대차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계약기간(5년 이상)동안 무이자로 매년 임차료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된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4조 3천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51.5천호의 쌀 전업농에게 116천ha(매매 40천ha, 임대 75천ha, 교환분합 1천ha) 논을 유동화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모가 호당 2.3ha에서 2007년에는 4.8ha로 2.5ha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쌀 전업농이 담당하는 경영면적도 1995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3%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34%로 확대(2008년 37%)되었으며, 이들의 74.0%가 40~50대의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쌀 전업농들은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등 지역농업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영체가 다수 출현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 쌀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3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3년 예상 벼 재배면적의 절반 수준인 430천ha를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내용은 ①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예화로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②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③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으로 경영내실화, ④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물량지원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고, 양정여건의 변화와 쌀 전업농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 방식 등을 개편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상농지는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논 30천원/3.3m²,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을 폐지(인상효과 11%)하며, 농가당 매매지원 상한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축소하여 경쟁 가능한 지원 규모로 조정하였다. 또한 쌀 전업농 선정·관리를 시·군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로 일원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영국)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정부는 양정제도 전환 및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2006년도에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RPC 경쟁체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RPC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2008년도 말까지 농협 1개소, 민간 5개소가 신규 RPC로 인정되어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RPC 경영평가 결과 부진업체(F등급) 9개소는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었다.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지속 지원하여 수확기 물량흡수 및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8~2013년까지 건조·저장시설 1,19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70%까지 확충하고 특히,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도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전체 110개소(통합 11, 증설 67, 저온창고 30, 방폐장 유치지역 2개소)에 국고 25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다.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 저장이 가능하여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RPC가 수확기에 예상판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시범사업(2006~2007)으로 추진하였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탁판매제를 희망하는 RPC와 농가를 대상으로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수탁판매 참여 RPC에게는 정부 재정에서 수탁선도금을 지원했다.

수탁판매제가 활성화되면, 농가는 수확기에 기존의 공공비축, RPC 산물 판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쌀 주산지 시·군을 위주로 규모화된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8개소, 이어 2008년도에도 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선도적인 모델로 육성하였다.

2008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 72억원(브랜드 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64억원, 교육·홍보, 컨설팅 비용 8억원)을 지원하여 시·군 대표브랜드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정책에 따라 2008년 쌀 브랜드 수는 1,721개로 2006년 보다 152개 감소(△8.1%)하여 브랜드 난립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였다.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대수)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2008년도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135천ha), 입상 규산 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앙,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 기술을 조기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 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8개(2008년까지 16개소)를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시·

군단위 경영개선 시범단지 14개소를 조성하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시·군단위협의체를 운영하며,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50ha이상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사업을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최적 경영체 육성을 통해 공동육묘재배, 종자, 비료·농약 적정투입, 공동방제, 농기계 적정보유 및 효율적 이용 등으로 쌀 생산비는 22%, 경영비는 30% 수준 절감이 기대되며, 1ha 재배농가 소득은 22% 증가가 예상된다.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영국)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농촌인력의 급감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4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1,114명, 신규후계농 591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농업인턴제 203명, 창업농멘토제 100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종전까지는 후계농업인 선정 후 일년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2~3년내에 분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도록 3년자금대출제(후계농업인이 일차년도에 배정금액의 40%이상을 대출하면, 나머지 자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3년안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

출이 가능)를 2007년부터 시행하여 불필요한 대출과 자금확보를 위한 무리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1회성 지원 후 농업종합자금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게 유리한 자금 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 후계농업인 선정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670명을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기술서기관 조강제)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2006년 5월 19일 관련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한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에 따라 농업법인의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투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였다.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부는 건전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적인 농업법인 조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법인을 정리하고 설립과정에서 농업인 확인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2008년 9개소 예정)하고, 중소

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받고 정책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문제 및 회계투명성의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 및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누적액 기준)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의 경영 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등 농가조직화·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08년에는 2007년도에 제도개선한 사항에 추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친환경농업 경영체까지 확대하고, 꿀벌 사육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인증받은 농가와 꿀벌 200군 이상 사육농가까지 신청자격 부여

선정우선 1순위에 고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을 컨설팅대상자로 우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농업인이 25%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우대할 계획이다.

* 대상과정 : 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과정, 농업경영인 MBA과정

2008년부터 컨설팅 참가 농가 중 10%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소득증가율을 조사하고, 지자체의 컨설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사업비를 우대하도록 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업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받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하청금지, 외부 컨설턴트 추가등록시 우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농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우처 쿠폰제를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쿠폰제 실시와 함께 지자체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을 실시하고,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컨설팅업체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4.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특수농법, IT·B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농업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선정된 9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5, 2006년에 이어 충청, 강원,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4개소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권역별 확충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08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 및 민자 유치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5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해 발굴·시상하는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성원)

5. 농업교육훈련

가. 추진방향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체계 정착을 위하여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농업경영체별 수준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예비농업인력 양성 및 브랜드조직화 등 맞춤형교육도 강화한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강화하고 도시민 귀농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귀농실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농가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농가 기술·조직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에서 농업인 해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전문기관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지역특성화사업단 교육운영 역량 확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이드 북 제작·보급, 네트워크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에그리에듀넷 서비스 기능 최적화를 지원하고, 교육평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나. 주요정책 내용

자조금이 조성된 25개 단체 및 비자조금 4개 단체가 품목별 고품질 생산 기술, 안전성관리, 가공 및 마케팅, 농가조직화 등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특성 수요를 반영하여 78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방역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동영상 실습교재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1개 농업인단체에서는 농업인이 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셀프리더십 등 실용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특성에 맞는 26개 과정의 농가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 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을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경영혁신·역량개발 교육 및 예산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7년도 전국 9개도, 3개 시·군에서 2008년도에는 전국 9개도 6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단기과정을 중장기 과정으로 통폐합하고, 유사 중복 과정을 대규모 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농촌 결혼 이민여성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신규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업·농정·경영에 대한 창업농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해 보는 내용과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방식 등으로 과정을 편성하여 몰입도를 제고하고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금 배정한도를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이 전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기관·단체에서 농고·농대, 지역특성화사업단까지 확대하여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해외연수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지원도 확대 된다. 2007년 현장체험교육 참여 농고 10개교를 2008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또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7년 7개 대학에서 2008년 11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대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교육을 운영한다.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교육중 또는 수료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농업인교육과정은 3일(24시간) 이상 중장기 과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기과정은 모니터링에 집중하여 평가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과계 학교교육 평가는 별도로 평가를 하되 교육운영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2007년 130억원에서 2008년 21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6. 여성농업인 육성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여도에 관한 설문에서도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7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나 농산물 판매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기 어려우며 농업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고 있을 뿐 실질적 농업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동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도 모토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2007.12.21)한 바 있으며,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업인 확인제도'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는 '농가경영협약' 제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70농가를 대상으로 50백만원의 '농가경영협약'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확대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의 농업생산자 조직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여성 조합원 비율 29%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여성 조합원의 대의원 및 임원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작목반의 경우는 여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므로써 여성의 참여를 유인해 나가고자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중앙과 지방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기술 교육 및 리더십 향상 교육 등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연구활동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날' 및 여성농업인단체 행사를 계기로 우수 여성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소수정예 여성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한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8년에는 '제3기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정보화교육에 여성농업인을 40%이상 참여토록 하여 전문화·차별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며, 선도 여성농어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여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어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농어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연수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의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획력 및 리더십의 재학습을 통해 관련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2005.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 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부여한 우선순위 및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 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여,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 지원

여성 특유의 보유기술 및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일감 발굴, 창업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기술보유자를 중심으로 작업장 설치 및 시설 설치, 생산원료의 확보, 포장지 디자인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 육성하고 연차적으로 다양화 해 나갈 것이다.

5)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교육과정에 ‘농어촌 지역개발 여성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 체험교사 및 어촌관광가이드 등을 양성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1) 농어가 인력지원 확충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사고발생시 영농대행을 통해 지속 영농 및 안정적인 농어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69세 이하·농지소유 5ha미만의 사고·질병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농촌 고령 및 취약농가에 대하여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농촌생활의 유지를 도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가소득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다.

3)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8년도에는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호적상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에서 부모중 1인이 없는 조손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별도로 지원되던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ha미만 전업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 여성농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2006년도에 수립한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어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여성농어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도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고, 2008년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주요정책과제를 로드맵으로 담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시행계획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수산분야의 여성어업인 정책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다.

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을 잠정적인 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06년은 농업정보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2007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자체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007년까지 평가를 완료한 사업과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대상 후보사업을 선별하여, 담당부서에서 평가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대상을 수산분야의 창업어가후견인제·수산업인턴제의 2개사업으로 결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농수산업정책 추진시 여성농어업인관련자료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통계생산과 활용을 유도할 것이며, 2008년에는 여성농어업인정책에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를 생산(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 매5년마다 실시)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현황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 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 연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8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에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하여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농업인의 직업, 지위 인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농어촌의 시대변화에 따른 ‘다문화 후계세대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농어촌의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인력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김일상)

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1) 다문화가정 변화 추이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7년 38,491건으로 급증하였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급증한 것에 비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4,091건에서 2007년 9,35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7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여자와 결혼하였으며, 2006년 41.0%보다 1.0%p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는 베트남(42.7%), 중국(26.5%), 캄보디아(15.3%)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2007년에는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적응 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 300명을 통하여 1,800여 농촌의 이주여성을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2008년에는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등 초기적응 교육을 받은 자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영농정착 및 실천의지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각도별 30명 총 270명 정도로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여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과제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농어촌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유입으로 농촌인구 등 농어촌사회 내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농업인들은 이미 농어촌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역할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다문화세대원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농어촌정착의지 창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직업능력 개발 및 애그리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 및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하여 나갈 것이다.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김일상)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GAP참여농가를 20천명까지, GAP인증품 생산량을 과실·채소 생산량 대비 2%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GAP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39개 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하며, 인증업무 전담요원 교육(200명)을 추진하고, GAP참여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양·수질·잔류농약검사비로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비 지원(30개소, 24억원)을 하고, 상반기에 수확 후 관리시설 350개소를 지정하고, GAP 대상품목을 100개에서 105개로 추가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력정보시스템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생산농산물 이력추적 연계시스템을 충남도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새기술실용화 교육과정”에 GAP·이력추적관리제도를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380천명)을 실시하고, GAP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GAP전문교육을 20천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전산사무관 문광규)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추진한다. 안전성 조사 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70천건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지원(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 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가,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한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15개 출장소에 설치하였고 2008년에도 24개분석실의 증축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안전성조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한다. 2008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500건, 생산환경 600건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시설사무관 최영기)

다.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단속을 전담하는 「원산지기동단속반」을 「원산지단속 112기동대」로 확대 개편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체계적인 단속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및 명예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785개반 5,753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GMO 표시대상 중점관리업체를 선정하여 GMO표시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관세청, 식약청의 수입·통관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표시대상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2008년 7월 8일부터 GMO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제도(최고 200만원)를 도입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안전팀 사무관 김종실)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품질관리, 위생·안전 심의회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위생 감시·지도에 명예감시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직접 정책현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수립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소비자의 안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표시·인증제도 개선, 위해요인의 시장유입 차단 및 소비자안전에 관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식품 안전성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agros.go.kr)를 구축,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강경란)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육단계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돼지, 소에 이어 닭에 적용할 사육단계 HACCP 적용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도 제정하여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시·도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다. 검사물량은 잔류물질 120천건, 미생물 120천건을 실시하며, 특히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

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율을 2007년 14.8%에서 2008년 16.3%이상으로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검사건수 증가 등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관리도 강화해갈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를 확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일일 8만 수 이상 닭,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에서 일일 5만 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HACCP 담당기관(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성이 강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위생팀 수의사무관 강대진)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 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일본 등의 광우병 발생 등에 따른 축산 관련 단체 등의 요구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주요 브랜드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1개도(경기도)와 22개 축산물브랜드, 25개 시·군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78개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에서 한육우 73만 두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연계 사업장으로 참여하는 사업체도 240개소로 확대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 21일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식품부, 농진청, 축산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력추적법 하위법령 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중이다.

2008년도는 12월 22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144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정보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대행기관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전산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 중에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이력추적제의 사육단계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도축장 등 연계 사업장은 47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 전체 사육두수 289만 두 중 200만두를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법 시행시 귀표 부착 등에 대한 혼란이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

하고, 지난 3년여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력추적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초를 완벽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력추적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력추적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통해 계획 검토, 기관별 역할 및 사육·가공·판매단계별 세부추진방안, 전산 프로그램 개선 보완, DNA 검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오류, 제도 보완 등에 대해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협의 등을 거쳐 개선·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이력지원실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설치하고 사육농가나 대행기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장 등 이력제 참여자의 제도 설명, 전산 입력방법 및 절차, 운영상 문제점 해소, 건의사항 접수 등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 평가하여 12월 본 사업에 차질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시·도 평가작업을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할 계획이고, 또한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현장 점검 및 평가를 위해 대행기관과 사육농가 등을 방문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 공포하여 12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윤영렬)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2회(수출국·국내도착) 소독 및 검사(147건)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36개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230개소 435개)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22두)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93명) 등을 통해 32천건(70천톤)을 검색하였고 이중 탐지견 검색건수는 9천건(15톤)으로 총 검색실적의 25.3%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안내서(100천부)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22대)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홍보캠페인 1,119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2,598명)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104천두)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연 52회)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272천호)에 대해 소독(연 20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791개소 1,789명)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56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0두 이상 농장(연2회)과 수집상·중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2회 400천부),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역대책의 추진으로 브루셀라병 발생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열병은 2003년 72건 발생 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3-2-1>

돼지열병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돼지열병	406 (13)	5,866 (72)	779 (9)	811 (5)	1,074 (2)	58 (2)

앞으로 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률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방역팀 서기관 이지우, 수의사무관 오순민, 조옥현, 홍기성)

5.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FTA 체결과 DDA 타결 후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축의 생산능력이 높아질 때, 사육 마리수와 분뇨 발생량이 줄어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개량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가.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축개량추진체계 효율화 및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한우개량농가 관리조직을 자율화하고, 한우검정체계를 강화하여 유전개량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우개량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나. 젖소개량

젖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

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되 두당 보조단가를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5%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개량추진체계효율화 방안대책(2008년 8월)을 마련하여 캐나다에서 우수한 수정란을 도입후 국내에서 후보씨수소를 생산하여 후대검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 보급할 계획이다.

다. 돼지개량

효율적인 검정 및 가축방역을 위해 농후환원 종돈검정소(경기 이천)의 검정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시설로 신축(지원액 13억원, 완공일 2007년 6월) 하였다.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종돈 수출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태국으로 79두의 종돈을 수출(2008. 8)하였다.

라. 닭개량 등

종계는 대부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므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계농가에서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돈, 종계, 종오리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외 축산 관련 기자재와 우수 종축의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2009년 9월경 제6회 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6.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광우병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4년 8월 25일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2-2>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국 내	외 국	비 고
구제역	2000.3 발생 (2001.9.19 청정국) 2002.5월 발생 (2002.11.29 청정국)	2004~2005년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20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재
BSE	미발생	2003년 캐나다, 미국 발생으로 총25개국(수입금지 34개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003.12~2004.3(19건 발생) 2006.11~2007.3(7건 발생) 2008.4.1~2008.5.12(33건 발생)	2003.12~2008.10(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터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48개국)	동남아 상재
돼지콜레라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14개국)	동남아 상재

본 대책은 주로 광우병·소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차단 및 발생시 신속대응,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활발한 국제 교류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일선 방역인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52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과 2006년말, 2008년 4월에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매년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AI 유입 방역에 역점을 두었으나, 2008.4.1~5.12 까지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된 것을 계기로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2008 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7.22)하게 되었다.

2008년 고병원성 AI발생의 특징은 발생 초기 중·대형 가금농장에서 시작하여 소규모 육용오리 및 토종닭 사육농가 등 가내 사육 형태의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중반기에 강력한 방역정책과 농가, 업계, 관련협회·단체, 지자체 등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예전 100여 일의 발생기간을 감안해볼 때 42일간이라는 단시일 내에 질병근절에 성공하여 UN에서는 우리나라를 AI 방역 대처에 성공한 AI 방역 모범 국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H5NI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AI가 전세계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토착화되어 있으므로, 철새와 교역 등에 의한 재유입 위험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상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08 AI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강력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재유입 즉시 조기 검색과 진단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AI 발생위험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② BSE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5)과 위험국(9) 등 34개 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시켰다.

2007년부터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바꾸고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OIE에 우리나라의 BSE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3-2-3>

BSE 검사현황

년도별	1996~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검사점수	32,370점	5,516	10,708	5,852	3,814	50,587

2000.12월부터 반추동물용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였으며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에 금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체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50명을 배치하였고(2008),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2010년까지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③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3년부터 감염농장 색출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까지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감염농장 색출검사 및 농가 예방노력 확립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들어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방역추진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연도별 발생동향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건수	110	172	711	2,590	4,498	1,726
	두수	845	1,088	5,383	17,690	25,454	9,055
젓소(건/두)		105/662	110/498	116/1,282	141/2,166	177/2,314	61/835
한우(건/두)		5/183	62/590	595/4,101	2,449/1,5524	4,321/23,140	1,665/8,220

④ 또한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부여 등을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위험국가(중국·몽골 등)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초소독, 실험실 검사(147건)후 반입,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주기적 점검(104개소, 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22두)을 집중투입하고

신발소독(230개소 435개) 실시, 외국인 연수생(44천명)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150명)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발생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2008.8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입 위험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 등으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방역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장 방역인력이 현격히 부족함에 따라 2007년부터 공익수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학 과정을 졸업한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로써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24일) 및 하위법령(2006년 8월 29일)이 제정되어, 현재 255명(2007년 123명, 2008년 132명)의 공익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방역팀 서기관 이지우, 수의사무관 오순민, 조옥현, 홍기성)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우유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원유 유통비용의 절감, 자급사료 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시장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전국쿼터관리제 시행, 전국적인 우유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기구(낙농위원회) 설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편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도입,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 따른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우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쿼터 조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낙농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의무화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자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대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 확대,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활용 등을 통해 우유소비 저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면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8. 친환경농업 육성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 경향과 DDA, FTA 등 개방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6~2010년)」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013년)」에 따라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저농약제외)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07년 : 9.7%(2006년 : 6.2%)수준으로 확대).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사용량 대비 40% 절감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시·군단위의 1,000ha 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3개소(완주, 순천, 울진)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7년에 6개소(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를 신규 지정하고 개소당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마을단위의 10ha이상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에 신규로 59개소를 조성(누계 879개소)하고, 2008년에는 69개소를 신규 조성중이다.

또한, 토양의 지력증진과 화학비료·합성농약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8년부터는 공급주기를 현행 4년 1회 공급에서 3년 1회 공급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급방식을 현행 일괄지급방식에서 농경지의 산성도를 반영한 농가신청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에 491천톤(404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농가의 살포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입상(알갱이)화 공급율을 높여 2013년까지 100% 입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자운영, 호밀 등)을 재배하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2008년에 135천ha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녹비작물 종자(호밀)의 국산녹채

보리 대체연구(2007~2009년, 농촌진흥청)를 통해 국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지원은 2008년부터 예산집행체제를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라 2008년에 200만톤(1,16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대상작목을 수박과 참외로 확대하고(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등 9개 작목대상), 대상면적을 2,000ha(45억원)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2008년에 63천ha에 대해 263억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논밭의 지원 단가를 통일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 저농약 신규인증을 폐지할 계획이다(다만, 기존저농약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예).

(친환경농업팀 서기관 조백희)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분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대책은 저탄소화,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축산분뇨로 인한 메탄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농어업 확산을 위해 2012년까지 액비저장소 7,000개소, 공동자원시설 70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난방기·농기계, 유류절감형 어선엔진 보급 등을 통해 시설원예·농기계·어선 등의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부문에서 2012년까지 1만ha의 산림을 신규조립하고 240만ha의 숲가꾸기 등을 통해 탄소 흡수원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원 육성은 바이오매스 연구활성화, 유채재배 확대, 바다숲 조성 등 바이오에너지 활용 인프라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탄소 흡수 및 바이오매스공급 기능 등 농림업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생산·소비 전과정에서 에너지 소비·환경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평가팀 사무관 방문진)

10.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개정 동물보호법이 2008.1.27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되어 선언적인 법이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실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강화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기위하여 동물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처벌도 종전 벌금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 등록대상동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하 “개”라고 한다)
- 개 소유자 의무사항
 - 개와 동반외출에 따른 인식표부착, 목줄 등 안전장치, 배설물수거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근거 마련
-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 윤리적사용 등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검사·시정명령 제도 도입
- 동물운송규정(고시) 등 산업·농장동물 보호

동물보호법령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고시 등을 제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에 관한 고시
 - 동물학대예외 사항으로 청도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민속 소싸움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고시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고시
- 동물등록코드 관리체계 운영요령고시
-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

나.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부터 2013까지 추진하여야 할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 감시시스템구축,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운용, 동물등록제 운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정책과 실험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생산·공급·관리대책 마련 등 실험동물 보호·복지정책, OIE 기준과 부합하는 운송·도축·살처분 관련제정 등 농장동물 보호·복지정책 등을 포함될 예정이다. 5개년 동안의 동물보호·복지 추진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복지 추진지표 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동물판매업등록률	40%	50	60	70	80	등록대상업자 대비
동물등록률	5%	10	15	20	30	실시지역의 등록률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50	300	350	500	750	전 국

○ 소요예산 : 703억원(국고 342, 지방 362)

다. 동물보호·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2008년도는 동물보호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 8억원을 집행 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및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는 정책 홍보대상(타켓)에 맞는 홍보차별화를 하여 홍보성과를 높이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주요홍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년도에 달라지는 업무 등 보도자료 배포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홍보 배너 설치 및 홍보자료게시
 - 함께하는 세상 행복을 나누어요
 -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플래시 게시
 - 김대리 성공기/동물보호 게시
-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배너(8분, 1분)제작 배포
 - 각 기관에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협조
- 동물보호법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 중앙정부청사 홍보전광판 게시
 -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을 설명하는 플래시(1분)
- 동물판매업(장묘업)에 대한 홍보 리후렛 배포
- 동물보호법령 및 종합대책 배포
- 2008 동물보호 사랑축제 개최 등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보호감시관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 관련 법령, 동물보호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업무추진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예정이다.

- 동물보호단체육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동물보호단체 등 40여명)
- 동물판매업자(장묘업)에 대한 교육 (800여명)
- 동물보호감시관 교육 (시·도 등 200여명)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230여명)
-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자 및 동물보호감시관 교육(500여명)

(동물방역팀 서기관 김문갑)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안정된 판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5개 조직에 2,184억원, 2007년도에는 4개 조직에 1,4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 13개 조직에 2,0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도 사업자는 2008년 12월중에 공모 후 접수, 평가, 심사과정을 거쳐 2009년 1월 선정할 예정이며, 2006년도 선정조직 5개소에 대해서도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브랜드경영체로 육성하고 농가조직화, D/B구축, 생산지도(생산이력관리)부터 마케팅까지 일괄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3-2-5>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3)	사업연합형(7)	전문마케팅법인형(5)
2006	5개	▪ 상주원예농협	▪ 제주(도연합) ▪ 부여·여주(시군연합)	▪ 풀빛 영농조합법인
2007	4개	▪ 제주감귤농협	▪ 진주연합(시군연합) ▪ 고창연합(시군연합)	▪ 참후레쉬영농법인
2008	13개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	▪ 안성(지역조합주도) ▪ 나주·합천(시군연합) ▪ 햇사레(도간연합) ▪ 경기(시군연합)	▪ 참다래유통사업단 ▪ (주)논산수출물류센터 ▪ (주)농산무역 ▪ (주)매봉 ▪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 ▪ 신미네유통영농조합법인

2008년 공동마케팅 13개 조직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정책자금(1,486억원), 무이자인센티브자금(554억원), 마케팅·홍보비용(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및 전문조직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135억원)를 지원하여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1월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조직별 1~3%의 차등금리를 적용중이다. 2008년에도 산지조직과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및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이 공동적으로 추구할 목표(규모화·부가가치·공공성)인 3개 핵심분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금리와 규모를 차등화하고 무이자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19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지원, 2000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1995년·2001년부터 각각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시설 기반조성,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수급조절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산지유통지원사업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각종 유통지원자금이 조합단위로 유사한 목표를 갖고 통합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정책자금의 효율성,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산지에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을 통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그동안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2007년부터 산지에 분산되어 지원하던 산지유통자금을 유통종합자금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였고, 2008년부터 시설채소, 과실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 대상조직을 통합선정 하고 있다.

앞으로 산지조직들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2007년 1단계(산지유통활성화+시설채소+과실수급 통합)이후 2단계(산지유통활성화+시설채소+과실수급+노지채소)통합도 2009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자금을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일원화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통정책팀 서기관 김상근)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환경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에 개정 공포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개정된 농안법에 대한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소속 관련담당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안법령 교육·홍보를 추진하였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의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 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컨베이어, 광폭

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며, 특히 2007년부터 농산물 물류의 규모화를 위해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광폭차량(냉장·동, 윙바디, 탑차량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비용으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산지에서 고랭지 배추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하에서 그물망 포장시 쉽게 부서지고 깃물러 상품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가락시장, 구리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플라스틱 상자 회수·관리 시범사업(2007년 7~9월)을 실시하였다. 그간 그물망을 대체할 포장재로 플라스틱상자가 적합하나 도매시장에서 회수·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랭지 배추 포장유통 활성화에 큰 진전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농산물 상품성 유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2개 농산물에 대해 대학교수, 연구기관·산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매뉴얼 집필전문가가 주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과·배·마늘·고추 등 14개 품목에 대해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지난해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11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가락시장 등 8개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신청하였다.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와 정도 및 과부족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울 가락시장, 광주각화시장, 대전오정시장을 2009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내년부터 이를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매년2~3개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김병준,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3. 농식품 수출확대

2007년은 고유가, 안전성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기였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업체, 수출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07년 수출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2,53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2008년도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로 수출 환경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중인 한·미 FTA, 한·EU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41억불로 책정하고 농식품 생산-유통-해외마케팅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경영체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역량 강화이다. 정부는 영세 수출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등 제도개편 및 우수 수출경영체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품목별 최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단지 지정 확대, 선·후발 단지간의 기술교류 등 연계강화를 통해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의 조직화와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품목별로 조직화된 단체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 단체를 중심으로 수출업체와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창출이다. 신시장 및 수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신규시장 박람회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이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정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무역 사이트인 Agro-Trade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외 판촉·홍보 활동의 효율적 추진이다. 소규모로 개최되던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전을 규모화하고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 특
산품 판촉전 등과 연계·통합 추진하여 홍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은 안전·안심 이미지 메이킹, 중국은 고급농식품으로 포지셔닝 등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현지화·고급화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박람회 참가효
과 극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박람회와 연계한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식품 세계화를 위한 지원강화이다.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뉴욕, 동경, 북경 등 세계 주요도시
에서 주재국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통식품 표준조리법 개발·홍보, 뉴욕
UN본부 내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 개최 등 우리 음식의 해외전파 및 현지
화를 위한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활용한 식문화
홍보행사와 해외 관광박람회, 해외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식문화행사도 전
개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 집행의 효
율성 제고이다. 수출컨설팅 사업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자율적 컨설팅 계
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고, 바이어초청
사업은 집합식 초청방식에서 수출업체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수시초청 방
식으로 전환하며, DDA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 또는 철폐에 대비하여
고품질·브랜드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체질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고, 환변동보험 가입비 지원, 농수산무역정보망(www.kati.net)을
통한 환율 예측정보 제공 등 수출기업 환율관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식품산업진흥팀 농업사무관 변상문)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14억 원을 조성하여 대중매체 홍보, 관측행사 및 학교급식확대 등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교장단·영양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26개 시·군에서 6,991여 학교에 786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유기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460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조성(총 480억원)을 시작하여 유통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김수일)

제5절 식품산업 육성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새정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켰으며, 대통령께서도 취임사를 통해 1차 산업인 농어업이 첨단생산 기술을 접목하고 유통서비스와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2·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농수산물의 부

가가치를 높이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품산업육성 계획을 포함하여 대통령께 2008년 업무보고를 하였다.

2007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월 28일)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제정·공포(6월 27일)하였으며, 농식품부 직제 개편을 통해 식품산업정책단을 신설(7월 2일)하여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어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대외에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십여 차례 관련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대책(안)을 작성하고 공청회(6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의 추진을 위해 2009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로 일정을 연기하였다.

이에 전문가 및 식품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10월 10일), 부내 정책조정협의회 및 정책심의회,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대책회의(11월 12일)를 거쳐 식품산업육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인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11월 13일)하였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인류의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 매출액을 201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00억불로 증가, 2017년까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①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식품 R&D 투자 확대, ③전통·발효 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지원,

⑤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동 대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정책팀 농업사무관 전한영)

2. 한식세계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¹⁾ 육성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²⁾’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음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4월에서 9월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식 세계화 포럼’을 운영하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를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한식 마케팅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한식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식 세계화의 비전을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으로 정하고,

-
- 1)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 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 2)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 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해 해외 한식당 수를 2007년 10천 개소에서 2017년까지 40천개소로 증대하고, 세계 일류 한식당을 2017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하며, 농식품 수출액을 2007년 38억불에서 2012년 100억불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5대 핵심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08년 10월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식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또한, 한식과 서양식의 임상 비교실험을 통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08년 5월~9월까지 ‘전통식품과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임상시험 결과, 한식이 생식 기능 개선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언론·한식 세계화 국제학술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향후 건강·식품관련 전문지, 학술지에도 지속 홍보하여 한식 세계화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한식당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실시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며, 한식 조리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한식당 고급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식이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도약한다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정책팀 사무관 박영호)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의 농어업은 10년 이상 성장통을 겪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농어업에 IT·BT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 자생적 발전과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 식품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이다.

<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 >

- 제1차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VIP 보고 (2007.11.27)
 - 광역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역 2007년 내 선정(민관 협의체 심의) 보고
- 신규사업 추진에 공모한 지자체(5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전북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2007.12.17)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반영과 함께 광역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200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국비 20억)

금년 3월 18일 연두 업무보고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2008년 사업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업 무 보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 기본계획을 수립('08년.), 2012년까지 단지조성 추진
------------------	---

2008년 11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정책연구(2008년 5월~12월)를 전북도 발주로 수행중에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 개최(2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협의(14회), 식품업체 의견수렴(20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 및 의견수렴(4회) 등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12월말 기본계획 및 입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용역기관 : 산업연구원 주관 KREI·한식연·전발연 공동수행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①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y)와 같은 R&D중심의 식품클러스터, ②지역의 농어업 및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후방 지원시스템 구축, ③ 국내외 기업, 연구소(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의 집적화 통한 식품전문단지 조성, ④동북아 식품시장을 겨냥한 수출지향형 식품클러스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지정과정을 거쳐 2010년 단지조성 착공, 2012년 단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워 클러스터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양적 성장에 비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어업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산업정책팀 행정사무관 문태섭)

4. 외식산업육성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1970년대 태동하여 1980년대 대규모 국제행사(올림픽, 아시안 게임)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을 하였다. 특히,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식산업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류 확산에 따라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의 해외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우리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이며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가치가 큰 산업이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월 28일)에 따라 외식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외식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식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식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영시스템

선진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의 정책은 외식산업을 소비·향락산업으로 규정하여 세제상의 불이익, 창업제한 등 규제위주로 산업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외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기한 연장, 세액감면, 창업지원 등을 통해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외식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식품·외식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외식경영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조리시설 지원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창업과정에 2억원, 공동조리시설 설치지원에 72억원(국고용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아울러 식재료 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 농어업과 외식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식재료 관련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한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식재료 직거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관광·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수요 창출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를 한식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중이다. 한식당 인증제를 통한 한식의 고급화 및 해외진출 유도, 한식전문 조리사 양성과 해외진출 한식당의 시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단체와 외식기업의 연계를 통해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생과일전문점(Fruits Cafe), 쌀떡볶이 체인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이어져 외식산업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산업정책팀 농업사무관 김정욱)

5.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전통·발효식품(김치·절임류, 장류, 주류, 젓갈류, 천일염 등) 시장규모는 7.4조원으로 식품산업 시장규모의 약 7%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임에도 그 동안 김치 위주로 육성대책이 추진되어, 장류·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소홀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시행(2008년 6월 28일)을 계기로 전통·발효식품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2008년에는 2008년 김치류 및 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KFE³⁾ 행사 시 총 510개 업체 중 130개 업체가 전통식품을 전시토록 하여 전통식품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통식품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을 민간기관이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개선·기능구명·R&D 투자 확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 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전통식품 판매 유통망 체제 개선, 한식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 강화, 생산·유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김치 종주국 회복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R&D 보급, 홍보, 마케팅, 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김치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팀 해양수산사무관 박승준)

나. 전통주 산업

농식품부에서는 1993년 이후 전통주산업을 농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특산명주의 개발을 위해 제조업체들에 대한 시설현대화·원료수매자금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R&D, 홍보 등의

3) KFE(Korea Food Expo) : 2008. 11. 13.~11. 19, aT센터에서 개최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50여개 업체에서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되고 있으나 평균 매출액이 7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영세하여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품질고급화, 마케팅을 추진하기에는 자본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전통주 비교 품평회를 개최하고,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 연구'(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사단법인 한국전통주연구소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주에 어울리는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술과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우리 전통주의 풍부한 맛과 향, 다채로움을 알리기 위해 '2008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행사'를 5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개최하여 2만 여명의 내외국인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전통주를 마음껏 맛보고 체험하게 하였고,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전통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홍보·관측 행사를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여 현지 언론 및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수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한산소곡주 등 3개 업체 제품이 금년 내 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행사와 품평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전통주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우수 품질의 전통주가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3일(목)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전통주산업을 농업 및 농촌 관광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주의 개발을 위한 R&D, 생산 시스템 개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팀 농업사무관 조성근)

다. 식품명인 발굴·육성

식품명인제도는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1994년부터 전통식

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조리·가공분야로 구분하여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왔으나, 2008년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 제도는 폐지되고 제조·가공·조리 분야의 전통식품 및 일반식품 명인으로 구분하여 식품명인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0월말 현재 35명의 전통식품명인이 지정되었으나, 5명이 사망으로 명인지정이 해제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인은 30명이다.

한편, 그동안 명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명인 생산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표지)이 없어 정부에서는 명인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의 제작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인들의 사기진작과 명인제품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0월 명인표지를 제작, 명인이 생산한 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여 명인이 긍지를 가지고 제품 생산활동에 전념토록 하였다. 또한, 명인표지 및 명인제품 생산지역 등을 KFE 행사 기간(10월 13일~10월 19일/aT센터)중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명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식품명인제도의 확대 운영에 따라 2009년도에는 명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선진지 연수, 식품명인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하게 우수식품 기능인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팀 농업사무관 조성근)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1. 직접지불제 확충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 이후 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보전효과가 크고 시장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3년 쌀 생산조정제(시범사업), 2004년 폐업지원FTA 피해보전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 도입 및 기존사업 개편을 통해 2013년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중 10% 수준을 직불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직불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피해보전 직불제 등 WTO 규정상 감축대상 직불제는 지원대상 농가수를 줄여(취미농 배제, 구조개선 촉진 등)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고 DDA 협상에 의한 보조금 한도 축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선 지원,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 등 품목별 가격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밭농업,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은퇴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안(2007년 6월 28일 한·미 FTA 대책으로 발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이용직)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2005년 제도 도입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80kg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토록 되어 있어, 정부는 2007년말 2008년산부터 2010년산까지 적용될 새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기존 목표가격(170,083원)을 2012년

산까지 연장하고 5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의원입법, 2008.3.31 공포)하였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80kg 가마당 11,475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그간 고정직불금(진흥지역안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 고정직불금은 부당수령자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관내경작자는 예정대로 10월에 지급하고, 관외 경작자는 특별조사 완료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나, 2008.11월 현재 수확기 쌀값이 16만원/80kg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56,583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 미지급)

(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박성기)

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며, 농가당 0.1ha~5.0ha까지의 지원한도 내에서 3년간만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인증종류와 논·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지원되며, 논인 경우 ha당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한다.

2007년도에는 175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45천ha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263억원을 투입하여 76천ha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이상집)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금년도는 2006년까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만을 지원하던 것을 2007년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읍·면의 법정리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부적격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 지침을 강화하였다. 즉,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와 임산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임야는 형질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부정지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마을대표확인서는 불인정하고, 임대차는 공식적인 계약서만을 인정하였으며, 19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임대차 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9년도 정부예산(안)은 2007년도 실제 지원 신청 실적을 감안, 2008년도예산(43,248백만원) 대비 22.4% 감액한 33,582백만원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홍만의)

마. 경관보전직불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직불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 농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제고하여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 방문으로 총 2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 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축제 기간 중 15만명 방문으로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를 올렸다.

2008년도에는 경관작물 범위를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고 집단화 기준도

최소면적 1.0ha이상, 마을단위 3ha이상에서 최소면적 0.5ha이상, 마을단위 2ha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마을 주변의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마을단위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외에도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통해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 꽃가꾸기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이 함께 개선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산업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1)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개선

* 2008년 주요 개선사항

-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2007.7.27.)을 통해 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의 보상재해 범위에 집중호우 등 추가에 따른 후속조치
-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당해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착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 (현행) 피해과(100%)·조정과(80%)·정상과(무피해) → (개선) 피해과(100%)·중조정과(80%)·조정과(50%)·정상과(무피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 매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을 파악하여 보험상품을 지속 개선 해오고 있다. 2008년에도 2007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가입률이 저조하였던 감귤, 포도 등 품목에 대한 보험가입률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특별지원 2.8%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7년 대비 0.45%P 낮은 6.13%로 인하하여 보험가입률을 2007년 대비 2.0%P 증가한 28.5%로 높일 계획에 있다.

2)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에 대한 농업인등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까지 30개 주요 농작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재해도 현행 태풍·우박 등 특정한 재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보상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품목개발추진단 등에서 연구·검토한 농작물 중 농업인의 보험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감자·콩·양파·고추·수박”등 5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2년간 주산지 5개 시·군(광양, 상주, 영암, 청도, 하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뽕은감 품목의 경우, 시범사업실시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업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06년부터 3년차 도상연습 실시하고 있는 벼 품목의 경우 사업물량을 종전 200

농가에서 600농가로 대폭 확대하여 2009년 시범사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설계를 위해 공청회 및 상품설명회 등으로 농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에 있다.

3)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소관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등 농어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서준한)

나. 재해능가 지원확충

2008년도에는 농업분야 재해지원 확충 및 재해능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을 개정하여 시행(2008년 6월 30일)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은 폭설, 지진, 가뭄, 서리, 우박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냉해·동해에 의한 피해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사업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시 담배경작면적을 포함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8년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과대, 가축입식비 11개 품목을 6.5~97.1% 까지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농가 지원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팀 공업사무관 이범섭)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의 증가, 수입개방 확대, 사료가·유류대 인상 등 내·외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 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점차 공제가입 농가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에는 공제 대상 축종에 “양(산양·면양)”을 추가하여 12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영보험사(LIG 컨소시엄)의 가축보험 사업 참여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축사는 30%)를 지속 지원하고, 무료가축진료사업 추진, 대농업인 공제가입홍보 강화 등으로 공제가입률을 전년 43.9% 대비 1.5%p 증가한 45.4%로 높일 계획에 있다.

아울러, 현재 가축공제의 “축사보상 특약”의 경우 축사의 겨울철 주요재해인 “설해”가 제외되어 있고, 공제료 지원율도 가축에 비해 낮게 설정(가축 50%, 축사 30%)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부는 관계부처, 농협 등과 지속 협의하여 2009년도 제도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한편, 소살처분 보상금 축소(80% → 60)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 4월부터 도입·추진된 소부루세라 공제 상품의 경우 2008년 살처분 보상금의 상향조정 (60%→80)으로 인해 상품 도입목적 상실하였고, 농업인의 공제가입 요구도 없어짐에 따라 2008년부터는 판매 중단할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서준한)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1) 도입배경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2) 추진경과

- 2007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35백만원으로 강화, 입원비 공제금을 (2006)18천원(1일)에서 (2007)20천원(1일)으로 상향,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30천원이 지급되는 입원비 확장 특약 신설
- 2008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45백만원으로 강화

3) 추진실적

2007년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167만명의 44.6% 수준인 74만명이 가입했으며,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755만명이 공제료의 50%를 지원받았다.

<표 3-2-6>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 (계약건수)	7,545	3,458	636	703	653	702	653	740
사고시 지급공제금	1,828	765	115	133	165	167	201	282

(농업금융과 사무관 안창근)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최근 농업이 규모화 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또한 2009년에는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2조원) 등 약 3조원의 부채대책자금의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다가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 중에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된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자산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되, 모든 농가에 대한 일률적 부채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성실히 상환한 농가와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년에는 그동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2,852억원의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하여 저리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이낙휘)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의 2006년 이후 지원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농림정책리모델링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의 기준(예시)을 추가하고, 경영평가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자금집행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와 관련된 대내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조합 및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 자금의 집행 부진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부내 심의과정 등을 거쳐 동 자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규모도 지원실적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이낙휘)

다. 농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채,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지사 및 도본부에서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하며,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3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매입단가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위해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

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어 농지은행제도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여 파산위기 농가들의 재기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지원기준을 경영위기농가 경영회생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자연재해 50% 이상, 부채액 50백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지원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아 추가 예산 195억원을 확보하여 총 1,19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파산 직전에 있는 농가들이 회생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 방지, 높은 연체이자(16%) 대신 낮은 임차료(1%) 지급으로 농가부담이 감소되는 등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가. 추진현황

농촌금융시장은 상업금융기관이 진출을 꺼리고 농업부문의 낮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정책금융도 이제는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주로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1월부터 축발기금의 모든 융자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2008년 1월부터 농기계사후관리, 신규 후계농, 창업농, 후계농 추가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추가로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하였고, 시중은행도 농업정

책자금에 한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용자금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도모해 오고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고, 자금운용방식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지원규모도 1999년 145억원에서 2007년 10,000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증대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중 대표적으로 농업종합자금과 농축산자금 지원대상을 농업종합자금은 전업규모 이상, 농축산경영자금은 중소농 위주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두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농축산경영자금의 신규 대출한도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여 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생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을 통해 운영중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원→2006년 5,780억원→2007년 7,357억원)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독점적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창업농지원자금 등 5개 사업자금을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고, 2010년 이후에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용자사업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으로의 통합 및 자금 지원규모 증대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시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신청할 경우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경영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동 자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타당성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의 신용대출 기회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건전성 강화,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 정부출연금은 2007년(7,357억원)보다 5%가 감소한 6,95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8년말 법정 보증배수(20배) 이내로 기금을 정상화하여, 농어업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용자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안창근, 사무관 고경봉)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가. 추진현황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정책은 다수의 조세감면으로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조세지원 중에서 농업인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농어민지원 23.1%)이 매우 높으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 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 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7년 기준 연간 4조 7,457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 국세부문(30개 항목)이 4조 5,912억원(96.7%)이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부문(21개 항목)은 1,545억원(3.3%)이다. 국세부문 조세감면액 4조 5,912억원 중 농업부문은 3조 7,112억원, 수산부문은 8,800억원인데, 농어업 부문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이고, 차 순위가 농축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다.

농어업부문의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7>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총 감면액	36,213	41,142	43,938	47,457
■농어업용 면세유	17,777	19,001	20,115	21,72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7,226	8,029	8,185	9,66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727	747	829	917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2,148	4,448	7,737	7,737

<표 3-2-8>

농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총 감면액	28,680	33,373	35,692	38,560
■농업용 면세유	11,451	12,437	13,119	14,180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6,807	7,609	7,752	9,228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643	662	727	80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2,148	4,448	7,737	7,737

<표 3-2-9>

어업부문 조세감면 규모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총 감면액	7,533	7,769	8,246	8,897
■어업용 면세유	6,326	6,564	6,996	7,542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419	420	433	427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84	85	102	115
■수협 예탁금이자·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출자배당금이자 소득세 면제	256	255	228	243

식유류 면세는 1972년도에 어업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가장 최근에 버섯재배소독기가 추가되어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총 36종이며,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10>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급물량 (천kl)	농업	2,950	2,690	2,596	2,474	2,478
	어업	1,463	1,401	1,278	1,264	1,253
	소계	4,413	4,091	3,874	3,738	3,731
공급액 (억원)	농업	12,573	13,170	14,743	15,651	16,694
	어업	4,481	5,288	5,862	6,416	6,355
	소계	17,054	18,458	20,605	22,067	23,049
감면세액 (억원)	농업	11,102	11,451	12,437	13,119	14,180
	어업	6,395	6,326	6,564	7,092	7,542
	소계	17,497	17,777	19,001	20,211	21,722

* 2007년 농가당 평균 면세액 : 1,152천원(2007년말 농가수 1,231천호 기준)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3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어업용 38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26종, 어업용 17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3-2-11>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감면현황

구 분(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영세율	농 업	6,407	6,809	7,609	7,752	9,228
	어 업	383	421	473	433	426
	합 계	6,790	7,230	8,082	8,185	9,654
사후 환급	농 업	531	643	662	727	802
	어 업	82	84	85	102	115
	합 계	613	727	747	829	917

나. 추진계획

최근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업용 기자재 가격이 약 30%나 인상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도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및 건의 내용으로는 2008년 12월에 만료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 면세유 적용대상 농기계 확대, 농·수·산림조합 법인세율 인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세 부문도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감면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부문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도축세 폐지, 농업소득세 면제, 관광농원의 중부세 감면, 레저세 인하 등이 있다.

또한, 식품분야 업무영역의 확대 및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등 농어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통·가공분야의 세제지원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농어업부문에의 외부 자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 및 신규 항목 발굴 등 조세 지원정책의 틀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DDA 및 FTA 확대 등 농업 개방의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4년차로 접어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하였다.

삶의 질 대책 추진 전 상황과 현재 시점의 추진 목표를 비교·분석하여 도표화함으로써 농림어업인, 일반국민 등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홍보책자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대책의 주요사업, 농촌의 비전, 투·융자 계획 등을 소개하였으며 시·도, 시·군, 농어민 단체 등에 5,000부 정도 제작·배포하여 정부 정책을 알려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둘째, 매년 추진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8년 5월 16일~

21일)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8년 5월 23일~28일) 및 국회에 보고(2008년 6월 19일) 하여 향후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고, 각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2009년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년에는 삶의 질 시행계획을 직접 점검·평가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직접 충북 진천군(2008년 6월 19일~20일), 강원 횡성군(2008년 7월 17일~18일)을 방문하였다. 점검·평가단이 삶의 질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거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16일~17일(1박 2일)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시·군의 삶의 질 기본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시·군에 실질적인 시행계획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매년 평가되는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점검·평가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모든 사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일반사업, 소규모 사업, 투융자 사업, R&D사업로 구분하여 사업 유형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수·부진사업 상대평가(20%) 방식을 변경하여 상위·하위사업(10~20%)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촌정책과 농업사무관 최정록)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가. 도 입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최근에는 도시

화율이 90%선에 도달한 반면, 농촌은 정주여건의 상대적 악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1980년 42.7%이던 농촌인구는 1990년 25.6%, 2000년 20.3%, 2005년에는 18.5%로 감소되었고, 젊은 층의 이촌향도형 인구유출이 주도한 농촌인구 감소는 고령화와의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208개 면(面)중 82%인 991개 면(面)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유지를 어렵게 함은 물론 우리 농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민 중 56.1%가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10년 내에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10.9%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도시민도 30~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인구과소화 문제가 완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2005년 12월 21일)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시책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농촌경관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2008년도에는 총 129억원(국고 103억원, 지방비 26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 신규착수 35지구를 포함하여 97지구에 대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총 70지구를 착수하였으나, 관련법령 저촉, 토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8지구는 중단조치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원마을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도 말에 마련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전원마을조성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현행 10~20억원을 10~3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마을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경관형성 및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하고, 5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시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신청시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확보 및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신청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사업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이 계획수립단계인 1·2년차에 소요액 이상으로 편성되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한 실 소요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농촌 정주지원 포털서비스 사업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농촌 정주지원 포털서비스 사업은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이주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부터 제공해 온 기존의 농지은행 포털서비스를 2006년 확대·개편하여 전원생활·농지은행·그린 투어·주택정보·지역투자정보·경영도우미·지식정보 등 7개 분야 40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체계 마련을 위해 농어촌종합정보포털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으로 웹 2.0을 적용한 '웰촌' 포털(<http://www.welchon.co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시민의 정주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서비스, 차별화된 이주지역정보 서비스, 농림어업인 삶의 질 서비스맵, GIS 기반의 정주지역결정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사진 콘테스트 개최, 농촌 경관주택표준도 개발·보급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민에게 홍보하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주 동기를 일으켜 농촌이주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9년까지 3년간 개소당 10억원(국고 5, 지방비 5)씩 지원하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9년 이후 본 사업화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사업지원범위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일자리 알선, 출향인사 파악·관리,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이주예정 도시민과의 교류·초청행사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워크숍,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9년 이후 본사업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도농교류과 행정사무관 김왕근, 행정사무관 이형주)

라.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하여 외지인의 방문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경지의 이용율 제고 및 농촌지역 주민의 추가 농업소득 기회의 제공, 휴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 회복 및 아름다운 마을경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기간(2005~2007) 동안에는 한정된 경관작물 식재에 의한 경관형성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마을과 연계한 경관보전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2008년부터는 경관작물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신청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마을주변의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식재로 마을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마을내 다양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경관형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형성·관리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산업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가.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일률적인 50% 경감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경감지원율을 차등 및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소득월액 14등급(52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4등급 소득 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최대 연간 280,800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지원기준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기준소득월액(620,000원) 소득 이하 자는 보험료의 50%를, 기준소득월액 초과 자는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인당 최대 연간 334,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지원기준 소득월액을 7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인당 최대 연간 394,2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그동안 농협 안전공제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임업인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안전공제를 신설하여 판매하였고, 2008년 사망공제금의 보상수준을 4,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촌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 43개 군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인력 배치 및 시설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보건소 등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은 2007년까지 350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82개 마을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07년도까지 8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 복지센터(주간, 단기, 가파시설이 복합된 다기능 시설)를 112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라.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사업은 26천명에게 816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은정)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2008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는 5,792백만원으로 지난해 3,860백만원보다 66.6% 증액하여 영농도우미는 13,000일, 가사도우미는 15,000회 지원할 계획이며, 짧은 사업역사를 감안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전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영농도우미 지원 사유에 질병을 포함시키는 등 이용농가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반기별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일선 농협담당자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장동욱)

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용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8년도에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41,260백만원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출연키로 하였으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용자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하였다.

2008년도 학자금은 26,000명을 대상으로 81,588백만원을 용자지원키로 하였으며, 농어촌거주 학부모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용자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대학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자금 무이자용자 이용학생이 증가하고, 용자금액도 많아지고 있어 용자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장동욱)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7년 84개 마을(총 274)에서 2008년에는 90개 마을(총 364)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08년 4,323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도농교류 엑스포, 농산어촌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도농교류 정부포상 시상, 도농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들에게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농·소·정 사업□□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사업분야를 기존의 3개 분야(농업·농촌 체험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에 “농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장소도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사1촌마을로 정하여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실질적인 체험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2008년 사업대상자로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42개 민

간단체가 엄격한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95천명의 도시민이 참여하였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농산어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농산어촌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범정부차원에서 전개하였으며,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 7만부를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이마트 등 24개소에 배포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5회 그린포럼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였다.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업·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농교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도농교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도농교류과 사무관 김왕근, 사무관 김홍철, 사무관 이형주, 사무관 전영미)

5.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자간에 능동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 등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에는 총 1,639억원(국고 1,323, 지방비 316)을 투자하여 9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4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하고 2009년 사업착수를 위하여 40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및 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00개면을 개발할 계획이며, 우선 2008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4개 권역은 사업착수하고, 2009년 착수를 위해 4개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에 착공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권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나 읍지역 등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마을기반정비(마을내·마을간 도로정비,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부문, 농촌경관(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감 조성 등), 문화·복지(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부문, 환경보전(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부문으로 크게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면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유사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2008년도 551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에 4,474억원(국고 3,132, 지방비 1,342)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간 및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천정비, 마을회관 등 복지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주5일근무제 정착, 소득증대 등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관광 총량이 2002년도 405백만명에서 2011년도에는 60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내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관광유형도 보고 듣는 수동형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능동형 관광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사회자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대한 사업 목적의 부합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의 사업심

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성이 우수한 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테마공원에는 진입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지역특유의 체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4년에 걸쳐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2007년에 착수한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등 4지구는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09년에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에 지역특산물과 자연환경을 테마로 착수한 경기 이천,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상주·울진, 경남 사천 등 8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중에 있어 2009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2009년에는 2007년 착수지구 4지구, 2008년 착수지구 8지구를 비롯, 2009년에 신규 착수하는 10지구를 포함하여 총 22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농교류과 시설사무관 이형주)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2,309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2)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060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88억원(국고 309, 지방비 79)을 투자하여 22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표 3-2-13>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개소)	7,060	5,616	226	1,218
사업비(억원)	12,269	9,308	388	2,573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6.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업위축 → 일자리축소 → 농어촌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는 정부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의(2006. 8)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2007. 1)하고 2008년부터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향토산업·특화품목육성 사업을 묶어 시·군단위 「농어촌활력증진계획」(2008~2010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농촌활력증진사업예산(2008년) : 3,474억원(신활력 1,882, 향토 90, 특화 1,502)

“농어촌활력증진사업”은 제1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체계와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방식의 사업추진체제로 142개 시·군이 참여,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선도산업 마케팅, H/W보완투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3년간 국고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어촌활력증진계획”내에 농식품부 및 관련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농어촌산업발전계획”으로 확대·체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향토·특화자원 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허훈)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사업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하였으며, 시·군은 유사한 관련 사업을 연계한 “3년단위(2008~2010)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되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인력 등 관련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효율적인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시·군을 분담하여 컨설팅 등 시·군의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1월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성과관리 DB 구축 등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내 「농촌활력사업본부」를 발족하였다.

사업성과 제고 및 연관사업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4~5월에는 시·군 3년단위 농촌활력증진계획을 평가하여 22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15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5~7월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사업모델을 공모하여 61개 시·군에서 94개 모델을 응모하여 그 중 21개 우수모델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36억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 8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상호 네트워킹의 장 마련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균형위원장, 전북지사, 신활력시·군

단체장,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지역협력단, 사업추진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농촌활력증진계획(2008~2010)의 종합현황 및 시·군별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업무교류 활성화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는 제1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촌활력증진계획을 확대·개편하여 농어촌산업발전계획으로 전환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참여 시·군도 확대하여 전략농산업 분야를 집중지원토록 유도하고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전략농산업은 인적·물적자원의 활용, 문화·역사배경 등 지역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서 시·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농어촌산업육성계획에 활용할 정책사업은 중앙에서 농어촌산업육성군으로 통합하여 종합메뉴화하고, 정책목표와 유사한 정책사업은 점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향토산업육성은 클러스터사업과의 체계화를 통해 클러스터 발전상황, 사업규모 등 단계별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초단계에서 향토산업육성을 통해 시·군단위 지역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고,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타 지역과의 연계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김연백)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2008년에는 47개소에 428억원(국고)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향토자원, 특산물 가공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 촉진 등 농공단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통합지침 규제완화, 지역특화단지 조성단가 상향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4>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년	2009년계획	2010이후
사 업 량(개소)	400	324	10	10	56
사업비(국고, 억원)	10,961	6,935	428	598	3,000

주 : 사업량은 조성(완공)지구 기준임.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허훈)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30여개의 농림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08년에는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비롯한 식량·농촌관련분야 12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객관리 및 정보시스템 기반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인증(ISO 9001)을 추진하여 대내외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상시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 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인 교육이력 등과 연계하는 등 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모바일기기(휴대폰, PDA 등)를 통해 정책정보 및 쇠고기 이력, 반려동물 관리정보 등을 서비스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지원팀 전산사무관 최재웅)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농업인 소득향상,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 도·농 정보교류 확산을 위해 아피스넷을 통하여 가격유통 서비스, 농업종합 뉴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좀더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회계/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One-stop, Single-window 서비스를 지향하는 농림지식검색시스템(그린넷, green.daum.net)은 조직 개편으로 통합된 국립수산물연구원 등 13개 기관, 21개 사이트를 신규로 연계시켜 수산정보를 포함한 모든 농어업 관련 정보를 하나의 검색창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보활용 수준이 떨어지는 농어업인들에게 정보탐색의 기회비용 및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피스넷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가격유통 및 농어업·농어촌 체험, 건강정보 등 동영상 정보들을 휴대폰, IPTV(MyLG데이콤), 케이블TV(티브로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유비쿼터스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도모하고,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쉽게 인터넷에서 편집·등록/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질적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13년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PTV,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농어업인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험 관광, 농산물 샘플체험 등 도·농교류 행사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채널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보화지원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다.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농어촌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

소득창출로 연결 가능한 교과목 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분석·관리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3-2-15>

교육시행기관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계획 횟수 및 인원

(단위 : 명)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시간	교육인원
합 계			55,130
농업기술센터	생활밀착형과정	18	300회, 4,500
	영농밀착형과정	30	85회, 1,275
지역농협	생활밀착형과정	18	110회, 1,650
	영농밀착형과정	30	20회, 300
농업계대학	영농밀착형과정	30	80회, 1,200
	농업정보119방문교육	2	11,000
공모기관	영농밀착형과정(공모)	30	25회, 375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과정(공모)	60	12과정, 290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18	20회, 240
지방자치단체 (시·군)	정보화 선도자농가교육	2	34,300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밀착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농어업인이 교육을 통해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 무관심층에게는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휴대폰·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전자민원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내용도 교육할 것이다.

둘째,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행기관을

개편하고, 교육기관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교육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내실화를 위해 에듀아피스(www.eduaffis.net)를 통해 서비스 중인 일부 강좌에 대해 전담강사제(e-Tutor)를 시범 도입하여, 헬프데스크,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최적의 온라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표준교재를 사례 중심의 실용적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고, 농어업인의 강사 만족도가 높은 강사의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서비스할 것이며, 다섯째, 농어촌 지역의 여론 주도 계층인 이장 등에 대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교육과정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와 정보화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지원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8.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필지규모가 작거나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151천ha를 대상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104천ha를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국고 799억원과 지방비 196억원 등 총 995억원을 지원하여 2007년 가을에 착수한 4,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새로이 3.8천ha를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6>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151	104.4	4	43

주 : 봄마무리 기준. 목표면적 조정(2008.2) : 164천ha → 151천ha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12천ha 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4%)를 1단계 정비목표(총목표 180천ha)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7년까지 17,997억원(국고 14,194억원, 지방비 3,803억원)을 투입하여 77.4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12천ha의 10.9%, 1단계 목표면적의 70.4%수준이다. 2008년에는 1,016억원(국고 816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4.0천ha를 정비하였다.

<표 3-2-17>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110	77.4	4.0	28.6
사 업 비	25,794	17,997	1,016	6,7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 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동, 유통시설간 미포장 농로 35천km를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18.8천km를 확장 또는 포장을 하였고, 2008년에는 국비 1,055억원, 지방비 264억원 등 총 1,319억원을 지원하여 비포장 농로 1.3천km를 정비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작업의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운반·포장 등의 기법이 발달하고 있으나,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불편함에 따라 199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농촌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표 3-2-1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35	18.8	1.3	14.9
사 업 비	37,071	19,337	1,319	16,4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라. 수리시설 개·보수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3,056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968개소로 53%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3,319개소

중 86%인 2,861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용·배수로의 경우도 간지선 47천km중 53%인 22천km가 흠수로 되어 있어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8,769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5,728 지구에 총 40,47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수리시설 80지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표 3-2-19>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개·보수 대상		2007 까지		2008 계획		2009 이후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 사업량	8,769	100	5,728	65.3	80	0.9	2,961	33.8
○ 사업비	110,518	100	40,478	36.6	3,800	3.4	66,240	60.0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188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국고 2,085억원을 지원하여 119지구(31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중 18지구(3.1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

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지구를 완료하였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105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0개소 등 전국 1,595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2008년에 979억원을 투입하여 153개소를 시행, 그 중 67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기술서기관 전경구)

마.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규모 용수개발의 사업준공(경북 성주, 전북 동화 7,380ha)에 이어, 2007년에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89개 지구에 2,37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지구 4,490ha를 준공하고, 지표수보강사업으로 1,707ha,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89ha를 준공하여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중규모용수개발사업 83개 지구에 2,000억원을 투입, 2,150ha를

준공하는 등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1,652ha,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35ha를 준공함으로써,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2-20>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대 · 중규모	118.8	65.0	2.2	51.6
소규모	11.0	0.9	0.3	9.8
지표수 보강	31.9	24.2	1.7	6.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기술서기관 이성흥)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2008년에 금강Ⅱ지구 등 7지구 12만2천ha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261억원 등 총 3,361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농업 중심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은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현재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 돌붙임 등 방조제 단면완성을 위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부개발은 2008년까지 지형여건 변화에 맞게 기본계획(농업분야)을 수립(변경)한 후, 2009년말부터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표 3-2-21>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계	22지구	283,227	72,782	53,999	3,361	15,422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59,015	40,232	3,361	15,422	
시행중	금 강Ⅱ	43,000	7,277	4,779	470	2,028	'89~'10
	미호천Ⅱ	4,430	2,975	2,490	130	355	'89~'10
	홍 보	8,100	4,136	3,035	230	871	'91~'10
	영산강Ⅲ-1	13,160	4,706	3,540	191	975	'85~'10
	영산강Ⅲ-2	7,840	3,794	2,072	270	1,452	'89~'10
	영산강Ⅳ	16,730	7,520	1,030	270	6,220	'01~'10
	새 만 금 (외곽시설)	28,300	28,607	23,286	1,800	3,521	'91~'09 (외곽시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 주무관 김성률)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국제적 식량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농지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적정 농지보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70년대 이후 고속도로, 산업단지, 택지 등의 용도로 매년 2만5천ha 정도의 농지·산지를 공급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농지보전과 개발용지 공급의 양자간 조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8. 6. 5자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그에 상응하는 지역을 새로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종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이 어려워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설규모화를 꾀하고, 농업생산자단체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유휴농지 등을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농지법 개정은, 우량농지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금년도는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확대 및 세부사업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즉,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으로 통합하고, 농지은행 포털 보강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확대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였다.

농지유통화 정보제공은 기존의 농지은행포털의 임차희망농지 등록, 임대농지 관리실태 사진게재, 농지관련 제도 등록, 마이페이지 개설, 질의응답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농지세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업 홍보 리후렛을 포털에 등재하여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우선권 부여 등 행정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인하(기존 60%→9~36%)를 추진하여 농지은행 활성화 및 이용의 규모화 확대를 도모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의 비사업용 적용배제 농지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추가(2008. 2 22, 관보게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추가 확보(1,000억원→1,195억원)와 농업용 시설 매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3. 협동조합 개혁

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농협이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8,25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나, 최근 국제 금융여건의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불안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상반기 농협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3,06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56억원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사업 분리를 위한 자본금 적립 등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기계 임대사업, 비료·사료 값 지원 등 신정부 출범 후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로 인해 경제사업 활성화 투·융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 마련하여 2년차 추진 중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 2회 평가위원회 개최 및 3년 단위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 평가 등을 통해 38개 이행과제의 내용 및 투·융자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협은 외부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투자수익률, 거래의 투명성 부족, 책임경영체제 미확립 등 자회사의 역할 및 수익성 등이 당초 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 현황 및 지도·감독체계 등을 분석·검토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나.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실용정부 들어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소규모,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

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2007. 3)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상품화하여 책임지고 처리(산지의 60%, 소비지의 15%)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은 “첫째, 조합원의 능동적인 조합활동 유도, 둘째, 조합은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조직으로 전환, 셋째, 중앙회는 대표품목(쌀, 한우, 식품)책임육성 및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협이 농협개혁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될 개혁과제 및 농업인단체 요구사항,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9월)하여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1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미만에서 0%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 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합의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제·개정 중에 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4. 지역농업클러스터⁴⁾ 사업추진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자체 및 민간클러스터사업단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는 22개 사업단⁵⁾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분야는 ①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② 생산기반조성, ③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구분하여 지원중에 있다.

시범사업 3년동안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중에 있으며, 22개 사업단에 총 230억원을 지원·시행중에 있다.

4) 개념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5) 22개 사업단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향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부문도 육성·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정책 Feed-back 시스템 강화와 지역 농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진흥팀 사무관 류승규)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가를 농업에 주업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농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농업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여기서 절약된 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을 돕는다. 고령농에게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입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은 농업정책의 고객인 농가의 농업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경영정보 등을 모아서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포함,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받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9개 읍·면 7,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문제점 보완과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 5월 세부적인 등록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영정보 등록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의등록 방식이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2009년까지는 희망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받고, 2010년부터는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사무관 이덕민)

6. 맞춤형농정 추진

환경·생태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가 소득안정화 위주로 직불제를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WTO의 허용보조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고 고령농의 생활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대상농지 확대(진흥지역내 논 →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 지급연령 확대(63~70세 → 65~75세) 등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있게 확대 개편한다.

한편, 전업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내·외 실무가 등을 중심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상농가, 대상품목, 소득보전방식 및 수준, 시범사업 실시 방안 등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가별 경영정보 파악을 위해 2007년 시범 실시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근거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이외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취미농, 부업농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쌀직불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취약농가인력 지원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농 등 성장단계별 농가유형에 따른 지원조건을 차등화 하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이용직)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1. WTO/DDA 협상 대응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2008년 WTO/DDA 협상은 2007년에 이어 활발히 전개되어 그룹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8년 협상은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특별긴급관세 등 이견 대립이 큰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약 10여개국 관련 이해당사국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협상을 하는 소그룹회의(Walk in the Woods)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월 및 5월에 2차례 세부원칙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각료회의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Lamy WTO 사무총장은 7월 중 각료회의 개최를 고려하며 7월전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별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마침내 7월 21일부터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한다는 협상일정을 발표하였다.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2007년 이후 DDA 협상이 본격 진행되어 3차례 세부원칙안이 제시되는 등 상당부분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며 올해말 미국대선 등의 정치일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WTO 다자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 속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며, 그간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리가 되어 논의가 단순화되었는 바,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등 주요 수치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정만 있다

면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7월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DDA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농업에 주는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협상 목표에 따라 관세상한, 특별품목, 민감품목 등 우리의 핵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부원칙 협상 단계 뿐만 아니라 세부원칙 타결 이후 이행계획서 검증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한편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정부는 동 과제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비록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개도국기준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개도국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R협상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DDA 협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기준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기준 적용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협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원칙이 마련된 후 각국이 C/S(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최대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의과정에서 개도국기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농업의 영세성, 개방 이후 악화된 여건 등 개도국기준 적용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강 및 핵심 이해관계국을 대상으로 실무급·고위급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김민아)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이 회람된 이후 2차례에 걸쳐(2008년 2월, 5월) 세부원칙 수정안이 회람되는 등 협상이 급격한 진전을 이루었다.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세부원칙 연내 타결을 목표로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수정안 제출 이후 진전된 논의사항을 반영한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이 회람되고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의 세부원칙 타결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부원칙 2차 수정안에는 기존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도국은 낮은 계수를 사용하는 대신 더 많은 수준의 신축성을 사용하거나, 신축성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높일 수 있도록(Sliding Scale) 하고 있다. 현재 Sliding Scale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계수와 신축성의 구체적 수치 등 일부 세부사항은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방식으로 분야별 자유화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참여여부와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연계하는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크게 남아있다.

비관세장벽(NTBs) 관련 논의는 세부원칙 타결시까지 포함될 비관세장벽 제안서를 확정하고 타결 후 2~3개월 이내에 제안서 문안을 결정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향후 미국대선(2008년 11월), 인도총선(2009년 4월) 등 주요국 정치일정과 현재의 협상 진전을 감안할 때 협상의 연내타결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많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남아있는 쟁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요국이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협상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DDA 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업, 비농산물, 규범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모든 협상이 동시에 타결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향후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타결 여부는 여타 분야의 협상진전, 특히 농업협상에서의 미국, EU 등 선진국과 인도, 중국 등 개도국간의 대립 해결 여하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시장을 최대로 확보하면서도 국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침하에서 수산물 등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NAMA 협상그룹 의장과 면담,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등 주요시점마다 수산물은 개도국 신축성을 사용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본적인 개도국 관세감축공시 계수를 낮추어 수출가능성 최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NTB협상 중 신속해결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SPS 조치 등은 매우 과학적이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해결매커니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자협상과 사무관 최정미)

2. FTA 농업협상 대책

가. 한·미 FTA 협상분야

1) 개 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는 5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이 있었으며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협상이 개최되었다. 2007년 4월 2일 정부간 협상은 종료되었고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에서 6월 까지 3개월간 이해단체,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보완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2007년 6월 28일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6일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 국회비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후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찬반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농어촌 지원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월 19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제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한미 FTA 이행에 관련된 24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미 2개 법률이 처리되었고 농식품부 소관 법

률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포함한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 송법 등 3개 법률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개정 추진 예정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FTA 서명순서대로(컬럼비아, 파나마, 한국 순) 비준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미 FTA의 중요성 및 양국 관계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결국 비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민주당 Obama 상원의원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2008년 내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역무역협정팀 사무관 박정훈)

나. 한·EU FTA 협상분야

한-EU FTA는 협상출범 이후(2007년 5월 6일) 2007년에는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했으며 우리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농산물셰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제4차 협상(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를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EU측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11.19~23, 브뤼셀)에서는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2008년 제6차 협상(1.28~2.1, 서울)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협

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U측 요청으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 EU측은 민감품목의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 가능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EU측은 감귤, 감자, 설탕 등 관심품목은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요구하였다.

제7차 협상(5.12~5.15, 브뤼셀)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주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지난번에 비해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우리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고 EU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리적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에 계속 집중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지역무역협정팀 사무관 박정훈)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2005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20차까지 진행된 한·아세안 FTA는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FTA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부문 협정을 타결하였다. 본 상품협정문은 2007년 4월 국회비준을 통과하였고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10개국(싱가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아세안 상품협상의 관세철폐방식(Modality)은 다음과 같다. 상품은 본 방식에 따라 양허안이 작성되며, 당해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다.

<표 3-2-22>

한·아세안 관세철폐방식(Modality)

카테고리 구분	관세철폐방식의 내용
초민감품목 (HS6단위 : 200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유지(양허제외) ○ 2016년부터 20% 감축 ○ 2016년부터 50% 감축 ○ 저율관세할당물량제공(TRQ)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5%p로 감축
일반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철폐, 2008년까지 철폐, 2010년까지 철폐

<표 3-2-23>

초민감품목 주요 농산물

구분	내 용	품목수 (6단위)	주 요 농 산 물
A	2016년까지 50%p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실질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5 감축	117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도, 밤, 잣, 대추야자, 구아버, 망고,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미료, 기타 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2 감축	23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공 곡물, 오렌지 주스
D	TRQ제공 현행관세유지	3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전분
E	현행관세유지	35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 기타 조제식료품 등

서비스분야는 양측이 개방 분야의 목록화(Positive System) 방식을 채택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방할 부분에 대해서만 양허안에 표시함으로써, 양허안에 미표시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개방되지 않는 방식이다. 농업 서비스 보호의 측면에서는 본 개방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서비스 분야는 2007년 10월 2차 협상에서 타결되어 양측은 한-아세안 정상회의(2007년 11월 21일)시 서비스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편 투자분야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제9차 협상부터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도(2008년 11월 제24차 협상) 한미 FTA 수준의 높은 개방을 원하는 우리측과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ACIA) 수준으로 체결하려는 아세안측 기대수준의 차이가 현격하여 2008년 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무역협정팀 행정사무관 피계림)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2008년도 들어 10월 현재까지 한·캐나다 FTA협상은 상반기에 한차례의 정례협상과 한차례의 회기간 협상만이 개최되는 등 협상은 느슨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상 전반적으로 볼 때, 2005년 협상개시 이래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하여 옴에 따라 일부 핵심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다. 다만, 농업분야는 잔여쟁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양허분야에 있어서 식용감자 및 오렌지를 양허제외 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캐나다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등 품목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할당관세 대상품목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캐나다측은 한·미FTA와 동일한 수준의 상세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타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농업분야 양허이익의 불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캐나다측의 기대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다각적 접근과 전략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팀 기술서기관 전종민)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2008년도 한·인도 CEPA협상에 있어 농업분야는 인도측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산물 등 1차산업 관련품목 외에는 많지 않으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도에는 실무회의 2차례를 포함하여 모두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9월에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협상 핵심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 협상결과를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협상결과를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협상결과 역시 실무 확정 이후 발표될 예정이나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부분의 우리 민감 농산물을 양허제외 유형에 포함 시킴으로써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협정문 및 상품양허안 등이 실무확인을 통해 확정되고, 이후 양국간 국내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정식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무역협정팀 기술서기관 전종민)

바. 한·GCC FTA 협상분야

GCC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기구를 말한다.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방문 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 측이 공감하였고 200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의 예비협의를 2008년 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의결하게 되었다.

양 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제1차 협상은 2008년 7월 9~10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협상 이후 양 측은 상품양허안을 교환한 상태이다. 제2차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GCC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 간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달리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GCC와의 FTA는 이들 국가 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무역협정팀 행정사무관 안종현)

3. OECD 활동계획

2008년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2007년에 이어 제145차 농업위원회 회의(2006년 6월)에서 결정한 2007~2008년간 사업예산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3개 작업분야(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10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작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정책개혁 분야에서 ①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 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 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⑤ 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중기 전망, ⑦ WTO 농업협상 평가, ⑧ 농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분석,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개발, ⑩ 효율적 농업환경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2월 제45차 농정시장작업반회의에서는 “한국농정개혁평가”, “정책설계와 집행에 관한 종합보고”에 대하여 공개승인을 하고, 연구 초기단계에 있는 “농촌지역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분야의 역할”, “최적위험관리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 5월 제150차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2009~2010년간 사업예산계획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작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2009~2010년 사업예산계획(안) >

분야	단위사업	세 부 작 업
농업 정책 개혁	①농정 점검·평가	1.1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1.2 특정 이슈와 국가 중점 점검 및 평가 : US, EU, 터키 1.3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매뉴얼 : PSE/CSE ⇒ 'PSE 및 CSE의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포함 1.4 정책평가모형(PEM) 모델의 개발과 유지 1.5 외부협력 : 거시경제자료를 요하는 농업정책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②비회원국 검토와 정책 평가	2.1 이머징 경제(emerging economy)의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2 농업 글로벌포럼 2.3 개도국의 농정 설계 2.4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2.5 아프리카 농업정책 자료와 지표 (*빌게이즈 재단 후원)
	③식품체제및 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함의	3.1 글로벌화 세계에서 농식품업의 미래는 무엇인가? 3.2 글로벌 식품분야의 미래 탐색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DDA 非타결 시) ⇒ '바이오경제' 포함
	④정책수행 개선	4.1 농업 최적위험관리 정책 4.2 농업에서 혁신과 경쟁력, 생산성 성장의 차이 4.3 농업각료회의 준비
농업 무역	⑤시장·정책에 대한 중기 전망	5.1 OECD-FAO 중기 농업전망(Outlook) ⇒ '특별 초점과 확산' 포함 5.2 AGLINK -COSIMO 모델의 재검토 및 업데이트 5.3 글로벌 농업상품시장의 구조적 변화
	⑥농업 자유화 : 성과와 도전	6.1 DDA 농업협상 평가 (DDA 타결 시) 6.2 지역화와 농업시장에 대한 영향
	⑦농업시장 개방기회	7.1 농식품 부문에 적용되는 비관세조치의 비용과 편익 7.2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책대응의 경제적 무역적 함의 7.3 가공품 무역의 추세
농업 지속 가능성	⑧농업환경 정책성과 점검	8.1 환경성과의 측정 및 농업환경정책의 점검
	⑨DB와 모델 개발	9.1 농업과 농촌개발 : 종합보고서 9.2 농업환경정책 : 정책 가이드라인 및 쇄신적 접근 9.3 수질과 농업
	⑩기후변화 대응	10.1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농업의 기능 10.2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적응과 농업정책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

한편, OECD사무국은 1998년에 “한국농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개혁에 대한 평가를 2007년에 시작하여 완료보고서를 발간(2008. 4.)할 예정이다. 동 보고서는 총4장-제1장 ‘한국농업 현황’, 제2장 ‘1995~2007 한국농정’, 제3장 ‘농업지원에 대한 분석’, 제4장 ‘평가 및 권고’-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4장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농정개혁이 개방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OECD 지향 및 권고에 전반적으로 부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 개혁을 필요로 하는 12개 분야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다. 한국 농업의 추가적인 개혁을 위한 OECD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 1998년 정책권고 및 이행정책 >

1998 정책권고	이행된 정책
① 직접지불제도 확대 - 생산 및 투입제사용과 분리	경영이양직불제(1997),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친환경축산직불제(2004),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4), 경관보존직불제(2005), 논농업 고정/변동 직불제(2005)
② 시장개방노력 증대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1995~2004) 2004년 싹협상결과 이행(2005~2014) 한-칠레(2004)/한-싱가포르(2006)/ 한-EFTA (2006)/ 한-아세안 FTA 이행(2007)/ 한-미 FTA 체결 (2007)
③ 식량안보를 위한 대안마련	추곡수매제도 폐지 및 쌀공공비축제도 도입(2005)
④ 다운스트림산업 개발 - 경영 및 유통기법 향상	식량유통제도 구조조정(1998) 지역농업클러스터 프로그램 도입(2005)
⑤ 투입제에 대한 보조금 삭감	농기계 구매 보조금 폐지(2001)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2005)
⑥ 기반시설 개선 - 유통 효율성 제고	도매시장에서 전자입찰제도 도입(1999) 농산물 전국 전자시장(e-market)제도 도입(2000)
⑦ 효과적인 구조조정 이행 - 상업농 창설 및 농외소득원 개발	농장의 규모화 프로젝트 시작 (1988) 농지은행제도 도입 (2005)
⑧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및 친환경축산직불제(2004) IPM/ INM 도입(1993),화학비료 및 농약보조금 폐지(2005)
⑨ 규제개혁 촉진	수차례 농지법 개정과 농지규모 확대(1999, 2002, 2006)
⑩ 정책이행의 투명성 증대 - 정책조치 감소 및 예산구조 단순화	종합자금제도 도입(1999) 중자기금과 인삼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으로 통합(2000) 농업사업 평가시스템 개편(2005)

< 2008년 정책 권고 >

2008년 OECD 권고내용	
① %PSE 및 MPS 감축	-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생산결정과 연계되지 않고 보상기간이 한정적인 직불제로 대체 가능
② 시장개방노력 증대	- FTA 체결국가 확대 및 DDA 협상타결 노력 - 관세피크 감축 및 전반적인 교역 증가를 위한 관세시스템 조정
③ 직불제의 개선	i) 논농업고정직불제의 목표 명확화 및 타겟팅화 - 소득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거나 자본화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 등의 문제 극복 ii)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도의 재검토 - 높은 쌀 생산수준 및 쌀소비 감축 경향,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
④ 우유 쿼터 감량 및 쿼터내외가격 인하	- 2002년 쿼터제 도입 후 잉여량 및 지원금 감소되었지만, 보다 시장지향적인 가격 결정 방식 필요
⑤ 농가소득 원천의 다양화	예> 농촌지역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및 농식품산업 촉진
⑥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구분하되, 상호연계된 농촌개발정책 추진	- 농외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보완 - 교육, 교통, 보건 등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용도에의 농지 활용으로 활발한 농촌 경제 개발 촉진
⑦ 규모의 경제 창출 위한 농지구제 개선	- 농장의 대규모화 및 합병 촉진, 임대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비농업인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등이 필요 -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구역규제(zoning) 필요
⑧ 현재의 농업인 개념*을 비즈니스 지향적인 농가로 재검토	- 농업인에게 의료보험경감 등 상당한 사회적 편익이 주어져 농가로 남고자 하는 유인을 줌
⑨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을 위한 조치 마련	- 구체적 방법 제시 -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상품정책과 환경목표의 조화
⑩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제공	- 인증제도의 효율화(streamlining)를 통해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한국상품 품질에 대한 명성을 구축
⑪ 세계시장에서 명성이 높아진 한국 전통식품에 대한 홍보 강화	- 국외 홍보 및 프리미엄 상품 개발 지속 - 시장개발 및 홍보 정책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
⑫ 기업가적마인드 촉진	- 농장생산·마케팅·소득위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 - 농업생산망의 전후방산업(요소산업, 산출산업) 효율성 개선

한편, 6년 기간 OECD사무국에 근무하며 농업 및 무역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마련해왔던 농업무역국장 Stephan Tangerman이 2008년 12월 퇴직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총괄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4. FAO 활동

가. 개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영양·식량·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및 국제활동의 촉진과 권고를 목적으로 1946년 12월 14일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기구 소재지는 이탈리아 로마로 2008년 현재 191개 회원국 가입하고 있으며, 매 홀수년도에 각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 등 산하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08년도 현재 3,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회원국 분담금 규모는 자국의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UN이 결정한 UN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07년도의 예산규모는 7억7천만달러 수준이며 2008년의 경우 약 930백만 달러에 이른다.

나. 주요활동

FAO의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 시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하여 회원국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며, 적절한 기술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FAO 사업은 FAO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사업(Regular Programmes)과 UNDP, WFP, UNICEF, FFHC, 신탁기금

등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기타사업(Other Programmes)이 있다.

FAO는 창설 이래 농업,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서 유일한 국제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가지 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 및 교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연감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여 세계 식량의 수급현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영양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식량 및 농업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

FAO는 농업, 수산 및 임업용 기자재 목록의 간행과 심지어는 동식물 질병의 통보 등 식량,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유익한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분으로부터 생사에 이르는 각종 상품에 대한 경제적 관측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FAO는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에 만족치 않고 세계식량농업개발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방대한 장기계획 지침서로서 “세계식량농업개발계획지표(Indicative World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였고 그 외에도 “2015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15)”, “2030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30)” 등 각종 중장기 농업예측전망자료를 발간하며, 또한 매10년마다 실시되는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를 주도하여 각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방대한 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왔다.

최근 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이 2005년 11월 제 33차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에 소지역사무소를 추가(아프리카 2, 중앙아시아 1, 걸프 1, 중미 1개) 및 유럽에 서비스 공유센터(SSC)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하여 동 기구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도출 후 2007년 11월 제34차 총회에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핵심적 결론과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즉각 행동계획의 세부일정을 2008년도 특별총회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동기구의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규모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1966년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하였고, 9회에 걸쳐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FAO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회원 분담금 규모는 약 88억 원 수준이고 191개 회원국 중 11위이다.

2007년 11월 17일~24일 기간 중에 190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4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농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10년 개최예정인 제30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의 우리나라유치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동 총회에서는 2004년도 제127차 이사회에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 중 추진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독립외부평가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이며 이를 위해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안되었으며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독립외부평가의 권고를 반영한 사무국의 2008~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77, EU 등의 지지로 제로명목성장(ZRG, 2006~2007년도 대비 21.4%증액)안이 채택이 되었으며, 동 예산규모의 상승과 우리나라의 분담비율 증가 (2008~2009 : 2.18%, 2006~2007 : 1.82%)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담액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제34차 총회에서 안도라 공화국 및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총 19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러시아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함께 FAO는 6개 공식어를 사용하기로 결정 되었다.

아울러 각 위원회, 총회 활동에 있어서는 눈에 띄이는 것은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한 이슈로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동 이슈는 향후 수년간 FAO의 중요관심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년 6월 3일부터 5일 기간 중에 개최된 식량안보고위급회의에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증가 등으로 국제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절대 빈곤, 기아인구 감소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적 인도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2008년 11월 17일~21일 기간 중에 191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특별총회(제34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FAO 개혁을 위한 마련된 '즉각 조치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5. ASEAN+ 농림장관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하반기 「ASEAN+3 농림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 및 통합에 기여하고 아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협력사업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활동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및 이행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였다. 200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허상만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 개최된 제4차 회의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파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체,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제5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제안하였던 3개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6월에는 한국 농촌공사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훈련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7개국 13명이 참가하였다. 8월에는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에서 아세안 프로젝트인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의 우리나라 기여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을 KOICA와 함께 주관하여 2주 동안 약 20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식물검역소와 함께 주관하여 10개국 19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2주 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쳤다.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를 2006년에도 이어 실시하고,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 사업을 제안하였다. 동 회의 직후 2006년 11월 하순 서울 삼성 KOEX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박람회에는 농기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4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제6차 회의 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실시한 4개 연수에 대한 아세안회원국의 참석은 매우 뜨거웠다. 2007년 5월 2주간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는 7개국 13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달 1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였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에는 9개국 19명이 참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는 당초 2006년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으로 일정을 늦추어 2007년 5월에 실시하였다. 연수 일정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관심과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참석했던 9개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각 600여 개가 제공되었다. 2007년 6월 초 2주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였던 ‘제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10개국 20명이 참석, 100% 참여율을 보였다. 8월 말 9월 초 10일간 실시하였던 ‘제3차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에도 9개국 24명이 참석, 제1차 및 제2차 연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고, 농업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유용한 훈련을 받았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개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제안하고 2008년도에 추진하였다. 먼저 6월에 2주간 실시된 제3차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에는 아세안 등 14개국 22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식물검역 검사방법 관련기술 등을 전수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월에 3주간 실시한 제2차 가축전염병 방역기술연수사업에는 8개국 18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경험과 방역시스템에 관한 소개, AI 진단기술 전수 등을 통하여 아세안국가의 AI 방역기술 향상 및 질병근절에 기여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10월에 3주간 실시한 농촌개발과 기술보급훈련에는 8개국 16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의 지도사업 소개를 통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주관으로 11월에 2주간 실시한 제4차 농업통계 정보 분석 및 제공 훈련에는 9개국 19명이 참가하였으며, 실무자들의 정보화 및 자료 분석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1월말 1주일간 실시한 농업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사업에는 5개국 21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국의 농산물 유통산업 관련 종사자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경제협력 연수사업 참가자들은 연수과정에 만족하면서 향후에도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긴밀화 되어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도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농수산업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총괄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8년 2월 13일~14일 기간 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이태리공사를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IFAD에 대한 지원규모 향상, 과거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국제협력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금번 총회의 원탁토론 주제인 “기후변화·바이오연료 확산 등에 따른 기아와 가난극복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29차 총회시 IFAD의 제7차(2007~2009) 기금조성에 3백만불의 납부서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연간 1백만불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연말에 동일한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12일 기간 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

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7년 8월 20일~22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56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집행위원국이 참가하여 사무총장 임기 연장안, 동기구 직원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 건전재정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12월 6일 대만에서 동기구 사무총장,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 대표들을 소집하여 제2차 지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7월 26일~8월 10일 기간 중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동기구 12개국 17명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형성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도 8월 18일~31일 기간 중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동기구 10개 회원국 관계자 11명을 초빙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2008년 11월 7일~8일 기간 중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6차 총회는 개최국 사정으로 인해 2009년 1월 4일~5일 기간 중 개최하기로 변경되었다.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국제화시대에 농산물 교역·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업분야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농업협력약정 체결국가로는 일본(1968년 한·일 각료회의 후속조

치), 중국(1996), 이스라엘(1997), 몽골(2003), 브라질(2004), 알제리(2006) 등 6개국이 있으며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뉴질랜드(2007년 4월 26일), 프랑스(2007년 11월 21일)와 신규로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와의 농업협력약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농업협력약정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조금 철폐 등 농업인 주도의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뉴질랜드와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생산의 20%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강국으로 EU의 공동농업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와인 및 증류주, 식품안전 및 농촌개발 정책 등이 발달하여, 금번 프랑스와의 농업협력약정체결로 선진 농업국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 농업정책의 발전 및 민간 농업분야 기술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진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협력약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최봉순)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북한농업은 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으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상호조, 병해충 발생의 감소,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정 공급, 수리시설 개선에 의한 농업용수의 안정 공급, 이모작 확대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적으로는 생산주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식량안보는 호전되었으나 계층간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명은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24>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1995/1996	1997/1998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2007/2008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4,01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96	5,203
부족량	1,694	1,717	1,039	1,361	1,136	956	1,193

주: 1) 국내생산량: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6년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9년 비료 15.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2001년 비료 20만톤, 2002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 2003년 비료 30만톤,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무상지원하였고 쌀 5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쌀·추가비료 지원 논의가 유보된 상태에서 7월 중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남한측 민간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속한 대북 지원을 요청하는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는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한적 및 민간의 긴급구호 및 수해복구 지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톤(국내산), 자재장비, 긴급구호물품 등 76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물자지원은 잠정 유보되어 쌀은 89,500톤만 북측에 전달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 제기한 쌀 50만톤 제공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었다.

2) 민간차원의 지원현황

민간차원을 통해서는 1995년부터 2007년 말까지 북한에 총 6억 4,104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창구별 지원액 비중은 국제적십자사 0.8%, 대한적십자사 29.3%, 독자창구 69.9%로 독자창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북지원 초기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지원창구를 갖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기탁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9년 2월 10일부터 민간단체는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7개 단체(7개 사업)에 대해 33.8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8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50개 개별사업에 116억원, 북한의 사회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3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합동사업에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유보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은 수해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구호 품목 위주로 계속되었다.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농발협, 평화의 숲, 월드비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한국JTS,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대규모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에 점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25>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1995	23,200만불	(1,854억원)	25만불	(2억원)	23,225만불
	쌀 15만톤		담요 8천매		(1,856억원)
	직접 지원		국적 경유		
1996	305만불	(24억원)	155만불	(12억원)	460만불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36억원)
	UN기구 경유		국적 경유		
1997	2,667만불	(240억원)	2,056만불	(182억원)	4,723만불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422억원)
	UN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1,100만불	(154억원)	2,085만불	(275억원)	3,185만불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429억원)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1999	2,825만불	(339억원)	1,863만불	(223억원)	4,688만불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562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8,139만불	(978억원)	3,238만불	(387억원)	11,377만불
	비료 30만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365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		
2001	7,522만불	(975억원)	6,017만불	(782억원)	13,539만불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757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2	8,915만불	(1,140억원)	4,577만불	(576억원)	13,492만불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1,716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2003	9,377만불	(1,097억원)	6,386만불	(766억원)	15,763만불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1,863억원)
	직접지원/WFP/UNICEF경유		한적/ 독자창구		
2004	11,541만불	(1,313억원)	13,250만불	(1,558억원)	24,791만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2,871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독자창구		
2005	13,588만불	(1,360억원)	7,666만불(779억원)		21,254만불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2,139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6	22,967만불	(2,296억원)	7,088만불(709억원)		30,055만불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3,005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7	22,736만불	(2,159억원)	9,698만불(920억원)		32,434만불
	비료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의결액 기준, 정산중),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3,079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합계	134,882만불	(13,929억원)	64,104만불	(7,171억원)	198,986만불 (21,100억원)

자료 : 통일부

※ 민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액 :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12월 14~15일 남북농수산물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농수산물분과위원회 1차회의에서 남북은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종자정선시설 지원협력, 농업과학 기술분야 협력,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등의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 진전은 없다.

북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남북농업협력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상호이익의 경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협력사업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협력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협력의 형태를 상업적 협력, 농자재지원 및 기술교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은 다양성과 시범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적 협력, 농자재 지원이나 기술교류 등 소규모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농업복구나 개발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농업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각 주체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지하)

9. 해외농업개발사업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 자급률이 27.2%(쌀 98%, 밀·옥수수·콩 0.2%~7%) 수준으로 매년 1,400~1,500만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178만ha에 불과하여 유휴지 활용이나 생산성 증대만으로 필요한 식량을 자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곡물 수입국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곡물 수급현황

(단위 :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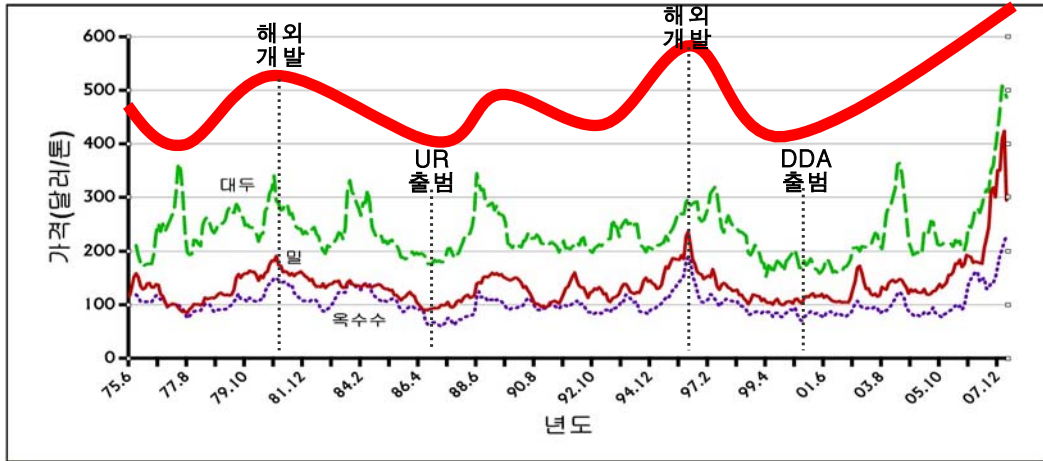
	공 급 량			수 요 량			재 고	
	생산	수입	이월	식용	사료	기타		
2,170 (1,594)	532 (64)	1,429 (1,395)	219 (145)	2,169 (1,594)	940 (519)	924 (924)	107 (23)	198 (128)

* () 쌀을 제외한 물량

국제 곡물가격은 10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곡물가격 상승 시 마다 해외농업개발 문제가 제기 되었다가 곧 이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호지부지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확대,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곡물 소비의 확대, 투기자본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예전의 경우와는 달리 앞으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 될 것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전망하고 있다.

구조적인 식량 수입국가인 우리나라는 주기적인 곡물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등락에 따른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국제입찰에 의한 곡물확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가격 추이(1975~2007)>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정부주도 개발사례

정부는 1960년대 최초로 정부 주도 해외이민을 추진하였다.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남미농장 5개소를 개발하여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해외농업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곧 이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중단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현재는 해외환경조사사업만 추진하며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주도 개발사례

1980년대 이후 민간중심 해외농업개발이 시도되었고, 1990년대는 특히 연해주, 중국 등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현지 토지를 매매·임차하여 농장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규모 농업 경험부족,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였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효율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 판매망이 확보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의 개발사례

일본은 1960년대부터 종합상사 주도로 토지임차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에 농장을 개설하였으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직접개발보다 유통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전환하여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저장시설 등의 유통구조 지배를 모색하는 “Post Harvest”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1960~1970년대 일본 민간기업 해외 농장 건설 사례

- ▷ 1968년 종합상사 “미쓰이”: 인도네시아 농장 개설(옥수수, 수수 생산)
- ▷ 1971년 “이토츄”, 1973년 “미쓰비시”도 동일 지역 농장투자 실패
- ▷ 1970년대 중반 : “수미토미”상사 호주에 농장 설립 운영
“유니온 트레이드” 태국에 옥수수 농장 시작
- ▷ 1978년: 일본정부, 브라질에 CAP 농장 개설
“미쓰이” 호주 오드리버 지역에 수수 및 목축 시도 실패

일본 민간기업 유통시설 확보사례

- ▷ 1988년 일본농협중앙회·이토츄가 CGB(Consolidate Grain & Barge)를 공동 인수
- ▷ 1980년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주로 미쓰비시, 미쓰이)는 미국 내 곡물저장시설(지방대도시 집산시장의 터미널 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 등 강변 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 이루어짐

다. 추진전략 주요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 ◇ 종합적·장기적·지속적인 정책접근 ◇ 틈새시장 진출, 곡물 생산·유통망 확보 	
5+2 전략과제	A1	민간주도 프론티어 사업 추진, 성공모델 개발
	A2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A3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A4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개척
	A5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등 지원인프라 구축
	+1	해외곡물자원을 활용한 식품 가공수출 촉진
	+2	원예, 축산, 농자재 등 농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미션	식량자원 안정적 확보, 수출 촉진, 해외진출 활성화	

1) 민간 주도 프론티어 사업 추진

해외농업개발 후발 주자로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 업체들의 영향력이 다소 낮은 틈새를 파고들어 나름대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검토대상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존 곡물메이저들의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틈새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통망 확보든 직접생산이든 앞서 시사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철저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지역별 여건 분석 및 대상작물을 선택 한 후,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2)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10개년 계획에는 추진목표 뿐만 아니라 지원체계·조직의 구성, 관련 제도·법령의 정비, 기술·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 방안 등을 망라하는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을 담아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 추진 절차를 정하여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 계획은 매년 추진 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진출업체 대한 지원정책 추진

외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농진청·농촌공사 등의 기술전문가, 학계, 민간의 해외진출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해외농업협력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제도 및 외교적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재원은 농지관리기금 등을 검토하되 금년 중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4) 자원외교 강화, 틈새시장 개척

동남아, 몽골, 중앙아 등 자원부국이며 농업개발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와 양자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태로 농업 진출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업 참여자를 잠재적인 당해 국가 전문가로 육성하여 향후 우리기업 진출 시 전문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 운영중인 농업협력위를 통해 브라질 등 곡물수출국과 협력방안 모색하고 해외농업 개발 유망지역과의 신규 MOU(협력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해당국에서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지원인프라 구축

농업연수원 등에 수요자(진출희망업체) 중심의 해외농업개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곡물메이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교육 등 해외 고수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고, 해외농업개발 성공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민간 교육 및 정책 수립 등에 자문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외농업 개발 시 필요한 품종 개발, 재배 및 수확·저장·유통 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농업 환경조사도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사로 개선하고, 자부담을 의무화하여 조사를 보다 내실화하며 조사결과는 D/B화 하여 관심 기업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우수한 원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14억 시장을 겨냥한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예, 축산, 바이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 및 자본을 갖춘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체의 현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산업도 일반 제조업과 같이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조래청, 주무관 박종완)

제10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1.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보완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타결로 3개월간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6.28)한데 이어 국회, 농어업인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책 및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10.29) 및 국무회의 보고(11.6)를 거쳐 대외에 발표하였다.(11.6)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년 1월 21일) 검토과정 및 새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경영 안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료자금 1.5조원(연리 1%), 화학비료 상승분 80%(정부40+업계40)를 지원하고, 쌀 목표가격(170,083원/80kg)을 5년간(2008년~2012년) 유지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대책을 보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송아지 기준가격 인상(130만원→165만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로 확대(2007년 16만ha)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당초의 보완대책을 3분야로 재정리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포도)에 대해 생산·가공·유통·안전성·수출 등 단계별로 지원을 집중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타결 예정인 한·EU FTA 영향까지 고려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또한, 경영체를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구분하여 주업농은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미래 경영주체로 육성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유도 및 복지확충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안정화하며, 취미농은 농업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농업 주체를 키우기로 하였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한식세계화 등을 통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전문 생산단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100억불 달성,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R&D확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당초 21.1조원(농업 20.4, 수산 0.7)에서 2.1조원 증액된 10년간(2008~2017) 총 23.2조원의 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대비 중점 추진 89개 사업(농업 68, 수산 21) 사업을 선정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분야 9.3조원(축산 6.7, 원예 2.3, 수산 0.3), 농어업체질 개선분야 12.6조원(경영체 지원 8.9, 신성장동력 3.3, 수산업체질 개선 0.4), 단기적 피해보전에 1.3조원(피해보전 직불 0.7, 폐업지원 0.6)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23.2조원 투·융자를 위해 재정에서 21조원, 정부가 차보전으로 2.2조원을 지원하고, 재정(21조원)은 FTA기금을 4.1조원으로 확충하고 그 외 농특회계(10.7조원), 축발기금(3.8), 농안기금(2.0), 수발기금(0.2) 등에 계상되었다.

이와 같은 투·융자계획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에 대비하여 검토 중인 안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농어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FTA 국내대책 재정지원 보완안(2008~2017년)

(단위 : 억원)

	투·융자	재정지원	비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	93,212	93,212	
농어업의 체질 개선	126,264	104,604	이차보전 21,660
단기적 피해보전	12,948	12,948	
계	232,424	210,764	21,660

< 한미FTA 투·융자 규모 검토안(23.2조원) >

(단위 : 억원)

구 분	2008 (A)	2009~2017 (B)	계 (A+B)	주요 사업
합 계	12,492	219,932	232,424	▪ 총 89개 사업
1. 품목별 경쟁력강화	7,054	86,158	93,212	▪ 52개 사업
가. 축산분야	4,512	62,875	67,387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13,401), 축사 시설현대화(14,700), 분뇨처리시설 (6,446) 등 24개 사업
나. 원예분야	2,361	20,142	22,503	▪ 인삼계열화(6,801), 원예작물브랜드 육성(4,154),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3,618) 등 14개 사업
다. 식량분야	0	206	206	▪ 발작물브랜드(170), 고랭지 감자광 역유통(36) 등 2개 사업
라. 수산분야	181	3,035	3,116	▪ 환경친화적 배합사료지원(1,351), 관리회사제도(202), 원양설비현대화 (240) 등 12개 사업
2. 농어업의 체질개선	5,438	120,826	126,264	▪ 33개 사업
가. 농업경영체 지원	3,645	85,252	88,897	▪ 농업경영체등록제(743), 경영이양 직불(17,694), 교육훈련(2,498), 농기 계임대(3,100), 후계농육성(26,202),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17,200), 재해 보험(20,719) 등 8개 사업
나. 신성장동력 확충	1,707	31,420	33,127	▪ 국가식품클러스터(1,145), 친환경물 류센터(478), 농림기술개발(9,452), 바이오기술 산업화(1,320), 해외시 장개척(4,038), 한식세계화(600)등 18개 사업
다. 수산업 체질 개선	86	4,154	4,24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2,218), 어업자 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1,088) 등 7개 사업
3. 단기적 피해보전	0	12,948	12,948	▪ 4개 사업 - 피해보전직불(7,183), 폐업지원 (5,000) - 수산소득보전직불(231), 수산폐업 지원(534)

(농업정책과 주무관 강동민, 행정사무관 박상호)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연구·기술개발과 활용촉진

1.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 로기술과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해 왔던 “농림수 산기술개발사업”은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998년 9월)함에 따라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외 환경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신규 R&D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화 위주의 실용화 기술 개발 중점추진, 기술분류체계 개편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2006년 12월) 하였다.

「농산업체 등 민간의 기술개발역량 강화와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 산물·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 기술력 확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고품질·친환경·고기능성, 생물자원·생명공학, 농림기자재, 농식품가공·유통 등 4가지 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표 3-2-26>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구 분	기획과제 (지정공모형)	일반과제 (자유응모형)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내 용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내용 등을 지정하여 공모 하는 과제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품의 전략적 수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형태의 공모과제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 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기술정책과 사무관 노영호·서정아)

2. 2008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가.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027과제에 5,51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 기획과제는 134과제에 833억원, 일반과제는 3,893과제에 4,681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현재 과제지원 현황을 보면 계속추진과제 221과제에 317억원, 신규선정과제 113과제에 233억원 등 총 334과제에 55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2-27>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과제, 억원)

구 분	1994 ~ 2007		2008			
	과제수	금 액	계속과제	금 액	신규과제	금 액
합 계	4,027	5,514	221	317	113	233
기획과제	134	833	39	143	10	30
일반과제	3,893	4,681	182	174	90	88
농산품수출 연구사업단	-	-	-	-	13	115

나.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산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시급히 요구하는 현장수요기술,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 및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농정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7월경에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하반기(2008년 2차)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2008년 7월에 2차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하반기 사업시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결과 총 155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중 산업체 제안 과제는 121건(78%), 농업인단체 제안 과제는 34건(22%)으로 집계되었다.

<표 3-2-28>

2008년 2차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접수결과

구 분 분 야	산업체	농업인단체	합 계	분야별 비율(%)
고품질·친환경· 고기능성	42	17	59	38
농림기자재	31	1	32	21
농식품가공·유통	28	11	39	25
생물자원·생명공학	20	5	25	16
합 계	121	34	155	100

접수된 과제들은 정책부합성·과급효과, 시급성, 실효성, 현장수요기술 해결가능성, 수출촉진, 산업화·실용화 등을 기준으로 취합·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5개의 기획(지정공모형)과제가 도출되었다.

다.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07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3,320과제이며, 이 중 647과제(19.5%)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지도에 1,307과제(39.4%), 정책자료에 184과제(5.5%)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완료과제 대비 64.4%에 해당한다.

<표 3-2-29>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 과제)

구 분	기술이전 활용		교육·지도 활용	정책자료 활용	활용추진중	합 계
	산업체	농 가				
기획과제	16	-	36	12	23	87
일반과제	226	405	1,271	172	1,159	3,233
합 계	242	405	1,307	184	1,182	3,320

(2007년 12월 31일 기준)

(기술정책과 사무관 노영호·서정아)

3. 2008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

가. 사업개요

1) 사업추진배경

농림바이오산업은 ‘농림업에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식품종육성, 기능성 식품 개발, 신물질·소재 생산 등을 하는 산업’으로 바이오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농림바이오 관련 R&D 지원 사업들은 기초·기반 및 실용화 연구역량 강화 위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산업화·제품화 연구를 지원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완료된 연구 기술들이 후속연구개발 재원 부족으로 사업화단계에서 사멸되는 현상이 빈발하였다.

2) 사업주요내용

이에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은 기존의 농림바이오분야 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2008년도 신규추진사업)으로, 2017년

까지 연구사업단별 산업화연구자금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 히트 상품을 생산하고 농림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나. 2008년 사업추진 현황

200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은 사업공고 및 접수결과 72과제(연구사업단)가 접수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 평가, 공개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7개 연구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총 연구비가 확정(78.4억원)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식품분야 7개 연구사업단(32.7억원), 바이오신소재 분야 5개 연구사업단(21.8억원), 동물바이오분야 5개 연구사업단(23.9억원)으로 바이오식품분야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표 3-2-30>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과제, 억원)

구 분	1994 ~ 2007		2008			
	과제수	금 액	계속과제	금 액	신규과제	금 액
농림바이오 기술산업화 지원사업	-	-	-	-	17	78

한편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재원은 “FTA이행기금”으로 국회의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하여 연구협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생명산업정책팀 사무관 이우철)

1.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 가능
 -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택지·산업단지 내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농지법 제31조제2항)
- 절차 중복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 기간 장기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 복잡

【 농 지 법 】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나. 개선방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택지·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다. 추진일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08. 3. 26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
 - '08. 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6. 30까지 개정 공포

라.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택지·산업단지의 개발 사업 기간 단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에서 레저형 산업 등 개발 시 농업인은 농지 매각 대금만 수취하고 개발이익은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귀속
-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가 없어 농업인의 소득창출 등에 한계

나. 개선방향

-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 출자 방식으로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골프장·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함.

다. 추진일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08. 3. 26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
 - '08. 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6. 30까지 개정 공포

라. 기대효과

-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3. 농지전용 허가권한 위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은 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 미만까지 위임되어 있음.
- 농지전용 시 시설 및 면적제한이 없어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개발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 복잡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데,
 - 동 예정지구 지정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 중복

나. 개선방향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전용 절차 간소화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다. 추진일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08. 3. 26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
 - '08. 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6. 30까지 개정 공포

라. 기대효과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전용허가 기간 단축 및 개발 절차 간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4.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자유전 원칙」(헌법 121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이 소유 가능
 - 예외적 소유 허용 : 학교·공공단체 등의 시험지·실습지용 소유 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상속받은 농지 등
- ※ 상속·이농 소유농지 한도 : 1만㎡(1ha)까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한도 : 1,000㎡ 미만
- 농지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필요

나. 개선방향

-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범위 내에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추진
 -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3ha(1ha : 본인 소유 + 2ha : 농지은행 위탁)를 농지은행 위탁관리 조건 하에 폐지
- ※ 이농의 경우, 2006년 소유제한 폐지
-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은행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추진

다. 추진일정

- 농지소유 규제완화 관련 : 농지법 개정
 - '08. 4 농지법 개정안 초안 마련
 - '08. 5 관계 부처 협의

- '08. 7 입법예고
 - '08. 8 규제 심사
 - '08. 10 법제처 심사
 - '08. 12 국회제출
-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완료('08. 2. 22공포)

라. 기대효과

- 농지소유 규제 완화로 농지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8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임대차 활성화에 기여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5. 농업진흥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소득관련시설의 규모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그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
 - 시설설치에 면적 제한이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화 곤란
- 또한,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가 불가하므로 법령상으로는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한되는 모순이 있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국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확대(3천→1만㎡)하고, 마을쉼터·농기계보관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의 범위 확대
- 농업진흥지역 내 폐수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

※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 가능하게 하더라도,

- 현행법상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므로(법 37조①),
- 농업진흥지역내외를 불문하고 1종~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으로는 농지 전용이 불가

다. 추진일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08. 3. 26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
 - '08. 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6. 30까지 개정 공포

라.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6.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 적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타 지역 대체지정제도 운영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개발용지 및 대체지정 농지 확보 곤란
 -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지정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체지정 농지확보가 어려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타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

다. 추진일정

- 시·도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결정 통보('08. 3. 5 기 시행)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08. 3. 26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
 - '08. 4~5.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6. 30까지 개정 공포

라.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행위 규제 등의 배제로 농어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한 공장유치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기업의 개발용지 확보 용이 등 기업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7.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
 -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 * 시장·군수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고시(현재 41지구 125.7ha만 지정·고시되어 있음, '07.6 기준)
 - 한계농지를 포함한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이 소유 가능(농지법 제6조)
 - 질병·고령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 및 임대 금지(농지법 제9조·제23조)
-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농지와 동일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하여도 일반농지와 동일한 규제를 함으로써 농지의 유동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행
 -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 또는 거래토록 하여 농업 및 농촌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나. 개선방향

-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 규제 완화
 - 한계농지로 고시된 농지는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 가능토록 조치
 -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각종 개발가능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다. 추진일정

- 농지법 개정
 - '08. 4 농지법 개정안 초안 마련
 - '08. 5 관계 부처 협의
 - '08. 7 입법예고
 - '08. 8 규제 심사
 - '08. 10 법제처 심사
 - '08. 12 국회제출

라. 기대효과

- 한계농지에 대한 유동화 증가로 농어업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고, 한계농지의 활용도가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시의 건전한 자본을 농어촌에 유입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기업의 개발용지 확보 용이로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 농업의 정의 범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업에 메뚜기·나비·반딧불 등 곤충과 지렁이·달팽이·뱀 사육 등을 포함하지 않고, 농산물생산에 종사하면서 농산물의 가공·유통·기타서비스업과 결합한 복합농업을 농업의 정의에서 제외(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개선방향

- 농업 여건변화에 따라 곤충·파충류 등 기타동물의 사육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 농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서 마련
- 농산물 가공·유통·기타서비스업과 결합한 복합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제29조(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서 규정, 운용 중

다. 추진일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 '08. 4. 30 : 농림수산식품부 개정안 확정
 - '08. 5. 31 : 입법예고·관계부처협의·법제처 심사 완료
 - '08. 6. 22 : 국무회의 심의 및 개정안 발효

라. 기대효과

- 농업 여건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업영역을 농업정책대상에 포함.

(농업정책과 사무관 김형재)

9. 환지업무의 대행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환지업무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환지사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에게 위탁 가능
- 환지업무 대행 법인의 환지사 상시 고용인 수를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설립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

【농어촌정비법】

제42조(환지 업무의 대행) ①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②(생략)

나. 개선방향

- 환지업무 대행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 수를 10명에서 3명 수준으로 완화

다. 추진일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
 - 입안 : '08. 9
 - 관계기관협의 : '08. 9
 - 입법예고 : '08. 10
 - 법제처 제출 : '08. 6. 11
 - 국회제출 : '08. 8. 12

라. 기대효과

- 환지업무 대행법인 설립이 용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시설안전과 사무관 박재수)

10.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기준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임대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등 장기 임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5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개선방향

-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등 간척지의 장기 임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
- 장기 임대 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다. 추진일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입안 : '08. 4
- 관계기관협의 : '08. 4
- 입법예고 : '08. 5
- 위원회 심의·의결 : '08. 5
- 법제처 제출 : '08. 6
- 공포 : '08. 6. 30

라. 기대효과

- 자본·기술·경영이 결합된 대규모농업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생산·가공·유통 등 2·3차 산업을 융합함으로써 농업인 수익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용수자원과 사무관 이장의)

11. 농어촌휴양지 사업자 지정제의 신고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휴양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과 관광농원) 사업을 경영하려면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 신청 하여야 함(사업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

【 농어촌정비법 】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①(생략)

②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략)

나. 개선방향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다. 추진일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관계기관협의 : '08. 5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5~6
- 법제처 제출 : '08. 6. 30
- 국회제출 : '08. 8. 31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 후 6개월 후

라. 기대효과

-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사업 활성화 유도

(도농교류과 사무관 전영미)

1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사업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업자 지정 여부와 관련 없이 개발 및 환경 등과 관련하여 별도 규제를 받고 있어 실효성 없음.

【 농어촌정비법 】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생략)

나. 개선방향

-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다. 추진일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 '08. 5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5~6
- 법제처 제출 : '08. 6.30
- 국회제출 : '08. 8.31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 후 6개월 후

라. 기대효과

-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업 활성화 기대

(도농교류과 사무관 전영미)

13. 경지정리 기본조사업무의 수행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혜면적이 100ha 이상인 경지정리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고, 50ha 이상 100ha 미만인 지구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가능
-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의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고, 기본조사의 위탁을 한국농촌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7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되, 경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개선방향

-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업무를 민간기관에 개방

다. 추진일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 '08. 5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5~6
- 법제처 제출 : '08. 6. 30
- 국회제출 : '08. 8. 3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 후 6개월 후

라. 기대효과

- 경지정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 경지정리 기본조사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개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시설안전과 사무관 박재수)

14. 농어촌주택조합 구성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 전원마을조성사업 확대 추진
-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요건인 농촌주택의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토록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제99조의4의 규정을 개정('07년, 기획재정부)
- *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농촌주택 구입가격 : (당초) 7천만원→(조정)1억 5천만원
-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농어촌주택조합은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전체 조합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축 및 마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입주자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민이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로 신뢰도 문제, 자금관리에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 *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도시민 비율 : 평균 8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9조(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등)

-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시지역의 주민과 당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농어촌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농어촌주택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준용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제9조(농어촌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구성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2.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인
3.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대주인 자

②이 영에서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라 함은 당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시 명시된 사업계획 대상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지역을 말한다.

제10조(주택조합의 설립절차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장의 선출동의서(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3.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4.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전체 조합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나. 개선방향

- 도시민이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축 및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조합 설립시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전체 조합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령의 적용시한이 '08.12.31까지임을 감안하여 동 법령을 폐지하되, 농어촌정비법령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다. 추진일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 '08. 7
- 법제처 심의 : '08. 8
- 국무회의 의결 : '08. 9

라. 기대효과

-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도시민의 참여 확대로 사업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 유입촉진에 의한 농촌인구 증가에 기여

(농촌지역개발과 사무관 한준희)

15.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마을조성, 농어촌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안의 취락지구로 규정(농어촌정비법 제34조),
 - 관리지역(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처리하지 않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 전원마을조성 등 사업추진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복잡
 -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및 농지전용 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동일함에도 행정절차는 소관부처가 다른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별도 추진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마을정비구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1~1.5년 소요)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실제 내용이 유사,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요인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주택건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의 이원화로 행정절차 이행에 불편하며,
 - 각각의 공종을 독립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공종간 연계 미흡 등계획 수립의 비효율성 내재

나. 개선방향

- 농어촌지역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마을조성 등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정비구역 지정 대상요건 삭제(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1항 삭제)
 -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생산·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의제처리
- 전원마을조성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규정(용도지역 변경 의제처리)을 반영
- 농어촌정비법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 농어촌정비법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경관, 환경보전, 공동체 형성 등)
-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를 One-Stop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령 정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축 인허가시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다. 추진일정

- 입안 및 관계기관협의 : '08. 7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10
- 법제처 제출 : '08. 11
- 국회제출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용도지역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력 낭비 및 비용 감소
- 전원마을조성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력 증진
- One-Stop 행정서비스에 의한 국민 편의 제고
-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추진 유도

마. 특이사항

- 국토해양부와 협의 필요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16.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권한 위임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업시행인가 권한은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은 다른 개발지구의 지정 승인 권한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비효율적

구 분	권 한	관련법령
20만㎡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도지사	택지개발촉진법
100만㎡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도지사	도시개발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20만㎡미만의 농지전용 허가	시·도지사	농지법

나. 개선방향

- 권한의 대폭 위임을 통해 사업절차 간소화
 - 20만㎡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20만㎡미만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

다. 추진일정

- 입안 및 관계기관협의 : '08. 7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10
- 법제처 제출 : '08. 11
- 국회제출 : '08. 12. 31

라. 기대효과

- 20만㎡ 미만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후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 사업승인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게 되어 사업절차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효과
-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구현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17. 농어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확보 제도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수용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로 규정(농어촌정비법 제96조제4항)되어 있는데,
 - 이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가능시기 보다 늦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토지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 초래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1조제3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3항 등 대부분의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수용 가능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 예정지구 지정 고시 단계 이후에는 토지수용 가능하도록 규정

나. 개선방향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제96조) 개정

다. 추진일정

- 입안 및 관계기관협의 : '08. 7
- 입법예고, 위원회 심의·의결 : '08. 10
- 법제처 제출 : '08. 11
- 국회제출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사업추진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18.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승인권 지자체 위임

가.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07.4)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오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이 중앙부처에 있어 사업시행 지연 및 효율성 저조
- 농림식품부장관은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개발계획의 확정) 및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

나. 개선방향

-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시·도지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7조(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승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사업계획 승인권에 대한 지자체 위임)

다. 추진일정 : 기 완료

- 개정안 국회 의결('08.2.26) 및 정부이송('08.3.14)
- 국무회의 심의('08.3.18) 및 공포, 시행('08.3.28)

라. 기대효과

- 사업시행 지연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마. 특이사항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

<참 고>

「오지개발촉진법」 관련조항

제9조(개발계획의 확정)

-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9.1.21, 2001.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8>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①관계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9.1.21, 2001.1.8>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19. 농약관매업의 등록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약관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활용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 발생

나. 개선방향

- 신청서류의 직접제출 방법외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다.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 연계 가능 정보통신망 구축

라. 기대효과

- 정보통신망 접수 가능으로 관청방문 횟수 감소, 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및 다양화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김정욱)

20. 농약방제업의 신고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약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 수출입식물방제업은 '89년 허가제, '95년 등록제, '99년 신고제로 규제 완화 추진
 - 방제업체 수는 '95년 16개사, '02년 27개사, '08. 현재 31개사 임.
- 신고서 작성 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서 접수 후 25일 이내 신고증 교부
- 신고서 접수부터 신고증 교부까지의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 지금까지 방제업을 신고한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최근 신규 신고업체 수는 연간 1개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은 경제성·활용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음. (국립식물검역원 방제과)

※ 최근 신고업체 일자 : 2007. 4. 7(이후 신고업체 없음.)

나. 개선방향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민원처리(신고증 교부) 기간을 2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반영)

다. 추진일정

- 법령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 '08. 4월초 부처협의

- '08. 4월중 입법예고
- '08. 6. 30 시행예정

라. 기대효과

-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방제업의 신규 진입이 빨라지고 민원인의 불편감소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김정욱)

21.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농약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

제3조(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직접제출 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발생

나. 개선방향

- 등록신청서 접수 다양화
 -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현재)

- 등록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가능토록 하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및 다양화

다.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 '08. 12월 이내
- 연계 가능 정보통신망 구축

라. 기대효과

- 정보통신망 접수 가능으로 관청방문 횟수 감소, 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및 다양화

마. 특이사항

-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 가능한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필요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김정욱)

22.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신고,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제10호,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직접 제출토록 하여 행정 관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

〈 관련 조 항 〉

- 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항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등록하여야 함.
- 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항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 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2항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나. 개선방향

- 직접 신고서류 제출 외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다. 추진일정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요청 : '08. 3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08. 6.30까지

라. 기대효과

- 관청방문 횟수 감소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조정래)

2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을 가공용 쌀의 경우 쌀 소비 능력이 월간 10톤 이상, 제조 시설면적 100㎡ 이상인 업체로 한정
 - 습식쌀가루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는 기계화된 세척·불림·분쇄·건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한정

- 가공용 쌀을 일정 규모 이상 및 기계화를 조건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 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 가공용의 매입 자격기준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주류제조업체로서 쌀소비 능력이 월간 10톤 이상이고, 부대시설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 면적이 100㎡ 이상인 자.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쌀소비능력에 관계없이 제조시설 면적이 33㎡ 이상으로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중 습식쌀가루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기계화된 세척·불림·분쇄·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개선방향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가공용쌀의 매입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
 - 쌀 소비규모(월 10톤 이상), 제조시설면적(100㎡ 이상)의 기준 완화
 - 습식쌀가루 제조업체의 기계화된 시설기준 제한 폐지

다.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부내 협의 : '08. 4. 1~
 - 입법 예고 : '08. 5. 31
 - 규제심사 : '08. 7. 31
 - 법제처심사 : '08. 8. 31

라. 기대효과

- 가공용 쌀 판매확대로 정부 재정손실 방지 및 건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

(식량정책팀 사무관 이재갑)

24.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제분·제조업 : 등록, 도정업 : 신고
- 제분·제조업을 등록하거나, 도정업을 신고할 경우 등록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
- 제분·제조업은 등록제로 되어있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에 따른 민원인 불편초래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나. 개선방향

- 제분·제조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다.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 부처협의 : '08. 5. 31.
 - 입법예고 : '08. 6. 30.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7. 31.
 - 국회제출 : '08. 8. 31

라. 기대효과

- 제분·제조업의 신고제로 전환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도모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 신청방식 간소화·다양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식량정책팀 사무관 이재갑)

25. 수입식물중 검역병해충 미검출 식물의 폐기방법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물수입 시 수출국 검사증명서가 없거나 긴급수입제한 위반, 국내 도착 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또는 반송을 명령
- 검역처분 명령을 받은 물품소유자 및 대리인은 소독·폐기·반송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단지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여 매몰·반송·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지연 및 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발생

나. 개선방향

- 병해충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폐기 대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방법(매몰·소각·반송) 이외에 「퇴비화」하는 방법을 추가

다. 추진일정

- 병해충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검토 : '08. 3~4
- 폐기장소 예외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안 마련(시행규칙) : '08. 6
* 폐기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실시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7~9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08. 9
- 폐기방법에 「퇴비화방법」 신설(식검고시) 개정안 제출 : '08. 9
- 식검고시 규제심사 및 공포 : '08. 11

라. 기대효과

- 폐기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 폐기품의 신속한 처리로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화

마. 특이사항

-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관계부처(관세청)간 협의 필요

(농산경영팀 사무관 김기주)

26. 양곡 매매업자의 판매가격 게시명령 등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양곡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에게 판매가격 게시, 가공방법 및 시설의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령
- 양곡가공업자에게 가공방법·시설의 개선 등을 명령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제한 우려

【양곡관리법】

제20조(양곡매매업자등에 대한 명령)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 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양곡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가격의 게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의 규격제한
4.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5. 가공생산품에 대한 표지의 첨부

나. 개선방향

- 양곡매매 및 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다. 추진일정

-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부처협의 : '08. 5. 31.
 - 입법예고 : '08. 6. 30.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7. 31.
 - 국회제출 : '08. 8. 31

라. 기대효과

- 양곡 매매 및 가공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폐지로 자율적인 기업활동 도모

(식량정책팀 사무관 박선우)

27. 중도매법인 허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임원이력서 제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도매인(법인)의 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농안법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법인의 영업능력 및 재무건전성과 직접 관련 없는 임원의 이력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인의 불편 초래

나. 개선 방향

-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임원의 이력서 제외

다. 추진 일정

- 농안법시행규칙 개정 : '08. 10. 15까지

라. 기대효과

- 민원인의 편의 증진

(유통정책팀 사무관 김병준)

28. 인삼류 제조업의 신고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삼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함.

-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의 신고(변경·휴업·폐업·재개업 포함)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등의 신고<개정 2001.7.14>)

-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최초 신고시 및 변경 등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
 - 인삼류 제조업자는 최초 신고시 및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나. 개선방향

- 제조업 신고서(변경·휴업·폐업·재개업)를 직접 제출 이외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개정 필요
 - * 인삼류제조업 등 신고서 제출 및 교부시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및 교부도 포함

다. 추진일정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08. 6. 30까지

- * 현재 관계부처 협의 후 법제처 심의 중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령 일괄개정령(안)

라. 기대효과

- 인삼류 제조업자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및 다양화

(채소특작팀 사무관 하종수)

29. 농산물이력추적 등록대상 축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자로 규정(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 단순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판매업자의 불편과 부담 초래

나. 개선방향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을 “생산·유통·판매자”에서 “생산·단순 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로 한정하여 등록의무 완화
 - 단순 판매업자의 등록은 폐지

다. 추진일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 '08. 6. 30까지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8. 8

라. 기대효과

-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자를 명확하게 하여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판매자의 부담을 완화

마. 특이사항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수요 조사, 관계부처 협의(의견조회)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소비안전팀 사무관 전건호)

30.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지유명도가 높고 차별화가 인정되며 규격 등급이상인 농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품질을 인증(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 농산물품질인증이 지리적표시·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 인증 등과 차별적 요소가 불분명하여 소비자의 혼란 야기

※ 인증제도 현황

인 증 제 도	제 도도 입 목 적
우수농산물(GAP)	· 생산단계에서 토양·수질검사 농약·비료의 적정 사용, 수확 후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농산물품질인증	· 품질(당도·색채 등이 최상등급)의 우수성 확보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관행보다 반으로 줄여서 생산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지리적표시제도	· 지리적 특성(명성, 품질, 생산환경 등)을 가진 우수농산물 등록보호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나. 개선방향

-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통합·개선하되,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
 - 친환경농산물인증 :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 유기(존치), 전환기유기(기 폐지, '07년),
 - 무농약(존치), 저농약(폐지 '10년)
 - 농산물품질인증 : 폐지, '08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3. 추진일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 법안 추진일정에 따라 조치
- 법제처 법안심의 요청(6월), 국회 제출(8월)

4. 기대효과

- 농산물 인증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 혼란을 방지

(소비안전팀 사무관 전건호)

31.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① 동법시행령 제22조 ② 및 제27조 ①항에 의해 특산물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 그러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기준(원료의 종류와 사용량 등)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기도 어렵고 동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음.

— < 관련 법령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①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 ②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생산 계획서, 품질준수각서, 계약재배약정서, 최근 6개월간 제품판매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나. 개선 방향

- 소비자들의 신뢰 및 인증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품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보완(참고자료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8조 별표 2)

다. 추진 일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준(안) 마련 협의 : '08. 4~5월 중
- 시행규칙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08. 6

라. 기대효과

- 특산물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명문화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을 수 있는 식품 산업으로 육성 기대

(식품진흥팀 사무관 박승준)

32.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시 신고기간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농안법 시행규칙 제20조)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의 퇴직과 임명이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퇴직과 임명을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나. 개선 방향

- 경매사 임면시의 신고기간을 15일로 연장하여 시장 내 도매법인의 업무부담 완화

다. 추진 일정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08. 10. 15까지

라. 기대효과

- 도매시장법인의 민원 감소 등으로 편의 도모

(유통정책팀 사무관 김병준)

33. 도매시장의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도를 사후보고 제로 변경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 등이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 지체없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농안법시행규칙 제37조의3).
- 판매원표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자기 책임하에 정정하는 것임에도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의 불편 초래

나. 개선 방향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판매원표 정정 승인제도를 사후 보고 제로 변경

다. 추진 일정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중장기 검토
 - * 출하자의 농수산물품질관리 미흡(속박이등으로) 판매원표 정정이 많아 한농연 등에서 여건성숙 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키로 조정함.

라. 기대효과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편의 도모

(유통정책팀 사무관 김병준)

34.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2분의 1 이내에서 개설자가 정하도록 규정(농안법시행규칙 제39조)
- 중개수수료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상거래의 자율성 저해 우려
 - 자유로운 중개기능 위축, 다양한 시장기능 저해 우려

나. 개선 방향

- 중개수수료의 상한 폐지

다. 추진 일정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08. 10. 15까지

라. 기대효과

-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폐지되어 중개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농업인의 출하선택권 확대 전망
- 도매시장의 자율성 확대로 농산물 거래활성화에 기여

(유통정책팀 사무관 김병준)

35. 소규모 식품제조,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 시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 의무
 - 식품기업이나 소규모로 가공하는 농어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농어가에 과도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가공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창출을 제한
- 농어가의 경우 가공을 포기하거나 농장에서만 판매 가능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편법 신고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영업 행위가 성행

나. 개선 방향

-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하고 시설기준을 규정
 -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경영여건에 맞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
 - 농어가 기술, 품질관리 컨설팅, 공동시설, 장비 지원 등 추진

다. 추진 일정

- 부처 협의(보건복지가족부) : '08. 12. 31까지

라. 기대효과

- 소규모 농어가의 식품가공업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불법영업 방지)
- 농어업인의 식품 가공산업 촉진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식품산업팀 사무관 박영호)

36.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상한수 조례규정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서울시 조례)에 중도매인 수를 설정하여 중도매인의 신규영입이 어려움
- * 농안법 제25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 제21조
- 중도매인의 상한 수가 설정되어 있어 중도매인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도매시장 활성화 저해

나. 개선 방향

-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의 조정을 통해 우수 중도매인의 진입과 부진 중도매인의 퇴출을 원활히 하여,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한 도매 시장활성화를 유도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개정 승인시 검토 반영
- * 도매시장 개설자(서울시)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허권자인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농안법 제17조제5항).
- * 중도매인 상한 수 : 청과 1,187명, 수산 460명, 축산 60명

다. 추진 일정

- 조례개정(안)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승인 권고 : '08. 5. 22

라. 기대효과

-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월간 2,500백만원) 조정을 통하여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경쟁력을 제고 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기여

(유통정책팀 사무관 김병준)

37. 인삼류의 검사기관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삼류 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검사 기관(농협 인삼검사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체 검사업체(23개, '08.3.26 현재)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매 분기별 시중에 유통중인 자체검사업체 검사품을 채취하여 원산지, 잔류농약검사 및 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위 검사기관으로는 전국의 홍삼·태극삼·백삼 등 인삼류를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 등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검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나. 개선방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인삼류 검사기관(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일정한 시설이나 전문검사 인력을 갖춘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 등이 신청하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정 여부를 결정(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개정)
- 인삼류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

다. 추진일정

- 인삼관련 기관, 학계, 제도가공업체 등 의견수렴 : '08. 5
- 의견수렴에 대한 내부 검토 : '08. 7
- 방침 확정 및 시행 : '08. 8

라. 기대효과

- 설 명절 등 인삼류 검사 수요가 많은 시기에 검사업무 수행의 원활화로 제조업자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인삼시장 개척

(채소특작팀 하종수 사무관)

38. 축산발전기금 용자취급기관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축산발전기금 용자취급기관으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
 - 따라서,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이 제외되어 농업인 등 불편 초래

나. 개선방향

- 축산발전기금 용사사무 위탁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농업인들의 취급은행 선택기회를 확대는 물론 불편 해소 등 국민 편의도모
 - 축산법시행령 제20조를 개정

다. 추진일정

- '08. 4 :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후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08. 4~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7 : 입법예고
- '08. 7~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 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축산발전기금 용자취급기관 확대로 국민 편의 제공

(축산정책팀 사무관 이학주)

39. 종축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면서 3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축산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 이에 따라 사무실면적이 약간 적어도 등록기관 유지곤란

나. 개선방향

- 가축 등록기관 지정 시 의무화된 30㎡이상의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도모
 - 축산법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7 : 입법예고
- '08. 7~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 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종축 등록기관 등록기준 완화로 국민 편의 제공 가능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40.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가축 검정기관을 지정 시 시설 구비조건을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축산법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이에 따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선방향

- 가축검정기관 지정 시 “경제성”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여 감독기관의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축산법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 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 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7~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가축검정기관 지정 시 시설 구비조건을 구체화로 민원인의 편의도모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4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을 훼손·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 발생(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이에 따라 재발급 받을 경우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과 함께 타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나. 개선방향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을 훼손·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 뿐 아니라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재교부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 해소
 -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 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 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7~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42. 수입이익금 징수품목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법 제45조에 의하면 WTO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축산물을 농림수산물부장관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자에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에는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품목으로 쇠고기와 천연꿀을 지정하고, 금액 산정방법을 정함.
 -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02년부터 개방됨에 따라 수입이익금 부과·징수가 곤란하므로 정비가 필요함.

나. 개선방향

-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를 개정하여 축산물 수입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품목 중 쇠고기를 제외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혼란방지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 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 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7~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하여 민원인 혼란방지

(축산정책팀 사무관 김영수)

43. 싸움소 주인의 등록서류 면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싸움소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 법인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을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싸움소 주인의 등록 등)
-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나. 개선방향

- 싸움소 주인 등록시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던 신청서 등의 서류를 먼저 관계 공무원이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토록 개선
 - 관련 법률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의무 규정 삭제

다. 추진일정

- '08. 4 :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자체 법령정비 협의회, 개정안 확정
- '08. 5~ 7 :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 '08. 8~12 :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개정안 결재·공포

라. 기대효과

-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청방문 횟수 감소, 행정비용 절감

(축산정책팀 사무관 김휴현)

44.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절차 및 등록방법 간소화 (등록시설 기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 규정(사료관리법 제8조 관련)
 -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 식품의 제조업자의 사료제조업 등록에 부담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배합사료·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관련).
 - 신청자가 항상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나. 개선방향

- 동물용의약품,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판매·공급코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 면제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동 조항 신설
- 등록 신청시 직접제출 이외에 정보통신망(모사전송 등)에 의한 제출을 가능토록 함.
 -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 적용

다. 추진일정 : 일부 기 완료

-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08. 3. 21('09. 3. 22.시행)
 - 별도의 시설 갖추는 것 면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시행시 즉시 적용
 -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개정 반영)

라. 기대효과

- 시설기준의 준수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 등록신청 방식 간소화에 따른 제조업 등록자의 편이 도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등

(축산경영팀 사무관 안규정)

45.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처벌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제조업자 등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처분(사료관리법 제15조, 제34조 관련)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저해

나. 개선방향

-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은 제외시켜 사업 자율성을 도모
 - 기준 준수 시 명칭사용 및 미 준수에 따른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 명확화(개정사료관리법 제16조, 제36조 관련)

다. 추진일정 : 기 완료

-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08. 3. 21.
-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 '09. 3. 22.

라. 기대효과

- 사료 제조업자의 사업 자율성 확보

(축산경영팀 사무관 안규정)

46.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방식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동물병원 평면도·장비 및 시설 명세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신청자가 항상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나. 개선방향

- 신고시 직접제출 이외에 정보통신망(모사전송 등)에 의한 제출을 가능토록 함.

다. 추진일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 '08. 12. 31

* 법제처 심사

라. 기대효과

- 신고 방식 간소화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의 편의 도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등

(동물방역팀 사무관 장동진)

47.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중 면적기준 삭제

가. 현 황

- 기존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소, 동물약국, 도매상의 시설기준에서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 '08. 3. 21 동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동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기준 중 면적기준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폐지함.

항 목	개 정 전
1. 동물약품제조소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다목(작업소 면적기준) • 제3호가목(작업대 높이) • 제5호(시험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소면적이 100m² 이상. 단, 10kg 이상 단위로 포장하는 제제 작업소는 200m² 이상, 생물학적 제제 작업소는 480m² 이상 • 작업대 높이가 바닥에서 60cm 이상의 높이 • 시험실 면적이 25m² 이상
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m² 이상
3. 동물약품 도매상 영업소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² 이상
4. 동물약품 수입자 시험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m² 이상
4. 동물약국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상

나. 개선방향 : 2008. 3.21 대통령령 개정, 공포

다. 추진일정 : 완 료

(동물방역팀 사무관 김용상)

4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신청 시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후 조기에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4. ~ 5. (생략)

나. 개선방향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월 이상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도 HACCP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영업 활동 증진 도모

다. 추진일정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 : '08. 3. 13~ 4. 2.
 - 규제심사 : '08. 4. 30.
 - 법제처 심사 : '08. 5. 31.
 - 공포·시행 : '08. 6. 30.

라. 기대효과

- 영업을 개시한 후 1월 이상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위생관리프로그램 운용실적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 영업 개시 후 조기에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식품의 위생 수준 향상이 기대됨.

마. 특이사항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 신청 시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강대진)

49.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 10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영업소를 갖추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 10】

5.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 (4) (생략)

나. ~ 다. (생략)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나. 개선방향

-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다. 추진일정

- 관련 법규정 개정
 - 입법예고 : '08. 3. 13~ 4. 2.
 - 규제심사 : '08. 4. 30.
 - 법제처 심사 : '08. 5. 31.
 - 공포·시행 : '08. 6. 30.

라. 기대효과

-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 1,390개('07년말 기준)

마. 특이사항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규정 중 영업소 관련 규정에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박원태)

50. 식육판매업영업자 행정처분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 13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등급·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관련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상기 영업자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식육의 용도 표시는 축산물의 위생과는 관련이 적고, 단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 과중한 측면이 있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 13】

1. ~ 2. (생 략)
3. 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등급·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 략)
 - 나. ~ 파. (생 략)
4. (생 략)

나. 개선방향

-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 판매표지판에 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경고(1차 위반)’로 완화하여 영업자 부담 경감

다. 추진일정

- 축산물 가공처리법 법규정 개정
 - 입법예고 : '08. 3. 13~4. 2.
 - 규제심사 : '08. 4. 30.
 - 법제처 심사 : '08. 5. 31.
 - 공포·시행 : '08. 6. 30.

라. 기대효과

-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육 판매표지판에 용도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영업자의 영업 활동 편의 증진 도모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박원태)

51. 가축소유자 등의 보고시점 및 내용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전염성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물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및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보고해야 할 시점 및 보고할 내용을 막연하게 정하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제51조(보고)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개선방향

- 소유자 등이 보고해야 할 시점과 보고해야 할 내용 등을 구체화
 -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사육 현황, 의사환축 발생여부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보고시점 및 내용을 구체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①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u>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u></p>	<p>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①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u>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현황, 의사환축 발생여부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u></p>

다. 추진일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6.30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08. 7. 31
- 부처 협의 : '08. 8. 31
- 입법 예고 : '08. 9. 30
- 규제심사 : '08. 10. 31
- 법제심사 : '08. 11. 30
- 개정안 시행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소유자 등이 보고해야 할 시점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명성 강화 및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

(동물방역팀 사무관 이지우)

52. 가축의 사체(死體) 비료·사료 등 재활용 대상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전염병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는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함.
- 다만, 사료제조시설이나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하여 동물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및 결핵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만 재활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의 사체 재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나. 개선방향

- 질병 차단을 위해 현재 소각 또는 매몰하던 가축의 사체를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 제정, 고시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4호

다. 추진일정

-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 제정, 고시
 - 의견수렴 : '08. 6~7
 - 고시(안) 마련 : '08. 7. 31
 - 관계부처 의견수렴 : '08. 8. 31
 - 입법예고 : '08. 10. 31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08. 11. 30
 - 고시 시행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소각 및 매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고,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마. 특이사항

-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활용 처리시설 등 확보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가축의 사체 등을 대규모로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할 수 있는 지역별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등 확대 필요

(동물방역팀 사무관 이지우)

53. 사료제조업 등록시설 기준 하한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 규정(사료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및 별표 3 관련)
- 이에 따라 단미사료제조업 및 섬유질 가공사료 등 생산시설 규모 하한선 설정으로 소규모일 경우 제조업 등록이 제한
- * 하한선 기준(1일 8시간 가동기준) : 배합사료는 제조량의 곡물분쇄시설을 갖출 것, 섬유질사료 1톤 이상, 어분 및 어분흡착사료 3톤 이상, 발효사료 10톤 이상

나. 개선방향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및 별표 3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하한선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제조업 등록이 가능토록 완화

다. 추진일정

-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08. 3. 21.
- 영·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단체협의 : '08. 6. 30
- 영·규칙 개정안 마련, 자체법령정비협의회 상정, 관계부처 협의 : '08. 10. 31
- 법제처 제출,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생산규모의 하한선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의 사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료생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축산경영팀 사무관 안규정)

54. 정액 등 처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 정액등 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기준
 - 종축 : 소 5두 이상(능력검정 필), 돼지 10두 이상(혈통등록)
 - 인력 :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
 - 시설 : 종축 및 종축이 아닌 가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 * 축산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정액등 처리업 등록시 종축 및 인력의 최저 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소규모 종축업자 참여가 곤란하고, 종축과 기타가축을 분리 사육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

나. 개선방향

- 정액등 처리업 참여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완화

- 다만, 종축 확보두수를 완화할 경우 근친방지(한마리에서 다수의 정액을 공급할 경우 개량 역효과)를 위하여 종축 두당 정액생산량 제한 필요(현재 두당 10만str로 제한하고 있음)
- 종축과 종축이 아닌 가축의 분리사육은 질병발생시 사업자의 위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히려 필요하며, 차단시설을 할 경우 동일건물 사용이 가능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 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 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7~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 '08. 8~10 : 법제처 심사의회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55. 가축의 등록대상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개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축의 혈통, 능력, 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 하고 있음.

* 축산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우수한 가축을 대상으로 혈통, 능력, 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종축을 개량 하는 것은 축산업발전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등록 대상가축을 확대하고 우수 가축을 선발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나. 개선방향

- 종축자원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등록대상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및 심사기준 마련
 - 다만, 등록 및 심사기준은 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 추진일정

- '08. 4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5~ 6 : 우리부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8~1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법제처 심사의뢰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축산정책팀 사무관 서재호)

56.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처분·검사의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 또한, 경기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경우가 포괄적이며, 수시로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우려됨.

나. 개선방향

- 시행규칙, 지침 등에 명령·처분·검사 등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
 - 소싸움경기운영에 있어서 불공정사례 발생
 - 소싸움경기장의 안전성에 문제 발생 등

다. 추진일정

- '08. 6 :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자체 법령정비 협의회, 개정안 확정
- '08. 9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 '08.12 : 시행규칙(지침) 개정

라. 기대효과

- 경기시행자의 부담 최소화 및 업무 투명성 제고

(축산정책팀 사무관 김휴현)

57. 가축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서류 등의 검사범위가 너무 포괄적임.

* 축산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개선방향

- 농림부령으로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해당공무원이 확인 검사하여야 할 시설 및 서류 등을 구체화하여 투명성 확보

다. 추진일정

- '08. 4 :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점검 후 개정안 마련
- '08. 4~ 5 : 우리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상정
- '08. 5~ 6 :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관련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등
- '08. 6~ 7 : 입법예고
- '08. 7~1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법제처 심사의뢰
- '08.10~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 등을 구체화 하여 개설자의 편의도모 및 투명성 확보

(축산경영팀 사무관 박홍식)

58.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약사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나. 개선방향

- 첨부서류 간소화 : 개선
 - 동물약국 등록 신청시 필요성이 적은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편의 도모
- 정보통신망(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등록신청 허용 : 기 반영
 - 동 취급규칙 제59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항에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취급규칙 제3조(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에는 관련사항이 없으나 동 취급규칙 제59조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9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검역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다. 추진일정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개정안 마련 : '08. 5
- 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단체 의견조회 : '08. 6
- 우리부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 '08. 6
-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 '08. 7
- 규제심사 : '08. 8
- 법제처 심사 : '08. 9
-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공포 : '08. 10

라. 기대효과

- 동물약국 등록 신청 시 불요불급한 서류는 신청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동물방역팀 사무관 김용상)

59. 동물용 의약품 등 인허가 관리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에 “당해 품목의 사업 계획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로 민원불편 초래(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 당해 품목의 사업계획은 업체 측면에서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품목허가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항임.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불요불급한 서류 제출 요구로 민원 불편 초래
 -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제출 요구(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동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들은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검역원장에 보고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또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제2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을 제외한다)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당해 품목의 사업계획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4 (생 략)

②~④ (생 략)

제20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4~6. (생략)

②~④(생략)

제2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등 실적의 보고·폐업 등의 신고) ①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4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반기별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거쳐 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나. 개선방향

- 제조품목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당해 품목의 사업계획 삭제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류에서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삭제
- 생산 및 판매실적을 매년 1회 보고토록 보고주기를 완화

다. 추진일정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개정안 마련 : '08. 5
- 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단체 의견조회 : '08. 6
- 우리부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 '08. 6
-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 '08. 7
- 규제심사 : '08. 8
- 법제처 심사 : '08. 9

-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공포 : '08. 10
- ※ 제조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의 사업계획”은 여타 개정 수요로 2007.7월부터 진행중인 동 취급규칙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08.4월 중 폐지에정임.

라. 기대효과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도매상 허가 신청시 불요불급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업계 편의 도모
- 생산·판매실적 보고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업계 편의 도모

(동물방역팀 사무관 김용상)

60.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류에 생산·구매 확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 생산·구매 확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구비 서류에서 제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품질인증의 신청)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생산·구매 확인서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1. 최근 6월간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2. 생산·구매 확인서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나. 개선방향

- 수산물품질인증 신청서 제출서류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한 “생산·구매 확인서”를 삭제토록 함.
 - 수산물, 수산특산물품질인증 신청 구비서류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와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2종으로 한정
 -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 구비서류 : 최근 6월간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2종으로 한정

다. 추진일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관계부처 협의 : '08. 7
 - 입법예고 : '08.7~8
 - 법제처 심사 : '08. 8
 - 관보게재 및 시행 : '08. 9

라. 기대효과

- 구비서류 완화에 따른 가공업체 편의 제공으로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증가로 소비촉진 증대

(수산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6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제도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촌개발사업자가 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시설이 승인권자의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총사업비 명세서(준공 후 정산내역서)를 구비하여 승인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개선방향

- 총사업비명세서 제출 대상사업을 승인권자의 귀속 대상 시설로 한정(비귀속대상 시설 제외)하여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 총사업비 명세서는 귀속대상시설의 무상 사용연한 수익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비귀속 대상시설사업에는 불필요

다. 추진일정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안 마련 : '08. 4. 1~4. 30
 - 부 처 협 의 : '08. 5. 1~6. 30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08. 7. 1~7. 31
 - 법제처 심사 : '08. 8. 1~8. 31
 - 공 포 : '08. 9. 30

라. 기대효과

- 어촌종합개발사업 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어항과 사무관 황철민)

62. 수산금융채권 발행 신고의무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중앙회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수산금융채권 발행 가능(수협법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회 그 금액, 상환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수협법 제156조제5항)
- 수협법에서 채권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별도로 발행신고를 통한 규제는 수협경영의 자율성 저해
- 채권발행 때 마다 금액·조건 등을 신고함에 따라 업무효율성 저하

나. 개선방향

- 수산금융채권 발행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수협 경영 자율성 강화
- 수협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감독(수협법 제169조)을 통해서 채권발행 관리

다. 추진일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 '08. 4~12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8. 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및 법제처 제출 : '08. 5~6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08. 7~9. 30
 - 국회 심의 및 의결 : '08. 9~12. 31

라. 기대효과

- 형식적 업무절감을 통해 수협 경영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협 이용자인 어업인, 일반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수산정책과 김평전 사무관)

63. 어선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어선건조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 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 5종
- 외국선박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등은 해당 국가로부터 발급받음에 따라 서류발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나. 개선방향

- 어선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 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출 서류를 면제

다. 추진일정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 '08. 4~5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08. 6~7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시행 : '08. 8~9

라. 기대효과

- 민원불편 최소화로 어업인 편의 도모

(어선인력과 사무관 백현태)

64. 어항사용 허가 등 권리의무 승계 신고기간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촌어항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나. 개선방향

- 신고기간을 30일 → 6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다. 추진일정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안 마련 : '08. 4. 1~4. 30
 - 부 처 협 의 : '08. 5. 1~6. 30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08. 7. 1~7. 31
 - 법제처 심사 : '08. 8. 1~8. 31
 - 공 포 : '08. 9. 30

라. 기대효과

- 민원인 부담 경감

(어항과 사무관 전성래)

65. 수산물 표준규격화 표시의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생산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 표준규격을 표시를 할수 있고, 공동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단체는 표준규격품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제5조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② (생 략)
 - ③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생산자에게는 표시의무가 없으나, 생산자단체에게는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나. 개선방향

- 의무규정을 선택규정으로 개정 추진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② (생 략) ③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u>표시하여야 한다.</u></p>	<p>제5조(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표시</u> <u>할 수 있다.</u></p>

다. 추진일정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08. 4 : 부처협의
 - '08. 5 : 입안예고
 - '08. 6 : 규제 및 청렴도 심사
 - '08. 9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라. 기대효과

-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간 법령 적용 형평성 유지 및 명확화

(수산정책과 사무관 최덕부)

66.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양식어업 면허처분 시 품종별로 세분화하여 처분
 - 수산업법령에 양식어업 면허 시 품목별로 세분화 하여 면허를 처분함에 따라 해양생태 변화, 시장수요 변화 등에 긴밀한 대처 미흡
- * 현행 품종별 면허건수 및 면적('07) : 9,352건 (132,416ha)
- * 현재 주요 면허대상 품종 : 22개 품종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 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해조류양식어업

- 양식물 : 김, 파래, 매생이, ○, ○, ○

2. 패류양식어업

- 양식물 : 굴, 전복, 진주조개, 가리비, ○, ○, ○

나. 개선방향

- 현행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를 양식어업별 통합 면허로 개선
 - 품종별 양식적지 및 상생관계 등을 고려한 통합면허 품종 선정
예) 가리비 양식면허 → 패류 양식면허(가리비, 새조개, 홍합 등),
김 양식면허 → 해조류 양식면허(김, 다시마, 미역 등)

다. 추진일정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해역별 특화가능 양식품종 조사 : '08. 5. 1~6. 30
 - 양식어업인 및 관련 단체간 의견 수렴 : '08. 7. 1~7. 31
 - 개정안 마련 : '08. 8. 1~8. 15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8. 8. 16~9. 30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10. 31~12. 31

라. 기대효과

- 어업인들이 자연환경 및 시장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 양식어류 소비 증대와 양식업의 안정적 발전 기대
- 개별 품종별로 면허를 처분하기 보다는 양식품종을 통합하여 면허를 처분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양식할 품종을 결정하게 하여 기존의 정부 의존적인 성향에서 어업인 스스로의 책임경영 유도 가능

마. 특이사항

-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제도를 통합 품종별 면허제도로 전환, 양식품종에 대한 어업인 선택폭의 확대를 위하여,
 - 연안해역별 양식품종 중 특화품종이 될만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양식분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양식어업인 및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의견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전망 등도 고려하여 제도 개선할 계획임.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67.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승인권한 시·도 이양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과 관리·이용규정을 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토록 규정(지정현황 : 47개소 5,614ha, '07년말 기준)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이용규정을 정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수면의 지정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관리수면으로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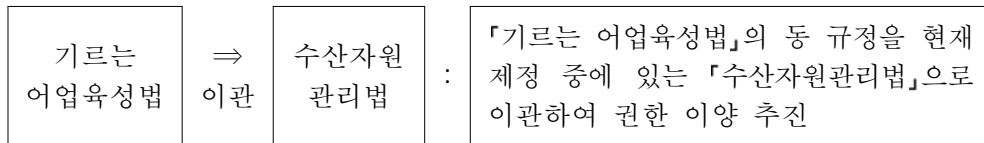
제11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수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개선방향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해제 등 관리·이용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 권한을 해당지역의 여건 및 자원실태 등을 감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밝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 추진 절차도



※ 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해 향후 관계 법령 제정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다. 추진일정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리권한 이양
 - 입법예고 : '07. 5. 31
 - 규제심사 : '07. 10. 1~11. 30
 - 법제처 심사 : '08. 6. 30
 - 국회 법안제출 : '08. 8. 1~9. 30
- 국회 의결 이후 1년경과 '0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라. 기대효과

-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여건 및 자원실태를 감안 해역 특성에 맞게 현실적인 행위제한으로 지정관리 효율성 확보

마. 특이사항

-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수산자원을 관리·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이나,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자체는 계속 유지 필요

- 최근 해상경계와 관련한 지자체간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 경계가 불분명한 해역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할 경우 조업분쟁 발생할 우려도 있음.

(자원회복과 사무관 차태황)

68. 축제식 양식장 낚시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사항을 정함.
 - 어류 등 양식어장에서의 낚시터 운영은 가능하나,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 유어장 지정 현황('07. 8월) : 63개소(낚시터 32, 체험어장 31)
⇒ 유어장 :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
 - * 축제식 양식 어업권 현황('06년) : 122건 793ha

【 수산업법 제57조 】

제57조(유어장의 지정 등) :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는 가두리 낚시터만 허용토록 규정

나. 개선방향

- 불거리, 체험기회 다양화를 위한 유어장 지정·운영 확대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수면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도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일반 국민에게 낚시 체험 공간 확대운영 제공

다. 추진일정

- 유어장 지정·관리 규칙 개정
 - 개정(안) 마련 : '08. 6. 30
 - 관계부처 협의 : '08. 8. 31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08. 10. 31
 - 법제처 심사 : '08. 12. 31

라. 기대효과

- 유어장의 지정·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
- * 최근 5년여간 유어장 수(11.5% 증가), 이용자 수(52.3% 증가), 이용금액(77.5% 증가)
- * '06년말 유어장 개소당 년 평균 이용자 : 4천명, 연 평균 수입금액 : 30백만원
- 양식장에서의 낚시터 운영으로 양식어류 소비촉진 및 판매 다양화로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편안한 낚시문화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일반 국민들에게 저렴한 취미·레저활동을 확대하고, 가족단위의 쾌적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

마. 특이사항

- 관리부실에 따른 어장환경오염 유발

- 낚시객의 취사행위 및 재래식 화장실 이용 등의 관리소홀로 어장 환경 악화 우려
- 양식어업인과 유어장 운영업자간 갈등발생 가능성 상존
 - 양식어업인과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업인간에 어장환경오염과 시설물 설치 등의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69.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에 해당되는 수산동식물은 포획·채취 금지
 - 다만, 같은 영 제18조에 해당되어 행정관청에 포획·채취 해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동 해제허가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나,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간소화 필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신청) ①(생략)

②보호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나. 개선방향

- 포획·채취해제허가 신청시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서류 등 간소화(5종 → 3종)
 - 간소화 대상 서류
 - 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1통
⇒ 「어선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안에 비치토록 규정
 - ② 어선검사증서 사본 1통
⇒ 「선박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미소지시 선박항해금지
 - 그 밖에 현행 제출서류
 - ③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증 사본 1통
 - ④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 ⑤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통

다. 추진일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08. 9. 10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8. 10. 15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08. 12. 3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라. 기대효과

- 추진완료시 제출서류 간소화로 어업인 편의 도모

마. 특이사항

- 포획·채취 해제허가는 양식어업이나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채취 또는, 학술연구조사·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히, 수산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허가 있으나
- 일부 포획·채취 해제허가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해제 허가관청의 지도·단속 필요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영직)

70.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최대전력기준 재설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채낚기업계의 제안에 따라 톤급별 최대 전력기준을 설정하였으나 고유가로 어업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집어등 최대전력 기준 조정 필요
- 채낚기어선에 설치하는 집어등의 광력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업 분쟁과 경영악화를 초래, 광력기준을 어선의 규모별로 제한(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비고 8)
 -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00Kw
 -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30Kw
 -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80Kw
 -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200Kw
 -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 210Kw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교

5.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용 안정기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각 목의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0킬로와트

나.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30킬로와트

다.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80킬로와트

라.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200킬로와트

마.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 210킬로와트

나. 개선방향

-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인간 분쟁방지를 위해 현행 채낚기어업의 광력기준을 하향(40%) 추진
 - 채낚기 어업인간 협의에 따라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에서 광력 제한 하향 조정 건의('07.2말 기 제출)

다. 추진일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
 - '08. 9. 10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8. 10. 15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08. 12. 31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라. 기대효과

- 집어등 광력기준 완화로 인한 어업인간 불필요한 경쟁조업 방지 및 경비절감으로 어업경영 개선 기대

마. 특이사항

- 어업인 건의에 따라 어선 규모별 집어등 최대 전력기준을 제한하는 집어등 광력기준을 제한('05. 2)하였는 바 금번 기준 재설정요청에 따라 개정작업 추진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남웅)

71. 어업허가 신청서류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어업허가 신청 애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나. 첨부서류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 3)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시(2008. 3. 31) 사업자등록증 삭제, 규제개선 완료

나. 개선방향

- 어업허가 신청서류 중 어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서류 제외
 - 간소화 대상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② 선박검사증서사본
 - ③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다. 추진일정 : 기 완료

- '08. 3. 31 공포 및 시행

라. 기대효과

- 추진완료시 제출서류 완화로 어업편의 도모

마. 특이사항

- 당초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 과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관련 조문을 개정, 개선 완료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영직)

72. 농어업인 식품제조판매관련 식품위생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업인 전자상거래 시 식품에 대한 단순 정보 게재도 허위표시 과대 광고로 규제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어업인이 출처를 명기한 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식품위생법령상 위반 사항으로 적발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기능성 표시·광고를 심의토록 규정하여 운영 중이나,
 - 농어업인이나 식품업계의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홍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 동 법 제18조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 표시로 금지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제조 형태 제한
 - 식약청 고시인 “식품공전”의 제도가공 기준상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식품 생산을 저해하고 있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가공기준

12)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정제형태의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정도로 제조된 과자류는 제외한다.

- <식품공전>의 전통식품 분류는 “장류” 등 대분류로 되어 있으며, 품목수도 적고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
 - <식품공전>상의 식품 분류는 현대적인 식품 제조방법이나 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식품·향토식품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통식품 산업발전에 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0. 장류

4) 식품유형

※ 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15개로 분류하고 공통 규격과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식약청의 <식품공전>은 식품의 원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하고(포지티브 방식),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식품의 다양한 원료 사용을 규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 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6) 『원료』로 사용가능한 식품원료

- ① “원료”라 함은 식품사용에 제한적 조건이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 ② “원료”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나. 개선방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에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행위를 할 경우 동의보감, 연구기관 발표자료, 타 사이트 정보 단순 링크 활용하는 등의 표현” 추가

<예 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유용성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신설) 다.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행위를 할 경우) 동의보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연구자료 등을 출처를 명시한 후 단순 인용하는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개정하여 건강표시·광고에 대한 제한을 완화
 -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 질병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 제한 완화가 필요

<예 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별표5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기 준	수 정 (안)
<p>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 하는 경우</p> <p>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 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 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p>1. 과학적 근거 제시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 (중략)</p> <p>라. 제품명, (삭제)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 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 를 명시하면서 질병의 발생 위 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를 병행하는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의 식품제조 규제를 완화하되, 의약품과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과자류 외에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엿류 등으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예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기 준	수 정 (안)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가공기준 12)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정제형태의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정도로 제조된 과자류는 제외한다.	12) 과자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엿류는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등을 일반식품과 구분하여 재분류하고, 품목별로 적합한 규격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
 - '08. 1월 현재 전통식품 55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제정(농림부 고시 제2007-90호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식품공전에서 이를 반영하여 전통식품 규격을 세분화
- <식품공전>의 식품의 원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식품공전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품목 혹은 성분만을 제시하여 폭넓게 식품 원부재료 사용을 허용

다. 추진일정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추진('08. 6)

-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등 개정('08. 12)

라. 기대효과

- 2007년 기준 농어업인 전자상거래(3,900억원) 규모의 10% 수준(39억원)의 판매 증가 예상
- 전통식품의 전통방식 제조법을 식품공전에 반영함으로써 개량식 제조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었던 시설비용의 약 10% 절감 효과 기대, 아울러 전통식품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전통성을 살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통식품 산업화 촉진 및 육성 가능
 - 장류 제조업체 평균 생산비(925백만원) 중 시설비(400백만원)가 약 43%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업체당 평균 4천만원 절감
- 옷, 상황버섯 등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식품원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식품 제조 활성화 기대
- 식품위생법령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외식업체 등 식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마. 특이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추진

(유통정책팀 사무관 조규표)

(식품산업팀 사무관 박영호)

(식품진흥팀 사무관 박승준)

73.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물부에서는 「WTO/TRIPs 협정」 및 「한·EU 기본협력 협정」에 따라 '99.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08. 4현재 총 60개 등록)
 - 특허청도 '04. 7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를 도입, 제도 이원화 ('08. 2 현재 총 11개 등록)
- 동일한 권리를 두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이중등록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하나의 단체가 두 법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과도한 용역비용(건당 3~4천만원, 이중 등록시 4~5천만원)이 발생하여 민원인 불만
 - 한 지역에서 하나의 단체는 농수산물부에 다른 단체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권자의 배타적 권리 범위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 유발 및 두 단체간 권리 분쟁 소지
 - 등록권자 이외의 당해지역 생산자가 등록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처벌대상, 상표법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
- 지자체 및 등록자 단체에서도 이원화된 제도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제도 일원화 건의를 건의한 바 있으며,
 - 지리적표시품의 권리보호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양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며, 지리적표시제 도입 배경과 목적 및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나. 개선 방향

- 제도 중복을 피하고 지리적표시가 동일 품목에 중복 등록될 수 없도록 영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

- 농림수산물부 :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
- 특허청 : 광물, 공산품, 기타상품

※ 국내 지리적표시 제도 일원화는 기획재정부(FTA 국내대책본부) 및 법제처(경제법제국) 주관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특허청과 개선방안 협의 중

다. 추진 일정

- 부처협의 개시(특허청) : '08. 2~'08. 12
- '09년까지 중기과제로 추진

라.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 및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가능
- 지리적 특산물 생산업자의 등록 불편을 해소하여 농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낭비 방지

마. 특이사항

- 농림수산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지재권 제도로서 특허청 제도와 중복되므로 일원화 필요성 강조
 - 특허청은 우리부 제도는 품질인증제이므로 지재권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
 - 특허청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새로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제' 도입을 주장하며 상표법 개정 추진 중
 - 특허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획재정부(FTA 대책본부) 주관으로 해당부처 및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개선방안 협의 중('08. 2~)
-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관계관에게 농림수산물부 입장 설명('08.2.20, 2.27)

- 한·EU FTA 협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제 중복문제 및 상표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 EU측이 작성한 협정문에는 지리적표시 관련 국내법이 『농산물품질관리법』임을 명시, 농림수산식품부 제도를 협상대상으로 함('07. 9)
- 지리적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보호수준, 집행 등에 특허청과 이견이 있었으나, 특허청을 설득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입장대로 협상 진행 중

【붙임】

지리적표시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 비교

구분	지리적표시제(우리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특허청)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 상표법
목적	○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 상표 보호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수요자 이익 보호
개념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록 대상	○ 지리적 특성을 지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제한 없음(모든 상품 가능)
등록 요건	○ 지리적 표시 등록요건 - 우수성(명성, 품질 기타 특성) -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 및 가공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	○ 단체표장 등록요건 -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 대상지역의 정의 - 단체의 특성
심사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20인)	○ 심사관 1인
등록 효과	○ 지리적표시의 보호 ○ 우수농식품의 국가 인증 ○ 품질관리·판매지원 등 등록상품 지원 ○ 비등록자가 동일 명칭 사용시 허위·유사표시로 처벌(형사적 구제) ○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	○ 단체표장권 보호 ○ 권리자는 부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구제수단 주장 가능 ○ 단체원이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리 주장불가
등록 취소	○ 등록기준 미충족시 직권 취소 가능	○ 특허 심판절차에 따름
사후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사후관리 명문화 * 지리적표시 중주국 프랑스는 관계기관의 품질관리 철지	○ 규정 없음

(식품진흥팀 사무관 황은선)

74. 인삼제품 및 한약재 제도 관련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삼관련 법령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 측면에서는 영업허가 신고 시 품목과 원료상태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 업무처리가 오래 걸리는 등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며, 정책입안자 측면에서는 인삼시장 개척 등 인삼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함.
 - 인삼관련법 : 인삼산업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등
 - * 소관부처 : 뿌리삼(농림수산식품부), 제품(보건복지부), 산양삼(산림청) 등
-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검사 및 확인기준이 있음에도 허가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제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중복규제 진입장벽으로 작용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28조에 규격품은 대한 약전 및 한약(생약) 규격집의 기준(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함량, 회분, 정량법, 저장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제34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다고 규정
- 한의약육성법에 의하여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약사법을 적용하여 한약재의 생산·제조·유통을 규제하고
 - 심지어 식품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황기, 구기자, 오미자 등에 대해서도 한약재로 표시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한약재를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제조업허가를 식약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의하여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가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동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조 내지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 제조하려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개선방향

-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인삼산업법”으로 모든 뿌리삼 및 인삼 제품과 관련된 규제사무 통합·일원화
- 한약재 규격품에 대해 식약청장의 제조허가제에서 시장·군수의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 완화
- 한약 및 한약재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업체가 생산·가공·유통·표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는 “한의약육성법”에 의하여 일반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제조·유통·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일정

- 약사법 및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추진

라. 기대효과

- 인삼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 증대 및 고려인삼 세계화에 기여
- 인삼류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신청 등 다양한 행정사항 등을 한 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토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성 증진
- 약용작물의 자율적인 유통거래 및 자율경쟁으로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기대
- 한약재는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유통 및 경쟁확대로 우수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 기여

마. 특이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함.

(채소특작팀 사무관 하종수)

(채소특작팀 사무관 이종광)

75. 농촌지역 마을조성 입지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조성 등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나, 환경관련 개별법령·제도에 의한 입지규제가 많아 농촌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

- 환경보호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전원마을조성 등 사업추진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에 다른 분야와의 오염부하 할당량 조정·협의를 해야 함.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불가능하므로 환경목적은 달성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안이 필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 10km이내에서는 하천 양안 500m이내 전원마을조성 등 입지가 제한
- *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은 산간지역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사실상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를 찾기 어려움
- ※ 여러 개의 하천이 유입될 때, 하천 양안 500m를 적용하게 되면 많은 지역이 서로 중첩되어 이용 가능한 토지를 찾기 어려움

나. 개선방향

- 농촌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감안,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 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완화
- 수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다른 분야의 오염할당량을 조정하여 수질오염 총량을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도 운용
-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지역에서 마을조성 및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축소조정(예 : 현행 10km → 5km)
- ※ 다만, 마을조성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준치 이하로 배출토록 함으로써 상수원 보호 목적은 달성

다.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8. 9

라. 기대효과

-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촉진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촉진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특이사항

- 환경부와 협의 필요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76. 농촌지역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조성, 임대주택건설 등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시책을 추진중이나,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가 불합리하고 복잡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
 - 농촌지역 마을조성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 “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건축, 상·하수도 정비, 주택개량 등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시와 개별사업 행정계획 모두를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
 - 또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이행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 사전환경성 조사 및 검토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사업규모에 비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과다하고, 시·군 환경성 검토협의회 운영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등 과다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 사업계획안 입안→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운영→검토서 초안작성→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의견수렴→검토서 재작성→환경부 협의→협의결과 통보(30일내)

나. 개선방향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 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을 사전환경성 검토 행정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이행
 -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성을 검토토록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환경성검토 관련 의견수렴을 대체토록 조치

다.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8. 9

라. 기대효과

- 농촌지역개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사전환경성검토 소요기간 : 5~6개월 → 2→3개월)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

마. 특이사항

- 환경부 협의 필요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77. 농촌지역 주택사업 주체 다양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조성,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 및 지가의 투자가치가 크지 않아 민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에 관한 전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 관련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택사업 주체에 한국농촌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진입장벽으로 작용
 -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주체로 한국농촌공사를 포함
- 아울러, 현행 국민주택기금 용자대상에도 한국농촌공사를 포함(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훈령)하지 않아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 농촌주택사업시 농촌공사에게 농촌주택개량 용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공사비로 투입함으로써 농촌주택사업 활성화 유도 필요
 - * 국민주택기금 용자사업중 63.5%는 임대주택건설, 분양주택을 위하여 주택공사를 포함한 건설사업자인 시행자에게 지원됨('06년 기준)

나. 개선방향

- 농촌개발 전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농촌지역의 주택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 개정

- 한국농촌공사가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아 농촌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용자대상에 포함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개정

다.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8. 4~6

라. 기대효과

- 농촌지역 주택사업에 농촌개발 전문 기관인 한국농촌공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촌에 주택을 공급하는 농촌공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농촌주택공급 유도

마. 특이사항

- 국토해양부와 협의 필요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78. 축사 건축관련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내 축사건 축을 제한
 - 400㎡이하의 축사를 건축코자 신고할 경우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제출토록함으로써 농가에게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
- * 종전에는 농가가 직접 설계도를 작성하여 신고

- 연면적이 2천㎡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내 축사 진입을 어렵게 함.
 - * 소 200두 또는 돼지 2,000두 사육시 2천㎡ 규모의 축사필요
 - * 농지에서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는 농지 확보는 어려움
- 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유지 되도록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어, 농지내 축사의 건폐율이 40% 까지 고도로 제한됨.
- 축사는 대부분 철제빔·압착판넬 등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등 간결한 구조로 시공됨에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상주 감리를 운용해야함에 따라 감리비 지출에 따른 농가의 축사 건축비 부담이 가중됨.

나. 개선방향

- 400㎡이하의 축사를 신고할 경우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대상 예외 인정(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8조제1항 개정)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완화
 - 농지내에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동 규정 예외 인정 및 농지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건축물 건폐율의 탄력적 적용
 - 농지내 축사 신축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폐율 60%유지
 -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하한기준 명확히 규정
- * 건축법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축사 건축시 비상주 감리 지정 인정
 - 5천㎡이상인 축사 신축시 비상주 감리를 지정하여 필요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다. 추진일정

- 부처협의 : '08. 5~6
-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협의 : '08 하반기
- '09년까지 중기과제로 추진

라. 기대효과

-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대상 예외 인정으로 설계비 절감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제완화로 농지내 축사진입이 보다 용이
- 농지내 축사진입을 제한하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축사 인허가에 따른 재량행위 투명화 및 부지확보비용 절감
- 비상주 감리 전환으로 5천㎡이상의 축사를 건축하는 농가의 축사건축 비용 절감
→ 농지 내 축사진입 완화 및 설계·부지확보비용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마. 특이사항

- 국토해양부,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이 요구됨.

(자원순환팀 사무관 이성도)

79. 농지전용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구·읍·면 단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40명으로 구성

-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경영자와 관할 농업관련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구·읍·면장이 위촉
- * 위원회 및 위원수('07말) : 1,538개, 37천명(농업인 33, 기타 4)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시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농지전용 확인에 따른 절차복잡 및 민원처리 기간(5일) 소요

나. 개선방향

-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폐지

다. 추진일정

- 농지법 개정
 -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 '08. 10
 - 법제처 제출 및 심사 : '08. 11
 - 개정안 국회제출 : '08. 12

라.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5일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 농지관리위원 교육비 등을 포함한 연간 약 25~3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지 전용자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인지 여부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규정

【농지법 시행령 별표2 규정사항】

-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 연수·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직업훈련소, 생활권·자연권 수련시설
 -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영리법인이 읍·면지역에 설립하는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 농촌에 설치하는 민간보육시설
 -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복지후생시설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복지공장
- ②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 입은 단독주택, 산림,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

- 농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국민은 농지전용을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면추천서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접 추천을 받기도 어려움

나. 개선방향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제도 폐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발급을 해당 지자체 인·허가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농지법시행령 별표2의 추천제도 삭제

다. 추진일정 : 반영완료

- 농지법시행령 개정·시행(6. 5)

라. 기대효과

- 일선 행정기관의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추천서 대행업무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 불편 해소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중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소규모 (바닥면적이 660㎡이하) 숙박시설 설치만 허용
 -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
- 최근 전남도에서도 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수산자원보호 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나. 개선방향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을 확대(660m² → 1,000m²)

다. 추진일정

-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법제처 심사('08. 6),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08. 7)

라. 기대효과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의 완화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 기여

마. 특이사항

- 개정 수산업법('07. 7) 시행일 : 2008. 7. 28

(양식산업과 사무관 임남철)

82.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제도 개선

(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 보고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어업의 어획실적 보고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토록 제도화('00. 1. 31)

- * 5톤 이상 어선은 입항 3일 이내, 5톤 미만 어선은 1달에 1회 1달간 어획실적을 서면보고, 무선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한 경우는 별도 서면보고 불필요

- 어업자원은 공공자원으로 TAC(총 허용어획량제)제도 운영 등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실적 보고제 운영
- *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연안어획물의 위탁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 판매를 허용하여 어획실적 보고 필요
-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무선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저학력의 영세 어업인이어서 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불편 초래 등으로 보고 의무 면제 필요성 지속 제기

나. 개선방향

- 5톤 미만 연안어업 일부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어항별 조사요원 확충 등 수산과학원의 조사기능을 보강하여 장기적으로 보고제도 폐지
- 5톤 미만 연근해 어선중 어획강도가 높거나, 어업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고의무 배제
 - 보고의무 제외대상(30,202척/47.2%) : ①연안어업 4종 (29,234척), ②구획어업 15종 (968척)
 - 보고제도 존치대상(33,799척/52.8%) : ①원양어선(483척/0.8%), ②무선통신이 구축된 연근해어선(11,670척/18.2%), ③연안 주요업종 어선(21,646척/33.8%)
-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정부의 능동적 자료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과학원의 조사범위와 기능 보강
-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양육항 오피서버 증원(현재 30명, 2012년까지 120명)을 통한 수산과학원의 조사기능 보강

구 분	연안어업별	척 수	비 고
총 계		64,001	
원양어선(5톤 이상)		483	보고
연근해어선(5톤 이상 어선)		11,670	보고
소 계 (연근해 5톤 미만 어선)		51,848	
연안어업	계	29,234	
	연안안강망	114	제외
	연안들망	97	제외
	연안선인망	3	제외
	연안복합어업	29,020	제외
연근해 주요 업종 (5톤 미만)	계	21,646	
	연안자망어업	14,040	보고
	연안선망어업	209	보고
	연안통발어업	7,267	보고
	연안조망어업	130	보고
구획어업	계	968	
	정치성	462	제외
	이동성	506	제외

다. 추진일정

-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 : '08. 8.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08. 9
 - 법제처 심사 : '08. 10~11
 - 시행 및 공포 : '08. 12

라. 기대효과

- 전체 보고대상 어선(6만4천여척)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어선(3만여척, 47%)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영세, 고령 어업인의 불편 해소 기대

마. 특이사항 : 없음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태기)

83.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의 소유제한완화 및 전용 절차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소유가 금지되며, 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데, 이에 따라 지목 변경 전에는 소유권이전이 금지됨.
- 토지확보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취득자격이 있는 자 명의로 불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등 편법적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발생함.

나. 개선방향

-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동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소유제한 완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에서 3ha 이상의 토지개발 시 수립하는 계획

다. 추진일정

- 농지법 개정
 - 개정안 법제처 제출 및 심사 : '08. 11
 - 개정안 국회제출 : '08. 12. 31

라. 기대효과

-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로 농지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4.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제3호).
-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제한 완화 요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기

나. 개선방향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최대한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의 농업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을 현행 1/2에서 1/4로 완화

다. 추진일정

- 농지법 개정 추진
 - '08. 6~11 : 농지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
 - '08. 12 : 국회제출

라. 기대효과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의 대형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5. 상속농지의 소유상한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
 - 1,000㎡ 이하 주말농장('03)
 - 이농·상속의 경우 1ha한도 내의 농지('96)
 -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시 이농은 무제한, 상속은 3ha까지 소유 허용('06)
 - 질병·고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96)
- 반면, 농지소유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엄격히 하는 등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하면서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소유 상한제 폐지('96년 진흥지역, '03년 진흥지역밖)
- 농지 취득시 20km 통작거리 제한, 농지소재지 사전 6개월 거주요건 및 농지관리위원 확인제도 등 폐지('02)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03)
- 현재 상속에 의한 비농업인의 소유 제한(3ha)과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의 농지매입 제한이 남아 있음.

나. 개선방향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지 소유상한 완화 추진
 - 농지법개정을 통해 현재 상속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가능한 소유상한 폐지 추진
 - (현행) 임대위탁 소유상한 3ha → (개정) 임대위탁 소유 무제한 가능

다. 추진일정

- 농지법 개정 추진
 - '08. 6~11 : 농지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
 - '08. 12 : 국회제출

라. 기대효과

-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로 농지유동성이 증가하여 농업인의 재산적 가치 증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 기대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지과 사무관 박은엽)

86.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규정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은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분실·훼손 등의 경우 재발급 규정이 없어 불편초래
- 소 또는 돼지에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1매만 발급됨에 따라 분실·훼손시 추가 발급할 수 없어 불편
 - 부분육으로 판매할 경우 식육구매자가 확인서 요구시 구두 설명 등으로 대체하는 어려움이 있음.

나. 개선방향

- 분실·훼손 또는 추가 필요한 경우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다. 추진일정

- '08. 5~ 6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 '08. 7~ 8 :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 '08. 9~10 : 법제처 심사의뢰
- '08.11~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시행

라. 기대효과

-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추가 발급토록 함으로써 전국 정육점(45천개소)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가능

마. 특이사항 : 없음

(축산정책팀 사무관 이학주)

87. 식물검역 병해충 위험도에 따른 검사방법 차등적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기준 또는 국내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와 법 준수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금지품이라도 관리요건을 갖출 경우 수입허용.
- 최근 FTA 및 수입 개방화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식물검역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인한 민원불편 예상

나. 개선방향

- 병해충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방법을 차등 적용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검역인력 절감방안 강구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안 (안)
식물류의 검사방법을 재식용, 비재식용으로 분류하여 시행	검사방법을 병해충의 부착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도 품목, 중위험도 품목, 저위험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의 부착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식물검역대상 물품은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등 검사방법을 차등적용

다. 추진일정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위험도별 분류 : '08. 8~10

-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식검고시)」 개정안 규제 심사 : '08. 11
- 고시 개정안 공포 : '08. 12

라. 기대효과

- 위험도가 낮은 품목의 신속한 검역처리로 민원불편 해소 및 인력절감

마. 특이사항

-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대상물품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농산경영팀 사무관 김기주)

88. 식물방역법 위반 식물의 폐기방법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물방역법 제10조(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 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토록 함.
- 식물수입시 수출국 검사증명서가 없거나, 긴급수입제한 위반, 국내 도착 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또는 반송을 명령
- 수입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단지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여 매몰·반송·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지연 및 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나. 개선방향

- 병해충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단순히 법을 위반(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하여 폐기 명령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폐기 방법을 다양화
- 병해충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폐기 대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방법(매몰·소각·반송)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퇴비화」하는 방법을 추가

다. 추진일정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6~7
 - 폐기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실시
-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범제처 심사 : '08. 8~9
- 개정안 시행, 공포 : '08. 10
- ※ 시행규칙 개정 후 식검 고시 개정('09.1)

라. 기대효과

- 폐기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 폐기품의 신속한 처리로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

마. 특이사항

-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 : 관계부처(관세청)간 협의

(농산경영팀 사무관 김기주)

89. 국가 격리재배 포장의 검사수량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종자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일부를 국가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하여 검사를 실시
- 품목별 일정수량은 국가격리재배포장에서, 그 외 수량은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재배

* 식물방역법 제13조 및 격리재배검사요령(식검고시 제2006-4호)

《격리재배대상 종자별 국가포장 격리재배 수량》

- 화훼의 구근류 : 품목당 50개
 - 양딸기묘 : 품목당 50개
 - 감자의 괴경 : 50kg, 고구마의 괴근 : 15kg
 - 벧나무, 과수류묘목·접수·삽수 : 품목당 300개
 - 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삽수 : 50개
 -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 전량
- 그러나 국가포장은 개인포장과 달리 먼 거리에 위치(수원, 밀양)하고 있어 수입자가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워 불편 초래

나. 개선방향

- 국가포장에서 격리 재배하는 수량을 축소 조정하여 수입자의 불편을 해소

다. 추진일정

- 국가포장 격리재배 검사수량 조정, 검토 : '08. 8~10

- 「격리재배검사요령(식검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 '08. 11
-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및 공포 : '08. 12

라. 기대효과

- 소유자가 직접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리장애 등으로 인한 관리중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포장 재배수량 조정으로 검사인력 절감

마. 특이사항 : 없음

(농산경영팀 사무관 김기주)

90. 수출입식물 방제기술자 교육 자율실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 종사하는 방제기술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 방제기술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4~5월중에 방제기술교육 실시
 - 현재 방제기술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는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제기술 교육으로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서 이직이 많은 방제기술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 차질이 우려됨.

나. 개선방향

- (사)한국수출입식품방제협회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수출입식품소독처리규정)개정
 - 방제협회장이 교육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다. 추진일정

- 고시 개정(안) 마련, 입안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 '08. 5~6
- 「수출입식품검역소독처리규정」 개정안 고시 : '08. 8. 31

라. 기대효과

- 방제업체가 교육수요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개별 업체의 방제기술자 채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이사항 : 없음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김정욱)

91.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업무 민간위탁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농약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을 수입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거 발급
-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익년 2월말까지 활용실적을 제출
 - 농약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시험·학술용 농약 또는 원제의 수입증명서 신청 및 발급요령」(농촌진흥청 고시)
- 수입증명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절차상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관세 감면자료로 활용키 위해 발급

나. 개선방향

-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업무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되, 국가에서는 발급기준 설정 및 사후관리

다. 추진일정

-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08. 8. 31

라. 기대효과

- 단순 발급업무의 효율성 향상

마. 특이사항 : 없음

(친환경농업팀 사무관 김정욱)

92. 경마관련 조교사·마주 등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수수료 징수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주마의 조교, 기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받는 자에 대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마사회법 제14조 및 제15조).
 -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하여 면허제도는 필요하나, 면허수수료는 불필요한 제도로 경마관계자의 부담으로 작용
- 마사회법 제11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하여 마주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함.
 -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말은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마시행시 기수가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 및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에 한하며, 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도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마주, 경주마, 기수의 복색, 장제사의 등록제도는 필요하나, 등록수수료는 불필요한 제도로 부담

나. 개선방향

- 조교사·기수의 면허제도 및 마주 등의 등록제도는 존치시키되, 이들에 대한 면허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폐지
 - 마사회법 제15조를 삭제

다. 추진일정

- '08. 6. : 개정안 마련, 자체 법령정비 협의회

- '08. 7 :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 '08. 8 :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9 : 국회제출

라. 기대효과

- 면허 및 등록 수수료를 폐지 등으로 경마관계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건전한 경마환경 조성을 도모

마. 특이사항 : 없음

(축산정책팀 사무관 김휴현)

93. 일선수협의 사업 승인권을 수협중앙회에 이양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및 수협별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영역을 구분(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및 제138조)
 - ※ 지구별수협(72개), 업종별수협(20개), 수산물가공수협(2개)
- 일선수협은 사업영역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동일구역 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 공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수협법 제60조제1항·제8항, 제107조제1항, 제108조 및 제112조제1항).
- 동 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수협법상 감독권의 위임·위탁 근거에 의거 중앙회장에게 위탁(수협법 제1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제2호)

- 일선수협의 사업 승인권의 행사가 중앙회에 위임되어 실질적으로 정부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비효율성과 부담만 초래

나. 개선방향

- 일선수협의 사업영역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승인권을 정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이양
-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의 승인권을 정부에서 수협중앙회로 이양

다. 추진일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8. 4~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및 법제처 제출 : '08. 6~7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08. 7~9
 - 국회 심의 및 의결 : '08. 9~12

라. 기대효과

- 사업승인권 행사의 자율성 확보로 수협 경영의 효율성 강화
 - 수협 이용자인 어업인, 일반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로 신규사업 진출이 쉬워져 경제사업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 수개 조합간 상호 출자를 통한 공동사업의 확대로 수익증대 및 고용 창출 기대

마. 특이사항 : 없음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평전)

94. 어선의 선박국적증서 등 비치의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선의 소유자는 항행 또는 조업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함(어선법 제15조)
- 양식어장 관리에 사용하는 어선은 구조 및 작업여건상 선박국적증서등을 선내에 비치하기가 곤란함.
- * 선박국적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10만원)

나. 개선방향

-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

다. 추진일정

- 어선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8. 4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8. 4~5
- 규제심사 : '08. 6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시행 : '08. 6~7

라. 기대효과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불편 사항 해소 (총어선 85,627척 중 양식어선 16,352여척)

마. 특이사항 : 없음

(어선인력과 사무관 백현태)

95. 어선보험의 가입기간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선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 조업기간만 단기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 * 근거법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제2항
 법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②어선보험의 가입기간은 가입 이후 1년으로 한다.

나. 개선방향

- 보험가입기간을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②어선보험의 가입기간은 가입 이후 1년으로 한다.	②----- ----- 1년 이내로 한다.	어선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다. 추진일정

- 법률 개정(안) 마련 : '08 상반기
- 부처협의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08. 8~9
- 공청회 : '08. 9~10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10~11
- 개정안 국회제출 : '08. 12 (공포 : '09년 상반기)

라. 기대효과

- 어선보험의 가입기간을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자율성 증대

- 보험사업을 시행한 2004년 이후 어선보험에 가입한 20,000여척(중복 가입 포함) 중 2% 가량인 400여척이 1년 이내의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가입기간 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경우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특이사항 : 없음

(어선인력과 사무관 박신철)

96.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자 소멸요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선원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제(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
-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어진 임의가입자의 경우 해지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나. 개선방향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어선원보험 임의해지 제한 삭제

다. 추진일정

- 법률 개정(안) 마련 : '08 상반기
- 부처협의,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 '08. 8~10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8. 10~11
- 개정안 국회제출 : '08. 12 (공포 : '09년 상반기)

라. 기대효과

- 어선원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경우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성 부여

마. 특이사항 : 없음

(어선인력과 사무관 박신철)

97. 전통식품명인 지정 취소기준 구체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1. 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시 전통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 중 「활동상황보고」 관련조항은 이미 삭제되어 규정(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에서는 전통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은 명시되어 있어 사실조사서 등 작성에 따른 불편초래 등으로 서류 제출 의무 면제 필요(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나. 개선 방향

- 전통식품 명인의 지정기준 심사, 명인지정 신청서 제출서류 및 사실조사서 작성 제출서류 중 “활동상황”을 삭제토록 관련규정 개정

다. 추진일정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관계부처 협의 : '08. 7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08. 7~8

- 법제처 심사 : '08. 8
- 관보게재 및 시행 : '08. 9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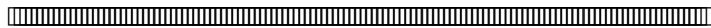
- 전통식품명인 활동상황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해 제출 의무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명인의 불편해소 기대
-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 제도 운영을 통한 명인 인력 육성 및 명성도 제고

마. 특이사항

- 명인지정자('99. 12) : 김광자(73세,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 보유기증 : 어란 제조

(수산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편집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인쇄 : 거 성 출 판

☎ (031) 421-6063



<비매품>